

소득양극화 현상 완화를 위한  
소득세제 개편방안 연구

2013. 12

김재진



## 서 언

조세의 기능은 크게 소득재분배 기능(Income Redistribution), 자원 배분 기능(Resource Reallocation), 경제안정화 기능(Stabilizing the Economy)으로 구분되며,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소득재분배 기능(Income Redistribution)이란 조세를 통하여 개인 및 집단 간 소득이 이전되는 것으로 공평한 소득분배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세전 대비 세후 지니계수 감소율은 8.7%로 OECD 평균 31.3% 대비 22.6%p 크게 낮은 수준이어서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OECD 주요국과 비교하여 매우 취약하다.

우리나라 조세 중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세목은 소득세, 상속·증여세, 재산세 등이 있는바, 소득양극화 현상 완화를 위해서는 세수규모나 과세대상 측면에서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이 3.6%로 OECD 평균 8.4%에 비해 낮은 뿐만 아니라, 여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소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저해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공제방식은 소득공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그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편중되고 있어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소득세가 그 본연의 기능인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하여 소득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소득세제의 개편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체계 및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의 소득세 현황, 과세체계, 공제제도 운영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소득세 공제방식에 따른 혜택을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하여 소득계층별로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소득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우리나라 소득세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 과도하게 소득공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제제도를 세액공제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많은 OECD 국가들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세인바,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개인의 한계세율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절감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소득공제하에서 공제혜택이 고소득자에게 편중되었던 문제를 해결하여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시킬 것이다. 둘째, 고소득자에게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공제금액을 축소하는 Phase-out Rule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호주·영국에서는 주요 공제항목의 경우 고소득계층에게 적용되는 공제금액을 소득이 증가할수록 점차 감소하도록 하거나 일정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셋째, 연금저축·퇴직연금 공제제도의 환급형 세액공제로의 운영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저소득계층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이들 계층의 연금가입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3년 소득세 개편안에서는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였는바, 이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되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저소득계층의 경우, 세액공제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개선방안이 과세형평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개선을 위한 소득세제의 변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하여 정부는 소득세제 개편방안에 따른 기대효과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본 연구원의 김재진 박사가 집필하였다. 저자는 원내 세미나 등을 통해 유익한 도움 말씀을 주신 원내 연구위원들과 외부 위원들, 그리고 익명의 논평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또한 기존 연구결과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집필에 큰 도움을 준 허윤영 연구원, 김예나 연구원과 원고정리 및 교정을 맡아준 최미영 주임연

구행정원, 주애란 연구행정원 그리고 출판담당자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에 참여한 연구진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히는 바이다.

2013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옥 동 석



## 요약 및 정책시사점

조세의 기능은 크게 소득재분배 기능(Income Redistribution), 자원배분 기능(Resource Reallocation), 경제안정화 기능(Stabilizing the Economy)으로 구분되며,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세전 대비 세후 지니계수 감소율은 8.7%로 OECD 평균 31.3% 대비 22.6%p 크게 낮은 수준이어서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OECD 주요국과 비교하여 매우 취약하다. 우리나라 조세 중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세목은 소득세, 상속·증여세, 재산세 등이 있는바, 소득양극화 현상 완화를 위해서는 세수규모나 과세대상 측면에서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이 3.6%로 OECD 평균 8.4%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여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소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저해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소득세가 그 본연의 기능인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하여 소득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소득세제의 개편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체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소득세 공제방식에 따른 혜택을 소득계층별로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의 소득세 현황, 과세체계 및 소득공제 방식을 비교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현행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구체적으로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으며,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

는 종합과세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근로소득이 있는 자와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신고로 신고체제를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공제방식은 동일한 소득공제 금액이라도 “소득공제금액×한계세율”만큼 세금절감효과가 발생하는 소득공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바람직한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데 해외 주요국의 경험을 참고하는 것은 유용한 원천이 될 수 있으므로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득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조사대상 해외 주요국 중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의 소득세 과세체계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소득계층 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공제·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많은 OECD 국가들이 누진세율체계하에서 납세자들이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저소득 가구가 충분한 과세소득이 없더라도 세제를 통한 혜택을 전부 누릴 수 있도록 소득이전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환급형 세액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소득불평등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미국·호주·영국의 경우 주요 공제항목에 대하여는 고소득계층에게 적용되는 공제금액을 감소 또는 제한하는 Phase-out Rule을 적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국과 호주에서는 중산층 이하 가구의 퇴직연금 불입을 장려하기 위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일정 한도 이내에서 세금을 환급하여 주고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세제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의 근로소득연말정산 신고 및 종합소득 확정신고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소득세 공제방식이 소득양극화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공제방식별 1인당 평균 소득세 경감혜택을 비교한 결과, 소득공제제도는 소득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켜 소득재분배 기능을 저해하고 있는바, 세액공제로의 전환을 통하여 소득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공제항목에 대한 소득계층별 세금절감효과는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소득공제 중 본인 및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가 적용되는 인적공제, 필요경비적 성격으로 자영업자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근로소득공제, 소득 및 지출규모와 관련된 특별공제 중 의료비와 보험료 등의 일부 항목 등은 현 소득세 누진세율체계하에서 그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과도하게 편중됨에 따라 소득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소득공제 항목의 조세정책적인 도입목적 및 정책방향,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소득세제 개편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소득세는 2011년 기준 국세 약 180.1조원 중 약 42.3조원을 차지하여 지방소비세가 차감된 후의 부가가치세 약 51.9조원, 법인세 약 44.9조원에 이어 세수규모가 가장 큰 3대 세목으로 우리나라의 조세구조 관점에서 보면,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세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개편을 위한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소득재분배 기능의 개선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공제방식은 소득공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그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편중되고 있어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비과세·감면제도의 평가 및 재정비를 통하여 소득세 감면규모 및 과세미달자 비율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소득세 감면규모는 2012년 기준 전체 국세감면액 중 가장 높은 비중인 약 48%를 차지하고 있고, 다양한 공제·감면제도로 인하여 소득세 면세점이 높아 근로소득자의 과세

미달자 비중이 2011년 기준 36.1%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셋째,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격차를 축소하고,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정 납세자 비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명목소득세율은 OECD 회원국들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 아니지만 다양한 공제·감면제도로 소득세의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또한, 각종 공제제도를 근로소득자에게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자 간 실효세율이 차이가 커 수평적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

한편, 2013년 소득세 개편안 중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 EITC 확대 및 CTC 도입의 기대효과를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동 개편안은 소득세제가 안고 있는 소득계층 간 불평등도를 개선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하여 1인당 평균 소득세 경감액을 개편 전·후로 살펴본 결과,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공제제도로 인한 세금절감효과 차이는 크게 축소되었다. 또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1인 이상 비농가 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2013년 세제개편안 중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 EITC의 확대 및 CTC의 도입을 반영한 후의 세후소득 지니계수를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세액공제로의 전환을 반영한 후의 세후소득 지니계수는 0.3031, EITC 확대 및 CTC 도입까지 고려한 세후소득 지니계수는 0.2999로 개편 전 세후 소득 지니계수 0.3042 대비 각각 0.36%, 1.41%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공제제도 운영사례, 우리나라의 소득계층별 공제혜택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정책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제도 중심으로의 전환이다. 세액공제제도로의 전환은 개인의 한계세율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절감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소득공제 중심의

운영으로 고소득자에게 편중되었던 세제혜택을 축소시켜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소득세의 안정적인 재  
원조달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소득자에게는 소  
득이 높아질수록 공제금액을 축소하는 Phase-out Rule을 도입하  
는 방안이다. 미국·호주·영국은 주요 공제항목의 경우 고소득계층  
에게 적용되는 공제금액을 감소 또는 제한하고 있다. 셋째, 연금저  
축·퇴직연금 공제제도의 개선이다. 2013년 소득세 개편안에서는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공제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었는바, 소  
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되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저소득계층의 경우, 세액공  
제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저소득계층에게도 실질적  
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이들 계층의 연금가입의 활성화  
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급형 세액공제로의 운영을 고려해 볼 필요  
가 있다.



# 목 차

I. 서 론 .....	27
II. 우리나라 경제환경의 변화(2001~2012년) .....	29
1. 국내총생산(GDP) 및 국민총소득(GNI) .....	29
2. 국가채무규모 .....	31
3. 세수규모 및 조세부담률 .....	35
4. 소득불평등도 .....	38
III.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체계 및 통계 현황 .....	42
1. 소득세 과세체계 .....	42
가. 개요 .....	42
나. 세율구조 .....	45
다. 공제제도 .....	46
2. 소득세 통계 현황 .....	55
가. 세수실적 및 납세인원 .....	55
나. 소득세 공제·감면 .....	64
IV. 주요국의 소득세 현황 .....	70
1. 미국 .....	70
가. 세수실적 .....	70

나. 과세구간 및 소득세율 .....	72
다. 소득세 과세체계 .....	74
라. 소득세 공제제도의 특징 .....	75
2. 호주 .....	86
가. 세수실적 및 신고인원 .....	86
나. 과세구간 및 소득세율 .....	88
다. 소득세 과세체계 .....	88
3. 영국 .....	100
가. 세수실적 .....	100
나. 과세구간 및 소득세율 .....	100
다. 소득세 과세체계 .....	104
라. 소득세 공제제도의 특징 .....	105
4. 캐나다 .....	113
가. 세수실적 .....	113
나. 과세구간 및 소득세율 .....	114
다. 소득세 과세체계 .....	115
라. 소득세 공제제도의 특징 .....	116
5. 뉴질랜드 .....	123
가. 세수실적 .....	123
나. 과세구간 및 소득세율 .....	124
다. 소득세 과세체계 .....	125
라. 소득세 공제제도의 특징 .....	126
6. 요약 및 비교 .....	129
가. GDP 대비 세수비중 .....	129
나. 공제제도 규모 .....	130
다. 소득세 과세체계 .....	131

라. 공제제도 방식 .....	133
V. 소득세 기초자료 분석 및 결과 .....	139
1. 분석대상 기초자료 .....	139
2. 분석결과 .....	141
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대상 분석 .....	141
나. 종합소득 확정신고대상 분석 .....	153
3. 요약 및 시사점 .....	164
가. 요약 .....	164
나. 시사점 .....	173
VI. 소득세제 개편을 위한 정책방향 .....	174
1. 소득재분배 기능 개선 .....	174
2. 소득세 감면규모 축소 .....	177
3. 과세미달자 비율 축소 .....	180
4.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격차 축소 .....	182
5. 과세표준구간별 적정납세자 비율 유지 .....	186
VII. 2013년 소득세법 개편안 및 기대효과 .....	188
1. 개요 .....	188
2. 2013년 소득세 개편안의 주요 내용 .....	189
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	189
나.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 신설 .....	192
3. 2013년 소득세 개편안의 기대효과 .....	194
가. 1인당 평균 소득세 경감액으로 본 효과 .....	194

나. 소득재분배 개선효과 .....	199
다. 빈곤완화효과 .....	210
라. 세수효과 .....	212
<b>VIII. 소득세제 개편의 기본방향 .....</b>	<b>215</b>
1. 세액공제제도 중심으로 전환 .....	215
가. 현황 .....	215
나. 해외 운영사례 .....	223
다. 개선방안 .....	225
2. 고소득층 Phase-out Rule 적용 .....	233
가. 현황 .....	233
나. 해외 운영사례 .....	237
다. 개선방안 .....	240
3. 연금저축·퇴직연금 공제제도 개선 .....	245
가. 현황 .....	245
나. 해외 운영사례 .....	247
다. 개선방안 .....	248
<b>IX. 결 론 .....</b>	<b>250</b>
<b>참고문헌 .....</b>	<b>256</b>

## 표 차례

<표 II-1>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재정지표 변화 .....	32
<표 II-2>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가계부채 현황 .....	34
<표 II-3> 한국의 법인세 및 소득세율 변화 .....	36
<표 II-4>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국제비교(2010년 기준) ..	37
<표 II-5> 통계청 지니계수 추이 .....	38
<표 II-6> OECD 국가의 세전 지니계수와 세후 지니계수 비교 ..	39
<표 III-1> 과세표준구간과 소득세율 변천 .....	45
<표 III-2>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	48
<표 III-3> 우리나라 소득세 공제제도 .....	49
<표 III-4> 우리나라 주요 소득공제 산정방법 .....	51
<표 III-5> 우리나라 주요 세액공제 산정방법 .....	53
<표 III-6> 주요 세목별 세수실적 비교(2001년 vs. 2011년) .....	57
<표 III-7> 세목별 납세인원 현황 .....	59
<표 III-8>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	61
<표 III-9> 종합소득세 신고유형별 확정신고인원 현황 .....	62
<표 III-10> 근로소득 연말정산(원천징수) 신고인원 .....	64
<표 III-11> 세목별 조세지출규모 변화 .....	65
<표 III-12> 소득공제 신고 현황(2011년 귀속) .....	67
<표 III-13> 세액공제 신고 현황(2011년 귀속) .....	68
<표 IV-1> 내국세 세목별 징수액(2001~2011년) .....	71
<표 IV-2> 미국의 과세구간 및 소득세율(2012년 기준) .....	72

<표 IV-3> 개인소득세 소득구간별 공제·감면, 세액비중 및 평균세율(2010년 예상) .....	73
<표 IV-4> 미국의 소득세 과세체계 .....	74
<표 IV-5> 미국의 항목별 공제 점감구간 경계소득(2013) .....	77
<표 IV-6> 미국의 인적공제 점감구간 경계소득(2013) .....	77
<표 IV-7> 미국의 교육비 공제 .....	79
<표 IV-8> 미국의 소득계층별 교육비 공제 .....	79
<표 IV-9> 미국의 EITC 신청을 위한 AGI 및 투자소득 요건(2013) .....	82
<표 IV-10> 미국의 저축세액공제금액(2012) .....	84
<표 IV-11> 과세소득구간별 개인소득세 신고인원 및 세액 (2009~2010년) .....	87
<표 IV-12> 호주의 과세구간 및 소득세율 .....	88
<표 IV-13> 호주의 소득세 과세체계 .....	89
<표 IV-14> 호주의 부양가족공제(2012-13) .....	90
<표 IV-15> 호주의 연로자 및 연금수급자 세액공제(2012-13) ..	91
<표 IV-16> 호주의 고령 근로자 세액공제(2012-13) .....	92
<표 IV-17> 의료비 세액공제(Medical Expense)(2012-13) .....	93
<표 IV-18> 호주의 개인건강보험료 세액공제율(2012-13) .....	93
<표 IV-19> 호주의 저소득층 세액공제(2011-16) .....	94
<표 IV-20> FTB Part A 수령액(2013-14) .....	95
<표 IV-21> 조정된 과세소득(ATI) 한도(FTB Part B: 2013-14) ..	97
<표 IV-22> FTB Part B 최대 수령액(2013-14) .....	97
<표 IV-23> 호주의 퇴직연금공동분담제도 매칭자금 계산방식 · 99	
<표 IV-24> 호주의 퇴직연금공동분담제도 수혜자 및 지원실적 ...	99
<표 IV-25> 영국의 과세구간 및 소득세율 .....	101
<표 IV-26> 총소득규모별 납세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과 공제현황(2010-11) .....	102

<표 IV-27> 납세의무자의 연도별·한계세율 적용 인원 현황	103
<표 IV-28> 영국의 소득세 과세체계	104
<표 IV-29> 영국의 본인공제(2012-13)	105
<표 IV-30> 영국의 부부공제(2012-13)	106
<표 IV-31> 영국의 CTC 급여산정요소(2013-14)	108
<표 IV-32> 영국의 CTC 급여(2013-14) 예시	109
<표 IV-33> 영국의 WTC 최소근로시간 요건	110
<표 IV-34> 영국의 WTC 급여산정요소(2013-14)	111
<표 IV-35> 자녀가 없는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의 WTC 급여 (2013-14): 예시	112
<표 IV-36> 캐나다의 세수실적 비교	114
<표 IV-37> 캐나다의 과세구간 및 소득세율(2012~13)	115
<표 IV-38> 캐나다의 소득세 과세체계	115
<표 IV-39> CCTB 적용시, 소득 한도(2013-14년 기준)	118
<표 IV-40> 캐나다 WITB의 급여체계(2007~2013년)	121
<표 IV-41> 캐나다의 GST/HST 공제(2012-13)	123
<표 IV-42> 캐나다의 GST/HST 공제(2012-13)	125
<표 IV-43> 뉴질랜드의 소득세 과세체계	125
<표 IV-44> 주요국의 GDP 대비 세수비중(2010년 기준)	129
<표 IV-45> OECD 주요국의 총소득 중 소득공제 비율	130
<표 IV-46> 각국의 소득세 과세체계 비교	132
<표 IV-47> 소득세 공제방식 국제비교	133
<표 IV-48> 세액공제방식의 유형 및 장단점	134
<표 IV-49> 주요국의 운영사례 요약	136
<표 V-1> 『국세통계연보』 제공 통계 현황	140
<표 V-2> 과세표준 규모별 소득공제로 인한 세금절감효과	142
<표 V-3> 총급여 규모별 소득공제로 인한 세금절감효과	143

<표 V-4> 과세표준 규모별 인적공제로 인한 세금절감효과 ...	144
<표 V-5> 과세표준 규모별 연금보험료공제로 인한 세금절감 효과 .....	145
<표 V-6> 과세표준 규모별 특별공제로 인한 세금절감효과 ...	147
<표 V-7> 과세표준 규모별 조특법상 공제로 인한 세금절감 효과 .....	149
<표 V-8> 과세표준 규모별 세액공제로 인한 세금절감효과 ...	152
<표 V-9>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 규모별 소득공제로 인한 세금 절감효과 .....	153
<표 V-10> 과세표준 규모별 인적공제로 인한 세금절감효과 ·	155
<표 V-11> 과세표준 규모별 연금보험료공제로 인한 세금절감 효과 .....	156
<표 V-12> 과세표준 규모별 특별공제로 인한 세금절감효과 ·	157
<표 V-13> 과세표준 규모별 「조세특례제한법」 상 공제로 인한 세금절감효과 .....	159
<표 V-14> 과세표준 규모별 「소득세법」 상 소득공제로 인한 세금절감효과 .....	161
<표 V-15> 과세표준 규모별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로 인한 세금절감효과 .....	163
<표 V-16> 과세표준구간별 세금절감효과 비교(소득공제 vs. 세액공제,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준) .....	166
<표 V-17> 소득구간별 세금절감효과 비교(소득공제 vs. 세액 공제,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준) .....	167
<표 V-18> 과세표준구간별 세금절감효과 비교 .....	168
<표 V-19> 총급여 규모별 세금절감효과 비교 .....	170
<표 V-20> 과세표준 규모별 1인당 평균 소득세 경감액 비교 ·	171
<표 VI-1> 소득재분배 관련세목 신고인원 및 결정세액 .....	175

<표 VI-2> 소득공제로 인한 1인당 평균 소득세 경감액 (과세대상 근로소득 기준) .....	176
<표 VI-3> 세액공제로 인한 1인당 평균 소득세 경감액 (과세대상 근로소득 기준) .....	177
<표 VI-4> 서민·중산층·중소기업 및 고소득층·대기업 감면 현황 .....	180
<표 VI-5> 근로소득 연말정산(원천징수) 신고인원 및 종합 소득세 납세인원 .....	181
<표 VI-6> 근로소득자의 명목세율 vs. 실효세율(2011년 귀속) .....	183
<표 VI-7> 종합소득자의 명목세율 vs. 실효세율(2011년 귀속) .....	185
<표 VI-8> 과세표준 계급별 현황 추이 .....	187
<표 VII-1> 2013년 세법개정 .....	188
<표 VII-2> 각종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	189
<표 VII-3> 2013년 세법개정안 수정 내용 .....	191
<표 VII-4>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	192
<표 VII-5> 자녀장려세제(CTC) 신설 .....	193
<표 VII-6> 세액공제율 15% 전환항목의 1인당 평균 소득세 경감액 및 배수 .....	194
<표 VII-7> 세액공제율 12% 전환항목의 1인당 평균 소득세 경감액 및 배수 .....	197
<표 VII-8> 현행 세법을 이용한 세후소득 지니계수 산출 과정	201
<표 VII-9> 2013년 소득세 개편안을 이용한 세후소득 지니계수 산출 과정 .....	202
<표 VII-10> 지니계수를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효과(통계청, 근로소득자가구) .....	204
<표 VII-11> 2014년도 이후 세액공제로의 전환항목을 반영한 지니계수 변화 .....	206

<표 VII-12> 지니계수를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효과(국세청, 근로소득자) .....	207
<표 VII-13> 세법상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소득공제제도 비교	208
<표 VII-14> 지니계수를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효과(통계청, 전체가구) .....	209
<표 VII-15> 2013년도 세제개편안 반영시 빈곤감소효과(1인 이상 근로소득자가구) .....	211
<표 VII-16> 2013 세법개정안 요약 .....	213
<표 VII-17> 2013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세수효과 .....	213
<표 VIII-1> 소득공제로 인한 과세표준 구간별 세금절감효과 ...	216
<표 VIII-2> 소득공제로 인한 소득구간별 세금절감효과 .....	218
<표 VIII-3> 세액공제로 인한 과세표준 구간별 세금절감효과 ...	221
<표 VIII-4> 세액공제로 인한 소득구간별 세금절감효과 .....	222
<표 VIII-5> 소득공제방식의 세금절감효과 .....	223
<표 VIII-6> 공제방식의 세금절감효과 비교 .....	225
<표 VIII-7> 과세표준구간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 비교 ·	227
<표 VIII-8> 소득구간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 비교 .....	228
<표 VIII-9> 과세표준 규모별 1인당 평균 소득세 경감액 비교 ·	230
<표 VIII-10> 인적공제 금액 국제비교(2012) .....	232
<표 VIII-11> 가족 수에 따른 근로소득 면세점 및 최저생계비 (2011년, 월기준) .....	233
<표 VIII-12> 인적공제의 소득금액 요건 .....	235
<표 VIII-13> 항목별공제의 소득금액 요건 및 공제한도 .....	236
<표 VIII-14> 미국의 고소득층 공제금액 상한규정 .....	237
<표 VIII-15> 소득계층간 공제혜택 비교(미국) .....	239
<표 VIII-16> 미국의 고령자공제 소득금액 제한(2012) .....	239
<표 VIII-17> 고령자공제 운영방식 비교 .....	241

<표 VIII-18> 미국의 공제제도 상한 기준소득금액(2012) .....	243
<표 VIII-19> 연금의 분류 및 과세체계(소득공제) .....	246
<표 VIII-20> 연금관련 공제제도를 통한 1인당 평균 세금 경감액 ..	247

## 그림 차례

[그림 II-1]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및 경제성장률 .....	30
[그림 II-2]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명목) .....	30
[그림 II-3] 한국의 국가채무추이 .....	31
[그림 II-4] OECD 주요 국가의 국가채무비율 비교 .....	33
[그림 II-5]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세수입 비율 (2001년, 2010년) .....	35
[그림 II-6] 한국의 조세부담률 추이 .....	36
[그림 II-7] 통계청 지니계수 및 감소율 .....	39
[그림 II-8] OECD 주요국의 세전 대비 세후 지니계수 감소율 .....	41
[그림 III-1] 종합소득 과세체계 .....	43
[그림 III-2] 근로소득 과세체계 .....	44
[그림 III-3] 주요 세목별 세수실적 .....	55
[그림 III-4] 주요 세목별 세수비중 변화 .....	56
[그림 III-5] 소득세 세수실적 추이 .....	57
[그림 III-6] 주요 세목별 납세인원 변화 추이 .....	60
[그림 III-7] 종합소득세 신고자 비율(2011) .....	63
[그림 III-8] 세목별 조세지출 비중 변화 .....	66
[그림 III-9] 소득공제 신고금액 및 비중 .....	68
[그림 III-10] 세액공제 신고금액 및 비중 .....	69
[그림 IV-1] 미국의 세목별 총징수액 비중 .....	70
[그림 IV-2] 미국의 CTC 모형(2013) .....	81

[그림 IV-3] 미국의 EITC 모형(2012) .....	83
[그림 IV-4] 연방정부 세수입 규모(2012~2013년) .....	86
[그림 IV-5] 개인소득세 신고인원 및 비중 .....	87
[그림 IV-6] 부양가족 및 ATI에 따른 Part A 급여액 (15세인 적격 부양자녀 1명인 경우) .....	96
[그림 IV-7] 2001~2012년도 평균 세수비중 .....	100
[그림 IV-8] 영국의 CTC 모형(2013-14) .....	109
[그림 IV-9] 캐나다의 세수실적 구성비 .....	113
[그림 IV-10] CCTB와 NCBS 급여체계 모형 .....	118
[그림 IV-11] CCTB와 NCBS 모형(2013~2014년) .....	119
[그림 IV-12] 캐나다 WITB 모형(2013년 기준) .....	122
[그림 IV-13] 뉴질랜드의 세목별 세수실적(2012년 기준) .....	124
[그림 IV-14] 뉴질랜드 IWTC 모형(2013-14년 기준) .....	128
[그림 VI-1] 소득재분배 관련세목 세수비중 .....	175
[그림 VI-2] 국세감면액 현황 .....	178
[그림 VI-3] 주요 세목별 국세감면액 비중 변화 .....	179
[그림 VI-4] 종합소득 및 근로소득의 과세미달자 비중 추이 .....	182
[그림 VI-5] 근로소득자의 명목세율 vs. 실효세율(2011년 귀속) .....	184
[그림 VI-6] 종합소득자의 명목세율 vs. 실효세율(2011년 귀속) .....	185
[그림 VII-1] 세액공제율 15% 전환항목의 소득양극화 완화효과 .....	195
[그림 VII-2]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15%)으로 인한 소득양극화 완화효과 .....	196
[그림 VII-3] 세액공제율 12% 전환항목의 소득양극화 완화효과 .....	198
[그림 VII-4]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12%)으로 인한 소득양극화 완화효과 .....	199
[그림 VII-5] 지니계수를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효과	

(통계청, 근로소득자가구) .....	205
[그림 VII-6] 지니계수를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효과 (국세청, 근로소득자) .....	207
[그림 VII-7] 지니계수를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효과 (통계청, 자영자+근로자가구) .....	209
[그림 VII-8] 2013년도 세제개편안 반영시 빈곤감소효과 (1인 이상 근로소득자 가구) .....	212
[그림 VIII-1] 소득세 한계세율 구간에 따른 확정신고인원 비중 (2007~2011년 평균) .....	231
[그림 VIII-2] 일괄적인 특별공제 한도 적용으로 인한 효과 .....	236
[그림 VIII-3] 공제방식 개선방안 모형 .....	245

# I. 서론

조세의 기능은 크게 소득재분배 기능(Income Redistribution), 자원 배분 기능(Resource Reallocation), 경제안정화 기능(Stabilizing the Economy)으로 구분되며<sup>1)</sup>, 복지수요의 증대 및 재정건전성 유지 측면에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첫째, 소득재분배 기능(Income Redistribution)이란, 조세를 통하여 개인 및 집단 간 소득이 이전되는 것으로 공평한 소득분배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이다. 둘째, 자원배분 기능(Resource Reallocation)이란, 경제적 자원을 민간 및 공공부문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배분하는 기능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안정화 기능(Stabilizing the Economy)이란,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그러나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변화를 OECD 국가와 비교시,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은 매우 취약하다. 2000년대 후반 우리나라 세전 지니계수는 34.4%, 세후 지니계수는 31.4%로 나타나 세전 대비 세후 지니계수 감소율이 8.7%로, OECD 평균 31.3% 대비 무려 22.6%p 낮게 나타났다. 여타 OECD 회원국의 경우, 세후 지니계수 감소율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데, 오스트리아는 44.7%, 독일 41.5%, 프랑스 39.3%, 영국, 32.4%, 일본 28.8%, 미국 22.2%이다.

우리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세목 중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소득재분배 기능이 제한되어 있고, 법인세의 경우 주주의 분포가 다양

---

1) Musgrave(1959), p. 5.

하여 이를 통한 소득재분배를 달성하기 어렵다. 소득세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와 더불어 세수비중이 높고 중요한 세원이며, 특히, 소득세 과세체계의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구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를 통하여 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 실현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세법상의 세목 중 현실적으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실현할 수 있는 세목은 소득세로 판단되므로 소득세 과세체계의 구조적인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의 방향을 세우고자 한다.

그러나 현 소득세 과세체계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소득세의 안정적인 재원조달 및 소득재분배 기능이 저해되고 있다. 첫째, 소득이 높을수록 누진세율구조로 인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소득세법상 각종 소득공제제도로 인한 혜택 또한 고소득자에게 편중되고 있다. 즉, 저소득자 및 고소득자 간 같은 금액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소득세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되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 둘째, 각종 공제제도로 인한 소득세의 지출규모가 크게 나타나 소득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과세미달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명목세율에 비해 실효세율이 낮게 나타나 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소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를 강화하여 소득세법상 각종 공제제도를 포함한 과세체계의 전반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소득세법상 소득 및 세액공제제도로 인하여 받는 세금절감효과를 소득계층별로 추정 및 분석하고,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제제도를 파악함으로써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공제체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 우리나라 경제환경의 변화 (2001~2012년)

### 1. 국내총생산(GDP) 및 국민총소득(G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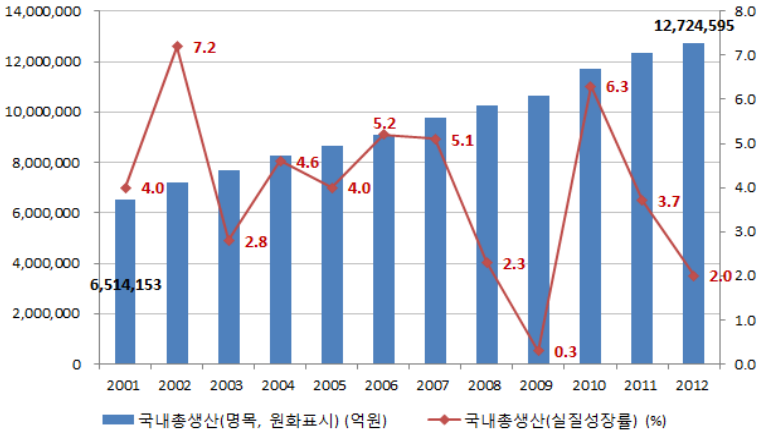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명목GDP)<sup>2)</sup>은 1,272.5조원으로 2001년 651.4조원 대비 621.0조원이 증가하여 95.3% 성장하였으며, 경제성장률(실질GDP성장률)<sup>3)</sup>은 2.0%로 2001년 4.0% 대비 2.0%p 크게 감소하였다. 한편, 2011년 국내총생산(명목GDP) 1,235.2조원과 비교 시, 2012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37.3조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sup>4)</sup>은 22,708달러로 2011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 22,451달러에 비해 1.1% 증가하였으나, 2001년 10,631달러와 비교하였을 경우에는 12,077달러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율은 113.6%로 나타났다.

- 
- 2)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의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한 결과 창출된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해서 합계한 것(KOSIS 한국의 주요 지표, 국내총생산)
  - 3) 일정기간(보통 1년) 동안 한 나라의 경제활동의 결과로 경제가 성장한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물가요인을 제거한 실질 국민총생산(GDP)이 전년에 비하여 얼마나 커졌는가를 증감률(퍼센트)로 나타냄(KOSIS 한국의 주요 지표, 경제성장률)
  - 4)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명목 GNI를 한 나라의 인구로 나누어 구하며 국제비교를 위하여 보통 미화달러로 표시함(KOSIS 한국의 주요 지표, 1인당 국민총소득(GNI))

[그림 II-1]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및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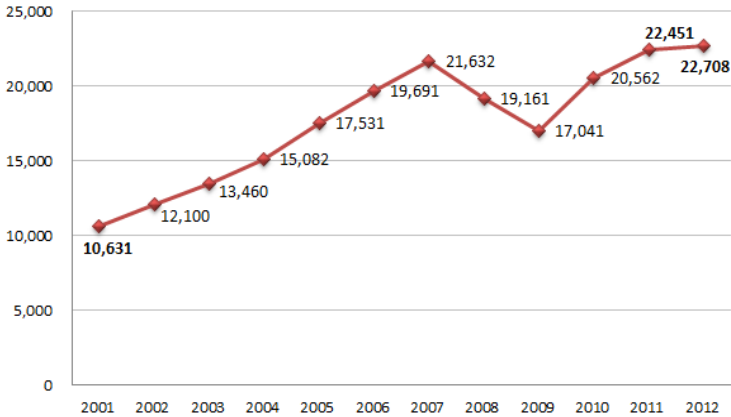
(단위 : 억원, 전년동기비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그림 II-2]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명목)

(단위: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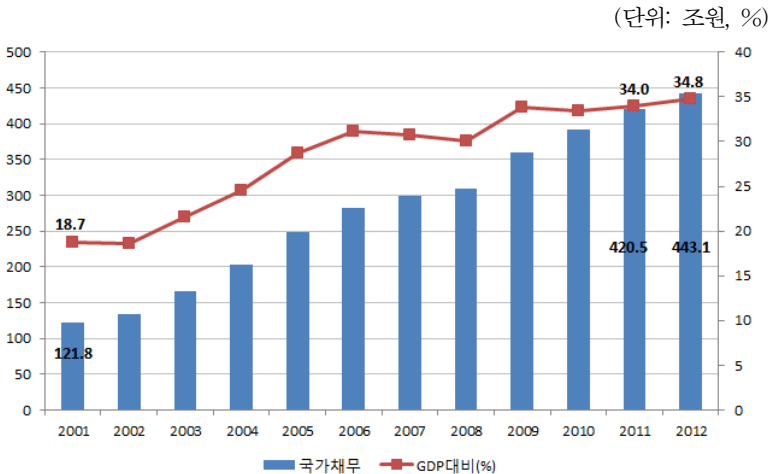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 2. 국가채무규모

2001년 이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재정적자가 증가함에 따라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2012년 결산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443.1조원으로 GDP 대비 약 34.8%에 달하여 재정건정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2001~2012년간 국가채무는 2001년 121.8조원에서 2012년 443.1조원으로 약 321.3조원이 증가하였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또한 2001년 18.7%에 비하여 16.1%p 크게 증가하여 약 34.8%로 나타났다.

[그림 II-3] 한국의 국가채무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2013~2016년 국가채무의 추정치를 살펴보면,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이후의 국가채무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이후에는 500조원<sup>5)</sup>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감소하여 2016년

5) 연금충당 부채를 뺀 현금주의 기준

32.0%로 추정되었다. 즉, 2013년 4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국가채무 및 GDP 대비 비율이 변화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국가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므로 이를 개선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표 II-1>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재정지표 변화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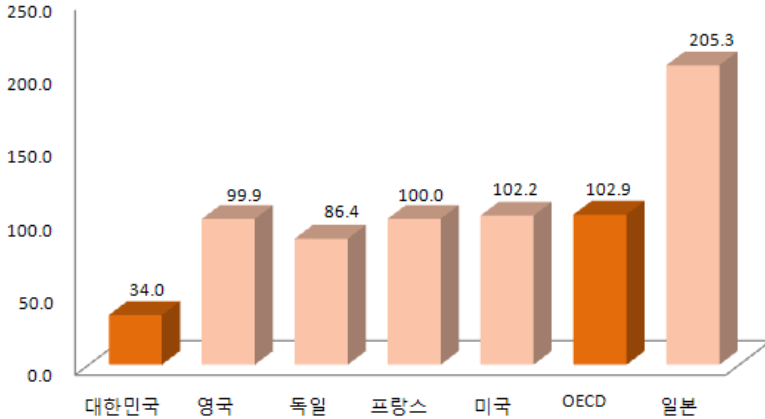
	국가채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기존	변경	기존	변경
2013	464.6	480.4	34.3	36.2
2014	470.6	492.9	31.4	34.6
2015	481.2	510.5	29.9	33.4
2016	487.5	524.3	28.3	32.0

자료: 기획재정부

한편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을 OECD 주요국과 비교할 때, OECD 평균 102.9%보다는 낮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이나,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른 복지수요 증대 및 세수여건의 악화 등으로 향후 국가채무의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34.0%로, 일본 205.3%, 미국 102.2%, 영국 99.9% 등에 비하여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11-4] OECD 주요 국가의 국가채무비율 비교

(단위: GDP 대비 %)



주: 2011년 결산기준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No.92, 2012. 11.

그러나 현재 공표된 국가채무의 경우, 지방정부채무 및 4대연금의 잠재부채, 공기업부채 등을 제외한 중앙정부채무만을 의미하는바, 중앙정부채무 이외의 부채들이 포함될 경우 우리나라 채무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2012년 지방채무는 약 27.1조원, 공공기관부채는 약 493.4조원, 가계부채는 약 963.8조원으로 나타나, 총 1,484.3조원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가계부채의 경우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2001년 이후 급증하여 2012년 963.8조원에 이르고 있는바, 이는 약 1,000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lt;표 11-2&gt;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가계부채 현황

(단위: 조원, %)

연도	지방자치단체 <sup>1)</sup>	공공기관 <sup>2)</sup>	가계 <sup>3)</sup>	합계
2001	17.8 (2.9)	-	341.7 (28.0)	359.5
2002	17.1 (2.5)	-	464.7 (28.5)	481.8
2003	16.5 (2.3)	187.2 (158.8)	472.1 (1.6)	675.8
2004	16.9 (2.1)	130.6 (90.5)	494.2 (4.7)	641.7
2005	17.4 (2.1)	149.0 (87.0)	545.9 (9.8)	712.3
2006	17.4 (2.1)	220.1 (109.6)	607.1 (11.8)	844.6
2007	18.2 (2.1)	241.8 (114.1)	665.4 (9.6)	925.4
2008	19 (2.0)	290.0 (133.1)	723.5 (8.7)	1,028.7
2009	25.6 (2.0)	336.8 (134.7)	776.0 (7.3)	1,133.7
2010	29 (2.5)	397.0 (162.9)	843.2 (8.7)	1,273.8
2011	28.2 (2.3)	459.0 (193.7)	916.2 (8.7)	1,407.9
2012	27.1 (2.1)	493.4 (207.5)	963.8 (5.2)	1,484.3

주: 1) 지방자치단체 채무규모이며 지방공사·공단의 채무는 포함되지 않음

( ): GDP 대비 비율

2)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부채규모 합계를 의미함. 단,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제외

( ): 부채비율(=부채/자본×100)

3) 가계부채=금융기관의 가계대출 + 카드회사 등의 판매신용

( ):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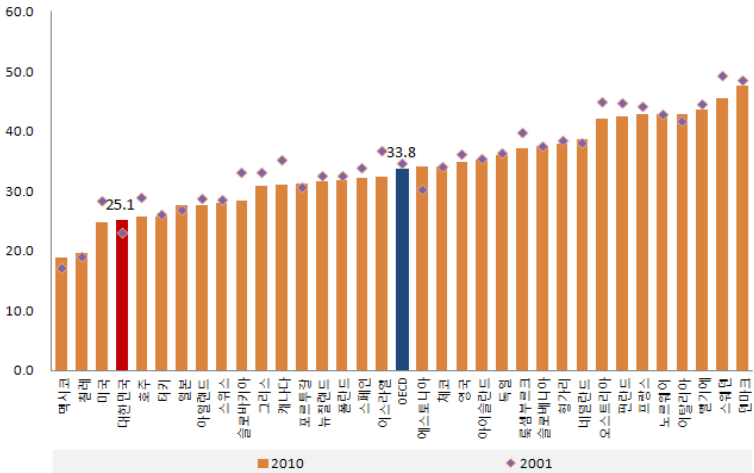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채무현황」;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한국은행 「가계신용동향」

### 3. 세수규모 및 조세부담률

우리나라의 GDP 대비 세수입 규모는 2010년 기준 25.1%로, 2001년 23.0% 대비 2.1%p 증가한 수치이나, OECD 회원국의 2010년 평균치 33.8%와 비교시 8.7%p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세수입 비율이 낮은 국가에 속하며, 멕시코, 칠레, 미국에 이어 4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11-5]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세수입 비율(2001년, 2010년)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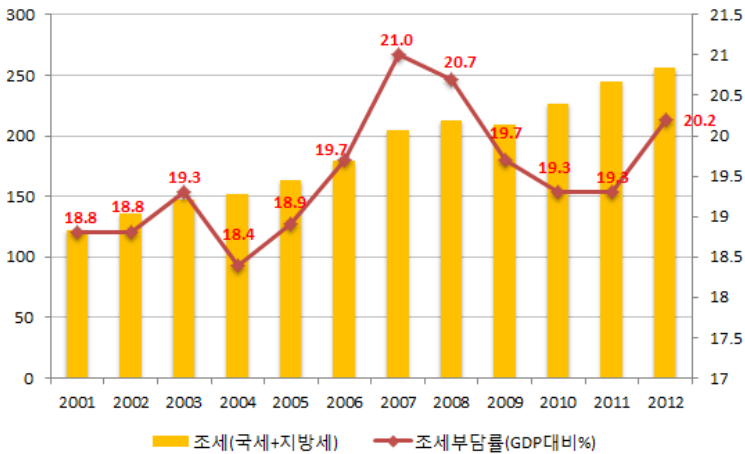
주: 1. 세수입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수입을 합산한 수치임  
 2. 일부 국가의 경우 2011년 관련 통계가 부재하여 2010년 통계를 활용함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12

또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01년 이후 18~19%대에서 안정세를 보였으나, 2004년 18.4%에서 2007년 21.0%로 급증한 후, 2010년까지 약 1.0%p씩 감소하다가 2012년에는 전년 대비 0.9%p 상승하여 20.2%로 나타났다. 이는 2004~2005년 법인세율 및 소득세율의 인하

에 따라 조세부담률이 다소 낮아졌다가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07년 21.0%로 최고조에 달하였고 2007년 이후 금융위기에 따른 세수감소와 정부의 지속적인 감세정책으로 인하여 조세부담률이 지속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11년 세계개편안에 따라 2012년부터 법인세 및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적용세율을 증가시킴에 따라 조세부담률이 다소 상승하였다.

[그림 11-6] 한국의 조세부담률 추이

(단위: 조원, GDP 대비 %)



주: 조세부담률 = 조세(국세+지방세) / 경상 GDP  
 자료: 국세청, 관세청 「징수보고서」;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감」

<표 11-3> 한국의 법인세 및 소득세율 변화

연도	법인세		소득세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2001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6/28%	1천만원 이하	10/20/30/40%
2002		15/27%	1천만~4천만원	9/18/27/36%
2003			4천만~8천만원	
2004		8천만원 초과		

<표 II-3>의 계속

연도	법인세		소득세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2005		13/25%	1.2천만원 이하 1.2천만~4.6천만원 4.6천만~8.8천만원 8.8천만원 초과	8/17/26/35%
2006				8/17/26/35%
2007				6/16/25/35%
2008				6/15/24/35%
2009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1/22%	3억원 초과 신설	6/15/24/35/38%
2010		10/22%		
2011				
2012	2억원 이하 2억~200억원 200억원 초과	10/20/22%		

자료: 「법인세법」 제55조, 「소득세법」 제55조

한편 2010년 기준 OECD 회원 34개국의 평균 조세부담률 및 국민 부담률 24.6%, 33.8%와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는 각각 5.3%p, 8.7%p 낮은 수준인 19.3%, 25.1%로 나타났다.<sup>6)</sup> 미국과 일본의 조세 부담률은 각각 18.5%, 16.3%로 우리나라에 비하여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국가는 6개국에 불과하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하위 7위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부담률은 OECD 회원국 중 하위 3위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미국 24.8%, 칠레 19.6%, 멕시코 18.8%이다.

<표 II-4>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국제비교(2010년 기준)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호주	OECD
조세부담률(%)	19.3	18.5	16.3	26.3	22.0	28.2	25.6	24.6
국민부담률(%)	25.1	24.8	27.6	42.9	35.2	34.9	25.6	33.8

주: 1. 조세부담률(Total tax revenue (excluding social security) as percentage of GDP)

2. 국민부담률(Total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6) <http://stats.oecd.org/Index.aspx?QueryId=21699> 참조, 2011년 기준으로 모든 국가별 통계가 생성되지 아니함

#### 4. 소득불평등도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는바, 2012년 전 가구의 지니계수<sup>7)</sup>는 시장소득 기준 0.338, 가처분소득 기준 0.307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농가구를 포함한 전 가구의 2006~2012년간 지니계수 추이를 살펴보면, 지니계수의 변화는 뚜렷한 추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감소율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어 소득분배효과는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김낙년·김종일(2013)이 2010년 기준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지니계수를 추정한 결과에서는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0.339에서 0.415, 가처분소득 지니계수가 0.308에서 0.371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의한 소득분배지표가 상위소득자의 누락과 금융소득 등의 과소보고로 인하여 불평등도의 수준과 추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하였다.

<표 II-5> 통계청 지니계수 추이

	시장소득 지니계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감소율(%)	
	전 가구 <sup>1)</sup>	비농가 <sup>2)</sup>	전 가구	비농가	전 가구	비농가
2006	0.330	0.312	0.306	0.291	7.3	6.7
2007	0.340	0.321	0.312	0.295	8.2	8.1
2008	0.344	0.323	0.314	0.296	8.7	8.4
2009	0.345	0.32	0.314	0.294	9.0	8.1
2010	0.341	0.314	0.31	0.288	9.1	8.3
2011	0.342	0.313	0.311	0.288	9.1	8.0
2012	0.338	0.311	0.307	0.285	9.2	8.4

주: 1) 가계동향조사 데이터와 농가구 포함, 2006년 이전자료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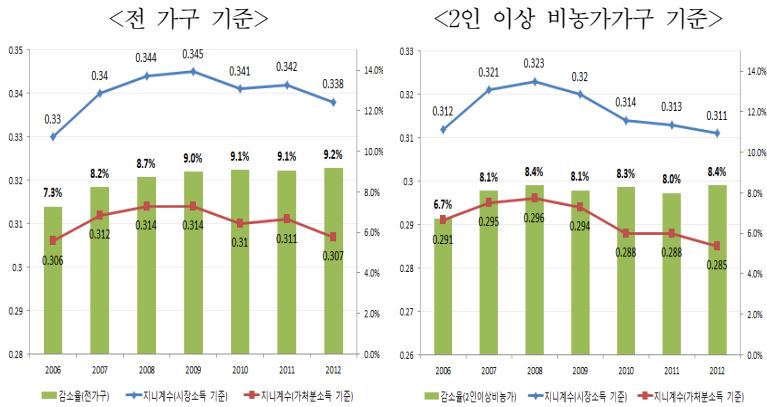
2) 가계동향조사 데이터 중 1인 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7) 지니계수는 소득분배를 보여주는 지표로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에 따라 0과 1 사이의 비율로서 정의되는데, 낮은 수치는 더 평등한 소득분배, 높은 수치는 더 불평등한 소득분배를 의미함

한편 우리나라의 2000년대 후반 세전·세후 지니계수 감소율은 8.7%로 OECD 평균 31.3% 대비 22.6%p 낮게 나타나, OECD 주요국과 비교시 우리나라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중반의 경우 세전 대비 세후 지니계수 감소율은 7.3%로 나타났으며,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8.7%로 1.4%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오스트리아의 세후 지니계수는 세전과 비교하여 약 44.7%, 핀란드는 약 44.3%, 독일은 약 41.5%, 프랑스는 약 39.3%, 일본은 약 28.8%, 영국은 약 32.4%, 미국은 약 22.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7] 통계청 지니계수 및 감소율



<표 II-6> OECD 국가의 세전 지니계수와 세후 지니계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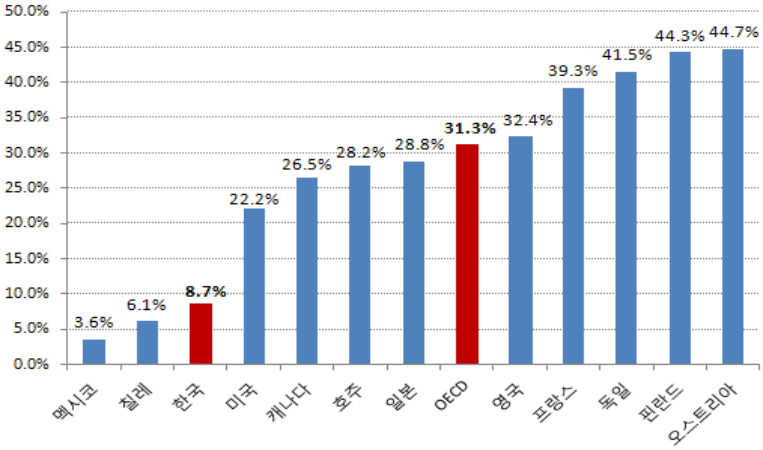
국가	Before Tax(①)		After Tax(②)		차이(①-②)		감소율(%)	
	mid -2000s	late -2000s	mid -2000s	late -2000s	mid -2000s	late -2000s	mid -2000s	late -2000s
호주	0.465	0.468	0.315	0.336	0.15	0.132	32.3%	28.2%
오스트리아	0.433	0.472	0.265	0.261	0.168	0.211	38.8%	44.7%
벨기에	0.494	0.469	0.271	0.259	0.223	0.21	45.1%	44.8%

&lt;표 11-7&gt;의 계속

국가	Before Tax(①)		After Tax(②)		차이(①-②)		감소율(%)	
	mid -2000s	late -2000s	mid -2000s	late -2000s	mid -2000s	late -2000s	mid -2000s	late -2000s
캐나다	0.436	0.441	0.317	0.324	0.119	0.117	27.3%	26.5%
칠레	0.511	0.526	0.503	0.494	0.008	0.032	1.6%	6.1%
체코	0.474	0.444	0.268	0.256	0.206	0.188	43.5%	42.3%
덴마크	0.417	0.416	0.232	0.248	0.185	0.168	44.4%	40.4%
에스토니아	0.504	0.458	0.349	0.315	0.155	0.143	30.8%	31.2%
핀란드	0.483	0.465	0.254	0.259	0.229	0.206	47.4%	44.3%
프랑스	0.485	0.483	0.288	0.293	0.197	0.19	40.6%	39.3%
독일	0.499	0.504	0.285	0.295	0.214	0.209	42.9%	41.5%
그리스	0.454	0.436	0.321	0.307	0.133	0.129	29.3%	29.6%
헝가리	0.497	0.466	0.291	0.272	0.206	0.194	41.4%	41.6%
아이슬란드	0.365	0.382	0.257	0.301	0.108	0.081	29.6%	21.2%
아일랜드	-	-	0.314	0.293	-	-	-	-
이스라엘	0.513	0.498	0.378	0.371	0.135	0.127	26.3%	25.5%
이탈리아	0.557	0.534	0.352	0.337	0.205	0.197	36.8%	36.9%
일본	0.443	0.462	0.321	0.329	0.122	0.133	27.5%	28.8%
<b>한국</b>	<b>0.33</b>	<b>0.344</b>	<b>0.306</b>	<b>0.314</b>	<b>0.024</b>	<b>0.03</b>	<b>7.3%</b>	<b>8.7%</b>
룩셈부르크	0.454	0.482	0.258	0.288	0.196	0.194	43.2%	40.2%
멕시코	0.491	0.494	0.474	0.476	0.017	0.018	3.5%	3.6%
네덜란드	0.426	0.426	0.284	0.294	0.142	0.132	33.3%	31.0%
뉴질랜드	0.473	0.455	0.335	0.33	0.138	0.125	29.2%	27.5%
노르웨이	0.447	0.41	0.276	0.25	0.171	0.16	38.3%	39.0%
폴란드	0.542	0.47	0.349	0.305	0.193	0.165	35.6%	35.1%
포르투갈	0.542	0.521	0.385	0.353	0.157	0.168	29.0%	32.2%
슬로바키아	0.458	0.416	0.268	0.257	0.19	0.159	41.5%	38.2%
슬로베니아	0.452	0.423	0.246	0.236	0.206	0.187	45.6%	44.2%
스페인	-	0.461	0.319	0.317	-	0.144	-	31.2%
스웨덴	0.432	0.426	0.234	0.259	0.198	0.167	45.8%	39.2%
스위스	-	0.409	0.276	0.303	-	0.106	-	25.9%
터키	-	0.47	0.43	0.409	-	0.061	-	13.0%
영국	0.5	0.506	0.331	0.342	0.169	0.164	33.8%	32.4%
미국	0.486	0.486	0.38	0.378	0.106	0.108	21.8%	22.2%
<b>OECD</b>	<b>0.467</b>	<b>0.457</b>	<b>0.316</b>	<b>0.314</b>	<b>0.151</b>	<b>0.143</b>	<b>32.3%</b>	<b>31.3%</b>

자료: OECD Statistics, <http://stats.oecd.org/>

[그림 II-8] OECD 주요국의 세전 대비 세후 지니계수 감소율



자료: OECD Statistics, <http://stats.oecd.org/>

### Ⅲ.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체계 및 통계 현황

#### 1. 소득세 과세체계

##### 가. 개요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소득을 발생원천에 따라 종합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소득원천설(Income Source Theory) 및 열거주의<sup>8)</sup>에 입각하고 있으나, 일부 소득은 순자산증가설(Increased Net Asset Theory) 및 포괄주의<sup>9)</sup>를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자·배당·연금소득은 법에서 열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와 유사한 소득이면 과세한다는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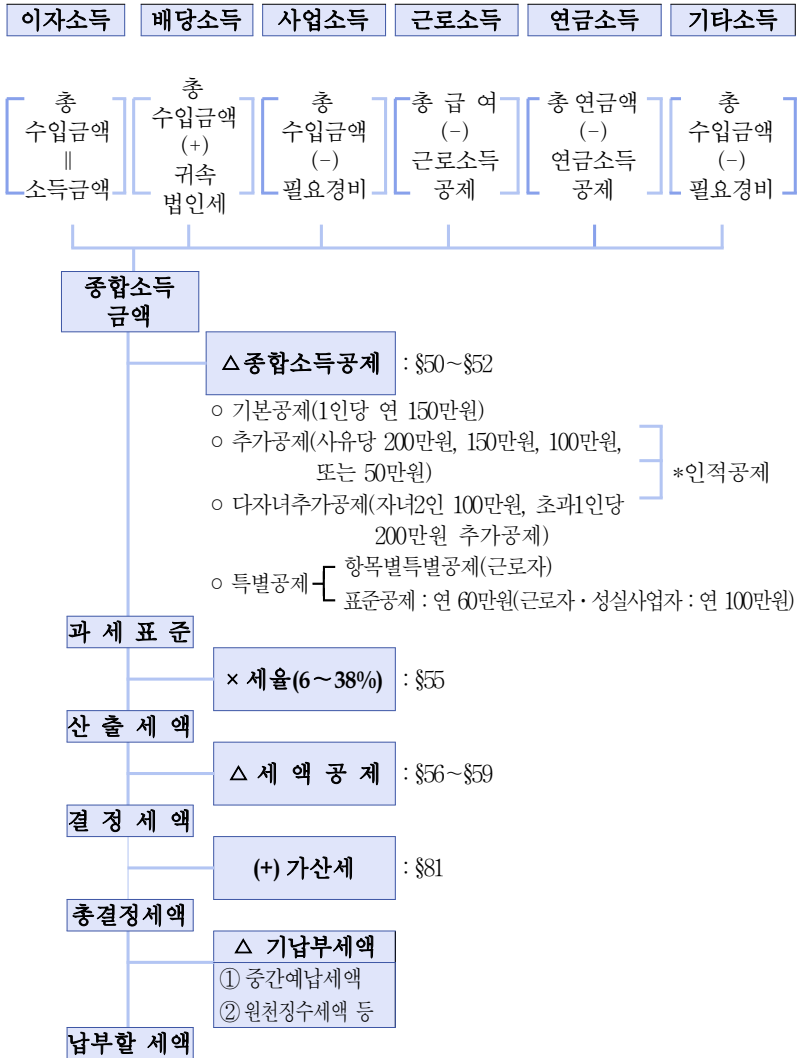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열거주의 및 소득원천설에 따른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은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며,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으로 세분되어 총 6가지 소득으로 이루어져 있다.

---

8) 일정 소득의 원천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과세대상 소득은 법에 열거된 소득에 한하여 과세한다는 것임

9)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일지라도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며, 법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이라도 과세한다는 것임

[그림 III-1] 종합소득 과세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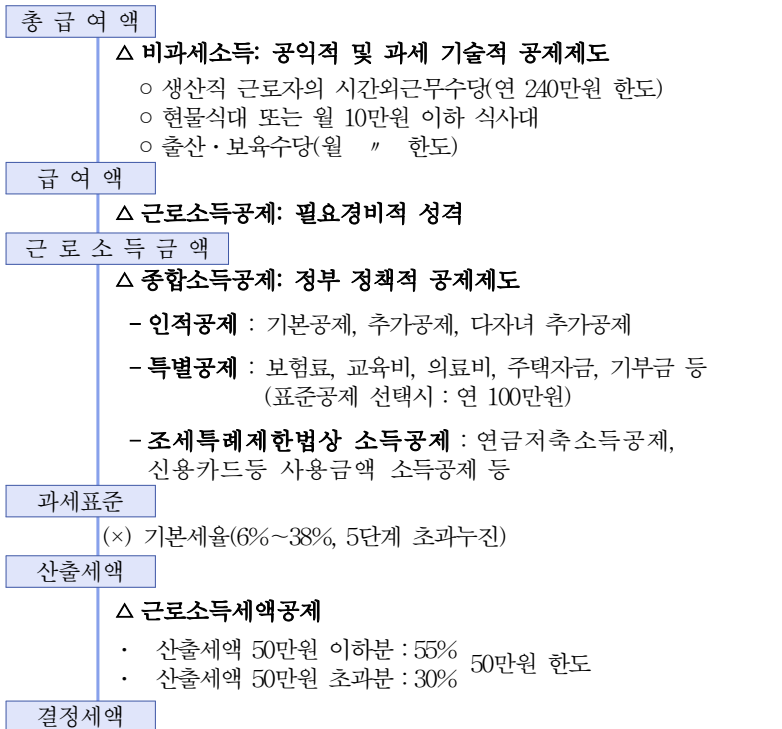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2012 조세개요」

현행 세법은 「소득세법」 상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과세한다<sup>10)</sup>는 원칙하에 종합소득 기준으로 과세하되, 행정절차의 편의상 근로소득

만 있을 경우 타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즉, 근로소득이 있는 자와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함께 있는 자의 경우,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신고로 신고체제를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항목도 다르게 나타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시 연말정산 절차를 통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자, 배당 등의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통하여 과세된다.

[그림 III-2] 근로소득 과세체계



자료: 기획재정부, 「2012 조세개요」

나. 세율구조

1995년 세법개정을 통해 종합소득 세율구조가 대폭적으로 개편되었다.<sup>11)</sup>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시행과 함께 각종 인적공제를 큰 폭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최저세율을 10%로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최저세율이 가지는 의미를 살렸다. 최고세율도 40%로 인하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금융저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과세표준 현실화에도 도움을 주도록 하는 동시에 6단계의 과세구간도 4단계로 단순화하였다.

<표 III-1> 과세표준구간과 소득세율 변천

(단위: %)

과세표준구간	1996 <sup>2)</sup> ~2001	2002~2004	2005~2007	
종합·퇴직·산립 <sup>1)</sup> 소득				
1천만원 이하	10	9	8	
1천만~4천만원 이하	20	18	17	
4천만~8천만원 이하	30	27	26	
8천만원 초과	40	36	35	
과세표준구간	2008	2009	2010~2011	2012
종합·퇴직소득				
1,200만원 이하	8	6	6	6
1,200만~4,600만원 이하	17	16	15	15
4,600만~8,800만원 이하	26	25	24	24
8,800만원 초과	35	35	35	35 <sup>3)</sup>
3억원 초과				38

주: 1) 산립소득의 경우 2006년 12월 30일 세법개정시 삭제

2) 1996년 이전 과표구간 및 세율: 400만원 이하(5%), 400만~800만원 이하(9%), 800만~1,600만원 이하(18%), 1,600만~3,200만원 이하(27%), 3,200만~6,400만원 이하(36%), 6,400만원 이하(45%)

3) 2012년 과세표준 구간은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임

자료: 「소득세법」 제55조, 각 연도

11)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개정세법해설 참조

2001년 이후에는 수차례 세법개정을 통해 국내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득세율을 인하하고, 과세표준구간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였다.<sup>12)</sup> 2002년에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근로의욕과 사업의욕을 고취하고, 성과급제의 확산과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세율을 인하하였다. 또한, 경쟁력 강화·경기회복 등을 위하여 경쟁적으로 세율을 인하(tax competition)하고 있는 외국의 세제개편 추이에 대응하여 지방세를 포함한 최고세율 수준이 40%를 넘지 않도록 개정하였다. 한편 2012년에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한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으로 3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였다.

#### 다. 공제제도

소득세 공제방식에는 크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있다. 소득공제는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금액을 감소시켜 주는 것으로, “소득공제금액×한계세율”만큼 세금절감효과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 한계세율 6%이면 6만원만큼, 한계세율 38%이면 38만원만큼 세부담이 감소된다. 즉, 개인이 속한 한계세율 구간에 따라 세금절감효과가 달라지게 되므로 동일 금액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절감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역진성을 띠고 있다. 반면, 세액공제는 누진세율이 적용된 이후의 산출세액을 감소시키므로 세액공제금액, 그 자체가 바로 세금절감효과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한계세율과는 관계없이 어느 누구에나 100만원만큼 세부담이 줄어드

12)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개정세법해설 참조

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즉, 개인의 한계세율과는 관계없이 세금 절감효과가 결정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두 가지 방식이 가진 차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소득수준 및 한계세율 등이 서로 다른 甲(저소득자)과 乙(고소득자) 두 명이 동일하게 100만원의 교육비를 지출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소득금액 1천만원, 한계세율 6%인 甲(저소득자)과 소득금액 4억 100만원, 한계세율 38%인 乙(고소득자)의 교육비지출로 인한 세금 절감효과를 소득공제방식과 세액공제방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공제방식은 교육비를 전액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감소시키고, 세액공제방식은 교육비지출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할 때, 乙(고소득자)은 甲(저소득자)에 비해 32만원(38만원-6만원)만큼 더 많은 세금절감효과를 얻게 되므로 소득공제방식이 같은 금액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세율이 높은 乙(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하다. 반면, 세액공제방식의 경우 개인의 한계세율과는 관계없이 甲(저소득자)과 乙(고소득자)에게는 모두 동일한 15만원의 세금절감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표 III-2>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단위: 만원)

	소득공제				세액공제			
	甲(저소득자)		乙(고소득자)		甲(저소득자)		乙(고소득자)	
	소득공제 미적용	소득공제 적용	소득공제 미적용	소득공제 적용	세액공제 미적용	세액공제 적용	세액공제 미적용	세액공제 적용
소득금액	1,000	1,000	40,100	40,100	1,000	1,000	40,100	40,100
(-) 소득공제	0	100	0	100	0	0	0	0
↓ 과세표준	1,000	900	40,100	40,000	1,000	1,000	40,100	40,100
(×) 합계세율	6%	6%	38%	38%	6%	6%	38%	38%
↓ 산출세액	60	54	15,238	15,200	60	60	15,238	15,238
(-) 세액공제	0	0	0	0	0	15	0	15
↓ 납부세액	60	54	15,238	15,200	60	45	15,238	15,223
	세금절감효과 6 =100×6%		세금절감효과 38 =100×38%		세금절감효과 15 =100×15%		세금절감효과 15 =100×15%	

우리나라 세법상 소득세 공제·감면제도는 소득공제방식과 세액공제방식을 혼합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각 공제항목의 적용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세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을 감소시켜 주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근로자 및 사업자 여부에 따라 인적공제, 특별공제, 기타의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즉,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과세대상소득에서 각 소득의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값의 합계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III.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체계 및 통계 현황 49

다. 반면, 세액공제·감면은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세액을 감소 시키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다양한 세액공제·감면 항목이 존재한다.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는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후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세액을 결정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표 III-3> 우리나라 소득세 공제제도

		종류	관련규정 <sup>1)</sup>	적용대상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법47 ①	근로자	
	인적공제	기본공제	· 본인공제	법50 ① 1호	제한 없음
			· 배우자공제	법50 ① 2호	
			· 부양가족공제	법50 ① 3호	
		추가공제	· 경로자공제	법51 ① 1호	
			· 장애인공제	법51 ① 2호	
			· 부녀자공제	법51 ① 3호	
			· 자녀양육비공제	법51 ① 4호	
	· 출산·입양자공제	법51 ① 5호			
	· 다자녀추가공제	법51의2	근로자 및 사업자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퇴직연금	법51의3	제한 없음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법51의4	연금소득 있는 거주자		
특별공제	항목별공제	· 보험료공제	-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 기타 보장성보험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법52 ①	근로자
		· 의료비공제	본인·장애인·경로자 의료비 그 외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법52 ②	
		· 교육비공제	- 근로자 본인 교육비 - 배우자, 부양가족 교육비 - 장애인 특수교육비	법52 ③	
		·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 - 월세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금액 공제	법52 ④~⑤	

&lt;표 III-3&gt;의 계속

			종류	관련규정 <sup>1)</sup>	적용대상
		· 기부금공제	- 전액공제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지정기부금	법52 ⑥	제한 없음
		표준공제		법52 ⑨	제한 없음
기타 소득 공제		· 개인연금저축공제		조특법86	
		· 연금저축공제		조특법86의2	
		· 투자조합출자 등 공제		조특법16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조특법86의3	
		·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91의9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조특법87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조특법126의2	
		· 우리사주조합 출자소득공제		조특법88의4	근로자
소득 세법		배당세액공제		법56	배당소득 있는 자
		기장세액공제		법56의2	사업자
		외국납부세액공제		법57	제한 없음
		재해손실세액공제		법58	사업자
		근로소득세액공제		법59	근로자
		납세조합세액공제		법150	사업자 또는 근로자
세액 공제	조세 특례 제한 법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특법5	사업자
			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특법7의2	사업자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조특법10	사업자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조특법11	사업자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12 ②	사업자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	조특법24	사업자
			환경·안전설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25	사업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25의2	사업자
			임시투자세액공제	구조특법26	사업자
			정치자금세액공제	조특법76	제한 없음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조특법94	사업자
			지급조서세액공제	조특법104의5	사업자
			전자신고세액공제	조특법104의8	제한 없음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조특법122의2	사업자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126의3	사업자		
	주택차입금이자세액공제	구조감법92의4	제한 없음		

주: 1) 법→소득세법, 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 조감법→조세감면규제법

자료: 국세청(www.nts.go.kr)

1) 소득공제

우리나라의 소득공제 항목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기타소득공제가 있다.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 계산시 실제로 소요된 필요경비의 산정이 어려우므로, 일정한 금액을 필요경비적 성격으로 공제하는 금액으로 총급여액이 증가할수록 공제율은 감소한다. 인적공제는 소득자의 가족상황 등 인적사항을 고려하여 실제 지출규모와는 관계없이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가족에 대해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로,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등이 있다. 한편, 특별공제는 소득세의 각종 소득금액 계산상 공제하는 금액으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으며, 적용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금액 내에서 공제한다. 마지막으로 기타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로 과세표준 양성화 및 저축지원 등의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도입된 신용카드소득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소득공제 등이 있다.

<표 III-4> 우리나라 주요 소득공제 산정방법

구 분		내 용												
근로소득 공제*		○ 개산공제 : 총급여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임의산정												
		<table border="1"> <thead> <tr> <th>총급여</th> <th>근로소득공제</th> </tr> </thead> <tbody> <tr> <td>500만원 이하</td> <td>총급여액 × 80%</td> </tr> <tr> <td>500만~1,500만원</td> <td>400만원 + (총급여액-500만원) × 50%</td> </tr> <tr> <td>1,500만~3,000만원</td> <td>900만원 + (총급여액-1,500만원) × 15%</td> </tr> <tr> <td>3,000만~4,500만원</td> <td>1,275만원 + (총급여액-3,000만원) × 10%</td> </tr> <tr> <td>4,500만원 초과</td> <td>1,275만원 + (총급여액-4,500만원) × 5%</td> </tr> </tbody> </table>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 80%	500만~1,500만원	400만원 + (총급여액-500만원) × 50%	1,500만~3,000만원	900만원 + (총급여액-1,500만원) × 15%	3,000만~4,500만원	1,275만원 + (총급여액-3,000만원) × 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 + (총급여액-4,500만원) × 5%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 80%												
	500만~1,500만원	400만원 + (총급여액-500만원) × 50%												
	1,500만~3,000만원	900만원 + (총급여액-1,500만원) × 15%												
3,000만~4,500만원	1,275만원 + (총급여액-3,000만원) × 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 + (총급여액-4,500만원) × 5%													
인 적 공 제	기본 공제	○ 본인·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 1인당 150만원												
	추가 공제	○ 70세 이상 경로자 : 100만원												
		○ 장애인 : 200만원 ○ 6세 이하 자녀 : 100만원												

&lt;표 III-4&gt;의 계속

구	분	내	용
		○ 부녀자세대주 : 50만원	
	다자녀 추가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100만원, 3인 이상인 경우 100만원과 2인 초과 1인당 200만원의 합계액	
	출산 · 입양 공제	○ 출산·입양 당해연도 1인당 200만원	
	보험료 공제*	○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한 보험으로서 피보험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한 보험료 -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 전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 장애인전용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의료비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 연급여액의 3% 초과분(700만원 한도, 당해거주자·경로우대자·장애인인 한도 없음)	
	교육비 공제*	○ 학생 또는 보육시설 영유아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 수업료, 학원수강료 - 근로자 본인 : 대학원까지 전액공제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 유치원·영유아, 취학 전 아동, 초·중·고생은 연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 한도 ○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특수교육비 : 한도 없음	
특별 공제	주택 자금 공제*	○ 무주택세대·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소유세대 세대주의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액 또는 무주택세대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임차를 위한 지급금액 : 저축불입액 또는 지급금액의 40%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 세대주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1주택에 한함)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전액(연 500만원 한도, 고정금리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의 경우 합계 1,500만원 한도)	
	기부금 공제	○ 법정기부금 : 소득금액 범위 내 전액공제 ○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30% 범위 내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범위 내)	
	표준 공제	○ 연 60만원(근로소득자와 성실사업자는 연 100만원) - 근로소득자는 실액공제와 표준공제 중 선택 - 종합소득자는 표준공제만 적용	

주: \*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공제항목

자료: 기획재정부, 「2012 조세개요」

2) 세액공제

현행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세액공제 항목은 근거 법률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소득세법」상 세액공제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는 정치자금세액공제 및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표 III-5> 우리나라 주요 세액공제 산정방법

구 분	내용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소득금액에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된 경우(즉,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당소득수입금액 × 11%</li> </ul> </li> </ul>
기장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복식부기에 따라 가장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소득 산출세액 × <math>\frac{\text{복식부기에 따라 가장된 사업소득금액}}{\text{종합소득금액}}</math> × 20%</li> <li>▪ 한도: 100만원</li> </ul> </li> </ul>
근로소득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 × 55% + 근로소득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 × 30%(한도 : 연간 50만원)</li> <li>-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 급여액 - 일 100,000원) × 6%] × 55%</li> </ul> </li> </ul>
재해손실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가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20% 이상 자산을 상실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 가산금) × 재해상실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도 : 재해손실액 범위 내</li> </ul> </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재해상실비율 = <math>\frac{\text{상실자산가액}}{\text{상실 전 자산가액(토지 제외)}}</math></p>

&lt;표 III-5&gt;의 계속

구 분	내용
외국납부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다음의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액공제방법= Min[①, ②]</li> <li>① 외국납부세액</li> <li>② 공제한도 = 산출 세액 × <math>\frac{\text{국외원천소득금액}}{\text{종합소득금액}}</ma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외국납부세액은 5년 동안 이월공제됨</li> </ul> </li> </ul> </li> <li>- 필요경비 산입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li> </ul> </li> </ul>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임시투자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업 등 공제대상 업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건물, 차량운반구, 기구, 비품, 선박 및 항공기 등 제외)에 대한 투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투자금액의 5% × 세액공제</li> </ul> </li> </ul>
전자신고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 신고방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법·법인세법 확정신고: 2만원을 공제</li> <li>- 부가가치세법 확정신고: 1만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li> <li>- 세무사(세무법인을 포함)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소득세·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한 경우: 연간 300만원(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800만원) 한도로 공제</li> </ul> </li> </ul>

자료: 기획재정부, 「2012 조세개요」

## 2. 소득세 통계 현황

### 가. 세수실적 및 납세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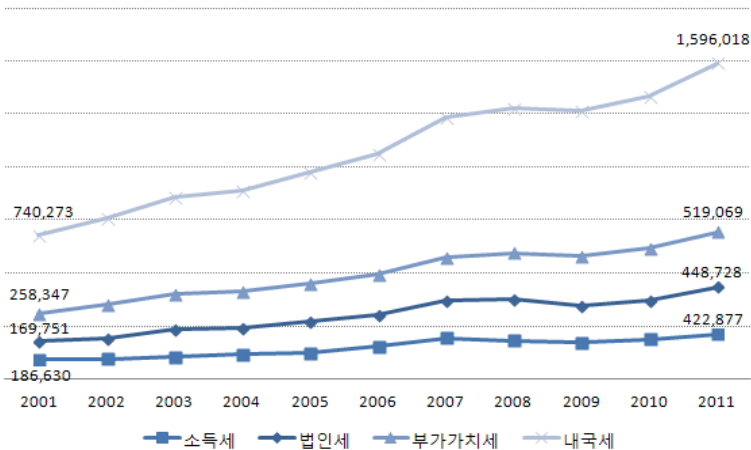
#### 1) 세수실적

##### 가) 내국세

내국세 세수실적을 살펴보면, 2001년 이후로 내국세 세수실적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에는 약 159.6조원으로 2001년 약 74조원에 비해 115.6% 높아졌으며, 2001~2011년의 연평균증가율은 8.0%로 나타났다. 2011년 세수비중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51.9조원(32.5%), 법인세 44.9조원(28.1%) 및 소득세가 42.3조원(26.5%)으로 나타나, 해당 세목이 총내국세 세수실적 중 87% 비중을 차지하여 내국세를 구성하는 주요 세목임을 알 수 있다.

[그림 III-3] 주요 세목별 세수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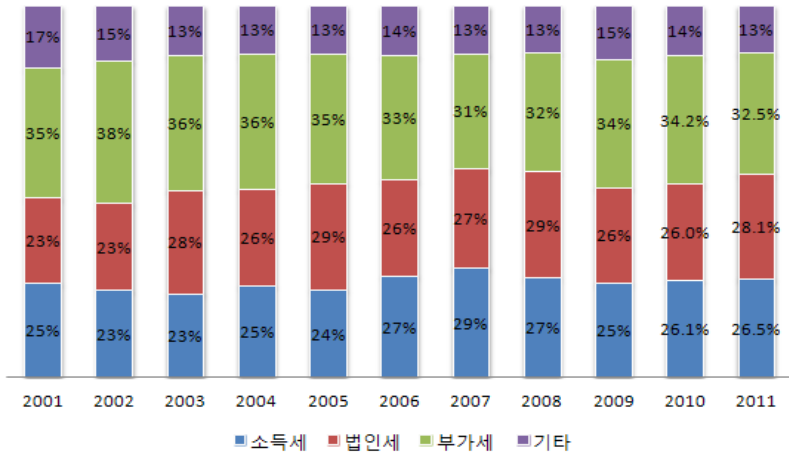
(단위: 억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001~2011년간 세목별 평균 세수비중은 부가가치세가 34.6%, 법인세가 26.2%, 소득세가 25.4%, 기타세목이 13.9%로 나타났으며, 매년 세목별 세수비중은 연도별로 다소 변동은 있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림 III-4] 주요 세목별 세수비중 변화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나) 소득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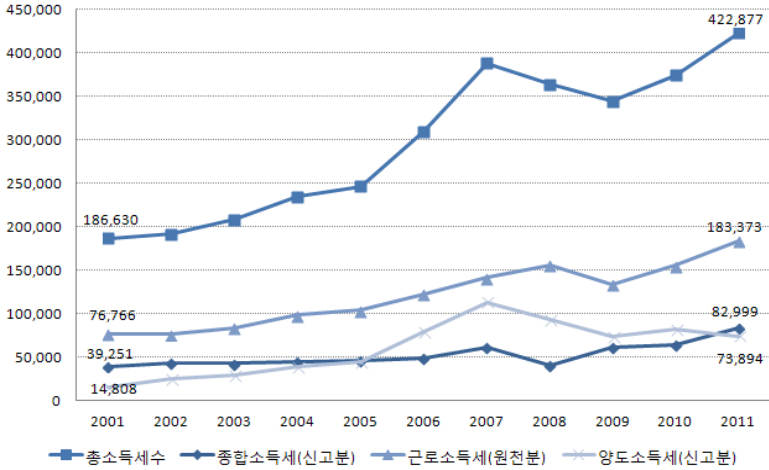
2011년 기준 소득세 세수실적은 2001년 18조 6,630억원 대비 약 126.6% 증가한 42조 2,887억원으로, 이 중 근로소득세(원천분)는 18조 3,373억원으로 총소득세수 중 4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신고분)는 19.6%인 8조 2,999억원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세(원천분) 및 종합소득세(신고분) 세수실적은 2001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근로소득세(원천분)와 종합소득세(신고분)은 2001년 대비 각각 약 138.9%, 약 111.5% 증가하였다. 한편, 2001~2011년 동안 소득세의 연평균증가율은 8.5%로 이 중 종합소득세(신고

### III.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체계 및 통계 현황 57

분)는 7.8%, 근로소득세(원천분)는 9.1%로 나타났으며, 양도소득세(신고분)이 17.4%로 가장 높은 연평균증가율을 보였다.

[그림 III-5] 소득세 세수실적 추이

(단위: 억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III-6> 주요 세목별 세수실적 비교(2001년 vs. 2011년)

(단위: 억원, %)

	2001		2011		2001년 대비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내국세	740,273	100.0	1,596,018	100.0	115.6	8.0
- 부가세	258,347	34.9	519,069	32.5	100.9	7.2
- 법인세	169,751	22.9	448,728	28.1	164.3	10.2
- 소득세	186,630	25.2	422,877	26.5	126.6	8.5
- 기타세	125,545	17.0	205,344	12.9	63.6	5.0
소득세	186,630	100.0	422,877	100.0	126.6	8.5
- 종합소득	39,251	21.0	82,999	19.6	111.5	7.8
- 양도소득	14,808	7.9	73,894	17.5	399.0	17.4
- 근로소득	76,766	41.1	183,373	43.4	138.9	9.1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2) 납세인원

### 가) 내국세

우리나라 내국세 총납세인원은 2011년 기준 1,359만명으로 2001년 905만명 대비 50.2%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4.1%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납세인원 중 주요 세목인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전체 납세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3.0%이며 이 중 부가가치세 39.4%, 종합소득세 39.9%, 법인세가 3.7%를 차지하고 있다. 세목별 납세인원의 2001~2011년 연평균증가율을 살펴보면, 2005년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하고는 상속세가 11.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증여세, 법인세가 각각 9.8%, 5.7%로 나타났다.

<표 III-7> 세목별 납세인원 현황

	합계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장속세	증여세	중부세	원천세	부가가치세	개발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2001	9,053,544 (100.0)	3,808,476 (42.1)	356,417 (3.9)	286,352 (3.2)	1,982 (0.0)	49,645 (0.5)	- (0.0)	760,049 (8.4)	3,709,035 (41.0)	6,444 (0.1)	1,292 (0.0)	73,852 (0.8)
2002	10,071,014 (100.0)	4,160,795 (41.3)	580,323 (5.8)	317,154 (3.1)	1,661 (0.0)	55,049 (0.5)	- (0.0)	886,660 (8.8)	3,963,454 (39.4)	7,492 (0.1)	1,304 (0.0)	97,122 (1.0)
2003	10,293,195 (100.0)	4,227,354 (41.1)	621,835 (6.0)	330,187 (3.2)	1,720 (0.0)	54,441 (0.5)	- (0.0)	952,447 (9.3)	3,994,665 (38.8)	7,787 (0.1)	1,380 (0.0)	101,379 (1.0)
2004	10,438,434 (100.0)	4,363,257 (41.8)	617,905 (5.9)	341,866 (3.3)	1,808 (0.0)	103,024 (1.0)	- (0.0)	953,882 (9.1)	3,942,247 (37.8)	7,627 (0.1)	1,433 (0.0)	105,385 (1.0)
2005	10,543,729 (100.0)	4,369,881 (41.4)	485,330 (4.6)	360,821 (3.4)	1,816 (0.0)	62,925 (0.6)	70,676 (0.7)	929,836 (8.8)	4,121,612 (39.1)	7,642 (0.1)	1,422 (0.0)	131,768 (1.2)
2006	11,363,123 (100.0)	4,580,357 (40.3)	623,770 (5.5)	372,393 (3.3)	2,221 (0.0)	88,279 (0.8)	340,747 (3.0)	951,119 (8.4)	4,260,946 (37.5)	7,647 (0.1)	1,406 (0.0)	134,238 (1.2)
2007	12,118,718 (100.0)	4,913,387 (40.5)	451,882 (3.7)	393,700 (3.2)	2,603 (0.0)	121,471 (1.0)	482,622 (4.0)	1,006,547 (8.3)	4,601,534 (38.0)	7,778 (0.1)	1,425 (0.0)	135,769 (1.1)
2008	12,791,176 (100.0)	5,227,276 (40.9)	801,705 (6.3)	416,117 (3.3)	3,997 (0.0)	97,277 (0.8)	412,543 (3.2)	1,088,872 (8.5)	4,901,772 (38.3)	7,890 (0.1)	1,468 (0.0)	132,259 (1.0)
2009	12,668,330 (100.0)	4,970,619 (39.2)	527,769 (4.2)	440,514 (3.5)	4,340 (0.0)	96,654 (0.8)	212,618 (1.7)	1,155,774 (9.1)	5,124,077 (40.4)	8,127 (0.1)	1,505 (0.0)	126,333 (1.0)
2010	13,124,742 (100.0)	5,230,486 (39.9)	500,804 (3.8)	467,401 (3.6)	4,547 (0.0)	96,623 (0.7)	250,214 (1.9)	1,209,360 (9.2)	5,239,103 (39.9)	7,869 (0.1)	1,648 (0.0)	116,687 (0.9)
2011	13,591,780 (100.0)	5,419,245 (39.9)	538,915 (4.0)	499,599 (3.7)	5,720 (0.0)	126,409 (0.9)	248,477 (1.8)	1,271,283 (9.4)	5,360,511 (39.4)	10,967 (0.1)	1,726 (0.0)	107,873 (0.8)
연평균 증가율 (2001- 2011)	4.1%	3.6%	4.2%	5.7%	11.2%	9.8%	23.3%	5.3%	3.8%	5.5%	2.9%	3.9%

주: 1. 원천세 납세자는 당해연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상의 원천징수의무자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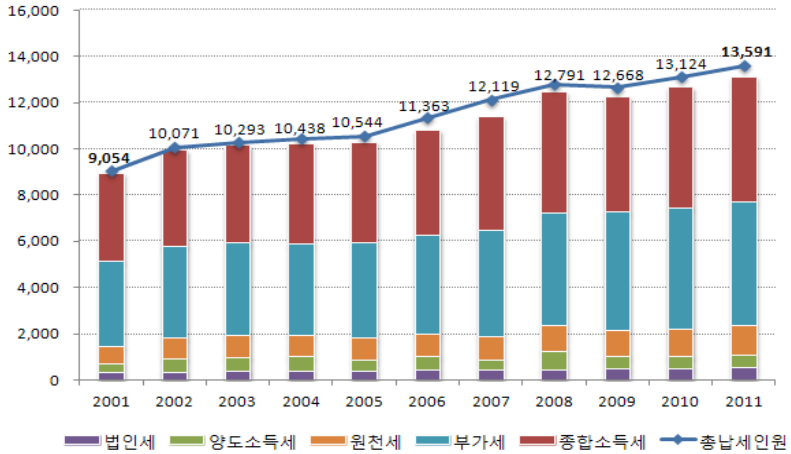
2. ( ) 안은 비중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단위: 명)

[그림 III-6] 주요 세목별 납세인원 변화 추이

(단위: 천명)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나) 소득세

### (1) 종합소득(신고분)

종합소득세 납세인원은 2001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01년 약 380만명에서 2011년에는 약 542만명으로 42.3%가 증가하였다. 종합소득세 과세미달 추정인원은 2011년에는 142만명으로 전년 대비 1.48% 다소 증가하였으나, 2001년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2001~2011년 동안 연평균감소율은 3.4%로 나타났다. 과세미달 추정인원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과세인원비율<sup>13)</sup>은 2001년 47.4%에서 2010년에는 73.7%로 26.3%p나 크게 증가하였다.

13) 과세인원비율 = 확정신고대상인원 ÷ 납세인원

### III.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체계 및 통계 현황 61

#### <표 III-8>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단위: 명)

	납세인원					
	계	전년 대비	과세미달 추정인원	전년 대비	확정신고 대상인원	전년 대비
2001	3,808,476	9.43	2,001,757	8.23	1,806,719	10.79
2002	4,160,795	9.25	2,115,269	5.67	2,045,526	13.22
2003	4,227,354	1.60	2,059,254	-2.65	2,168,100	5.99
2004	4,363,257	3.21	2,071,336	0.59	2,291,921	5.71
2005	4,369,881	0.15	1,954,779	-5.63	2,415,102	5.37
2006	4,580,357	4.82	1,718,328	-12.10	2,862,029	18.51
2007	4,913,387	7.27	1,718,977	0.04	3,194,410	11.61
2008	5,227,276	6.39	1,493,844	-13.10	3,733,432	16.87
2009	4,970,619	-4.91	1,368,563	-8.39	3,602,056	-3.52
2010	5,230,486	5.23	1,400,256	2.32	3,830,230	6.33
2011	5,419,245	3.61	1,420,986	1.48	3,998,259	4.39
연평균증가율 (2001~2011)	3.59%		-3.37%		8.27%	

주: 납세인원은 분리과세소득자,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한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인원은 2001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약 396만명으로 2001년 178만명 대비 122.0% 증가하여 동 기간 연평균 8.3%씩 증가하였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sup>14)</sup>을 살펴보면, 기장신고인원<sup>15)</sup>이 2011년 약 231만명으로 나타나 장부·증빙에 의한 신고비율이 58.3%로 2001년 44.3%에서 14.0%p나 높아졌다.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추계신고인원의 경우 2011년 약 139만명으로 2001년 대비 46.7% 증가하였고, 2001~2011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3.90%로 나타났다.

14) 개인사업자는 크게 기장신고자와 추계신고자로 구분되며, 기장신고자는 외부조정, 자기조정, 간편장부 신고자, 추계신고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구분함

15) 기장신고비율=장부·증빙에 의한 신고인원/확정신고인원

&lt;표 III-9&gt; 종합소득세 신고유형별 확정신고인원 현황

(단위: 명)

	확정신고인원							
	합계	전년 대비	기장 신고인원	전년 대비	추계 신고인원	전년 대비	비 사업자	전년 대비
2001	1,782,369	10.28	790,224	16.29	950,665	11.04	41,480	-48.53
2002	2,010,363	12.79	918,803	16.27	1,023,137	7.62	68,423	64.95
2003	2,114,527	5.18	1,018,068	10.80	1,012,943	-1.00	83,516	22.06
2004	2,235,905	5.74	1,143,900	12.36	989,294	-2.33	102,711	22.98
2005	2,279,497	1.95	1,230,024	7.53	965,662	-2.39	83,811	-18.40
2006	2,736,478	20.05	1,394,979	13.41	1,221,082	26.45	120,417	43.68
2007	3,074,419	12.35	1,585,023	13.62	1,315,235	7.71	174,161	44.63
2008	3,584,432	16.59	1,865,279	17.68	1,527,664	16.15	191,489	9.95
2009	3,570,816	-0.38	1,983,143	6.32	1,353,158	-11.42	234,515	22.47
2010	3,785,248	6.01	2,146,244	8.22	1,383,301	2.23	255,703	9.03
2011	3,956,702	4.53	2,308,387	7.55	1,394,215	0.79	254,100	-0.63
연평균증가율 (2001~2011)	8.30%		11.32%		3.90%		19.87%	

- 주: 1. 확정신고인원은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로서 과세미달자, 비사업자로서 과세미달자 제외  
 2. 비사업자란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를 말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III-7] 종합소득세 신고자 비율(2011)

(단위: 천명, %)

확정신고 대상인원 3,998 (73.7%)	확정신고인원 3,957 (99.0%)	기장신고 2,308 (58.3%)	복식부기 997 (26.3%)
			간편장부 1,149 (30.4%)
		추계신고 1,394 (35.2%)	기준경비율 450 (11.9%)
			단순경비율 933 (24.6%)
		비사업자 254 (6.4%)	
	미신고인원 41 (1.0%)		
과세미달 추정인원 1,421 (26.2%)			

주: 간편장부 작성대상자는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1

(2) 근로소득(원천분)

2001~2011년 동안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인원을 살펴보면, 2003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11년에는 2001년 1,156만명 대비 34.5%가 증가한 1,554만명으로 나타났다. 2011년 근로소득 신고인원 중 과세대상자는 전체의 63.9%인 약 993만명, 과세미달자는 36.1%인 약 561만명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세 신고인원 중 과세미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1~2011년 평균 약 43.4%로, 2001~2011년 연평균 증가율이 0.93%에 그쳐 종합소득세와 달리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lt;표 III-10&gt; 근로소득 연말정산(원천징수) 신고인원

(단위: 명, %)

	신고인원					
	계	전년 대비	과세대상자	전년 대비	과세미달자	전년 대비
2001	11,555,000	4.08%	6,446,000	8.63%	5,109,000	-1.14%
2002	12,017,000	4.00%	6,187,000	-4.02%	5,830,000	14.11%
2003	11,547,000	-3.91%	6,258,000	1.15%	5,289,000	-9.28%
2004	11,624,000	0.67%	6,268,000	0.16%	5,356,000	1.27%
2005	11,903,039	2.40%	6,106,693	-2.57%	5,796,346	8.22%
2006	12,594,596	5.81%	6,620,551	8.41%	5,974,045	3.07%
2007	13,376,254	6.21%	7,748,670	17.04%	5,627,584	-5.80%
2008	14,045,580	5.00%	7,981,000	3.00%	6,064,580	7.77%
2009	14,294,993	1.78%	8,541,168	7.02%	5,753,825	-5.12%
2010	15,176,782	6.17%	9,244,424	8.23%	5,932,358	3.10%
2011	15,540,057	2.39%	9,934,987	7.47%	5,605,070	-5.52%
연평균증가율 (2001~2011)	3.01%		4.42%		0.93%	

주: 1. 각 연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신고자의 신고 실적 기준

2. 급여총계 기준 통계임(급여총계 - 비과세소득 = 과세대상근로소득(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나. 소득세 공제·감면

### 1) 조세지출규모<sup>16)</sup>

국세감면액은 2001년 이후 연평균 7.99%씩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1년 기준 약 29조 6,021억원으로 2001년 대비 무려 115.6% 증

16)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2012. 10

### III.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체계 및 통계 현황 65

가하였다. 2011년 총조세지출액<sup>17)</sup> 중 소득세 조세지출액은 12조 9,851 억원으로 43.9%를 차지하여 내국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법인세 9조 2,043억원으로 31.1%, 부가가치세 5조 465억원으로 17.0%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세 조세지출액은 2001년에 4조 8,643억원으로 총국세감면액의 약 35.4%를 차지하였으나 2010년에는 15조 2,787억원으로 2001년 대비 16%p나 크게 증가하여 소득세 지출규모 비중이 50.9%에 달하였다. 반면, 2001~2011년 동안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조세지출규모가 전체 국세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법인세는 2001년 대비 약 4.3%p, 부가세는 약 3.5%p 감소하였다.

<표 III-11> 세목별 조세지출규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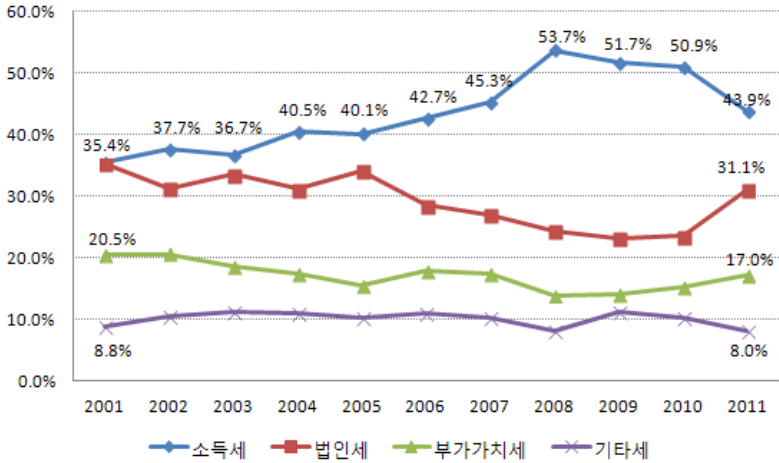
(단위: 억원, %)

	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기타세
2001	137,298	48,643	48,397	28,120	12,138
2002	147,261	55,512	45,980	30,267	15,502
2003	175,080	64,291	58,698	32,628	19,463
2004	182,862	73,982	56,948	31,735	20,197
2005	200,169	80,360	68,408	30,784	20,617
2006	213,380	91,114	60,810	38,033	23,423
2007	229,651	104,144	61,925	40,083	23,499
2008	287,827	154,547	70,181	39,657	23,442
2009	310,621	160,593	71,767	43,741	34,520
2010	299,997	152,787	70,491	45,921	30,798
2011	296,021	129,851	92,043	50,465	23,662
연평균증가율 (2001~2011)	7.99%	10.32%	6.64%	6.02%	6.90%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17) 조세지출액(=국세감면액, 지방세 제외)

[그림 III-8] 세목별 조세지출 비중 변화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2) 공제제도

### 가) 소득공제

우리나라의 세법상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소득자와 이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이원화된 체계로 운용되고 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비중이 크게 나타난 항목은 근로소득공제로 51.1%이며, 이어서 인적공제 19.2%, 특별공제 1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법상 근로소득공제는 필요경비 성격으로 차감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공제 통계상 공제항목으로 따로 집계되지 않으며, 종합소득 확정신고의 경우 인적공제 53.9%, 특별공제 16.1%의 순으로 나타났다.

### III.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체계 및 통계 현황 67

<표 III-12> 소득공제 신고 현황(2011년 귀속)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sup>1)</sup>		종합소득 확정신고 <sup>2)</sup>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근로소득공제	15,474,024	138,698,549	-	- <sup>3)</sup>
소득공제	15,474,516	132,727,695	3,954,866	29,332,494
인적공제	15,473,811	52,096,976	3,952,465	15,801,370
- 기본공제	15,473,805	41,618,478	3,952,459	12,557,813
- 추가공제	4,915,956	7,836,373	1,808,778	2,289,267
- 다자녀추가공제	2,130,296	2,642,125	714,915	954,290
국민연금보험료	9,747,467	10,470,842	2,329,304	3,337,437
연금보험료공제	1,427,445	4,019,164	78,421	254,890
퇴직연금소득공제	25,489	50,593	3,446	8,158
특별공제	8,212,218	43,125,817	916,184	4,724,052
- 보험료공제	8,209,802	19,070,250	654,261	1,464,543
- 의료비공제	3,061,724	6,399,944	208,090	492,549
- 교육비공제	2,968,829	9,901,168	211,025	869,624
- 주택임차차입금	208,095	268,631	-	-
- 월세액	14,810	14,992	49,724	152,037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831,484	2,285,868	-	-
- 기부금공제	4,428,337	5,184,963	662,523	1,745,299
표준공제	3,621,697	3,179,496	3,034,640	1,938,614
조특법상 소득공제	7,248,810	19,784,806	997,998	3,267,973
- 개인연금저축	375,752	188,478	78,943	39,504
- 연금저축	2,176,857	5,422,422	615,131	1,675,059
- 소기업소상공인	12,094	25,495	-	-
- 주택마련저축	975,589	943,519	-	-
- 투자조합출자	594	2,124	-	-
- 신용카드	6,739,692	12,828,035	413,437	1,094,072
- 정치자금	-	-	9,614	8,680
- 우리사주조합	98,235	323,318	-	-
- 장기주식형저축	177,716	51,200	-	-
- 고용유지 중소기업근로자	93	215	-	-
- 기타	-	-	203,753	450,658

주: 1) 해당연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신고자의 신고실적을 기준으로 함(과세미달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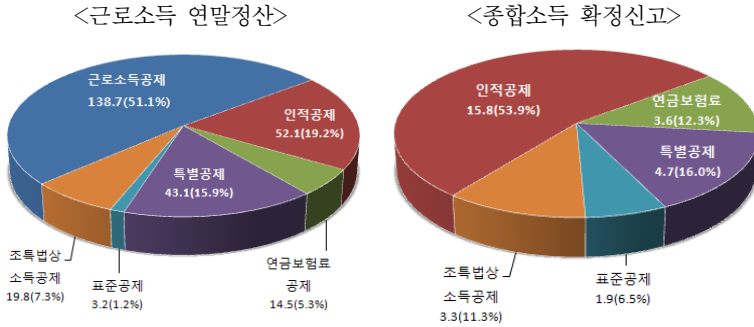
2) 해당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작성

3)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근로소득이 포함될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나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따로 통계가 생산되지 않음

자료: 국세통계연보(2012)

[그림 III-9] 소득공제 신고금액 및 비중

(단위: 십억원, %)



자료: 국세통계연보(2012)

## 나) 세액공제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 확정신고자의 세액공제 신고금액 및 비중을 살펴본 결과,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중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9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외국납부,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등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배당세액공제가 50.1%로 그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18.8%, 외국납부세액공제 10.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lt;표 III-13&gt; 세액공제 신고 현황(2011년 귀속)

(단위: 명, 백만원)

구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sup>1)</sup>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sup>2)</sup>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세액공제	9,924,404	2,920,706	1,688,053	1,168,527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	-	887,291	973,348
- 배당	-	-	28,641	584,763

III.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체계 및 통계 현황 69

<표 III-13>의 계속

구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sup>1)</sup>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sup>2)</sup>	
	인원	금액	인원	금액
- 기장	-	-	126,953	34,046
- 외국납부	8,973	63,483	4,797	126,422
- 재해손실	-	-	260	7,089
- 근로소득	9,924,404	2,830,430	777,290	220,108
- 납세조합징수	11,476	3,901	3,300	824
- 성실사업소득자표준	-	-	432	92
- 성실사업소득자 수입금액 증가	-	-	20	4
조특법상 세액공제	-	-	1,183,613	195,179
- 임시투자	-	-	12,461	52,473
- 전자신고	-	-	1,100,477	35,267
- 주택차입금	4,328	1,359	-	-
- 기부정치자금	259,147	21,532	-	-
기타세액공제	-	-	88,252	107,4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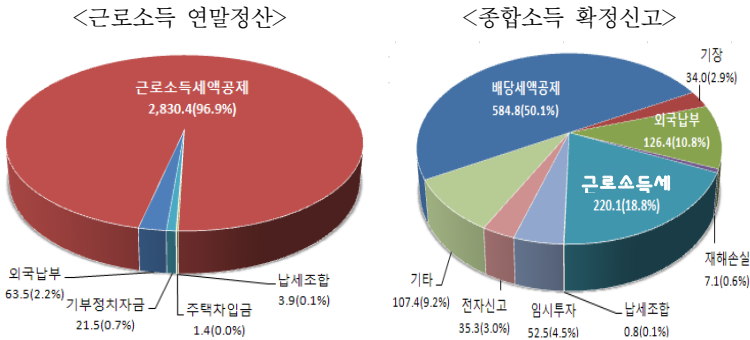
주: 1) 해당연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신고자의 신고실적을 기준으로 함(과세미달자 포함)

2) 해당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 국세통계연보(2012)

[그림 III-10] 세액공제 신고금액 및 비중

(단위: 십억원, %)



자료: 국세통계연보(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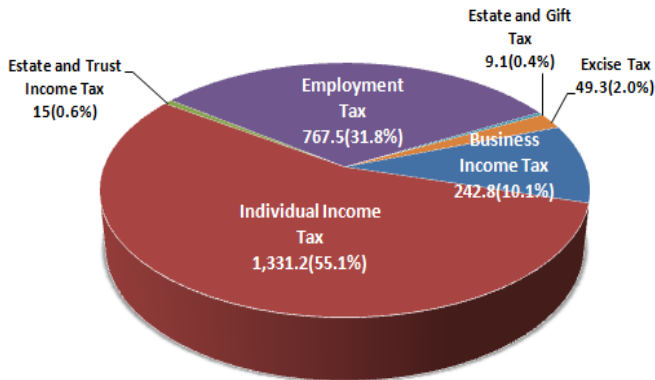
## IV. 주요국의 소득세 현황

### 1. 미국

#### 가. 세수실적

2011년 미국의 내국세 징수액은 약 2조 4,150억달러로 2001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동 기간 연평균증가율은 1.27%로 나타났다. 2011년 내국세 총징수액 중 개인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가 5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고용세(Employment Tax)는 31.8%, 법인소득세(Business Income Tax)는 10.1%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 미국의 세목별 총징수액 비중



자료: IRS Data Book, FY 2011

<표 IV-1> 내국세 세목별 징수액(2001~2011년)

	내국세 총징수액 (Gross Collections)		소득세(Income Taxes)				고용세 (Employment Taxes)	상속증여세 (Estate and Gift Taxes)	연방소비세 (Excise Taxes)
	소계	법인소득세 (Business Income Tax)	개인소득세 (Individual Income Tax)	유산·신탁금 소득세(Estate and Trust Income Tax)					
2001	2,128.8 (100.0)	1,364.9 (64.1)	186.7 (8.8)	1,178.2 (55.3)	-	682.2 (32.0)	29.2 (1.2)	52.4 (2.5)	
2002	2,016.6 (100.0)	1,249.2 (61.9)	211.4 (10.5)	1,037.7 (51.5)	-	688.0 (34.1)	27.2 (1.3)	52.1 (2.6)	
2003	1,952.9 (100.0)	1,181.4 (60.5)	194.1 (9.9)	987.2 (50.6)	-	696.0 (35.6)	22.8 (1.1)	52.8 (2.7)	
2004	2,018.5 (100.0)	1,220.9 (60.5)	230.6 (11.4)	990.2 (49.1)	-	717.2 (35.5)	25.6 (1.2)	54.8 (2.7)	
2005	2,268.9 (100.0)	1,414.6 (62.3)	307 (13.5)	1,107.5 (48.8)	-	771.4 (34.0)	25.6 (1.0)	57.3 (2.5)	
2006	2,518.7 (100.0)	1,617.2 (64.2)	380.9 (15.1)	1,236.3 (49.1)	-	814.8 (32.4)	28.7 (1.1)	58.0 (2.3)	
2007	2,691.5 (100.0)	1,761.8 (65.5)	395.5 (14.7)	1,366.2 (50.8)	-	849.7 (31.6)	26.9 (0.9)	53.0 (2.0)	
2008	2,745.0 (100.0)	1,780.3 (64.9)	354.3 (12.9)	1,400.4 (51.0)	25.6 (0.9)	883.2 (32.2)	29.8 (1.0)	51.7 (1.9)	
2009	2,345.3 (100.0)	1,415.9 (60.4)	225.5 (9.6)	1,175.4 (50.1)	15.0 (0.6)	888.2 (36.6)	24.6 (0.9)	46.6 (2.0)	
2010	2,345.1 (100.0)	1,453.9 (62.0)	277.9 (11.9)	1,163.7 (49.6)	12.3 (0.5)	824.2 (35.1)	19.8 (0.8)	47.2 (2.0)	
2011	2,415.0 (100.0)	1,589.0 (65.8)	242.8 (10.1)	1,331.2 (55.1)	15.0 (0.6)	767.5 (31.8)	9.1 (0.4)	49.3 (2.0)	
연평균증가율 (2001~2010)	1.27%	1.53%	2.66%	1.23%	-	1.18%	-11.04%	-0.60%	

주: ( )은 각 세목별 구성비를 나타냄

자료: IRS Data Book, 각 연도, 장근호(2009) 참조

(단위: 십억달러, %)

## 나. 과세구간 및 소득세율

미국은 납세자의 신고지위에 따라 과세소득구간 및 세율이 다르며, 과세소득이 결정되면 과세표(Tax Table)에서 납세총액(Gross Tax)을 파악하고 있다.<sup>18)</sup> 연방소득세의 과세구간은 2003년 이후 6개의 구간으로 확대되었고, 과세소득의 규모에 따라 한계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표 IV-2> 미국의 과세구간 및 소득세율(2012년 기준)

한계 세율 (%)	독신자 (Single)	부부별도 (Married filing separately)	부부합산 (Married filing jointly or Qualifying widow(er))	가장 (Head of household)
10	\$0~8,700	\$0~17,400	\$0~8,700	\$0~12,400
15	\$8,700~35,350	\$17,400~70,700	\$8,700~35,350	\$12,400~47,350
25	\$35,350~85,650	\$70,700~142,700	\$35,350~71,350	\$47,350~122,300
28	\$85,650~178,650	\$142,700~217,450	\$71,350~108,725	\$122,300~198,050
33	\$178,650~388,350	\$217,450~388,350	\$108,725~194,175	\$198,050~388,350
35	\$388,350 이상	\$388,350 이상	\$194,175 이상	\$388,350 이상

자료: IRS 1040 Return, 2012, www.irs.gov

또한 <표 IV-3>의 개인소득세의 소득구간별 납부세액 및 평균세율을 살펴보면, 2010년 기준으로 총신고건수는 1억 4,286억건, 납부세액은 9,445억달러로 평균 납부세액 1만 1,182달러, 평균세율 13.2%로 산출되었다. 조정된 총소득(AGI)은 8조 450억달러, 공제·감면액은 2조 9,651억달러로 집계되어 총소득 대비 공제·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6.8%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감면비중이 크고, 낮은 소득에 속하는 납세자일수록 면세점 이하의 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않는 비중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18)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 I)』, p. 390

<표 IV-3> 개인소득세 소득구간별 공제·감면, 세액비중 및 평균세율(2010년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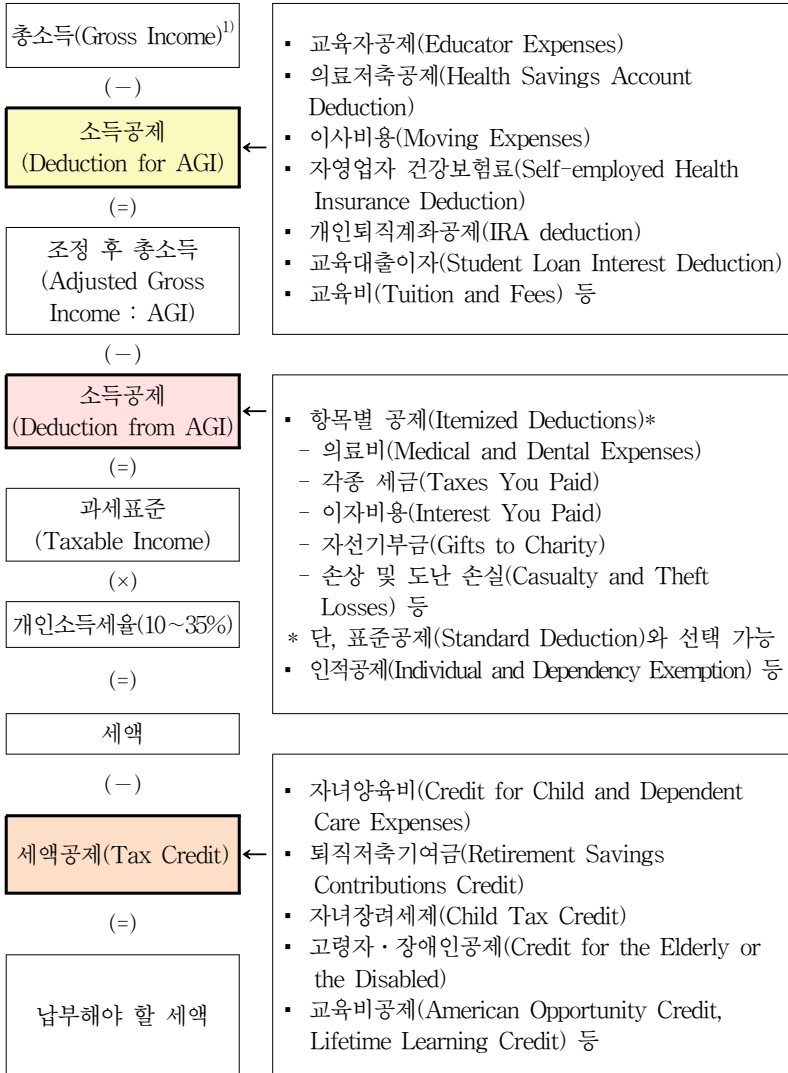
소득구간 (Size of Adjusted Gross Income)	신고건수 (Number of Returns)	조정된 총소득 (AGI)	공제·감면 (Personal Exemptions and Total Deductions)	과세소득 (Taxable Income)	소득세 (Total Income Tax)	면세점 이하 소득비중(%) No Total Income Tax	평균소득세 납부액(\$) (Average tax)	평균세율 (Tax as a percentage of AGI)
전체금액	142.86	8,045.02	2,965.14	5,458.99	944.51	40.9	11,182	13.2
~\$0	2.38	-153.58	12.07	0	0.21	99.8	36,077	-
\$1~1,000	1.68	0.83	15.62	0.00	0.00	99.9	2	0.2
\$1,000~3,000	4.00	8.09	32.35	0.15	0.02	95.8	128	6.6
\$3,000~5,000	4.21	16.86	40.63	0.22	0.02	97.4	192	4.9
\$5,000~7,000	4.61	27.69	50.98	0.69	0.07	83.4	89	1.4
\$7,000~9,000	4.93	39.56	59.73	2.07	0.20	82.7	240	3.0
\$9,000~11,000	5.28	52.63	69.43	3.82	0.26	85.5	345	3.4
\$11,000~13,000	5.23	62.97	74.44	7.92	0.31	83.4	362	3.0
\$13,000~15,000	5.12	71.56	75.82	11.90	0.46	66.1	263	1.9
\$15,000~17,000	4.86	77.76	73.12	16.00	0.73	60.1	377	2.4
\$17,000~19,000	4.65	83.76	70.88	21.00	1.06	57.3	533	3.0
\$19,000~22,000	6.45	132.20	101.39	38.61	2.30	56.0	809	3.9
\$22,000~25,000	5.97	140.00	96.01	48.86	3.08	53.3	1,107	4.7
\$25,000~30,000	8.96	245.53	149.49	100.89	6.91	48.0	1,484	5.4
\$30,000~40,000	14.63	508.49	254.49	258.33	20.97	32.7	2,130	6.1
\$40,000~50,000	11.00	492.23	208.62	285.54	26.55	20.6	3,042	6.8
\$50,000~75,000	18.76	1,153.40	417.70	737.51	80.89	10.4	4,814	7.8
\$75,000~100,000	11.86	1,025.65	320.42	706.05	86.41	3.4	7,544	8.7
\$100,000~200,000	14.01	1,872.06	494.71	1,378.14	225.15	0.8	16,204	12.1
\$200,000~500,000	3.48	986.91	188.60	788.70	194.32	0.4	56,129	19.8
\$500,000~1,000,000	0.53	360.84	54.83	306.11	87.88	0.4	165,867	24.5
\$1,000,000~1,500,000	0.12	145.20	19.29	126.02	36.76	0.4	308,080	25.4
\$1,500,000~2,000,000	0.05	86.88	11.05	76.31	22.35	0.4	443,384	25.8
\$2,000,000~5,000,000	0.07	209.57	23.63	185.99	54.12	0.4	774,012	25.9
\$5,000,000~10,000,000	0.02	114.53	11.98	102.66	29.06	0.4	1,759,510	25.5
\$10,000,000 or more	0.01	283.40	27.85	255.55	64.41	0.4	6,010,958	22.9

주: 감면·공제금액이 조정된 총소득(AGI)보다 클 수 있으므로, 조정된 총소득에서 감면·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소득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IRS, [www.irs.gov/uac/SOI-Tax-Stats-Historical-Data-Tables](http://www.irs.gov/uac/SOI-Tax-Stats-Historical-Data-Tables), 장근호(2009) 참조

다. 소득세 과세체계

<표 IV-4> 미국의 소득세 과세체계



주: 1) 비과세소득 제외

자료: 미국 소득세 신고서(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장근호(2009) 참조

미국의 소득세 과세체계는 <표 IV-4>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소득 공제는 총소득에서 차감되는 교육자공제, 의료저축공제 등과 조정 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sup>19</sup>에서 차감되는 각종 항목별 공제로 구분되어 적용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자녀양육비, 퇴직저축기여금 등의 세액공제제도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액을 경감해 주고 있다. 총소득(Gross Income)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열거주의와 달리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포괄주의를 택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 라. 소득세 공제제도의 특징

미국의 소득세 공제제도는 소득공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공제제도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AGI가 기준금액 이하이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AGI의 크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다.

##### 1) 고소득 계층의 공제금액 제한

미국은 일정규모 이상 수입을 가진 고소득자의 항목별 공제, 인적공제 및 교육비공제금액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고소득자에 대한 항목별공제, 인적공제금액 감소규정은 2010~2012년에 폐지되었다가 2013년에 다시 부활하여 적용되고 있다.

---

19) 조정 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이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 과세대상 연금소득 등을 합친 소득에서 개인퇴직연금(IRA) 기여금,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등 일부 공제항목들을 뺀 총소득을 말함

가)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sup>20)</sup>

미국은 고소득 계층에 대하여 항목별 공제금액을 제한하고 있으며, 적용되는 항목별 공제대상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경비(AGI의 10% 초과분<sup>21)</sup>), 주정부 및 지방정부 소득세 및 재산세, 주택담보 대출이자 및 투자이자(한도: 순투자소득), 기부금, 상해 및 절도손실(AGI의 10% 초과분)이다. 둘째, 전액 공제되는 기타 특별공제 항목으로서 장애인의 장애 관련 작업경비, 피상속인 소득에 대한 연방 유산세, 연금을 받는 자의 사망시 연금지급이 중단되는 계약의 미반환 투자금액, 도박으로 인한 손실(도박 상금 한도),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의 상해 및 절도손실이 있다. 셋째, AGI의 2% 초과분에 한하여 공제되는 기타 특별공제 항목으로 고용주가 보상하지 않는 경비(예: 교육 경비, 피복 및 제복, 노동조합 가입 경비, 소규모 작업 공구), 대여금고 임차 경비, 세무자문 및 조력 경비, IRA(개인퇴직연금) 신탁기관 또는 보관은행(custodian)에 지급하는 특정 경비이다.

공제금액이 감소되는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AGI가 <표 IV-5>상의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항목별 공제금액에서 ① <표 IV-5>상의 금액을 초과하는 조정 후 총소득×3%, ② 항목별 공제 대상금액×80%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다. 단, 항목별 공제 대상금액에서 AGI의 10%를 초과하는 의료비(Medical Expenses), 투자이자비용(Investment Interest), 상해(Casualty and Theft Losses) 및 도박손실(Wagering Losses)은 제외한다.

20) <http://www.law.cornell.edu/uscode/text/26/68>

21) 2013~2016년 기준으로 부부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일 경우, 7.5% 적용

&lt;표 IV-5&gt; 미국의 항목별 공제 점감구간 경계소득(2013)

(단위: USD)

신고지위	점감구간 경계소득(AGI 기준) <sup>1)</sup>
미혼 개인	250,000
세대주	275,000
합산 신고하는 기혼 개인	300,000
별도 신고하는 기혼	150,000

주: 1) 매년 물가인상분을 고려하여 금액 조정

자료: www.irs.gov

## 나)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

인적공제는 크게 개인공제 및 부양가족공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 바, 개인공제는 납세자 본인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2013년 기준 1인당 공제금액은 USD 3,900이다. 부양가족공제는 자녀 및 친척을 대상으로 하며, 2013년 기준 1인당 공제금액은 USD 1,000이다.

&lt;표 IV-6&gt; 미국의 인적공제 점감구간 경계소득(2013)

(단위: USD)

신고지위	인적공제금액 삭감이 시작되는 AGI 수준 <sup>1)</sup>	인적공제금액 삭감이 종료되는 AGI 수준 <sup>1)</sup>
미혼 개인	300,000	422,500
세대주	275,000	-
합산 신고하는 기혼 개인	252,000	372,700
별도 신고하는 기혼	150,000	211,250

주: 1) 매년 물가인상 분을 고려하여 금액 조정

자료: www.irs.gov

공제금액이 감소되는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정 후 총소득이 <표 IV-6>상의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매 USD 2,500마다 2%씩

인적공제금액이 감소된다. 2007년까지는 전부 삭감할 수 있었으나 2008년, 2009년에는 인적공제금액 중 2/3 이상 삭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2009년에는 1인당 최소 USD 1,216(=USD 3,650×1/3)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다.

#### 다) 교육비 공제(Education Tax Benefits)<sup>22)</sup>

미국의 교육비 공제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방식으로 구분되어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정 후 총소득(AGI)의 크기 및 종류에 따라 공제금액에 차등을 두고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육비 공제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범위 내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공제금액이 감소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American Opportunity Credit는 조정 후 총소득(AGI)이 USD 80,000 ~90,000 구간에 속하는 경우, 교육비를 지출한 첫해연도에 최대 USD 2,5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11년 조정 후 총소득(AGI)으로 USD 85,000를 신고한 납세자가 교육비를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USD\ 2,500 \times (USD\ 90,000 - USD\ 85,000) \div USD\ 10,000 = USD\ 1,250$ 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Tuition and Fees Deduction은 조정 후 총소득(AGI)이 USD 65,000 미만일 경우에 최대 USD 4,000를 공제하며, USD 65,000~80,000일 경우에는 최대 USD 2,000를, USD 80,000보다 클 경우는 공제하지 않는다. 즉,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경우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선택하는 방식으로 교육비 공제가 이루어지며, 고소득층에는 교육비 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22) IRS, "Tax Benefits for Education", 2012. 참조

<표 IV-7> 미국의 교육비 공제

(단위: USD)

	Tuition and Fees Deduction	American Opportunity Credit	Lifetime Learning Credit
최대 공제금액	4,000	2,500 (per student)	2,000 (per tax return)
소득금액 (AGI) 요건 <sup>1)</sup>	65,000~80,000	80,000~90,000	51,000~61,000

주: 1) 세대주 기준이며, 부부합산 신고시 2배  
 자료: IRS, "Tax Benefits for Education", 2012, p. 77

<표 IV-8> 미국의 소득계층별 교육비 공제

구분	공제방식	공제금액	
		소득공제금액	세액공제금액
AGI 51,000 이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중 선택	최대 USD 4,000까지 공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merican Opportunity Credit: USD 2,500까지 공제 가능</li> <li>Lifetime Learning Credit: USD 2,000까지 공제 가능</li> </ul>
AGI 51,000~AGI 61,000	상동	상동	공제금액 점감
AGI 61,000~AGI 65,000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중 선택	상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merican Opportunity Credit: USD 2,500까지 공제 가능</li> </ul>
AGI 65,000~AGI 80,000	상동	최대 USD 2,000까지 공제 가능	상동
AGI 80,000~AGI 90,000	세액공제만이 가능	n/a	공제금액 점감
AGI 90,000 초과	교육비 공제 불가	n/a	n/a

자료: IRS, "Tax Benefits for Education"

## 2) 저소득 계층을 위한 환급가능 세액공제제도

### 가) Child Tax Credit(CTC)<sup>23)</sup>

Child Tax Credit(CTC)는 자녀를 둔 중산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환급형 세액공제제도(Non-Refundable Credit)로서 1998년 도입되었으며, 도입 이후 경제성장에 따라 공제금액이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비환급형 세액공제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납부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공제 후 잔액이 있는 경우,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이를 “Additional CTC(ACTC)”라고도 한다. 또한 CTC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주요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는 EITC 제도와는 달리 최소 근로소득 요건을 두고 있으며, 수급자격 기준이 되는 조정 후 총소득금액이 중산층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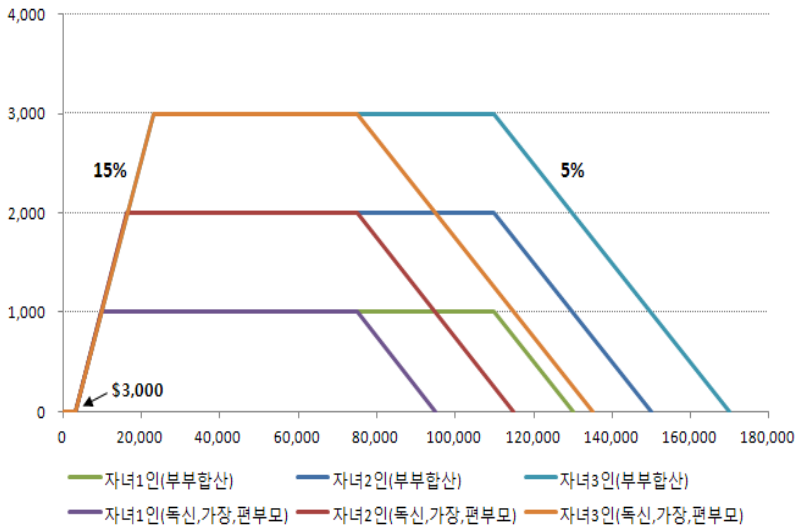
CTC 제도는 모든 가구가 매년 4월 중 전년도 귀속분에 대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이에 기초하여 소득세 납부세액 및 CTC 급여금액을 결정하는 운영체제이다. 조정총소득(AGI), 소득신고유형(홀벌이, 맞벌이), 자녀 수를 고려하여 CTC 급여금액을 결정하며, 소득수준별로 “점증, 평탄, 점감구간”으로 나뉘어져 급여금액을 산정하며, 자녀 1인당 최대 USD 1,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 요건은 일반적인 요건과 재정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적인 요건이란 기준에 부합되는 아동이 있어야 하는바, 17세 미만으로 신청자와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미국 시민, 미국 국적 또는 미국 거주자에 해당되어야 한다. 또한, 재정적인 요건으로는 근로소득 및 AGI가 일정한 소득 범위 이내에 있어야 하는바, 수정된 조정 후 총소득(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부부합산의 경우 USD 110,000(독신·가장·한부모 USD 75,000, 부부별도 USD 55,000)를

23) <http://www.irs.gov/pub/irs-pdf/p972.pdf>

초과하면 공제금액이 5%씩 단계적으로 감소한다. 다만, EITC와는 달리 신청시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그림 IV-2] 미국의 CTC 모형(2012)



주: \*부부합산신고하는 맞벌이 부부의 CTC 급여체계  
 자료: IRS, pub.972 (2011), Child Tax Credit

나) Earned Income Tax Credit(EITC)<sup>24)</sup>

Earned Income Tax Credit(EITC)란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환급 가능 세액공제제도로 1975년 처음 도입된 이후로 1986년, 1990년, 1993년 등 세법개정의 제도적 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저소득 근로자 가구 중 소득, 거주, 부양아동, 연령 요건 등을 충족해야 EITC를 신청할 수 있다. 즉, 조정 후 총소득(AGI)은 자녀 수 및 신고지위에 따라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24) <http://www.irs.gov/pub/irs-pdf/p596.pdf>

2013년 기준으로 투자소득은 USD 3,300 이하일 때 EITC를 신청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연령요건, 거주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는바, 연령요건은 19세 미만 또는 24세 미만 학생(장애가 있는 경우, 연령 무관)이어야 하고, 거주요건은 해당 자녀가 신청자와 지난 1년 동안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또한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2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이 아니어야 하며 지난 1년 동안 6개월 이상 미국에 거주해야 한다.

<표 IV-9> 미국의 EITC 신청을 위한 AGI 및 투자소득 요건(2013)

(단위:USD)

자녀 수	기준이 되는 소득(AGI)		투자소득
	부부합산신고 <sup>1)</sup>	독신·가장·한부모 신고	
0	19,680	14,340	3,300
1	43,210	37,870	
2	48,378	43,038	
3	51,567	46,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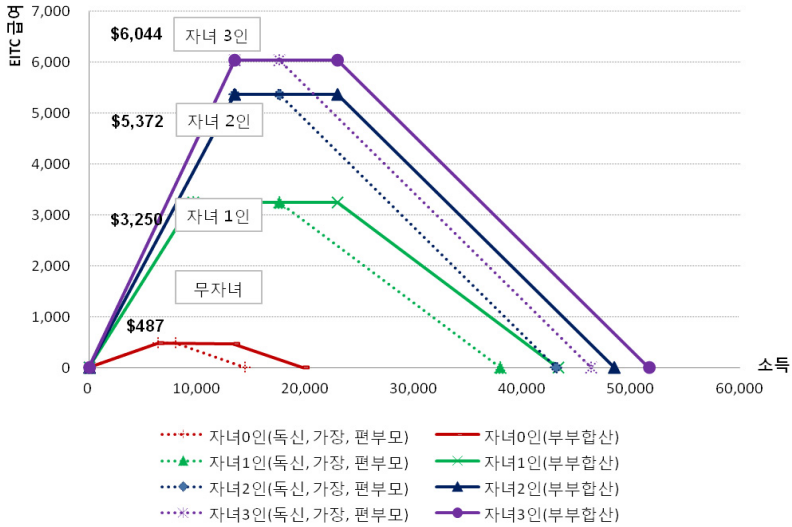
주: 1)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반드시 부부합산신고를 해야 함(즉, 부부별도 신고 불가)

자료: 미국 국세청(www.irs.gov)

급여산정방식은 “점증, 평탄, 점감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는 소득수준에 따라 산정하며, 자녀 수가 많을수록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급여액은 증가하게 된다. 특히, 점증구간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급여금액도 증가하게 되므로, 일을 해서 소득이 증가하면 세금을 납부하고 난 후의 가처분소득이 그보다 더 많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납세자의 근로의욕이 증진된다. 반면 평탄구간에서는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최대급여금액으로 일정하며, 점감구간에서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금액이 오히려 감소한다. 2013년 기준으로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최대 USD 487까지, 자녀가 1명이면 최대 USD 3,250까지, 자녀가 2명이면 최대 USD 5,372까지,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최대 USD

6,044까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림 IV-3] 미국의 EITC 모형(2013)



자료: www.irs.gov

### 3)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개인연금가입 장려정책<sup>25)</sup>

미국은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개인연금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저축세액공제(Savers' Credit)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바,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가 401(k) 등의 기업연금, 개인퇴직계좌(IRA) 등에 기여금을 납입할 경우 최대 USD 1,00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비환급형 세액공제제도이므로 연방소득세 면세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자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즉, 저소득층 또는

25) <http://www.401k.org/401ksaverscredit.htm>  
[http://treasury.delaware.gov/services/Defined\\_Contributions/Knowledge/DCComm/Deferred%20Comp%20Communicator%20Fall%202011.pdf](http://treasury.delaware.gov/services/Defined_Contributions/Knowledge/DCComm/Deferred%20Comp%20Communicator%20Fall%202011.pdf)

중산층 가구가 401(k) 플랜에 가입하면 i) 기여금에 대한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ii) 저축세액공제, iii) 고용주의 매칭자금 제공까지 3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동 제도의 세액공제금액은 최초 USD 2,000까지는 401(k)에 불입하는 기여금의 10~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부부가 함께 401(k) 플랜에 불입하는 경우에는 둘 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표 IV-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정 후 총소득 크기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달라지게 된다.

<표 IV-10> 미국의 저축세액공제금액(2012)

세액공제금액	조정 후 총소득(USD)		
	개별신고	세대주	합산신고
기여금의 50%	0~17,250	0~25,875	0~34,500
기여금의 20%	17,251~18,750	25,876~28,125	34,501~37,500
기여금의 10%	18,751~28,750	28,126~43,125	37,501~57,500
세액공제 적용 불가	28,750 이상	43,125 이상	57,500 이상

자료: [www.401k.org](http://www.401k.org)

401(k) 플랜에 가입했을 때 개인이 얻게 되는 재정적인 혜택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 Pat과 Gerry 둘 다 1,500달러의 급여를 가졌으며, 개별신고방식으로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음
- Gerry: 자신의 급여 중 3%를 401(k) 플랜에 불입하고 있음
- Pat: 401(k) 플랜에 참여하지 않음
- 근로자가 401(k) 플랜에 각출하는 급여에 대해 고용주가 50% 상당의 매칭자금 제공
- 저축세액공제 및 고용주의 매칭자금 제공이 개인의 순소득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

	Pat	Gerry	Gerry's 401(k)
연간소득	15,000	15,000	
401(k) 기여금	0%	3%	450
조정 후 총소득	15,000	14,550 <sup>1)</sup>	
저축세액공제 전 소득세 납부세액	836	769	
저축세액공제	0	225 <sup>2)</sup>	
저축세액공제 후 소득세 납부세액	14,164	14,006	
고용주의 매칭자금			225 <sup>3)</sup>
순소득:	14,164	14,006	675

- 주: 1) 401(k) 플랜 기여금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 이내에서 소득공제 가능  
 2) 조정 후 총소득이 USD 17,250 이하이기 때문에 기여금의 50% 상당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음  
 3) Gerry가 401(k) 계획에 기여하는 금액의 50% 상당액을 고용주가 매칭자금으로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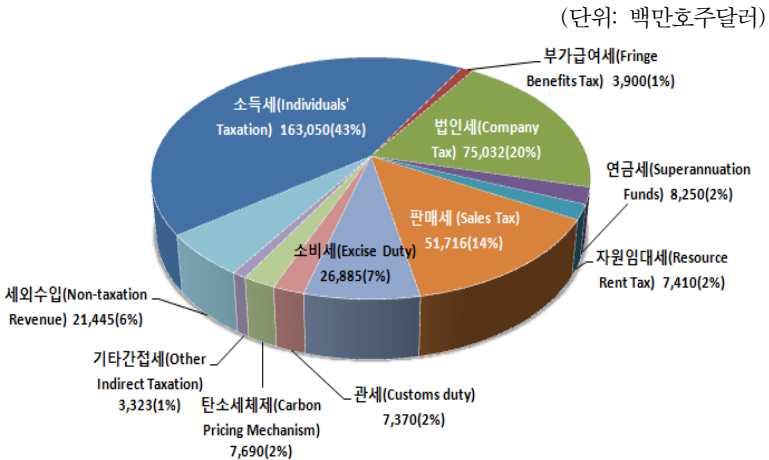
-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401(k) 플랜에 가입하면 USD 158의 세금절감효과 이외에도 고용주로부터 USD 225의 기여금을 제공받기 때문에 총 USD 383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2. 호주<sup>26)</sup>

### 가. 세수실적 및 신고인원

2012~13년 기준 호주 연방정부의 총조세수입 규모는 약 AUD 3,688억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개인소득세(Individuals' Taxation)가 전체 세수 중 43%인 AUD 1,631억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법인세(Company Tax)가 약 20%, 판매세(Sales Tax)가 약 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IV-4] 연방정부 세수입 규모(2012~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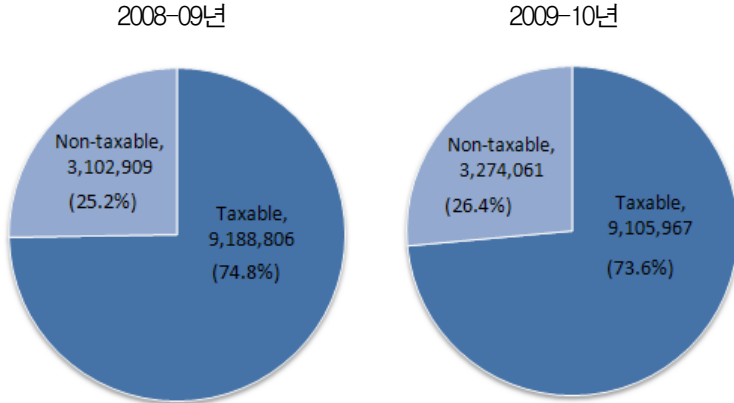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Budget 2012-13, pp. 5~30

2009~10년간 개인소득세 신고인원은 총 1,238만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과세소득이 발생한 인원은 약 911만명으로 전체의 73.6%를 차지하였고,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인원은 26.4%인 약 327만명으

26) 『주요국의 조세제도-호주편(2012)』, 호주국세청(www.ato.gov.au) 참조

로 나타났다.

[그림 IV-5] 개인소득세 신고인원 및 비중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Taxation statistics 2009 - 10

<표 IV-11> 과세소득구간별 개인소득세 신고인원 및 세액(2009~2010년)

(단위: 명, 백만호주달러, %)

거주자(Residents)				
과세대상소득 Taxable Income	Taxpayers		Net Tax Payable	
	인원 수	비중	납세액	비중
AUD 6,000 or less	2,381	0.0	2	0.0
AUD 6,001 - AUD 35,000	2,768,550	30.5	4,754	4.0
AUD 35,001 - AUD 80,000	4,720,998	52.1	46,296	38.6
AUD 80,001 - AUD 180,000	1,365,914	15.1	40,167	33.5
AUD 180,001 or more	208,708	2.3	28,796	24.0
계	9,066,551	100.0	120,015	100.0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Taxation statistics 2009 - 10

### 나. 과세구간 및 소득세율<sup>27)</sup>

호주의 개인소득에 대한 세율체계는 초과누진세율구조로, 과세소득 규모에 따라 4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2010~11년의 과세소득구간 및 세율을 살펴보면, 과세소득구간에 따른 소득세율은 15~45%로 2009~10년과 비교하여 볼 때, AUD 80,000 초과 ~180,000 이하의 구간에 서는 38%에서 37%로 세율인하가 있었다.

<표 IV-12> 호주의 과세구간 및 소득세율

(단위: 호주달러, %)

2009~2010년			2010~2011년		
과세소득 (A)	A에 대한 세금	A 초과분 세율	과세소득 (A)	A에 대한 세금	A 초과분 세율
6,000	0	15	6,000	0	15
35,000	4,350	30	37,000	4,650	30
80,000	17,850	38	80,000	17,550	37
180,000	55,850	45	180,000	54,550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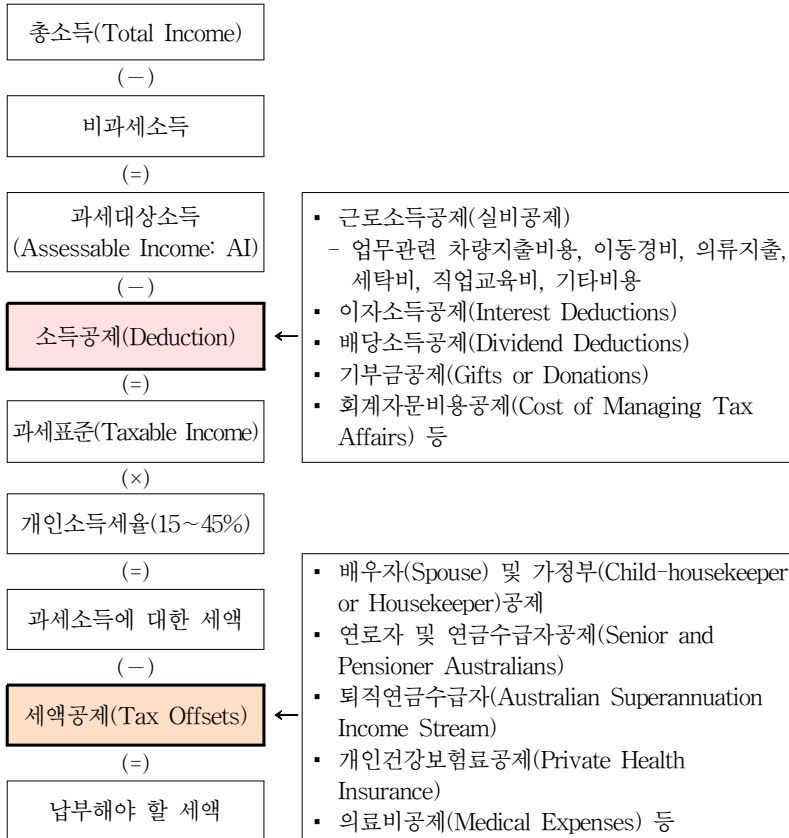
자료: 안중석, 『주요국의 조세제도(호주편)』, p. 100 재인용

### 다. 소득세 과세체계

호주의 소득세 과세체계는 <표 IV-13>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소득세 공제제도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과세표준을 감소시켜 주는 소득공제와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로 구성되어 있다.

27) 안중석(2012), p. 101 참조

<표 IV-13> 호주의 소득세 과세체계



자료: 호주 소득세 신고서(Tax return for individuals 2012), 안종석(2012) 참조

## 라. 소득세 공제제도의 특징

### 1) 고소득 계층의 공제금액 제한

호주의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 항목들은 대부분 단일세율 세액공제 방식 또는 일부 항목의 경우 세액의 환급형식으로 적용됨으로써, 고소득 계층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고 있다. 호주의 주요 공

제제도는 인적공제 성격을 가진 공제제도로 부양가족공제(Dependent Rebate), 연로자 및 연금수급자 세액공제(Senior Australians and Pensioner Tax Offsets), 고령근로자 세액공제(Mature Age Worker Tax Offset), 의료비 공제(Medical Expense Rebate) 등이 있다.

#### 가) 부양가족공제(Dependent Tax Offset)<sup>28)</sup>

부양가족공제(Dependent Tax Offset)는 부양자의 조정된 과세소득(Adjusted Taxable Income: ATI)이 AUD 150,000(2012-13년 기준) 이하이거나, 피부양자의 조정된 과세소득(Adjusted Taxable Income: ATI)이 일정규모 이하일 경우 적용된다. 공제대상은 배우자(spouse), 취업을 하지 않고 살림을 전업으로 하는 자녀(child-housekeeper), 장애인 가족(invalid relative),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있다. <표 IV-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피부양자 소득수준별로 공제금액을 차등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표 IV-14> 호주의 부양가족공제(2012-13)

(단위: AUD)

공제대상 부양가족	최대 공제금액	소득요건
배우자 <sup>3)</sup>	2,423 (2,815 <sup>1)</sup> )	9,974 (- <sup>1)</sup> )
child-housekeeper	1,975 (2,366 <sup>2)</sup> )	8,182(9,746 <sup>2)</sup> )
장애인 가족	889	3,838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776	7,386

주: 1), 2)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3) 피부양자 소득이 AUD 282 이상이면 이를 초과하는 금액 매 AUD 4마다 AUD 1씩 공제금액 삭감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가족세액공제 Part B 적용대상이면 배우자 또는 child-housekeeper에 대한 부양가족공제금액 중 일부 차감

자료: www.ato.gov.au

28) <http://www.ato.gov.au/individuals/content.aspx?doc=/content/00307690.htm>

나) 연로자 및 연금수급자 세액공제(Senior Australians and Pensioner Tax Offsets: SAPTO)<sup>29)</sup> 및 고령근로자 세액공제 (Mature Age Worker Tax Offset: MAWTO)<sup>30)</sup>

연로자 및 연금수급자 세액공제(SAPTO)는 2012년 7월부터 연로자 공제(Senior Australians Tax Offset: SATO)와 연금수급자 공제 (Pensioner Tax Offset: PTO)가 통합되었으며, 연령 및 소득요건 충족시 적용받을 수 있다. 연령요건은 남자 65세 이상, 여자 64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총소득이 <표 IV-15>에 제시된 최저소득금액 이하이면 최대공제금액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고, 최대소득금액 이상이면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그리고 최소·최대소득금액 사이의 구간에서는 AUD 1당 12.5센트씩 공제금액이 감소한다.

<표 IV-15> 호주의 연로자 및 연금수급자 세액공제(2012-13)

(단위: AUD)

구분	최대공제금액	최소소득금액	최대소득금액
독신	2,230	32,279	50,119
부부(각각에 대해 적용)	1,602	57,948	83,580
부부(질병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	2,040	62,558	95,198

자료: www.ato.gov.au

29) <http://www.ato.gov.au/individuals/content.aspx?doc=/content/00251172.htm&page=7>

30) <http://www.ato.gov.au/individuals/content.aspx?menuid=0&doc=/content/56588.htm&page=1&H1>

한편, 고령 근로자 세액공제(MAWTO)제도는 55세 이상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일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대 AUD 50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다만, 업무관련 소득(근로소득 및 자영업소득) 합계가 AUD 63,000 미만이어야 하며, 점증-평탄-점감구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V-16> 호주의 고령 근로자 세액공제(2012-13)

(단위: AUD)

업무 관련 소득금액	공제금액
10,000 미만	소득금액×5%
10,000 이상 ~ 53,000 미만	500
53,000 이상 ~ 63,000 미만	500-(소득금액-53,000)×5%
63,000 이상	-

자료: [www.ato.gov.au](http://www.ato.gov.au)

#### 다) 의료비 세액공제(Medical Expense)<sup>31)</sup>

보험 등으로 인하여 보상받지 못한 의료비 중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가구형태 및 소득구간별로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정소득을 초과할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범위 및 공제율이 감소한다. 독신(Single)일 경우에는 2012-13년 기준으로 Adjusted Taxable Income(ATI) AUD 84,000 미만이면 의료비 AUD 2,120 초과분의 20%를 공제하고, AUD 84,000 이상이면 의료비 AUD 5,000 초과분의 10%를 공제한다. 한편, 가구(Family)의 경우에는 ATI가 AUD 168,000 미만일 경우, 의료비 AUD 2,120 초과분의 20%를, AUD 168,000 이상일 경우, 의료비 AUD 5,000 초과분의 10%를 공제한다.

31) <http://www.ato.gov.au/Individuals/Income-and-deductions/Offsets-you-can-claim/Medical-expenses/>

&lt;표 IV-17&gt; 의료비 세액공제(Medical Expense)(2012-13)

가구 형태	ATI 한도	공제율
Single	AUD 84,000 미만	AUD 2,120 초과분의 20%
	AUD 84,000 이상	AUD 5,000 초과분의 10%
Family*	AUD 168,000 미만	AUD 2,120 초과분의 20%
	AUD 168,000 이상	AUD 5,000 초과분의 10%

주: \*첫째 이후의 부양자녀 1인당 AUD 1,500 추가  
 자료: www.ato.gov.au

또한 개인건강보험료 세액공제(Private Health Insurance Offsets: PHIO)의 경우에도 소득 및 연령요건에 따라 공제율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공제액이 감소하므로 일정금액 이상의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며, 소득요건 충족시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공제율이 증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lt;표 IV-18&gt; 호주의 개인건강보험료 세액공제율(2012-13)

(단위: AUD, %)

연령	소득 <sup>1)</sup>	~84,000	84,001~97,000	97,001~130,000	130,001~
	65세 이하		30	20	10
65~69세 이하		35	25	15	0
70세 이상		40	30	20	0

주: 1) 소득요건은 독신(Singles) 기준이며, 가족(Families) 기준은 2배  
 자료: www.ato.gov.au

## 2) 저소득 계층의 소득세 부담 완화 규정<sup>32)</sup>

저소득 계층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 과세소득이 일정액 이하일 경우 0%의 세율을 적용하는바, 2012년 기준으로는 연소득

32) <http://www.ato.gov.au/individuals/content.aspx?menuid=0&doc=/content/00309813.htm&page=6>

이 AUD 6,000 이하이면 0%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저소득층 세액공제(Low-Income Tax Offset: LITO)도 시행하고 있는바, 호주 거주자이면서 과세대상소득이 AUD 66,667 (2012-13) 이하일 경우에는 2012-2013년 기준으로 최대 AUD 44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과세대상소득이 AUD 37,000 이하이면 AUD 445를 전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초과하는 경우에는 AUD 66,667까지 1달러마다 1.5%씩 금액이 감소하다가 AUD 66,667 초과 시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표 IV-19> 호주의 저소득층 세액공제(2011-16)

(단위: AUD, %)

	2011-12	2012-14	2015-16
공제금액	1,500	445	300
최소소득금액	30,000	37,000	37,000
최대소득금액	67,500	66,667	67,000
점감률	4	1.5	1.0

자료: [www.ato.gov.au](http://www.ato.gov.au)

### 3) 저소득 계층을 위한 환급가능 세액공제제도

#### 가) Family Tax Benefit(FTB)<sup>33)</sup>

Family Tax Benefit(FTB)는 환급형 세액공제제도(Refundable Credit)로,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의 자녀양육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급여산정체계는 Part A, Part B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중복적용이 가능하고, 2주 단위 또는 1년 단위로 수급기간을 정할 수 있다. Part A는 연간 합산소득이 일정

33) <http://www.humanservices.gov.au/customer/services/centrelink/family-tax-benefit-part-a-part-b>

IV. 주요국의 소득세 현황 95

소득금액 미만 가구의 부양자녀의 나이 및 수에 따른 자녀양육비용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Part B는 한부모 가구 및 부부 중 1명만 주된 소득을 가진 가구에 추가적으로 자녀양육비용을 지원하는 데 차이점이 있다.

(1) Part A

<표 IV-20> FTB Part A 수령액(2013-14)

(단위: AUD)

최대 수령액		기본 수령액	
각 자녀별 나이	2주 단위	각 자녀별 나이	2주 단위
0-12세	172.20	18세 미만	55.16
13-15세	224.00		
16-19세 <sup>1)</sup>	224.00	18~19세 <sup>1)</sup>	55.16
16-17세 <sup>2)</sup>	55.16		
0-19세 <sup>3)</sup>	55.16		

주: 1) 중학생(secondary student)

2) 중등교육을 마친 경우(having completed secondary stu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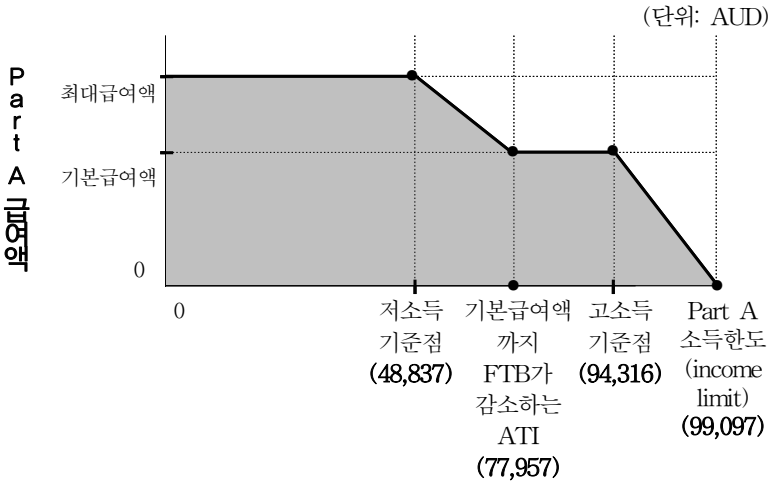
3) 승인된 보호기관(Approved care organisation)에 해당하며, 해당 기관은 집이 없는 아이들, 난민 또는 장애우를 위한 보호시설을 제공함

자료: www.humanservices.gov.au

Part A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호주 거주자로서 소득요건 및 연령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급여산정은 각 자녀별 나이, 자격요건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다. 첫째, 소득요건으로 Part A의 최대 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한 조정된 과세소득(Adjusted Taxable Income: ATI)은 AUD 48,837 이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AUD 1당 20센트씩 지원금이 감소한다. 한편, 기본 지원금의 경우에는 조정된 과세소득(ATI)이 AUD 94,316(FTB 자녀 1명당 AUD 3,796 추가)보다 클 경우, 지원금이 0이 될 때까지 AUD 1당 30센트씩 감소한다. 둘째, 연령요건은 16

세 미만의 자녀 또는 16~20세 미만의 자녀가 12학년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을 경우 등으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림 IV-6] 부양가족 및 ATI에 따른 Part A 급여액  
(15세인 적격 부양자녀 1명인 경우)



가족조정후과세소득

(2) Part B

Part B는 한부모 가정 및 양부모 가정의 주된 소득원이 하나인 가구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적용요건은 한부모 가구이거나 가족의 주 소득원이 하나인 가구의 16세 미만 자녀 또는 19세 미만 Full-Time 학생일 경우 적용되며, 주된 소득자(primary earner)의 연간 조정 과세소득(Adjusted Taxable Income: ATI)이 AUD 150,000 이하하여야 한다. 한부모 가구(single parent family)일 경우에는 주된 소득자(primary earner)의 소득이 AUD 150,000를 초과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부부 가구

IV. 주요국의 소득세 현황 97

(two parent family)는 주 소득자(primary earner) 소득이 AUD 150,000 이하일 경우 2차 소득자(second earner)의 연간 과세소득(ATI)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2차 소득자 소득이 AUD 5,183 이하일 때 Part B의 최대 급여액을 받을 수 있으며, AUD 5,183를 초과할 경우 AUD 1당 지원금이 20센트씩 감소한다. 그러나 가구의 주된 소득자의 소득이 AUD 150,000 이하이면서, 2차소득자 소득이 <표 IV-21>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일부분만 지급받을 수 있다.

<표 IV-21> 조정된 과세소득(ATI) 한도(FTB Part B: 2013-14)  
(단위: AUD)

막내 부양자녀 연령	연간 과세소득(ATI)
5세 미만	26,390
5~19세 미만	20,532

자료: www.humanservices.gov.au

<표 IV-22> FTB Part B 최대 수령액(2013-14)  
(단위: AUD)

자녀나이	2주 단위	1년 단위
5세 미만	146.44	4,171.95
5~18세	102.20	3,018.55

자료: www.humanservices.gov.au

나) Working Credit<sup>34)</sup>

Working Credit는 근로유인 제공을 위해 호주 연방정부 차원에서 2003년 도입한 제도로서 정규직으로 취업시 곧바로 보조금이 취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 심사 대상 소득을 감소시킴으로써 취업 이후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기존 제도하에서 저소득층은 근로소득이 일정수

34) <http://www.humanservices.gov.au/customer/enablers/working-credit>

준에 도달하기 전에는 정부의 지원금이 감소하지 않으며, 소득이 일정수준을 초과하게 되면 정부의 지원금이 일정비율로 감소하게 된다.

호주의 Working Credit 적용시 소득요건은 근로 및 투자소득을 합한 총소득이 2주당 AUD 48 미만이어야 하는바, 소득요건 충족시 청소년 보조금(Youth Allowance)을 받는 구직자는 최대 총 AUD 3,500, 실업수당(Newstart Allowance)을 받는 구직자는 최대 총 AUD 1,000 까지 수령할 수 있다. 해당 급여금액을 모두 수령하기 전까지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Working Credit 급여금액도 증가하나, 2주단위로 AUD 48을 초과하여 지급하지는 아니한다.

#### 4)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퇴직연금가입 장려정책<sup>35)</sup>

호주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퇴직연금 불입을 장려하기 위해 2003년 7월 1일에 퇴직연금공동분담(Super co-contribution)제도를 도입하였다.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퇴직기금이나 퇴직저축계좌 등에 기여금을 납부하면 정부가 일정 한도까지 매칭자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2004년 7월 1일 이후로 최대 기여금이 AUD 1,000~1,500으로 증가하였으며, 2005-06 연도에는 정부가 일회성의 추가 지급 조치를 발표하고, 그 해 기여금의 2배를 지급한 바 있다. 2007년 7월 1일부터 다시 최대 기여금 한도는 AUD 1,500으로 회복되었으며, 적용대상이 자영업자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2009년 7월 1일부터 최대 기여금 한도가 AUD 1,000으로 감소되었다.

동 제도는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수준별로 매칭자금을 차등 지급하는바, 매년 6월 30일까지 퇴직연금 등에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며, 총소득이 AUD 61,920 이하여야 한다. 또한, 총소득 중

35) <http://www.ato.gov.au/individuals/content.asp?doc=/content/42616.htm&mnu=41871&mp=001/007>

10% 이상이 근로소득 또는 자영업소득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71세 이하일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다.

<표 IV-23> 호주의 퇴직연금공동분담제도 매칭자금 계산방식

기간	최저 소득	최고 소득	매칭금액	최대지급금액
2008년 7월 1일~ 2009년 6월 30일	30,342	60,342	연간 AUD 1,500까지 AUD 1당 AUD 1.5씩 지급	AUD 1,500 다만, 소득이 AUD 30,342 이상이면 AUD 1당 5c씩 감소
2009년 7월 1일~ 2012년 6월 30일	31,920	61,920	연간 AUD 1,000까지 AUD 1당 AUD 1씩 지급	AUD 1,000 다만, 소득이 AUD 31,920 이상이면 AUD 1당 3.33c씩 감소

자료: www.ato.gov.au

한편 호주의 퇴직연금공동분담제도의 수혜자 및 지급실적은 <표 IV-24>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11년에는 수혜자와 지원실적이 2008-09년 대비 각각 약 8배, 약 5배 증가하였으며 2008~2011년 동안 수혜자 약 12만명에게 AUD 7,583만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4> 호주의 퇴직연금공동분담제도 수혜자 및 지원실적

(단위: 명, AUD)

	수혜자	지원실적
전체	124,158	75,826,000
2010-11	80,296	46,057,000
2009-10	32,831	20,300,000
2008-09	11,031	9,469,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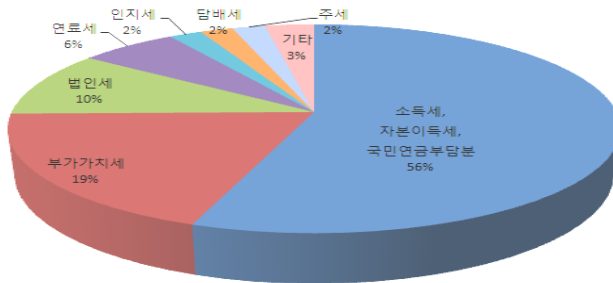
자료: Super Co-contributions Quarterly Report for the quarter 1 July 2011 to 30 September 2011

### 3. 영국<sup>36)</sup>

#### 가. 세수실적

영국 국세청은 2011~12년도에 GBP 4,666.3억을 징수하였으며, 지난 10년 동안 주요 수입원은 평균 55%를 차지한 소득세와 자본이득세, 국민연금보험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지난 10년간 평균 세수비중이 총징수액 중 각각 19%, 10%를 차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V-7] 2001~2012년도 평균 세수비중



자료: <http://www.hmrc.gov.uk>

#### 나. 과세구간 및 소득세율

영국의 세율은 초기세율(starting rate), 기본세율(basic rate), 고율세율(higher rate), 추가세율(additional rate)로 구성되어 있다. 10%의 초기세율은 저축소득에 한하여 적용되지만, 총소득과 소득세에서 각 공제를 차감한 이후의 비저축소득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축소득에 대하여도 10%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비저축소득은 근로

36) 『주요국의 조세제도-영국편(2009)』, 영국국세청([www.hmrc.gov.uk](http://www.hmrc.gov.uk)) 참조

소득, 자영소득, 연금, 재산과 세제혜택으로부터의 소득을 포함한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기본세율이 10%, 고율세율은 32.5%가 적용되며, 2013~2014 회계연도의 배당소득에 대한 추가세율은 37.5%이다.

<표 IV-25> 영국의 과세구간 및 소득세율

(단위: 파운드)

세율	2012-2013	2013-2014
Starting rate for savings: 10%	£0~£2,710	£0~ £2,790
Basic rate: 20%	£0~£34,370	£0~£32,010
Higher rate: 40%	£34,371~£150,000	£32,011~£150,000
Additional rate: 50%	Over £150,000	N/A
45% from 6 April 2013	Over £150,000	Over £150,000

자료: <http://www.hmrc.gov.uk>

총소득규모별로 납세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과 공제현황을 살펴보면, 2010~2011 회계연도의 총소득 GBP 8,570억 중 자영·근로·연금 소득이 93.2%인 GBP 7,990억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소득은 GBP 586억으로 6.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0~2011 회계연도의 납세의무자의 평균세율은 17.7%로 나타났으며, 평균세율은 최저 0.7%에서 최고 43.6%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납세인원 비중이 가장 큰 총소득구간은 GBP 150억~200억 구간으로, 이 구간의 납세의무자가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0%이며 평균세율은 13.8%로 나타났다.

<표 IV-26> 총소득규모별 납세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과 공제현황(2010-11)

(단위: 천명, 백만파운드)

총소득 구간별 (하한)	자영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Total earned income)		총투자소득 (Total investment income)		총소득 (Total income)		총공제 및 감면 deductions and reliefs)		기본공제 (Personal allowances)		총세액 (Total tax)		세후소득 (Total income after tax)		평균세 율 (Average rate of tax)		납세인원 비중 (Distribution of total income by numbers)	
	인원 수	금액	인원 수	금액	인원 수	금액	인원 수	금액	인원 수	금액	인원 수	금액	인원 수	금액	%	%	인원 수	%
6,475	613	3,980	449	209	622	4,190	30	6	4,020	28	622	28	4,160	0.7	2.0			
7,000	1,100	8,000	856	452	1,130	8,460	123	43	7,310	209	1,130	209	8,250	2.5	3.6			
8,000	2,220	19,400	1,790	938	2,240	20,300	275	139	15,200	969	2,240	969	19,400	4.8	7.2			
10,000	2,800	29,600	2,060	1,270	2,810	30,900	371	229	21,200	1,870	2,810	1,870	29,000	6.1	9.0			
12,000	3,900	50,800	2,840	1,950	3,910	52,700	692	513	29,100	3,910	3,910	4,610	48,100	8.7	12.5			
15,000	5,420	91,400	3,960	3,270	5,440	94,600	1,460	1,300	39,400	5,440	5,440	10,700	83,900	11.4	17.4			
20,000	6,860	161,000	5,060	6,860	6,880	168,000	3,080	3,660	47,600	6,880	6,880	23,100	145,000	13.8	22.0			
30,000	5,610	197,000	4,280	17,000	5,640	214,000	3,870	7,220	36,800	5,640	5,640	33,100	181,000	15.5	18.0			
50,000	1,370	72,500	984	6,850	1,370	79,400	1,160	3,390	8,940	1,370	1,370	16,100	63,300	20.3	4.4			
70,000	647	47,500	497	6,140	651	53,600	541	2,510	4,240	651	651	13,500	40,100	25.2	2.1			
100,000	317	33,600	250	4,830	319	38,400	266	2,270	776	319	319	11,400	27,000	29.7	1.0			
150,000	115	17,600	93	2,220	116	19,800	100	1,230	17	116	116	6,550	13,300	33.1	0.4			
200,000	77	16,600	62	1,960	77	18,600	67	1,170	8	77	77	6,800	11,800	36.6	0.2			
300,000	42	14,600	36	1,450	43	16,100	37	977	3	43	43	6,450	9,650	40.1	0.1			
500,000	22	14,300	20	1,150	23	15,500	20	1,160	2	23	23	6,420	9,050	41.5	0.1			
1,000,000	10	20,300	9	2,030	10	22,300	9	1,430	-	10	10	9,730	12,600	43.6	0.0			
전 범위	31,100	799,000	23,300	58,600	31,300	857,000	12,100	27,200	215,000	31,300	31,300	152,000	706,600	17.7	100.0			

자료: <http://www.hmrc.gov.uk>

또한, 납세의무자의 연도별 한계세율 적용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2008~2009 회계연도 이후로는 저축소득에 대해서만 초기세율 10%를 적용하게 되어 저율 또는 초기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의 수가 2001~2002년도 약 3백만명에서 2012~2013년에는 18만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총납세의무자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의 비중이 2001~2013년 동안 약 2,300만명으로 가장 높은 78.9%를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고율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가 약 3백만명으로 11.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7> 납세의무자의 연도별 · 한계세율 적용 인원 현황

(단위: 천명)

연도	총납세의무자	저율 또는 초기세율	“저축자” 세율	기본세율	고율세율	추가세율
2001-2002	28,600	3,030	857	21,700	3,000	-
	(100.0)	(10.6)	(3.0)	(75.9)	(10.5)	-
2002-2003	28,900	3,100	730	22,000	3,040	-
	(100.0)	(10.7)	(2.5)	(76.1)	(10.5)	-
2003-2004	28,500	3,220	734	21,600	2,960	-
	(100.0)	(11.3)	(2.6)	(75.8)	(10.4)	-
2004-2005	30,300	3,570	833	22,500	3,330	-
	(100.0)	(11.8)	(2.7)	(74.3)	(11.0)	-
2005-2006	31,100	3,490	866	23,100	3,590	-
	(100.0)	(11.2)	(2.8)	(74.3)	(11.5)	-
2006-2007	31,800	3,450	927	23,700	3,770	-
	(100.0)	(10.8)	(2.9)	(74.5)	(11.9)	-
2007-2008	32,500	3,440	1,070	24,100	3,870	-
	(100.0)	(10.6)	(3.3)	(74.2)	(11.9)	-
2009-2010	30,600	163	602	26,600	3,190	-
	(100.0)	(0.5)	(2.0)	(86.9)	(10.4)	-
2010-2011	31,000	136	574	27,100	3,000	255
	(100.0)	(0.4)	(1.9)	(87.4)	(9.7)	(0.8)
2011-2012	30,100	188	557	25,500	3,570	294
	(100.0)	(0.6)	(1.9)	(84.7)	(11.9)	(1.0)

<표 IV-27>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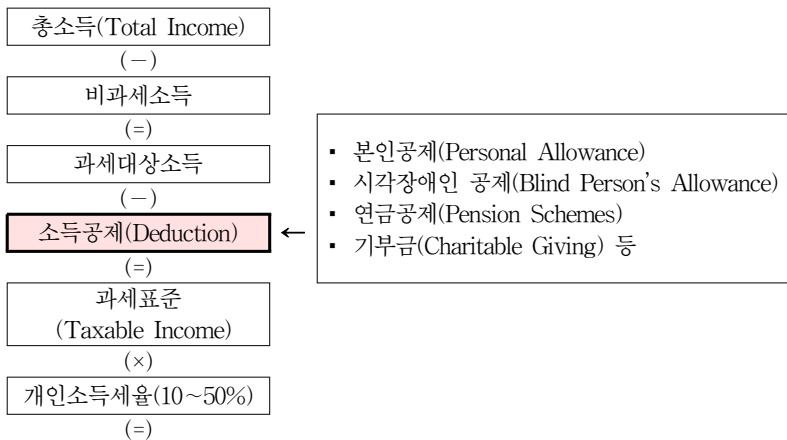
연도	총납세의무자	저울 또는 초기세율	“저축자” 세율	기본세율	고율세율	추가세율
2012-2013	29,700 (100.0)	182 (0.6)	540 (1.8)	24,800 (83.5)	3,800 (12.8)	307 (1.0)
평균 (2001-2013)	30,282 (100.0)	2,179 (7.2)	754 (2.5)	23,882 (78.9)	3,375 (11.1)	285 (0.9)
연평균증감률 (2001-2013)	0.4%	-24.5%	-4.5%	1.3%	2.4%	9.7%

주: 2008-2009년도의 경우 가용한 데이터가 없음  
 자료: <http://www.hmrc.gov.uk>

다. 소득세 과세체계

영국의 경우 소득세 과세체계는 <표 IV-28>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조사대상 국가와 유사하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방식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고 세금경감(Tax Relief)을 위한 다양한 공제항목을 운영하고 있다.

<표 IV-28> 영국의 소득세 과세체계



<표 IV-28>의 계속

세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기업투자공제(Subscriptions for Venture Capital Trust Shares)</li> <li>▪ 부부공제(Married Couple's Allowance)</li> <li>▪ 자녀장려세제(Child Tax Credit: CTC)</li> <li>▪ 근로장려세제(Working Tax Credit: WTC) 등</li> </ul>
세액공제(Tax Credits) (=)	
납부해야 할 세액	

자료: 영국 소득세 신고서(Tax Return 2013), 박정수(2009) 참조

### 라. 소득세 공제제도의 특징

#### 1) 고소득 계층의 공제금액 제한

##### 가) 본인공제(Personal Allowance)<sup>37)</sup>

본인공제제도는 납세자의 연령 및 소득금액 등에 따라 본인공제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특징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본인공제금액도 증가하여 이를 “연령 관련 본인공제(Age Related Allowances)”라고도 한다. <표 IV-29>에 제시된 바와 같이, 64세 이하 기본공제 GBP 8,105에서 65세가 되면 GBP 2,395가 증가한 GBP 10,500이 되며, 75세가 되면 본인공제금액은 이전보다 GBP 160 증가한 GBP 10,660이 된다.

<표 IV-29> 영국의 본인공제(2012-13)

(단위: GBP)

연령	공제금액	소득한도
기본공제(64세 이하)	8,105	100,000
65세 이상 ~ 74세 이하	10,500	25,400
75세 이상	10,660	25,400

자료: www.hmrc.gov.uk

37) <http://www.hmrc.gov.uk/incometax/personal-allow.htm>

한편, 본인공제는 65세 이상이고 총소득이 GBP 25,400 이상일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50%를 공제금액에서 차감하고 있다. 다만, 차감 후 잔액이 2012-2013 회계연도 기준으로 기본공제금액인 GBP 8,105 이하로는 내려갈 수 없는바, 일정 수준 이상의 최소 공제금액을 유지하고 있다.

#### 나) 부부공제(Married Couple's Allowance)<sup>38)</sup>

부부공제제도는 소득공제방식이 아닌 세액공제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개인의 한계세율과는 관계없이 공제대상금액의 10%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금액을 산정한다. 연령요건으로는 적어도 한명의 배우자는 75세 이상이거나 1935년 4월 6일 이전에 출생하였고, 이를 충족할 경우 최소 GBP 296에서 최대 GBP 770.5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소득을 고려하여 최소·최대공제대상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공제대상금액을 결정한다. 한편, 공제세율 10%는 개인의 소득세 누진세율<sup>39)</sup> 중 가장 낮은 세율이다.

<표 IV-30> 영국의 부부공제(2012-13)

(단위: GBP)

연령	최소공제대상금액	최대공제대상금액	소득한도
75세 이상 or 1935년 4월 6일 이전생	2,960	7,705	25,400

자료: 영국 국세청(www.hmrc.gov.uk)

38) <http://www.hmrc.gov.uk/incometax/married-allow.htm>

39) 영국의 소득세 누진세율 체계(2012-13)

세율의 유형	소득구간(GBP)	세율(%)		
		배당	저축	기타
초기(starting)	2,710 이하	10	10	-
기본(basic)	34,370 이하	10	20	20
고율(higher)	34,371 ~ 150,000	32.5	40	40
추가(additional)	150,000 초과	42.5	50	50

자료: <http://www.hmrc.gov.uk/incometax/basics.htm>

한편, 부부공제도 본인공제와 마찬가지로 65세 이상이면서 총소득이 GBP 25,400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50%를 최대공제대상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나 차감 후 잔액은 최소공제대상금액인 GBP 2,96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연령 관련 본인공제의 차감 후 잔액이 기본공제금액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공제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부부공제 최대공제대상금액에서 차감하게 된다. 예를 들어, 76세 기혼이고 GBP 31,500의 과세대상 소득을 가진 자를 가정하고, 부부공제금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1단계: 한도초과금액 계산= $31,500-25,400=6,100$
- 2단계: 차감되어야 하는 공제금액 계산= $6,100 \times 50\%=3,050$
- 3단계: 연령 관련 본인공제 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는 금액 계산  
=  $\min[3,050, (10,660-8,105)]=2,555$
- 4단계: 최대부부공제대상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는 금액 계산  
=  $\min[(3,050-2,555), (7,705-2,960)]=495$
- 5단계: 최종적인 부부공제금액 계산= $7,210(=7,705-495) \times 10\%=721$

## 2) 저소득 계층을 위한 환급가능 세액공제제도<sup>40)</sup>

### 가) Child Tax Credit(CTC)

Child Tax Credit(CTC)는 소득이 없는 가구일지라도 자녀<sup>41)</sup>를 가

40) 김재진, 『근로 빈곤층을 위한 선진국의 조세제도: 영국사례(Working Tax Credit 및 Child Tax Credit 제도)』, 『재정포럼』 2005년 12월  
HMRC, “WTC 2-A guide to Child Tax Credit and Working Tax Credit”

41) 자녀의 범위에는 친자녀뿐만 아니라 의붓자식, 양자 또는 자기비용으로 양육하고 있는 아동 등이 모두 포함되며 16세 이상 20세 미만 자녀를 가진 경우에도 CTC 적용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

진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환급형 세액공제제도(Refundable Credit)로, 2003년 4월 Working Tax Credit(WTC)와 함께 도입되었다. 미국과는 달리 최소 근로소득 요건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자녀수당(Child Benefit), WTC 등과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CTC 급여는 자녀의 수, 나이, 장애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수급대상자의 소득에 따라 CTC 급여가 결정된다. 즉, 자녀의 범위는 친자녀뿐만 아니라 의붓자식, 양자 또는 본인의 비용으로 양육하고 있는 아동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양자녀 나이가 16세 미만이거나 16세 이상 20세 미만이라도 특정교육<sup>42)</sup>을 받고 있는 학생일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표 IV-31> 영국의 CTC 급여산정요소(2013-14)

구성요소	연간금액(GBP) <sup>1)</sup>
가족(Family)요소	545
자녀요소(영아 포함, 자녀 1인당)	2,720
장애자녀요소(자녀 요소에 추가)	3,015
중증장애자녀요소(자녀 및 장애 요소에 추가)	1,220

주: 1) 각 요소의 최대 급여금액을 나타냄

자료: HMRC, "A guide to Child Tax Credit and Working Tax Credit"

한편, 급여금액은 미국과는 달리 점증구간 없이 “평탄, 점감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는 소득구간에 따라 산정되는데, <표 IV-32>는 WTC를 적용받지 않는 자의 CTC 급여금액을 나타낸 사례로서 1세 미만 영아 또는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경우에는 이보다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13년 기준으로 CTC만 지급받을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GBP 15,910 이하이면 최대 수령액이 지급되며, GBP 15,910 초과시 41% 점감률로 감소한다.

42) full-time, ‘non-advanced’ education, or ‘approved’ trai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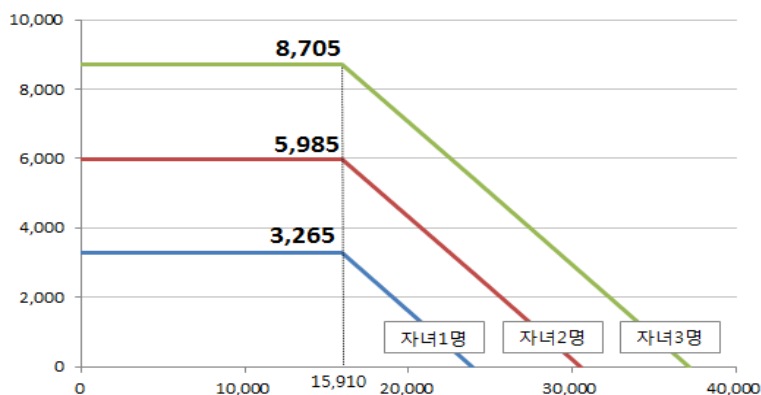
<표 IV-32> 영국의 CTC 급여(2013-14) 예시

(단위: GBP)

연간소득(GBP)	연간금액		
	자녀 1명	자녀 2명	자녀 3명
No income	3,265	5,985	8,705
5,000	3,265	5,985	8,705
6,420	3,265	5,985	8,705
10,000	3,265	5,985	8,705
15,000	3,265	5,985	8,705
15,910	3,265	5,985	8,705
20,000	1,588	4,308	7,028
25,000	-	2,258	4,978
30,000	-	208	2,928
35,000	-	-	878
40,000	-	-	-

주: 1. 기준소득에는 일부 사회보장급여, 저축소득, 자영업소득이 포함  
 2. Child Tax Credit를 지급받는 장애아동이 없는 가구를 가정함  
 3. CTC 급여요소 중 가족요소와 자녀요소만을 이용하여 계산함  
 자료: HMRC, "A Guide to Child Tax Credit and Working Tax Credit"

[그림 IV-8] 영국의 CTC 모형(2013-14)



주: 1. 기준소득에는 일부 사회보장급여, 저축소득, 자영업소득이 포함  
 2. Child Tax Credit를 지급받는 장애아동이 없는 가구를 가정함  
 3. CTC 급여요소 중 가족요소와 자녀요소만을 이용하여 계산함  
 자료: HMRC, "A Guide to Child Tax Credit and Working Tax Credit"

## 나) Working Tax Credit(WTC)

Working Tax Credit(WTC)는 CTC와 함께 2003년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같이 일로 인한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환급형 세액공제제도로 1971년에 저소득 근로 빈곤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FIS(Family Income Support) 제도가 모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WTC는 부양자녀 유무와는 관계없이 근로 여부, 근로시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WTC 혜택을 받기 위해서 최소근로시간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 유무, 장애, 재취업 상태 등에 따라 자격요건은 다르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6세 이상이고, 주당 16시간 이상 일해야 하며,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25세 이상이고, 주당 30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 또한 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16세 이상이고, 주당 16시간 이상 일해야 하며, 실업급여 신청 후 재취업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50세 이상이고, 주당 16시간 이상 일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표 IV-33> 영국의 WTC 최소근로시간 요건

구분	주당 근로시간
25~59세	최소 30시간
60세 이상	최소 16시간
장애인	최소 16시간
자녀1인 이상 Single	최소 16시간
자녀1인 이상 Couple	최소 24시간(배우자 최소 16시간)

자료: [www.gov.uk/working-tax-credit/eligibility](http://www.gov.uk/working-tax-credit/eligibility)

WTC 급여산정요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요소에 요건을 충족하는 구성요소를 추가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WTC에는 자

녀양육요소(Childcare Element of Working Tax Credit)가 있어 보육료(childcare charge) 지원을 하고 있는바, 주당 자녀양육비의 70%를 환급받으며 자녀 1인의 경우 주당 GBP 175, 2인 이상인 경우 주당 GBP 300까지 받을 수 있다.

<표 IV-34> 영국의 WTC 급여산정요소(2013-14)

(단위: £)

구성요소		연간금액
기본요소(Basic Element)		1,920
부부요소(Couple Element, 기본요소에 추가)		1,970
한부모요소(Lone Parent Element, 기본요소에 추가)		1,970
30시간요소(30 Hour Element, 다른 요소에 추가)		790
장애요소 <sup>1)</sup> (Disability Element, 다른 요소에 추가)		2,885
중증장애요소(Severe Disability Element, 다른 요소에 추가)		1,220
자녀양육 요소 <sup>2)</sup>	1명의 자녀를 가진 경우 최대 자녀양육경비	주당 175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경우 최대 자녀양육경비	주당 300
	자녀양육경비 보조비율	70%

주: 1)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주당 16시간 이상 근무
- 장애가 취업하는 데 있어서 불리함
- 현재 질병을 앓고 있거나 장애혜택을 받고 있어야 함

2) 자녀 양육을 위해 요건을 충족하는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최대 자녀양육경비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비용 중 70%까지 추가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음. 예를 들어 1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주당 최대 GBP 122.5(=175×70%)까지,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주당 최대 GBP 210(=300×70%)까지 추가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음

자료: HMRC, "A Guide to Child Tax Credit and Working Tax Credit"

또한 WTC는 CTC와 중복적용이 가능하나, 자녀를 부양하고 있지 않은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는 WTC만을 받을 수 있으며, WTC 급여 금액에 대한 예시는 <표 IV-35>와 같다. WTC는 CTC와 중복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연소득 GBP 6,420을 초과시 41%의 점감률로 급여액이 감소한다. 그러나 장애를 가졌거나, 자녀 양육을 위해 요건을 충

족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표 IV-35>의 금액보다 높은 WTC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표 IV-35> 자녀가 없는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의 WTC 급여(2013-14): 예시  
(단위: GBP)

연간 소득	연간 금액			
	25세 이상이며, 주당 30시간 이상 일하는 독신 <sup>2)</sup>	25세 이상이며, 주당 30시간 이상 일하는 부부 <sup>3)</sup>		
		무자녀	자녀1인	자녀2인 이상
9,657 <sup>1)</sup>	1,383	3,353	9,723	14,273
10,000	1,242	3,212	9,582	14,132
12,000	422	2,392	8,762	13,312
13,000	-	1,982	8,352	12,902
15,000	-	1,162	7,532	12,082
15,910	-	789	7,159	11,709
17,000	-	342	6,712	11,262
19,000	-	-	5,892	10,442
20,000	-	-	5,482	10,032
25,000	-	-	3,432	7,982
30,000	-	-	1,382	5,932
35,000	-	-	-	3,882
40,000	-	-	-	1,832

주: 1) 25세 이상 주당 30시간 이상 일하는 자는 2012년 10월 금액기준으로 최소 연간 GBP 9,657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음

2) 기본요소 + 30시간 요소

3) 기본요소 + 부부요소 + 30시간 요소 + 자녀요소

자료: HMRC, "A guide to Child Tax Credit and Working Tax Credit"

### 3)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개인연금가입 장려정책<sup>43)</sup>

영국에서는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자신이 납입하는 개인연금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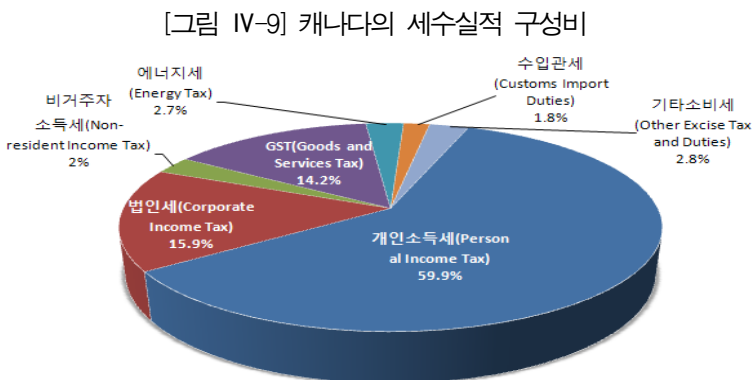
43) <http://www.hmrc.gov.uk/incometax/relief-pension.htm>

여당에 대하여는 일정 한도까지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바, 개인의 기여금이 GBP 2,880일 때 정부는 GBP 720(= 2,880/(1- 20%) - 2,880)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개인연금 기여금을 GBP 3,600까지 보전해 주고 있다.

#### 4. 캐나다<sup>44)</sup>

##### 가. 세수실적

캐나다의 2011~12년 세수실적 규모는 CAD 1,994억으로 2010~11년 대비 CAD 79억 증가하여 4.1%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1~12년 개인소득세의 경우 CAD 1,192억으로 전체 세수의 59.9%를 차지하여 가장 주된 수입원으로 나타났으며, 2010~11년 대비 약 CAD 58억달러, 5.1% 증가하였다.



주: GST(Goods and Services Tax)

자료: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Annual Financial Report」, FY 2011-2012

44) 캐나다 국세청(www.cra-arc.gc.ca) 참조

&lt;표 IV-36&gt; 캐나다의 세수실적 비교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

	2010-11	2011-12	Net Change	
	금액	금액	전년 대비 증감액	전년 대비 증감률
소득세(Income Tax)	148,563	156,271	7,708	5.2
- 개인(Personal)	113,457	119,269	5,812	5.1
- 법인(Corporate)	29,969	31,702	1,733	5.8
- 비거주자(Non-resident)	5,137	5,300	163	3.2
기타(Other Taxes and Duties)	42,903	43,106	203	0.5
- GST(Goods and Services Tax)	28,379	28,370	-9	0.0
- 에너지세(Energy Taxes)	5,342	5,328	-14	-0.3
- 수입관세(Customs Import Duties)	3,520	3,862	342	9.7
- 기타소비세 (Other Excise Taxes and Duties)	5,662	5,546	-116	-2.0
합계	191,466	199,377	7,911	4.1

자료: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Annual Financial Report」, FY 2011-2012

#### 나. 과세구간 및 소득세율

캐나다의 소득세율은 과세소득구간에 따라 15~29%의 4단계 초과 누진세율 체계로 운용되고 있다. 캐나다는 매년 과세소득구간 및 소득세율 등을 조정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바, 2013년에는 세율 조정은 없었으나 2012년 대비 소득구간을 소폭 상향 조정할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7> 캐나다의 과세구간 및 소득세율(2012~13)

2012		2013	
과세소득구간	세율	과세소득구간	세율
~ CAD 42,707 이하	15%	~ CAD 43,562 이하	15%
CAD 42,708 ~ 85,414	22%	CAD 43,562 ~ 87,123	22%
CAD 85,415 ~ 132,406	26%	CAD 87,124 ~ 135,054	26%
CAD 132,406 초과 ~	29%	CAD 135,054 초과 ~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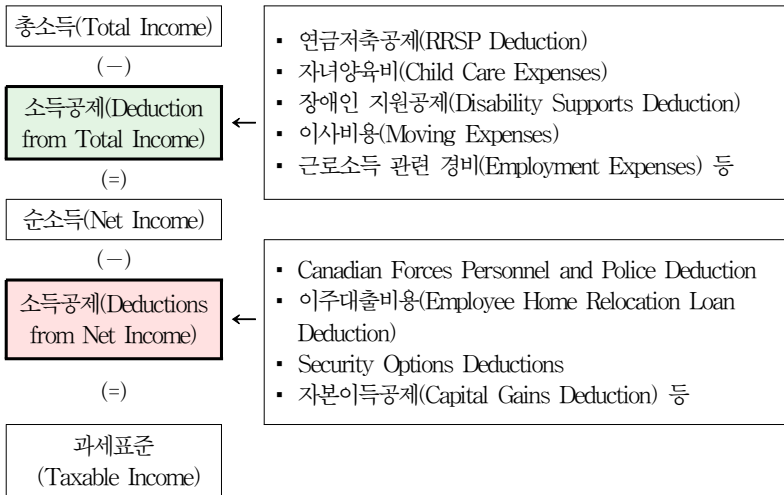
주: 연방소득세율(Federal Tax Rates)

자료: www.cra-arc.gc.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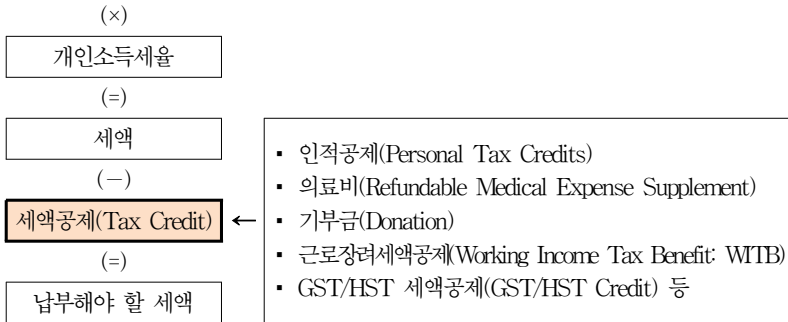
### 다. 소득세 과세체계

캐나다의 소득공제방식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득공제는 총소득에서 차감되는 연금저축공제, 자녀양육비공제, 근로소득 관련 경비 등과 순소득에서 차감되는 자본이득공제, 이주대출비용 등으로 나누어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 IV-38> 캐나다의 소득세 과세체계



<표 IV-38>의 계속



자료: 캐나다 소득세 신고서(Income Tax and Benefit Return, T1 GENERAL 2012) 참조

## 라. 소득세 공제제도의 특징

### 1) 단일세율 세액공제방식<sup>45)</sup>

캐나다는 인적공제, 의료비, 기부금 등의 항목을 소득공제방식이 아닌 단일세율 세액공제방식으로 공제하고 있다. 즉, 자녀양육경비, 연금불입금액 등은 소득공제방식으로 공제되는 반면, 인적공제, 의료비, 장애인, 기부금 등은 세액공제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세액공제방식은 개인의 한계세율과는 관계없이 공제대상금액에 소득세 누진세율 중 가장 낮은 세율인 15%를 적용하여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2013년 기준 기본적인 인적공제금액을 계산해 보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이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CAD 11,038에 15% 세율을 적용하여 CAD 1,656이 된다. 반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CAD 11,038에서 배우자의 총소득을 차감한 후 15% 세율을 적용하여 배우자 공제금액을 산출하게 된다. 의료비공제는 기준<sup>46)</sup>을 초과하는 적격

45) <http://www.taxtips.ca/nonrefundablecredits.htm> 참조

46) 순소득(net income)의 3% 및 CAD 2,152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 금액(2013년 기준)

의료비 지출금액에 15%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고, 기부금은 순소득(Net Income)의 75%를 한도로 하여 기부금 CAD 200까지는 세액공제율 15%, CAD 200 초과분에 대하여는 29%를 적용하고 있다.<sup>47)</sup>

## 2) 저소득 계층을 위한 환급가능 세액공제제도

### 가) Canada Child Tax Benefit(CCTB)<sup>48)</sup>

1998년 캐나다 Canada Child Tax Benefit(CCTB)는 1993년 도입된 Child Tax Benefit(CTB) 제도가 대체된바, 해당 제도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주어지는 혜택으로 환급형 세액공제제도(Refundable Credit)로 운영되고 있다. 캐나다의 CCTB는 중산층 이하 자녀를 가진 가구 및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캐나다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 가구 또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가진 가구에는 기본급여(Base Benefit)에 추가적으로 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NCBS) 및 CDB(Child Disability Benefit)를 지급한다.

CCTB 급여는 자녀 수, 연령, 거주 지역, 직전연도 가구순소득, 자녀의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본급여금액을 결정하며, 점증구간 없이 평탄구간 및 점감구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3-14년 기준으로 기본급여(Base Benefit)는 자녀 1인당 연 CAD 1,433(월 CAD 119.41)을 지급하며,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연 CAD 100(월 CAD 8.33)씩 추가 지급한다.<sup>49)</sup> 특히, 가구순소득이 CAD 43,561 초과시에는 기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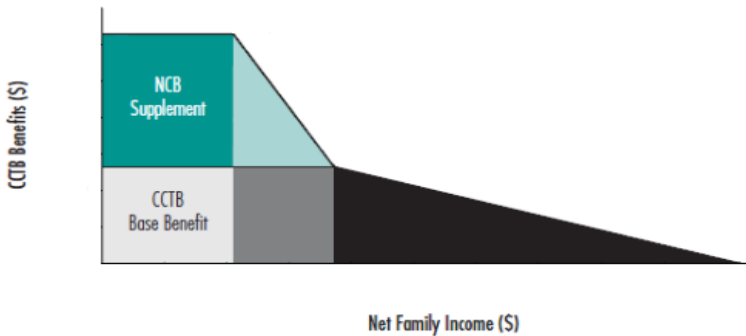
47) <http://www.cra-arc.gc.ca/chrts-gvng/dnrs/svngs/menu-eng.html>

48) <http://www.cra-arc.gc.ca/cctb/>

49) Alberta 주정부는 CCTB 기본급여로 7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에 연 CAD 1,320(월 CAD 110.00), 7~11세 아동가구는 연 CAD 1,409(월 CAD 117.41), 12~15세 아동가구는 연 CAD 1,577(월 CAD 131.41), 16~17세 아동가구는 연 CAD 1,670(월 CAD 139.16)을 지급하는 규정을 설정하고 있음. 즉, Alberta 주는 캐나다 연방정부와 분리되어 운영되므

여가 감소하는바, 자녀가 1명일 경우에는 초과하는 가구순소득의 2%씩 감소하고,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초과하는 가구순소득의 4%씩 감소하게 된다. 한편, 가구순소득이 <표 IV-39>에 제시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 기본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그림 IV-10] CCTB와 NCBS 급여체계 모형



주: 기본급여(Base Benefit) 및 NCB(National Child Benefit)와 함께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추가적인 CDB(Child Disability Benefit) 급여 수령이 가능함

자료: HRSDC, The National Child Benefit Progress\_Report 2008, 2013

<표 IV-39> CCTB 적용시, 소득 한도(2013-1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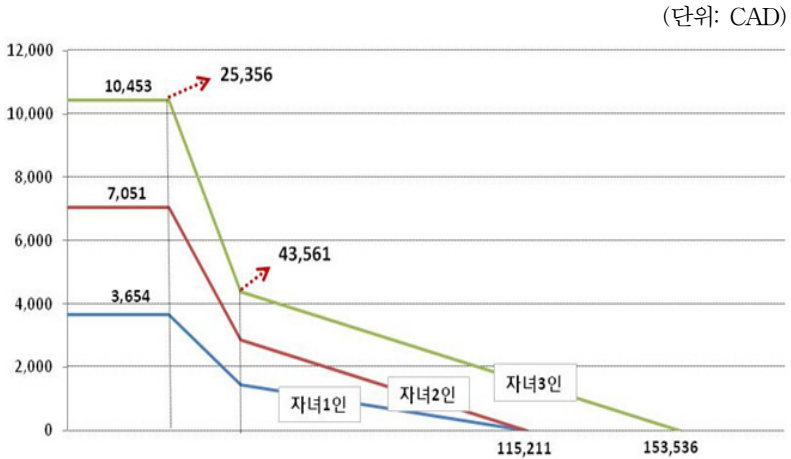
자녀 수	금액(CAD)
1인	\$115,211
2인	\$115,211
3인	\$153,536

자료: [www.cra-arc.gc.ca](http://www.cra-arc.gc.ca)

로, Alberta 주 자체 정부에서 자녀 나이별로 CCTB 기본급여를 설정하고 있음

특히, NCB(National Child Benefit)는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소득이 CAD 25,356 미만일 때 최대지급을 받게 된다. 2013-14년 기준으로 NCB 급여는 연단위로 첫째 자녀 CAD 2,221(월 CAD 185.08), 둘째 자녀 CAD 1,964(월 CAD 163.67), 셋째 자녀부터 1인당 CAD 1,869(월 CAD 155.75) 추가하여 지급한다. 가구순소득이 CAD 25,356 초과시 자녀가 1명일 경우에는 초과하는 가구순소득의 12.2%씩 감소하고, 자녀가 2명이면 초과하는 가구순소득의 23%씩 감소하며,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초과하는 가구순소득의 33.33%씩 급여가 감소한다.

[그림 IV-11] CCTB와 NCBS 모형(2013~2014년)



마지막으로 CDB(Child Disability Benefit)는 2013-14년 기준으로 장애를 가진 자녀 1인당 연 단위 최대 CAD 2,626(월 CAD 218.83)까지 추가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다만, 가구순소득이 자녀 수에 따른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여가 감소하는바, 점감기준 소득은 자녀 1인일 경우 CAD 43,561, 자녀 2인은 CAD 43,522 등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자녀 1인의 경우 2%, 자녀 2인 이상인 경우 한도 초

과분의 4%씩 급여액이 감소하게 된다.

나) Working Income Tax Benefit(WITB)<sup>50)</sup>

캐나다의 Working Income Tax Benefit(WITB)는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로,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와 유사한 제도이나 사회보장체계 내에서 사회부조 프로그램의 하나로 운영 중이다. 근로소득(Working Income)이 있는 근로빈곤층 중 독신(Individuals)과 가구(Families)의 세금을 경감하고 노동 참여에 대한 유인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07년 도입되었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07년에는 CAD 3,000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20%의 급여 증가율을 적용하였으며, 단독가구는 최대 CAD 500,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족가구의 경우에는 CAD 1,000 까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과세연도 2009년에 급여증가율은 20%에서 25%로, 급여액은 CAD 510에서 CAD 925로 인상되었고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캐나다의 WITB는 저소득 개인 또는 가구의 소득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제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WITB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기본급여와 장애요소를 고려한 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WITB 운영체계의 경우, 순소득(Net Income)<sup>51)</sup>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급여액이 감소하는 형태로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 미국의 EITC 제도와 마찬가지로 점증-평탄-점감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3 과세연도 기준으로 독신은 순소득이 CAD 3,000 초과 6,956 이하의 점증구간에 해당 시 25% 급여증가율을 적용하며, CAD 6,956 초과 11,231 이하의 평탄 구간에는 최대 CAD 989를 지원받으며, CAD 11,231 초과 17,824 이하의 점감구간은 15% 감소율이 적용되고 있다.

50) <http://www.cra-arc.gc.ca/bnfts/wtb/menu-eng.html>

51) 순소득(Net Income)은 총소득(Total Income)에서 각종 공제가능한 금액(allowable deductions)을 차감한 금액임

&lt;표 IV-40&gt; 캐나다 WITB의 급여체계(2007~2013년)

(단위: CAD, %)

	점증구간	급여 증가율	최대 급여액	평탄구간	점감구간	급여 감소율
2007 독신	3,000~5,500	20	500	5,500~9,500	9,500~12,833	15
가구	3,000~8,000	20	1,000	8,000~14,500	14,500~21,167	15
2008 독신	3,000~5,500	20	510	5,500~9,681	9,681~13,081	15
가구	3,000~8,450	20	1,900	8,450~14,776	14,776~21,569	15
2009 독신	3,000~6,700	25	925	6,700~10,500	10,500~16,667	15
가구	3,000~9,720	25	1,680	9,720~14,500	14,500~25,700	15
2010 독신	3,000~6,724	25	931	6,724~10,563	10,563~16,770	15
가구	3,000~9,760	25	1,690	9,760~14,587	14,587~25,854	15
2011 독신	3,000~6,776	25	944	6,776~10,711	10,711~17,004	15
가구	3,000~9,856	25	1,714	9,856~14,791	14,791~26,218	15
2012 독신	3,000~6,880	25	970	6,880~11,011	11,011~17,478	15
가구	3,000~10,048	25	1,762	10,048~15,205	15,205~26,952	15
2013 독신	3,000~6,956	25	989	6,956~11,231	11,231~17,824	15
가구	3,000~10,188	25	1,797	10,188~15,509	15,509~27,489	15

주: 1) Alberta, British Columbia, Nunavut, Quebec 주를 제외한 캐나다 대부분  
 주의 주 기준

2) 가구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한 부모인 경우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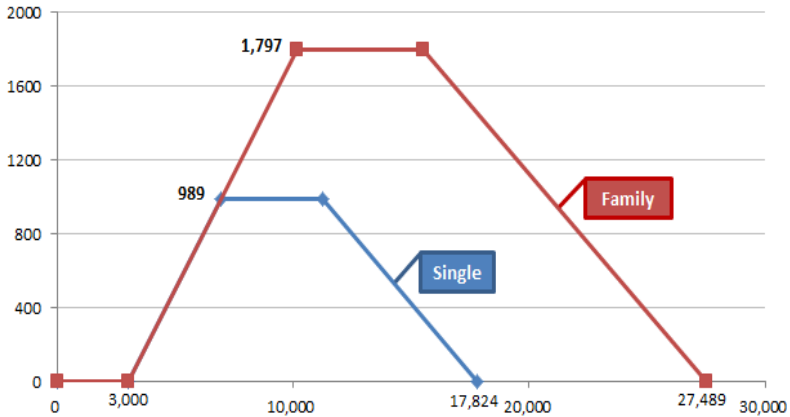
자료: <http://www.taxtips.ca>

[http://www.cra-arc.gc.ca/bnfts/wtb/fq\\_pymnts-eng.html](http://www.cra-arc.gc.ca/bnfts/wtb/fq_pymnts-eng.html)

WITB는 근로소득(Working Income)이 CAD 3,000을 초과하고 기타 적용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서(Income Tax and Benefit Return)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급여액은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급여(Basic WITB)와 추가급여(WITB Supplement)로 구분되는데, 추가급여는 장애인 세액공제(Disability Tax Credit)<sup>52)</sup> 적용 대상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52) 환급불가능한 세액공제로, WITB 요건을 충족하고 장애인세액공제(Disability Tax Credit)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장애인 추가급여(disability supplement)를 적용받기 위한 최저기준금액은 CAD 1,150임

[그림 IV-12] 캐나다 WTB 모형(2013년 기준)



한편, 캐나다의 WTB 제도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자영업자에 대해 근로소득자와 동일한 신청자격 및 소득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WTB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근로소득(Working Income)은 당해 과세 연도에 고용 또는 사업(손실 제외)으로부터 발생한 개인 및 가구의 소득 합계액을 의미한다.

#### 다) GST/HST 세액공제(GST/HST Credit)<sup>53)</sup>

캐나다의 GST/HST 세액공제는 저소득자 및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간접세가 가진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각종 물품 구입시 기납부한 세금인 Goods and Services Tax(GST) 및 Harmonized Sales Tax(HST)를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GST/HST 세액공제의 적용 여

53) <http://www.cra-arc.gc.ca/E/pub/tg/rc4210/rc4210-e.html>

캐나다에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세금으로 GST(goods and Services Tax)와 PST(Provincial Sales Tax)가 있음. 대부분의 상품 구매시에 PST 8%와 GST 6%, 합계 14%가 물품의 구매가에 추가되어 부과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역에선 이를 통합하여 HST(Harmonized Sales Tax)라는 명목으로 일괄하여 15%를 징수기도 함

부 및 공제금액은 자녀의 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산정된 공제금액은 신고한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의 7월, 10월, 그 다음해의 1월, 4월에 걸쳐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기혼 가구의 연간 순수입이 CAD 49,000을 초과할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반면 자녀가 없는 미혼가구를 제외한 가구당 연간 순수입이 CAD 8,439 이하일 경우에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환급액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환급액은 감소한다. 한편, 자녀가 없는 미혼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액공제액은 “점증-평탄-점감”의 형태로 환급되며, CAD 15,000~33,884 구간에 속하는 가구는 최대 CAD 397을 수령하게 된다.

<표 IV-41> 캐나다의 GST/HST 공제(2012-13)

(단위: CAD)

자녀 수	미혼		기혼	
	최대환급액	소득한도	최대환급액	소득한도
0명	397	41,500	520	44,000
1명	657	47,000	657	47,000
2명	794	49,000	794	49,000
3명	931	52,400	931	52,400
4명	1,068	55,000	1,068	55,000

자료: [www.cra-arc.gc.ca](http://www.cra-arc.gc.ca)

## 5. 뉴질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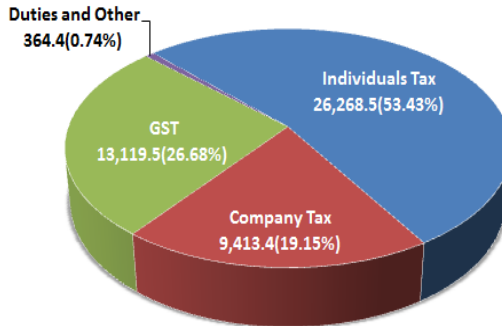
### 가. 세수실적

2012년 뉴질랜드의 세목별 세수실적의 경우, 개인소득세(Individual Tax) 수입이 약 NZD 26.3억으로 국세청 총세수입의 53.43%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다. 이어서 부가가치세인 GST는 약 NZD

13.1억으로 26.68%, 법인세(Company Tax)는 약 NZD 9.4억으로 19.1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3] 뉴질랜드의 세목별 세수실적(2012년 기준)

(단위: 십만 뉴질랜드 달러, %)



자료: [www.ird.govt.nz](http://www.ird.govt.nz)

#### 나. 과세구간 및 소득세율

뉴질랜드의 소득세 과세구간은 4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과세구간별 평균 소득세율 및 근로소득자의 평균 원천징수 세율은 <표 IV-42>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납세코드에 따라 세율이 변경되므로, <표 IV-42>에 제시된 소득세율은 평균치이다. 즉, 뉴질랜드 납세자는 모두 소득세율 산출을 위해 서식 330에 따라 각자의 납세코드(Tax code)를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높은 세율로 과세된다. 납세코드는 총 15개로 구분되는바, 소득유형, 거주자 여부, 소득규모, 학자금 대출 상환 여부, 정부보조금 수취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

<표 IV-42> 캐나다의 GST/HST 공제(201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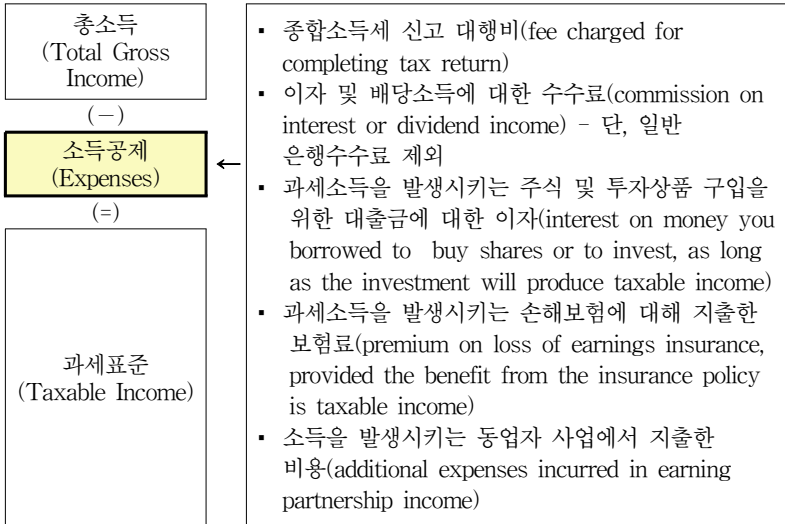
2012			2013		
과세소득 구간(NZD)	세율 <sup>54)</sup>	원천징수 세율 <sup>55)</sup>	과세소득 구간(NZD)	세율	원천징수 세율
~ \$14,000 이하	10.5%	12.54	~ \$14,000 이하	10.5%	12.2
\$14,001 ~ 48,000	17.5%	19.54	\$14,001 ~ 48,000	17.5%	19.2
\$48,001 ~ 70,000	30%	32.04	\$48,001 ~ 70,000	30%	31.7
\$70,000 초과 ~	33	35.04	\$70,000 초과 ~	33%	34.7
납세코드 미신고자	45%	47.04	납세코드 미신고자	45	46.7

자료: www.ird.govt.nz

다. 소득세 과세체계

뉴질랜드의 소득세 과세체계는 <표 IV-43>과 같으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방식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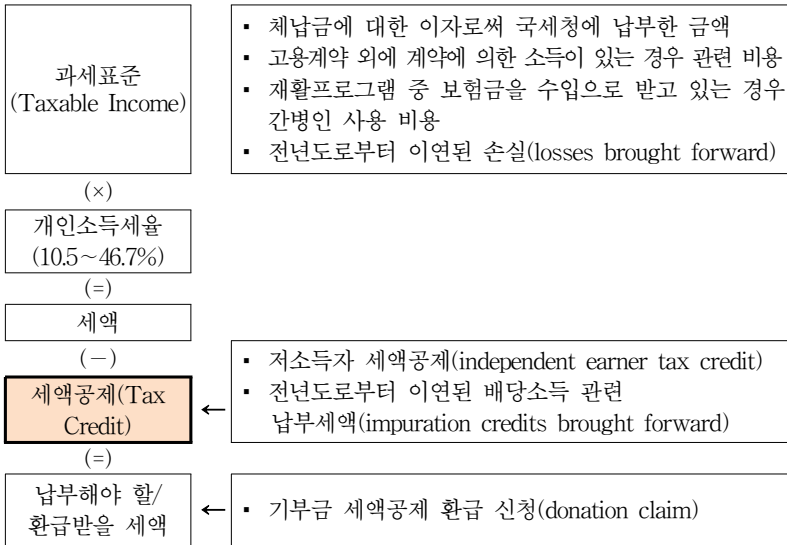
<표 IV-43> 뉴질랜드의 소득세 과세체계



54) 종합소득신고자의 개인소득세율

55) 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율로서 상해보험료 포함

<표 IV-43>의 계속



자료: 뉴질랜드 소득세 신고서(www.ird.govt.nz)

### 라. 소득세 공제제도의 특징

특정 소득<sup>56)</sup>이 개인소득의 전부인 납세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소득공제 항목이 있더라도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소득공제 항목은 대부분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 및 금융상품 관련 투자소득, 고용계약 외의 계약상의 근로 및 저작권 제공으로 인한 소득 등의 발생으로 관련 비용 청구가 필요한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대표적인 공제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세액공제(Independent Earner Tax Credit: IETC)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거주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56) 일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로서 연봉 및 월급 형태로 받는 소득(salary or wage earner), 선거도우미 관련 소득(election day services), 비정기적 농업소득(casual agricultural work), 고용인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형태의 소득(commissions from the same employer)

본인 및 배우자가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을 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연금수당, 참전용사수당 등 정부보조금은 물론 해외 국가로부터 정부보조금을 일체 받지 않아야 한다. 세액공제금액은 2013년 기준 1개월에 NZD 43으로 과세표준이 NZD 24,000~48,000 구간에 존재하여야 하며, NZD 44,000 이상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공제율이 13%로 감소한다.

기부금 관련 세액공제(donation claim)는 종합소득세신고서상에 기입하지 않고, 별도의 서식(IR526) 제출을 통해 해당 세액을 환급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일반 근로소득자에게도 적용하므로 종합소득세신고서상에 관련 내용을 기입하지 않고, 해당되는 납세자는 모두 별도의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단체에 납부한 기부금에 한하여 세액공제금액에 대한 환급 신청이 가능한바, 기부금 관련 세액공제는 최소한 NZD 5 이상 기부금에 대해 적용되며, 총기부금의 33.33%와 과세소득의 33.33% 중 적은 금액을 신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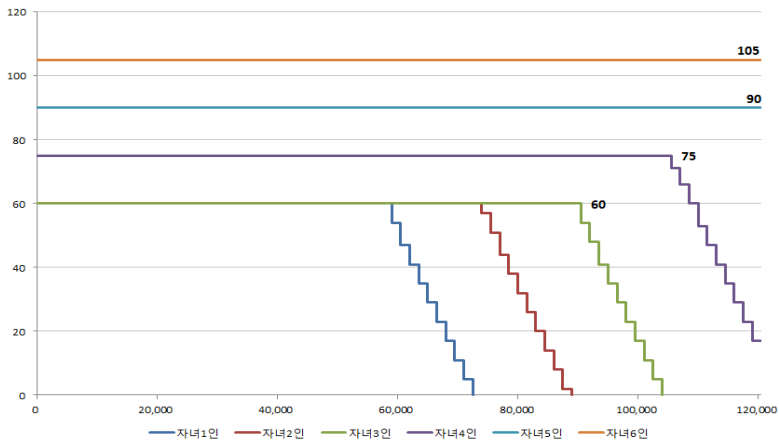
뉴질랜드의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는 기존의 가족보조(Family Assistance)제도가 2004년 다음의 내용으로 재구성되었는바, 가족구성원의 합산소득규모 및 소득의 종류, 부양자녀 수 및 나이에 따라 받는 4가지 중 적용가능한 지원제도의 종류가 결정되며, 중복수급이 가능하다. 첫째, Family Tax Credit(FTC)는 19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최소근로요건이 없으므로 우리나라의 CTC와 유사하다. FTC의 최대수령액은 자녀의 수에 제한은 없으나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등지원되며, 연간 가구소득이 NZD 36,350 이후로 급여가 감소된다. 둘째, In-work Tax Credit(IWTC)로 기존의 Child Tax Credit가 근로시간요건을 포함한 In-Work Tax Credit로 대체되었으며, 우리나라의 EITC와 유사하다. 다른 정부지원<sup>57)</sup>을 받지 않고 19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함과 동시에 매주 일정시간 근로에

57) an income-tested benefit, a student allowance, or a parent's allowance

종사하는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IWTC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IWTC 수령액은 19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자녀 유무, 최소 근로시간 조건의 충족 여부, 연간 세전 가족소득 및 자녀 수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IWTC 급여를 수령하기 위한 한도소득이 존재하며, 자녀 수에 따른 한도소득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IWTC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셋째, Minimum Family Tax Credit(MFTC)는 19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의 연간 소득이 세후 NZD 22,724<sup>58)</sup>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1주당 최대 NZD 437<sup>59)</sup>의 세후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마지막으로 Parental Tax Credit(PTC)는 자녀 출생 후 8주간 지급하는 것으로 연간 세전 소득과 부양자녀의 수·나이, 연간 출생한 자녀의 수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는데, 주당 최대 NZD 150까지 지급하며, 가구 소득이 증가할수록 급여액은 점차 감소한다.

[그림 IV-14] 뉴질랜드 IWTC 모형(2013-14년 기준)

(단위: NZD)



- 주: 1. 최소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한 가구에 지급하며, 수급금액은 1주당 금액기준임  
2. 가구소득은 연간기준임

58) 2013년 기준 세전 NZD 26,356

59) 2013-14년 기준

## 6. 요약 및 비교

## 가. GDP 대비 세수비중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비해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그리고 법인세를 제외한 주요 세목의 세수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2010년 기준 3.6%로 OECD 평균 8.4%에 비하여 4.8%p 크게 낮게 나타났으나, 법인세는 한국이 3.5%로 OECD 평균 2.9% 대비 0.6%p 높은 수준이다. 또한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각각 19.3%, 25.1%로 OECD 회원국 34개국의 평균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24.6%, 33.8%와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는 각각 5.3%p, 8.7%p 낮게 나타났다.

&lt;표 IV-44&gt; 주요국의 GDP 대비 세수비중(2010년 기준)

(단위: %)

	조세부담률 <sup>1)</sup>	국민부담률 <sup>2)</sup>	소득과세 <sup>3)</sup>	개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 가치세
한국	19.3	25.1	7.1	3.6	3.5	4.4
미국	18.5	24.8	10.8	8.1	2.7	0.0
호주	25.6	25.6	14.6	9.9	4.8	3.4
영국	28.2	24.8	13.1	10.0	3.1	6.5
캐나다	26.3	31.0	14.5	10.8	3.3	3.7
뉴질랜드	31.5	31.5	16.9	11.9	3.8	9.7
OECD 평균	24.6	33.8	11.3	8.4	2.9	6.6

주: 1) Total tax revenue (excluding social security) as percentage of GDP

2) Total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

3) Taxes on income, profits and capital gains as percentage of GDP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 나. 공제제도 규모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총소득(Total Income) 대비 각종 소득공제가 차지하는 비율을 서로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각종 소득공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소득공제로 인한 혜택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 대부분은 자녀가 있거나 기혼가구가 받는 공제혜택이 독신자보다 크게 나타나며, 홑벌이 및 맞벌이 또는 맞벌이 중 자녀 유무에 따른 소득공제 규모는 국가마다 상이하게 나타났다. 총소득 대비 소득공제비율은 한국과 미국에서는 맞벌이 가구 중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에 크게 나타났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은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IV-45> OECD 주요국의 총소득<sup>1)</sup> 중 소득공제<sup>2)</sup> 비율

(단위: %)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뉴질랜드	OECD 평균
독신 무자녀	43.4	20.5	22.6	26.8	16.1	0.0	0.0	18.7
홑벌이 자녀 <sup>2인</sup>	60.3	56.9	22.6	26.8	15.9	0.0	0.0	27.0
맞벌이 <sup>3)</sup> 자녀 <sup>2인</sup>	64.7	42.7	33.9	26.8	17.0	0.0	0.0	35.5
맞벌이 <sup>3)</sup> 무자녀	55.0	30.7	33.9	26.8	17.3	0.0	0.0	29.8

주: 1) 평균임금소득(Average Wage)의 100%

2) Standard Tax Allowances: Basic allowance, Married or head of family, Dependent children, Deduction for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nd income taxes, Work-related expenses 등

3) 주된 소득자: 평균임금소득의 100%, 2차소득자: 평균임금소득의 33%

자료: OECD, Taxing wages 2013

#### 다. 소득세 과세체계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의 소득세 과세체계를 우리나라의 소득세 체계와 비교해 본 결과, <표 IV-4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소득세 과세체계 흐름도는 대부분 국가에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소득세 공제제도는 과세표준 계산시 차감되는 소득공제와 세율 적용 후 산출세액을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로 구분되어 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6> 각국의 소득세 과세체계 비교

<한국>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총수입금액 (-)	총소득(Gross Income) (-)	총소득 (Total Income) (-)	총소득 (Total Income) (-)	총소득 (Total Income) (-)	총소득(Total Gross Income) (-)
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Deduction for AGI) (=)	면제소득 (Exempt Income)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Deduction from Total Income) (=)	소득공제 (Expenses) (=)
소득금액 (-)	조정 후 총소득 (Adjusted Gross Income : AGI) (-)	과세대상소득 (Assessable Income: AI) (-)	과세대상소득 (-)	순소득(Net Income) (=)	순소득(Net Income) (=)
소득공제 (=)	소득공제 (Deduction from AGI) (=)	소득공제 (Deduction) (=)	소득공제 (Deduction) (=)	소득공제(Deductions from Net Income) (=)	소득공제(Deductions from Net Income) (=)
과세표준 (×)	과세표준 (Taxable Income) (×)	과세표준 (Taxable Income) (×)	과세표준 (Taxable Income) (×)	과세표준 (Taxable Income) (×)	과세표준 (Taxable Income) (×)
초과누진세율 (=)	개인소득세율 (=)	개인소득세율 (=)	개인소득세율 (=)	개인소득세율 (=)	개인소득세율 (=)
산출세액 (-)	세액 (-)	세액 (-)	세액 (-)	세액 (-)	세액 (-)
세액공제·감면 (=)	세액공제 (Tax Credit) (=)	세액공제 (Tax Offsets) (=)	세액공제 (Tax Credit) (=)	세액공제 (Tax Credit) (=)	세액공제 (Tax Credit) (=)
결정세액	납부해야 할 세액	납부해야 할 세액	납부해야 할 세액	납부해야 할 세액	납부해야 할 세액

라. 공제제도 방식

<표 IV-4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조사대상 6개국 간의 소득세 공제제도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모든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 항목을 소득공제방식으로 공제하고 있어 소득공제방식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아 소득세 공제제도가 과도하게 소득공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액공제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미국, 영국, 호주 등은 공제항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7> 소득세 공제방식 국제비교

공제제도		한국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인적공제	본인공제	소득공제	소득공제	소득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
	배우자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부양가족공제				-		
	고령자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		
	장애인가공제				-		
특별공제	보험료	소득공제	-	환급형 세액공제	-	-	소득공제 <sup>5)</sup>
	의료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	세액공제	-
	교육비		소득공제 <sup>1)</sup> (세액공제)	-	-	-	-
	주택대출이자		소득공제 <sup>1)</sup> (세액공제)	-	-	-	-
	기부금		소득공제	소득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연금보험		소득공제 <sup>1)</sup> (세액공제)	- <sup>3)</sup> (세액공제)	소득공제 <sup>3)</sup> (세액공제)	소득공제 <sup>4)</sup> (세액공제)	-
	자녀양육		세액공제 <sup>2)</sup>	세액공제 <sup>2)</sup>	세액공제 <sup>2)</sup>	세액공제 <sup>2)</sup>	-

## &lt;표 IV-47&gt;의 계속

- 주: 1) 일반적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방식으로 공제되나, 기준소득금액 이하이면 소득공제 또는 비환급형 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 가능  
 2) 기준소득금액 이하 자에게만 환급가능 세액공제 적용(즉, 고소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3) 기준소득금액 이하이면 기여금 중 일부를 세액환급  
 4) 일반적인 개인연금 기여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방식으로 공제. 다만, 고용보험법령 및 캐나다 연금 계획(Canada Pension Plan) 등에 따라 납입하는 기여금에 대해서는 비환급형 세액공제방식으로 공제  
 5) 과세소득을 발생시키는 손해보험에 대해 지출한 보험료만 해당함  
 자료: ibfd, 각 국 국제청 홈페이지

또한, 각 국가들은 공제방식을 통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근 소득공제방식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거나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소득공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소득규모 이하 개인에게 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하게 허용함으로써 소득공제방식의 역진적인 성격을 보완하고 있다. 한편, 영국·호주·캐나다는 주로 소득규모와 무관하게 공제대상금액에 단일세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lt;표 IV-48&gt; 세액공제방식의 유형 및 장단점

	미국 방식	영국·호주·캐나다 방식
적용방법	소득공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소득규모 이하 개인에게 세액공제방식의 선택을 허용하게 함으로써 소득공제방식이 가진 역진적인 성격 보완	공제대상금액에다 일률적인 세율을 곱하여 세액공제하는 방식으로 최고 및 최저 한계 세율 사이에서 적용세율 결정
세금공제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소득층: 현재 얻고 있는 세금공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li> <li>· 저소득층: 소득공제방식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대적인 피해를 세액에서 직접 공제하여 주기 때문에 현재보다 세금공제 혜택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소득층: 현재보다 세금공제 혜택 감소</li> <li>· 저소득층: 현재보다 세금공제 혜택 증가</li> </ul>

&lt;표 IV-48&gt;의 계속

	미국 방식	영국·호주·캐나다 방식
장점	고소득자들의 조세저항 적음	추가적인 재정지출 없이 소득 재분배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단점	저소득자들이 소득공제방식에서 받고 있는 상대적인 피해를 추산해서 이를 보전해 줘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원 필요	고소득자들의 세금공제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소득층에서 불만을 가질 수 있음

#### 마. 저소득층을 위한 공제제도

고소득층에게 편중되어 있는 세제혜택을 축소하고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국은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자세한 내용은 <표 IV-49>에 제시되어 있다. 많은 OECD 국가들이 누진세율체계하에서 납세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적용받게 하기 위하여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저소득 가구가 충분한 과세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제를 통한 혜택을 전부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득이전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환급형 세액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호주·영국은 주요 공제항목의 경우 고소득계층에게 적용되는 공제금액을 감소 또는 제한하는 Phase-out Rule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영국과 호주에서는 중산층 이하 가구의 퇴직연금 불입을 장려하기 위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일정 한도 이내에서 세금을 환급하여 주고 있다.

<표 IV-49> 주요국의 운영사례 요약

유형 국가	고소득 계층의 공제금액 제한	단일세율 세액공제방식	저소득 계층을 위한 환급가능 세액공제제도 <sup>4)</sup>	저소득 계층을 위한 퇴직연금가입 장려정책	기타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Y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목별공제<sup>1)</sup> 및 인적공제<sup>2)</sup> 금액 제한<sup>3)</sup></li> <li>- 교육비 공제</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Yes<sup>5)</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를 가진 저소득층 또는 중산층 가구를 위해 CTC 제도 운영</li> <li>-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EITC 제도 운영</li> </ul> </li> </ul> <p>*근로소득 요건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Y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개인연금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저축세액공제제도 운영<sup>10)</sup></li> <li>- 비환급형 세액공제제도</li> <li>- 연간 USD 1,000 한도</li> </ul> </li> </ul>	-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Y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 연로자 및 연금수급자 세액공제, 고령근로자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Y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비 세액공제: ATI 한도에 따라 초과 의료비의 10% 또는 20%</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Yes<sup>6)</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를 가진 중산층 이하의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FTB 제도 운영</li> <li>-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WC 제도 운영</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Y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퇴직연금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퇴직연금공동분담 제도 운영</li> <li>- 환급가능 세액공제제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적공제: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금액 점감</li> <li>• 0% 세율구간 및 저소득층 세액공제 규정으로 인해 연소득이 AUD 6,000 이하이면 소득세를 내지 않음</li> </ul>

<표 IV-49>의 계속

유형 국가	고소득 계층의 공제금액 제한	단일세율 세액공제방식	저소득 계층을 위한 환급가능 세액공제제도 <sup>4)</sup>	저소득 계층을 위한 퇴직연금가입 장려정책	기타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Y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공제</li> <li>- 부부공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Y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부공제: 공제대상금액에 소득세 최저세율인 10% 적용</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Yes<sup>7)</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를 가진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CTC 제도 운영</li> <li>- 저소득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를 위해 WTC 제도 운영</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Y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금이 없어도 자신타입하는 개인연금 기여금에 대해 연간 GBP 720까지 세액 환급 가능</li> <li>• 환급가능 세액공제제도</li> </ul> </li> </ul>	-
캐나다	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Y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적공제, 의료비, 기부금 등: 공제대상금액에 개인의 소득세 최저세율인 15% 적용</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Yes<sup>8)</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산층 이하 자녀의 가구를 위해 CCTB 제도 운영</li> <li>-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WITB 운영</li> <li>-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GST 및 HST 환급</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대상 가족의 소득이 증가하면 이에 반비례하여 배우자 공제 또는 부양가족 공제금액 감소</li> </ul>

<표 IV-49>의 계속

유형 국가	고소득 계층의 공제금액 제한	단일세율 세액공제방식	저소득 계층을 위한 환급가능 세액공제제도 <sup>4)</sup>	저소득 계층을 위한 퇴직연금가입 장려정책	기타
뉴질 랜드	n/a	n/a	• Yes <sup>9)</sup> - WFTC 운영 ① FTC: 자녀양육비지원 ② IWTC: 근로장려세제 ③ MFTC: 생계소득지원 ④ PTC: 자녀출생시 지원		

- 주: 1) 의료비, 주정부 및 지방정부 소득세 및 재산세, 주택담보 대출이자 및 투자이자, 기부금, 상해 및 절도손실 등  
 2) 개인공제(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공제(자녀 및 친척)  
 3) 2010~2012년간 폐지되었으나, 2013년 다시 적용  
 4) 보조금이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정부가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세액공제제도  
 5) Earned Income Credit, Child Tax Credit  
 6) Family Tax Benefit, Working Credit  
 7) Working Tax Credit, Child Tax Credit  
 8) Canada Child Tax Benefit, 저소득 가구 또는 장애를 가진 자녀를 가진 가구에는 기본급여에다 추가하여 NCB(National Child Benefit) 및 CDB(Child Disability Benefit) 지급, Working Income Tax Benefit, Goods and Services Tax(연방정부 소비세), Harmonized Sales Tax(연방정부 및 주정부가 세원을 갖고 있는 소비세)  
 9)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Family Tax Credit, In-work Tax Credit, Minimum Family Tax Credit, Parental Tax Credit  
 10) 저소득층 또는 중산층 가구가 401(k) 계획에 가입시, 기여금에 대한 소득공제, 저축세액공제, 고용주의 매칭자금 제공까지 삼중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V. 소득세 기초자료 분석 및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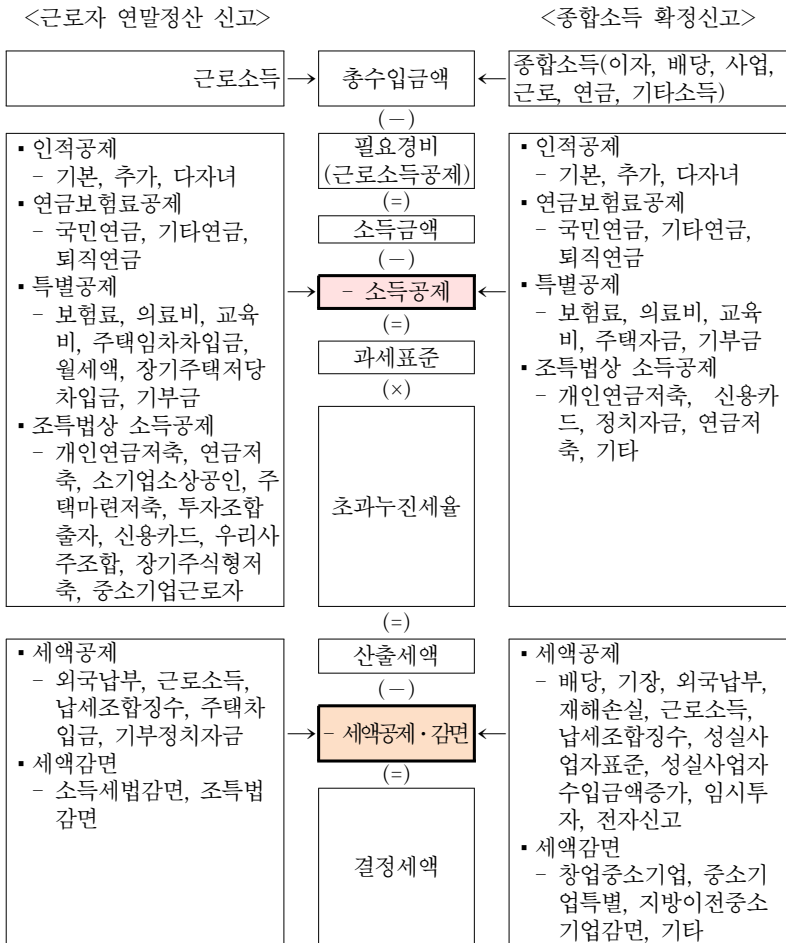
### 1. 분석대상 기초자료

본 연구는 공제제도로 인한 세금절감효과를 소득계층별로 살펴보기 위하여 『국세통계연보』의 소득세 통계자료 중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 현황 및 종합소득 확정신고 현황 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와 사업소득 등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자 간에 공제제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즉,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절차를 통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반면, 이외의 모든 경우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통하여 과세되고 있다. 따라서 공제제도에 따른 소득계층별 세금절감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근로자 및 사업자의 소득계층 간 공제제도로 인한 세금절감효과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국세통계연보』상 소득세 통계를 이용하여 과세표준, 총수입금액(총급여) 규모별로 각각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공제는 “소득 공제금액×한계세율”만큼 세금절감효과가 발생하며, 세액공제는 누진세율로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금액이 직접 차감되는바, 각각의 공제방식으로 인한 소득계층별 공제혜택을 산출하고자 한다. 둘째, 『국세통계연보』상 제공되는 통계는 전체 납세자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신고내역을 파악할 수 없으나 전반적인 소득양극화 현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소득계층별 공제액을 해당 공제의 신고인원으로 나눈 1인당 평균 경감세액을 산출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셋

제, 소득공제로 인한 1인당 경감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세율은 6~38%의 명목세율이 아닌 소득구간별 과세표준에서 산출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이용하기로 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현행 소득세제에서는 초과누진세율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율은 명목세율보다 작은 데 기인한다.

<표 V-1> 『국세통계연보』 제공 통계 현황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2

## 2. 분석결과

### 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대상 분석

#### 1) 소득공제제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의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기준으로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 금액 및 이를 통한 세금절감효과를 과세표준 및 총급여 규모별로 1인당 평균값으로 산출하여 각각 분석하였다. 또한, 소득공제는 공제금액에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한 만큼 세 부담이 감소되므로, 공제금액에 과세표준 규모별로 「과세표준 대비 산출세액 비율」을 적용하여 1인당 평균 경감세액을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과세표준 규모별 소득공제로 인한 세금절감효과를 살펴본 결과, <표 V-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과세표준이 증가할수록 1인당 평균 경감세액의 차이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공제제도는 소득공제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결정세액이 감소되므로 우리나라의 누진세율(6~38%) 구조하에서는 동일한 소득공제금액을 적용받더라도 소득계층별로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므로 공제혜택에 차이를 보이게 된다.

과세표준 규모별 소득공제로 인한 1인당 세금절감효과를 소득계층별로 비교해 본 결과, 과세표준 최하위구간과 최상위구간의 1인당 경감세액의 차이는 근로소득공제가 67.0배, 근로소득공제 이외 모든 소득공제가 49.4배로 나타났다. 한편, 총급여 규모별 소득공제로 인한 1인당 세금절감효과는 근로소득공제가 최대 94.1배,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공제가 최대 138.7배를 보여 과세표준 규모별 결과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표 V-2> 과세표준 규모별 소득공제로 인한 세금절감효과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기준, 2011년 귀속)

(단위: 원, 배수)

과세표준 규모별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이외의 소득공제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천만원 이하	569,397	1.0	453,630	1.0
1.2천만원 이하	690,535	1.2	674,133	1.5
3천만원 이하	1,172,444	2.1	1,363,454	3.0
4천만원 이하	1,645,860	2.9	2,224,185	4.9
4.6천만원 이하	1,790,300	3.1	2,461,739	5.4
6천만원 이하	2,089,400	3.7	2,990,072	6.6
7천만원 이하	2,488,596	4.4	3,572,761	7.9
8천만원 이하	2,748,564	4.8	3,856,060	8.5
8.8천만원 이하	2,959,544	5.2	4,059,648	8.9
1억원 이하	3,272,710	5.7	4,378,023	9.7
2억원 이하	4,489,777	7.9	5,665,280	12.5
3억원 이하	6,810,180	12.0	7,566,890	16.7
5억원 이하	9,322,592	16.4	9,509,598	21.0
10억원 이하	14,867,362	26.1	13,849,578	30.5
10억원 초과	38,155,320	<b>67.0</b>	22,395,350	<b>49.4</b>

주: 1) 1인당 경감세액 = 공제액 × 과표구간별 적용세율(=산출세액/과세표준) ÷ 신고인원

2) 각 구간 1인당 소득세 경감액과 최하위 계층의 1인당 소득세 경감액 대비 배수를 나타냄

1. 과세미달자(과세표준 0 이하) 제외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2

<표 V-3> 총급여 규모별 소득공제로 인한 세금절감효과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기준, 2011년 귀속)

(단위: 원, 배수)

총급여 규모별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이외의 소득공제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천만원 이하	369,892	1.0	169,200	1.0
1.5천만원 이하	464,715	1.3	199,605	1.2
2천만원 이하	562,643	1.5	277,090	1.6
3천만원 이하	639,268	1.7	437,551	2.6
4천만원 이하	872,590	2.4	858,127	5.1
4.5천만원 이하	1,074,937	2.9	1,289,622	7.6
6천만원 이하	1,300,923	3.5	1,844,275	10.9
8천만원 이하	1,642,542	4.4	2,561,358	15.1
1억원 이하	2,082,861	5.6	3,396,000	20.1
2억원 이하	3,058,152	8.3	4,843,954	28.6
3억원 이하	5,830,192	15.8	7,265,960	42.9
5억원 이하	8,277,683	22.4	9,193,280	54.3
10억원 이하	13,404,535	36.2	12,993,391	76.8
10억원 초과	34,794,051	<b>94.1</b>	23,465,964	<b>138.7</b>

주: 1) 1인당 경감세액 = 공제액 × 소득구간별 적용세율(=산출세액/과세표준) ÷ 신고인원

2) 각 구간 1인당 소득세 경감액과 최하위 계층의 1인당 소득세 경감액 대비 배수를 나타냄

1. 과세미달자(과세표준 0 이하) 제외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2

### 가) 인적공제

우리나라의 소득공제제도 중 인적공제는 납세자의 인적사항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하여 부양가족 현황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로 구성되어 있다. 인적공제는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본인 및 가족구성원에 따라

동일한 금액을 공제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누진세율의 영향으로 고 소득자들에게 소득공제혜택이 더 크게 나타나 수직적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 과세표준 규모별로 살펴본 1인당 세금절감효과는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공제가 최대 8.6배, 추가공제가 최대 6.8배, 다자녀추가공제가 최대 5.7배로 나타났으며, 인적공제 전체적으로는 최대 8.8배의 차이를 보였다.

<표 V-4> 과세표준 규모별 인적공제로 인한 세금절감효과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기준, 2011년 귀속)

(단위: 원, 배수)

과세표준 규모별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천만원 이하	186,353	1.0	151,631	1.0	84,429	1.0	75,987	1.0
1.2천만원 이하	244,358	1.3	191,575	1.3	103,081	1.2	74,798	1.0
3천만원 이하	453,757	2.4	348,524	2.3	165,164	2.0	113,719	1.5
4천만원 이하	685,871	3.7	517,890	3.4	219,183	2.6	144,817	1.9
4.6천만원 이하	763,882	4.1	576,648	3.8	241,790	2.9	152,310	2.0
6천만원 이하	929,010	5.0	700,761	4.6	280,698	3.3	169,700	2.2
7천만원 이하	1,067,896	5.7	812,584	5.4	316,522	3.7	189,537	2.5
8천만원 이하	1,113,831	6.0	852,711	5.6	334,397	4.0	200,845	2.6
8.8천만원 이하	1,146,599	6.2	879,681	5.8	346,636	4.1	212,614	2.8
1억원원 이하	1,208,146	6.5	926,865	6.1	373,223	4.4	227,616	3.0
2억원원 이하	1,440,589	7.7	1,101,783	7.3	455,512	5.4	286,496	3.8
3억원 이하	1,588,194	8.5	1,222,955	8.1	521,755	6.2	344,381	4.5
5억원 이하	1,643,059	8.8	1,276,818	8.4	548,110	6.5	355,535	4.7
10억원 이하	1,705,975	9.2	1,331,407	8.8	561,883	6.7	415,660	5.5
10억원 초과	1,636,377	<b>8.8</b>	1,303,077	<b>8.6</b>	574,893	<b>6.8</b>	434,846	<b>5.7</b>

주: 1) 1인당 경감세액 = 공제액 × 과표구간별 적용세율(=산출세액/과세표준) ÷ 신고인원

2) 각 구간 1인당 소득세 경감액과 최하위 계층의 1인당 소득세 경감액 대비 배수를 나타냄

1. 과세미달자(과세표준 0 이하) 제외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2

나) 연금보험료공제

연금보험료공제는 공적연금, 퇴직연금 등의 보험료를 납입시 공제 해 주는 제도로써 과세표준 규모별로 연금보험료공제로 인한 세금절감효과를 살펴본 결과, 최하위 계층인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하여 1인당 평균 경감세액의 차이가 국민연금의 경우 최대 13.1배, 국민연금을 제외한 공무원연금 등 기타연금이 최대 11.3배, 퇴직연금이 최대 13.4배로 나타났다. 납세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 금액만큼 공제혜택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높을수록 누진세율 체계하에서는 더 높은 소득공제혜택을 적용받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소득계층 간 수직적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

<표 V-5> 과세표준 규모별 연금보험료공제로 인한 세금절감효과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기준, 2011년 귀속)

(단위: 원, 배수)

과세표준 규모별	국민연금		기타연금		퇴직연금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천만원 이하	48,951	1.0	121,966	1.0	91,016	1.0
1.2천만원 이하	74,746	1.5	150,599	1.2	105,227	1.2
3천만원 이하	149,094	3.0	288,809	2.4	183,555	2.0
4천만원 이하	230,328	4.7	464,390	3.8	252,663	2.8
4.6천만원 이하	245,434	5.0	513,100	4.2	279,020	3.1
6천만원 이하	277,392	5.7	647,854	5.3	337,273	3.7
7천만원 이하	315,874	6.5	814,443	6.7	407,383	4.5
8천만원 이하	337,062	6.9	881,042	7.2	442,309	4.9
8.8천만원 이하	352,261	7.2	911,471	7.5	469,669	5.2
1억원 이하	376,149	7.7	970,241	8.0	505,055	5.5
2억원 이하	459,646	9.4	1,164,430	9.5	664,392	7.3
3억원 이하	531,737	10.9	1,377,936	11.3	781,657	8.6

&lt;표 V-5&gt;의 계속

과세표준 규모별	국민연금		기타연금		퇴직연금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5억원 이하	562,869	11.5	1,156,066	9.5	851,990	9.4
10억원 이하	597,283	12.2	911,419	7.5	1,219,269	13.4
10억원 초과	643,558	13.1	1,095,708	9.0	981,160	10.8

주: 1) 1인당 경감세액 = 공제액 × 과표구간별 적용세율(=산출세액/과세표준) ÷ 신고인원

2) 각 구간 1인당 소득세 경감액과 최하위 계층의 1인당 소득세 경감액 대비 배수를 나타냄

1. 과세미달자(과세표준 0 이하) 제외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2

#### 다) 특별공제

특별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특정 비용 지출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다른 소득공제에 비하여 소득이 증가할수록 공제혜택도 크게 증가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보험료, 의료비 및 기부금공제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최대 101.5배, 218.5배, 263.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고소득자들에게 세제상 혜택이 편중되고 있다. 보험료 및 의료비<sup>60)</sup>공제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시 한도금액이 있으나 본인 지출의 경우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 해당 비용에 상대적으로 지출이 높은 고소득자들에게 공제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것이다. 다만, 기부금공제의 경우에는 고소득자들의 기부문화 활성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한편, 교육비공제 및 장기주택저당차입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소득계층별로 1

60) 보험료: 건강 및 고용(한도 없음), 보장성(한도: 연 100만원), 장애인전용(한도: 연 100만원)

의료비: 일반(연 급여액의 3% 초과시 적용, 한도: 700만원), 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한도없음)

인당 경감세액 차이가 각각 12.9배, 11.2배로 여타의 특별공제에 비하여는 작게 나타났으나 여전히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편중되고 있다. 특히,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는 무주택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 이하 규모 소유세대주에게 적용되는 공제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누진세율 구조하에서는 수직적 형평성이 다소 저해되고 있다.

<표 V-6> 과세표준 규모별 특별공제로 인한 세금절감효과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기준, 2011년 귀속)

(단위: 원, 배수)

과세표준 규모별	특별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천만원 이하	227,517	1.0	104,894	1.0	106,835	1.0	177,749	1.0
1.2천만원 이하	265,521	1.2	122,190	1.2	116,147	1.1	179,553	1.0
3천만원 이하	505,666	2.2	223,314	2.1	201,280	1.9	305,348	1.7
4천만원 이하	860,219	3.8	369,748	3.5	303,024	2.8	423,828	2.4
4.6천만원 이하	990,283	4.4	432,861	4.1	337,207	3.2	452,399	2.5
6천만원 이하	1,252,637	5.5	542,288	5.2	392,484	3.7	539,062	3.0
7천만원 이하	1,558,623	6.9	688,755	6.6	458,738	4.3	670,019	3.8
8천만원 이하	1,733,769	7.6	789,313	7.5	506,655	4.7	762,182	4.3
8.8천만원 이하	1,874,937	8.2	872,886	8.3	551,051	5.2	823,032	4.6
1억원 이하	2,076,436	9.1	990,493	9.4	638,365	6.0	903,355	5.1
2억원 이하	2,987,703	13.1	1,487,750	14.2	912,484	8.5	1,216,844	6.8
3억원 이하	4,825,723	21.2	2,675,692	25.5	1,512,154	14.2	1,637,615	9.2
5억원 이하	6,754,497	29.7	4,035,125	38.5	2,251,734	21.1	1,773,210	10.0
10억원 이하	11,097,922	48.8	6,766,722	64.5	4,266,630	39.9	1,971,823	11.1
10억원 초과	19,961,198	<b>87.7</b>	10,649,176	<b>101.5</b>	23,343,589	<b>218.5</b>	2,296,199	<b>12.9</b>

&lt;표 V-6&gt;의 계속

과세표준 규모별	주택임차차입금		월세액		장기주택저당차입		기부금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천만원 이하	73,860	1.0	60,953	1.0	161,124	1.0	42,062	1.0
1.2천만원 이하	75,600	1.0	55,280	0.9	158,396	1.0	50,047	1.2
3천만원 이하	123,370	1.7	70,007	1.1	247,865	1.5	99,410	2.4
4천만원 이하	180,323	2.4	-	-	333,954	2.1	175,098	4.2
4.6천만원 이하	198,518	2.7	-	-	367,940	2.3	204,866	4.9
6천만원 이하	231,704	3.1	87,361	1.4	416,834	2.6	263,613	6.3
7천만원 이하	275,683	3.7	-	-	474,699	2.9	328,885	7.8
8천만원 이하	303,092	4.1	-	-	550,330	3.4	368,707	8.8
8.8천만원 이하	321,165	4.3	-	-	611,724	3.8	413,863	9.8
1억원 이하	345,285	4.7	-	-	703,613	4.4	486,562	11.6
2억원 이하	443,846	6.0	-	-	1,026,836	6.4	846,344	20.1
3억원 이하	571,708	7.7	-	-	1,519,068	9.4	1,579,071	37.5
5억원 이하	627,472	8.5	-	-	1,681,857	10.4	2,320,583	55.2
10억원 이하	803,849	10.9	-	-	1,697,262	10.5	4,476,214	106.4
10억원 초과	117,215	<b>1.6</b>	-	-	1,803,866	<b>11.2</b>	11,086,860	<b>263.6</b>

주: 1) 1인당 경감세액 = 공제액 × 과표구간별 적용세율(=산출세액/과세표준) ÷ 신고인원

2) 각 구간 1인당 소득세 경감액과 최하위 계층의 1인당 소득세 경감액 대비 배수를 나타냄

1. 과세미달자(과세표준 0 이하) 제외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2

## 라)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는 조세정책인 목적으로 도입되어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투자조합출자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장기주식형저축공제 등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로 인한 1인당 평균 경감세액을 산출해 본 결과, 투자조합출자공제를 제외하고는 특별공제 항목과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과세표준 규모별로 세금절감효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투자조합출자공제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 고소득자들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득공제로 인한 혜택 또한 고소득자들에게 최대 74.9배까지 크게 나타났다. 반면, 신용카드공제, 우리사주조합공제는 각각 연 300만원, 연 400만원 한도가 있으므로 1인당 공제금액<sup>61)</sup>은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나, 소득세 누진세율 구조로 인하여 1인당 평균 경감세액의 차이가 최대 9.1배, 6.9배까지 확대되어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V-7> 과세표준 규모별 조특법상 공제로 인한 세금절감효과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기준, 2011년 귀속)

(단위: 원, 배수)

과세표준 규모별	조특법상 공제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천만원 이하	126,963	1.0	107,500	1.0	24,409	1.0	117,651	1.0
1.2천만원 이하	152,157	1.2	117,722	1.1	25,250	1.0	129,045	1.1
3천만원 이하	289,606	2.3	193,535	1.8	41,747	1.7	227,146	1.9
4천만원 이하	465,731	3.7	261,122	2.4	58,447	2.4	325,364	2.8
4.6천만원 이하	509,027	4.0	274,303	2.6	63,779	2.6	347,658	3.0
6천만원 이하	586,431	4.6	310,886	2.9	72,627	3.0	412,906	3.5
7천만원 이하	685,225	5.4	350,548	3.3	87,875	3.6	492,812	4.2
8천만원 이하	741,609	5.8	375,852	3.5	98,821	4.0	543,810	4.6
8.8천만원 이하	781,736	6.2	395,033	3.7	108,860	4.5	578,033	4.9

61) 1인당 공제액 = 소득공제금액 ÷ 해당 공제의 신청인원

&lt;표 V-7&gt;의 계속

과세표준 규모별	조특법상 공제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억원 이하	845,265	6.7	427,191	4.0	121,509	5.0	627,522	5.3
2억원 이하	998,606	7.9	528,157	4.9	145,087	5.9	779,255	6.6
3억원 이하	1,048,697	8.3	637,021	5.9	165,429	6.8	911,612	7.7
5억원 이하	1,055,883	8.3	717,321	6.7	186,054	7.6	964,840	8.2
10억원 이하	1,051,047	8.3	803,478	7.5	209,526	8.6	1,034,450	8.8
10억원 초과	1,057,782	<b>8.3</b>	981,160	<b>9.1</b>	230,500	<b>9.4</b>	1,105,763	<b>9.4</b>
과세표준 규모별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등		우리사주조합출연		장기주식형저축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천만원 이하	40,663	1.0	87,377	1.0	189,205	1.0	11,663	1.0
1.2천만원 이하	48,753	1.2	81,509	0.9	186,564	1.0	12,597	1.1
3천만원 이하	99,388	2.4	222,900	2.6	304,006	1.6	23,312	2.0
4천만원 이하	170,291	4.2	400,121	4.6	400,639	2.1	36,551	3.1
4.6천만원 이하	184,433	4.5	588,386	6.7	410,229	2.2	41,022	3.5
6천만원 이하	172,738	4.2	413,401	4.7	447,753	2.4	49,344	4.2
7천만원 이하	69,663	1.7	568,539	6.5	519,522	2.7	59,840	5.1
8천만원 이하	69,372	1.7	1,549,724	17.7	586,986	3.1	68,153	5.8
8.8천만원 이하	73,308	1.8	1,321,399	15.1	648,770	3.4	71,856	6.2
1억원 이하	78,246	1.9	720,265	8.2	718,758	3.8	82,928	7.1
2억원 이하	97,311	2.4	1,801,845	20.6	905,921	4.8	119,627	10.3
3억원 이하	117,897	2.9	3,524,722	40.3	1,022,400	5.4	160,502	13.8
5억원 이하	116,917	2.9	6,308,884	72.2	1,092,174	5.8	181,367	15.6
10억원 이하	121,927	3.0	2,134,331	24.4	1,179,798	6.2	207,654	17.8
10억원 초과	125,588	<b>3.1</b>	6,541,066	<b>74.9</b>	1,307,068	<b>6.9</b>	212,926	<b>18.3</b>

주: 1) 1인당 경감세액 = 공제액 × 과표구간별 적용세율(=산출세액/과세표준) ÷ 신고인원

2) 각 구간 1인당 소득세 경감액과 최하위 계층의 1인당 소득세 경감액 대비 배수를 나타냄

1. 과세미달자(과세표준 0 이하) 제외

2. 조특법상 소득공제 중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고용유지증소기업근로자 공제는 제외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2

## 2) 세액공제제도

세액공제는 누진세율이 적용된 이후의 산출세액을 감소시키므로 세액공제금액, 그 자체가 바로 세금절감효과가 되는 것으로 현행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세액공제 항목은 근거 법률에 따라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세액공제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는 조세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대부분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정치자금세액공제 등이 있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주택차입금공제, 기부정치자금공제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세법상 세액공제제도 중에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상용근로자의 경우, 50만원의 한도 내에서 산출세액의 일정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제외한 대부분 세액공제는 소득재분배 기능과는 거리가 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경우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공제금액이 점감하고 한도가 존재하므로 <표 V-8>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과세표준 규모별로 살펴 본 1인당 세금절감효과가 최대 3.9배로 나타나 소득재분배 측면에서는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표 V-8> 과세표준 규모별 세액공제로 인한 세금절감효과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기준, 2011년 귀속)

과세표준 규모별	세액공제		근로소득		납세조합공제		주택차입금		기부정치자금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천만원 이하	129,669	1.0	129,118	1.0	30,366	1.0	113,799	1.0	67,566	1.0
1.2천만원 이하	324,286	2.5	322,497	2.5	63,945	2.1	246,936	2.2	79,037	1.2
3천만원 이하	477,701	3.7	473,292	3.7	143,116	4.7	439,787	3.9	84,341	1.2
4천만원 이하	510,594	3.9	499,995	3.9	262,878	8.7	550,567	4.8	87,461	1.3
4.6천만원 이하	514,832	4.0	499,996	3.9	340,778	11.2	483,944	4.3	87,900	1.3
6천만원 이하	525,612	4.1	499,995	3.9	448,579	14.8	684,267	6.0	88,012	1.3
7천만원 이하	542,654	4.2	500,000	3.9	479,314	15.8	953,074	8.4	88,368	1.3
8천만원 이하	575,150	4.4	500,000	3.9	448,667	14.8	1,115,619	9.8	88,554	1.3
8.8천만원 이하	611,854	4.7	500,000	3.9	623,073	20.5	538,033	4.7	88,903	1.3
1억원 이하	666,089	5.1	499,986	3.9	718,165	23.7	2,215,086	19.5	89,136	1.3
2억원 이하	845,203	6.5	499,988	3.9	1,008,957	33.2	1,531,632	13.5	89,556	1.3
3억원 이하	1,052,042	8.1	500,000	3.9	2,404,863	79.2	-	-	90,370	1.3
5억원 이하	1,111,891	8.6	500,000	3.9	3,924,901	129.3	-	-	90,469	1.3
10억원 이하	917,452	7.1	500,000	3.9	5,519,720	181.8	-	-	90,209	1.3
10억원 초과	1,500,104	<b>11.6</b>	500,000	<b>3.9</b>	31,717,800	<b>1044.5</b>	-	-	90,909	<b>1.3</b>

주: 1) 1인당 경감세액 = 공제세액 ÷ 신고인원

2) 각 구간 1인당 소득세 경감액과 최하위 계층의 1인당 소득세 경감액 대비 배수를 나타냄

1. 과세미달자(과세표준 0 이하) 제외

나. 종합소득 확정신고대상 분석

1) 소득공제제도

우리나라 세법상 연말정산 대상인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를 제외 한 모든 경우는 종합소득 확정신고 대상이므로, 소득계층별 소득공제 로 인한 세금절감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소득공제로 인한 1인 당 세금절감효과를 소득계층별로 비교해 본 결과, 최하위 계층의 1인 당 경감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표준 규모별로는 최대 75.0배, 종합 소득 규모별로는 최대 92.3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9>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 규모별 소득공제로 인한  
세금절감효과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준, 2011년 귀속)

(단위: 원, 배수)

과세표준 규모별	소득공제		종합소득 규모별	소득공제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3)</sup>		1인당 경감세액 <sup>2)</sup>	배수 <sup>3)</sup>
1천만원 이하	309,471	1.0	1천만원 이하	258,321	1.0
1.2천만원 이하	415,009	1.3	2천만원 이하	434,101	1.7
3천만원 이하	822,264	2.7	4천만원 이하	905,965	3.5
4천만원 이하	1,443,827	4.7	6천만원 이하	1,605,233	6.2
4.6천만원 이하	1,642,517	5.3	8천만원 이하	2,302,083	8.9
6천만원 이하	1,964,723	6.3	1억원 이하	2,862,215	11.1
7천만원 이하	2,344,953	7.6	2억원 이하	3,909,350	15.1
8천만원 이하	2,540,647	8.2	3억원 이하	5,347,328	20.7
8.8천만원 이하	2,646,925	8.6	5억원 이하	6,547,627	25.3
1억원 이하	2,888,054	9.3	10억원 이하	8,372,192	32.4
2억원 이하	3,877,640	12.5	10억원 초과	23,853,689	92.3
3억원 이하	5,235,820	16.9			
5억원 이하	6,381,771	20.6			

&lt;표 V-9&gt;의 계속

과세표준 규모별	소득공제		종합소득 규모별	소득공제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3)</sup>		1인당 경감세액 <sup>2)</sup>	배수 <sup>3)</sup>
10억원 이하	8,150,197	26.3			
10억원 초과	23,206,160	75.0			

주: 1) 1인당 경감세액 = 공제액 × 과표구간별 적용세율(=산출세액/과세표준) ÷ 신고인원

2) 1인당 경감세액 = 공제액 × 소득구간별 적용세율(=산출세액/과세표준) ÷ 신고인원

3) 각 구간 1인당 소득세 경감액과 최하위 계층의 1인당 소득세 경감액 대비 배수를 나타냄

1. 과세미달자(과세표준 0 이하) 제외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2

#### 가)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소득규모와 관계 없이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 현황에 따라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므로 소득계층별로 살펴 본 1인당 세금공제액은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인적공제로 인한 세금절감효과는 소득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났다. 즉, 인적공제로 인한 1인당 평균 공제액<sup>62)</sup>은 최대 1.3배로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누진세율로 인하여 1인당 평균 경감세액은 최대 7.2배로 확대되었다.

62) 1인당 평균 공제액 = 공제금액 ÷ 해당 공제의 신청인원

<표 V-10> 과세표준 규모별 인적공제로 인한 세금절감효과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준, 2011년 귀속)

(단위: 원, 배수)

과세표준 규모별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천만원 이하	198,812	1.0	162,750	1.0	65,599	1.0	76,361	1.0
1.2천만원 이하	235,122	1.2	187,782	1.2	74,013	1.1	77,074	1.0
3천만원 이하	408,479	2.1	320,128	2.0	127,390	1.9	120,473	1.6
4천만원 이하	598,089	3.0	459,586	2.8	182,207	2.8	156,517	2.0
4.6천만원 이하	644,541	3.2	493,931	3.0	195,161	3.0	164,182	2.2
6천만원 이하	736,551	3.7	564,623	3.5	222,505	3.4	185,463	2.4
7천만원 이하	837,573	4.2	643,111	4.0	251,846	3.8	209,726	2.7
8천만원 이하	885,120	4.5	679,989	4.2	267,649	4.1	222,631	2.9
8.8천만원 이하	907,658	4.6	698,020	4.3	275,306	4.2	232,173	3.0
1억원 이하	977,455	4.9	751,455	4.6	292,225	4.5	252,197	3.3
2억원 이하	1,232,404	6.2	946,290	5.8	368,004	5.6	316,542	4.1
3억원 이하	1,446,788	7.3	1,112,490	6.8	437,113	6.7	392,287	5.1
5억원 이하	1,546,209	7.8	1,190,935	7.3	478,265	7.3	426,830	5.6
10억원 이하	1,538,941	7.7	1,198,835	7.4	479,192	7.3	440,970	5.8
10억원 초과	1,436,257	7.2	1,118,958	6.9	515,875	7.9	505,630	6.6

주: 1) 1인당 경감세액 = 공제액 × 과표구간별 적용세율(=산출세액/과세표준) ÷ 신고인원

2) 각 구간 1인당 소득세 경감액과 최하위 계층의 1인당 소득세 경감액 대비 배수를 나타냄

1. 과세미달자(과세표준 0 이하) 제외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2

#### 나) 연금보험료공제

연금보험료공제는 공적연금, 퇴직연금 등의 보험료를 납입시 공제해 주는 제도로써 과세표준 규모별로 1인당 세금절감효과를 살펴본 결과, 최하위 계층인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연금 최대 16.1배, 공무원 연금 등 기타연금은 최대 13.2배, 퇴직연금은 최대 9.2배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보험료 납입액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크게 나타나지만, 소득세의 누진세율구조로 인하여 소득계층별 격차가 더 확대되어 고소득자에게 그 혜택이 편중되고 있다.

<표 V-11> 과세표준 규모별 연금보험료공제로 인한 세금절감효과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준, 2011년 귀속)

(단위: 원, 배수)

과세표준 규모별	국민연금		기타연금		퇴직연금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천만원 이하	58,680	1.0	108,878	1.0	120,662	1.0
1.2천만원 이하	76,228	1.3	134,837	1.2	116,962	1.0
3천만원 이하	154,987	2.6	277,925	2.6	217,081	1.8
4천만원 이하	268,832	4.6	447,265	4.1	267,130	2.2
4.6천만원 이하	303,705	5.2	497,738	4.6	316,770	2.6
6천만원 이하	358,446	6.1	600,330	5.5	345,812	2.9
7천만원 이하	425,335	7.2	726,466	6.7	416,577	3.5
8천만원 이하	465,829	7.9	807,495	7.4	424,414	3.5
8.8천만원 이하	496,827	8.5	842,527	7.7	452,685	3.8
1억원 이하	540,517	9.2	909,067	8.3	487,740	4.0
2억원 이하	708,870	12.1	1,109,779	10.2	703,240	5.8
3억원 이하	859,859	14.7	1,235,789	11.4	839,439	7.0
5억원 이하	920,696	15.7	1,246,586	11.4	1,020,840	8.5
10억원 이하	942,427	16.1	1,436,769	13.2	1,020,153	8.5
10억원 초과	915,288	<b>15.6</b>	1,298,461	<b>11.9</b>	1,112,967	<b>9.2</b>

주: 1) 1인당 경감세액 = 공제액 × 과표구간별 적용세율(=산출세액/과세표준) ÷ 신고인원

2) 각 구간 1인당 소득세 경감액과 최하위 계층의 1인당 소득세 경감액 대비 배수를 나타냄

1. 과세미달자(과세표준 0 이하) 제외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2

다) 특별공제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준으로 특별공제로 인한 1인당 세금절감효과를 산출한 결과, 다른 소득공제제도에 비하여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와 동일하게 특별공제항목은 소득세의 소득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준으로 과세표준 규모별 1인당 평균 경감세액은 특별공제의 경우에는 최하위 계층인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하여 최대 170.8배로 나타났다. 그 중 보험료공제가 최대 99.9배, 의료비가 최대 33.7배, 기부금이 최대 468.4배로 나타나 고소득자들에게 공제혜택이 크게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교육비 및 주택자금공제의 경우에는 1인당 평균 경감세액 차이가 최대 11.8배, 12.6배로 나타나 앞서 언급한 공제항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으나 여전히 고소득자들이 혜택을 더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2> 과세표준 규모별 특별공제로 인한 세금절감효과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준, 2011년 귀속)

(단위: 원, 배수)

과세표준 규모별	특별공제		보험료		의료비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천만원 이하	147,640	1.0	64,293	1.0	100,162	1.0
1.2천만원 이하	193,999	1.3	89,402	1.4	116,320	1.2
3천만원 이하	406,123	2.8	183,034	2.8	219,072	2.2
4천만원 이하	31,870	5.0	318,519	5.0	327,206	3.3
4.6천만원 이하	831,716	5.6	374,139	5.8	351,181	3.5
6천만원 이하	993,464	6.7	455,416	7.1	403,574	4.0
7천만원 이하	1,208,112	8.2	558,590	8.7	472,821	4.7
8천만원 이하	1,313,825	8.9	619,228	9.6	523,223	5.2

&lt;표 V-12&gt;의 계속

과세표준 규모별	특별공제		보험료		의료비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8.8천만원 이하	1,359,166	9.2	660,610	10.3	544,789	5.4
1억원 이하	1,484,837	10.1	722,864	11.2	590,960	5.9
2억원 이하	2,089,431	14.2	1,000,231	15.6	854,826	8.5
3억원 이하	3,212,739	21.8	1,517,803	23.6	1,098,807	11.0
5억원 이하	4,371,754	29.6	2,072,548	32.2	1,263,413	12.6
10억원 이하	6,709,195	45.4	3,266,980	50.8	1,814,048	18.1
10억원 초과	25,220,246	170.8	6,419,946	99.9	3,374,969	33.7
과세표준 규모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천만원 이하	197,567	1.0	156,886	1.0	55,339	1.0
1.2천만원 이하	205,075	1.0	166,355	1.1	80,661	1.5
3천만원 이하	360,700	1.8	285,004	1.8	168,903	3.1
4천만원 이하	498,002	2.5	408,703	2.6	279,831	5.1
4.6천만원 이하	517,397	2.6	426,815	2.7	308,465	5.6
6천만원 이하	605,542	3.1	480,845	3.1	388,988	7.0
7천만원 이하	734,859	3.7	556,511	3.5	515,210	9.3
8천만원 이하	825,611	4.2	658,550	4.2	586,167	10.6
8.8천만원 이하	874,806	4.4	703,764	4.5	659,434	11.9
1억원 이하	939,378	4.8	716,117	4.6	765,791	13.8
2억원 이하	1,263,714	6.4	1,067,706	6.8	1,262,761	22.8
3억원 이하	1,636,244	8.3	1,337,488	8.5	2,207,508	39.9
5억원 이하	1,824,253	9.2	1,670,970	10.7	3,139,075	56.7
10억원 이하	2,050,481	10.4	1,877,048	12.0	4,876,163	88.1
10억원 초과	2,334,226	11.8	1,980,426	12.6	25,919,830	468.4

주: 1) 1인당 경감세액 = 공제액 × 과표구간별 적용세율(=산출세액/과세표준)  
÷ 신고인원

2) 각 구간 1인당 소득세 경감액과 최하위 계층의 1인당 소득세 경감액 대비 배수를 나타냄

1. 과세미달자(과세표준 0 이하) 제외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2

라)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는 조세정책인 목적으로 도입되어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소득재분배 기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기준으로 하여 소득 계층별로 살펴 본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로 인한 1인당 평균 경감세액 차이는 공제항목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세법」 상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소득세 누진세율구조로 인하여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더 크게 돌아가고 있다.

<표 V-13> 과세표준 규모별 「조세특례제한법」 상 공제로 인한  
세금절감효과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준, 2011년 귀속)

(단위: 원, 배수)

과세표준 규모별	조특법상 공제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천만원 이하	147,120	1.0	148,584	1.0	27,632	1.0
1.2천만원 이하	166,334	1.1	149,567	1.0	28,117	1.0
3천만원 이하	296,589	2.0	241,933	1.6	44,179	1.6
4천만원 이하	450,760	3.1	318,707	2.1	59,165	2.1
4.6천만원 이하	492,431	3.3	329,783	2.2	62,703	2.3
6천만원 이하	571,197	3.9	374,381	2.5	72,271	2.6
7천만원 이하	668,910	4.5	433,127	2.9	84,609	3.1
8천만원 이하	732,114	5.0	469,563	3.2	91,786	3.3
8.8천만원 이하	775,769	5.3	504,623	3.4	97,791	3.5
1억원 이하	848,294	5.8	550,510	3.7	107,452	3.9
2억원 이하	1,125,034	7.6	750,388	5.1	135,939	4.9
3억원 이하	1,473,959	10.0	974,238	6.6	165,288	6.0
5억원 이하	1,666,525	11.3	1,081,473	7.3	181,595	6.6

&lt;표 V-13&gt;의 계속

과세표준 규모별	조특법상 공제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0억원 이하	1,722,866	11.7	1,111,434	7.5	198,874	7.2
10억원 초과	1,820,079	<b>12.4</b>	1,100,237	<b>7.4</b>	218,907	<b>7.9</b>
과세표준 규모별	연금저축		정치자금		기타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천만원 이하	136,421	1.0	26,139	1.0	73,414	1.0
1.2천만원 이하	151,487	1.1	22,408	0.9	82,693	1.1
3천만원 이하	252,925	1.9	43,279	1.7	155,784	2.1
4천만원 이하	348,442	2.6	60,982	2.3	239,044	3.3
4.6천만원 이하	372,222	2.7	81,353	3.1	261,398	3.6
6천만원 이하	421,987	3.1	89,166	3.4	324,626	4.4
7천만원 이하	490,248	3.6	113,965	4.4	397,244	5.4
8천만원 이하	529,715	3.9	152,171	5.8	457,381	6.2
8.8천만원 이하	556,891	4.1	141,845	5.4	498,740	6.8
1억원 이하	599,584	4.4	148,895	5.7	557,026	7.6
2억원 이하	759,145	5.6	289,342	11.1	796,692	10.9
3억원 이하	922,834	6.8	496,413	19.0	1,173,332	16.0
5억원 이하	994,818	7.3	673,335	25.8	1,466,834	20.0
10억원 이하	1,065,257	7.8	806,666	30.9	1,653,705	22.5
10억원 초과	1,119,890	<b>8.2</b>	1,458,064	<b>55.8</b>	2,461,133	<b>33.5</b>

주: 1) 1인당 경감세액 = 공제액 × 과표구간별 적용세율(=산출세액/과세표준) ÷ 신고인원

2) 각 구간 1인당 소득세 경감액과 최하위 계층의 1인당 소득세 경감액 대비 배수를 나타냄

1. 과세미달자(과세표준 0 이하) 제외

2. 조특법상 소득공제 중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공제는 제외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2

2) 세액공제제도

우리나라의 「조세특례제한법」상 다양한 세액공제 규정들이 있으나 주로 설비투자, 연구개발 촉진, 중소기업 지원 등과 같은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동 세액공제들은 소득재분배 기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예를 들어,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도입된 배당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공제혜택의 약 88.7%가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인 고소득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배당소득이 고소득자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소득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표 V-14> 과세표준 규모별 「소득세법」상 소득공제로 인한  
세금절감효과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준, 2011년 귀속)

(단위: 원, 배수)

과세표준 규모별	소득세법상 공제		근로소득		배당세액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천만원 이하	88,713	1.0	92,851	1.0	-	-
1.2천만원 이하	211,158	2.4	225,304	2.4	-	-
3천만원 이하	386,983	4.4	382,944	4.1	-	-
4천만원 이하	522,109	5.9	461,092	5.0	-	-
4.6천만원 이하	541,598	6.1	470,047	5.1	-	-
6천만원 이하	551,930	6.2	472,439	5.1	50,691	1.0
7천만원 이하	589,922	6.6	477,195	5.1	116,006	2.3
8천만원 이하	623,648	7.0	479,262	5.2	198,473	3.9
8.8천만원 이하	723,826	8.2	480,047	5.2	273,292	5.4
1억원 이하	802,244	9.0	479,619	5.2	738,452	14.6
2억원 이하	2,033,265	22.9	477,915	5.1	3,200,865	63.1
3억원 이하	5,065,366	57.1	478,167	5.1	7,276,656	143.5

&lt;표 V-14&gt;의 계속

과세표준 규모별	소득세법상 공제		근로소득		배당세액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5억원 이하	9,692,229	109.3	432,154	4.7	13,446,829	265.3
10억원 이하	20,495,537	231.0	474,459	5.1	26,862,869	529.9
10억원 초과	116,444,813	<b>1312.6</b>	231,107	<b>2.5</b>	136,291,545	<b>2688.7</b>
과세표준 규모별	기장세액		외국납부		재해손실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천만원 이하	56,316	1.0	380,952	1.0	181,818	1.0
1.2천만원 이하	120,312	2.1	406,250	1.1	200,000	1.1
3천만원 이하	306,274	5.4	1,281,116	3.4	4,250,000	23.4
4천만원 이하	651,827	11.6	2,564,516	6.7	1,950,000	10.7
4.6천만원 이하	773,970	13.7	2,936,782	7.7	3,000,000	16.5
6천만원 이하	759,025	13.5	4,150,602	10.9	6,550,000	36.0
7천만원 이하	746,212	13.3	5,807,843	15.2	5,785,714	31.8
8천만원 이하	740,502	13.1	7,476,440	19.6	6,454,545	35.5
8.8천만원 이하	754,430	13.4	9,210,256	24.2	6,571,429	36.1
1억원 이하	753,138	13.4	10,262,443	26.9	4,500,000	24.8
2억원 이하	772,938	13.7	22,022,785	57.8	22,181,818	122.0
3억원 이하	796,980	14.2	38,342,233	100.6	33,000,000	181.5
5억원 이하	823,219	14.6	54,503,497	143.1	80,176,471	441.0
10억원 이하	835,749	14.8	56,967,273	149.5	115,333,333	634.3
10억원 초과	796,875	<b>14.2</b>	127,474,777	<b>334.6</b>	428,285,714	<b>2355.6</b>

주: 1) 1인당 경감세액 = 공제액 × 과표구간별 적용세율(=산출세액/과세표준) ÷ 신고인원

2) 각 구간 1인당 소득세 경감액과 최하위 계층의 1인당 소득세 경감액 대비 배수를 나타냄

1. 과세미달자(과세표준 0 이하) 제외

2. 조특법상 소득공제 중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공제는 제외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2

<표 V-15> 과세표준 규모별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로 인한  
세금절감효과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준, 2011년 귀속)

(단위: 원, 배수)

과세표준 규모별	조특법상 공제		전자신고		임시투자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인당 경감세액 <sup>1)</sup>	배수 <sup>2)</sup>
1천만원 이하	21,340	1.0	19,453	1.0	216,826	1.0
1.2천만원 이하	27,622	1.3	20,931	1.1	347,222	1.6
3천만원 이하	64,550	3.0	29,560	1.5	984,223	4.5
4천만원 이하	193,995	9.1	69,443	3.6	1,886,576	8.7
4.6천만원 이하	239,432	11.2	84,186	4.3	2,278,826	10.5
6천만원 이하	344,989	16.2	105,380	5.4	2,984,359	13.8
7천만원 이하	515,054	24.1	148,696	7.6	3,722,504	17.2
8천만원 이하	678,603	31.8	194,624	10.0	4,386,364	20.2
8.8천만원 이하	848,565	39.8	255,599	13.1	4,373,368	20.2
1억원 이하	942,781	44.2	284,311	14.6	4,479,744	20.7
2억원 이하	1,419,724	66.5	415,845	21.4	5,501,741	25.4
3억원 이하	2,089,380	97.9	301,536	15.5	7,161,128	33.0
5억원 이하	2,574,333	120.6	158,068	8.1	9,040,595	41.7
10억원 이하	4,161,746	195.0	70,175	3.6	14,651,832	67.6
10억원 초과	7,400,373	346.8	27,933	1.4	31,852,713	146.9

주: 1) 1인당 경감세액 = 공제액 × 과표구간별 적용세율(=산출세액/과세표준) ÷ 신고인원

2) 각 구간 1인당 소득세 경감액과 최하위 계층의 1인당 소득세 경감액 대비 배수를 나타냄

1. 과세미달자(과세표준 0 이하) 제외

2. 조특법상 소득공제 중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공제는 제외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2

### 3. 요약 및 시사점

#### 가. 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소득세 공제제도로 인한 소득계층별 세금절감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현행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기준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율 체계는 2012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과세표준 3억원 초과구간(38%)이 신설된 이후로 1,200만원 이하(6%), 4,600만원 이하(15%), 8,800만원 이하(24%), 3억원 이하(35%), 3억원 초과(38%)로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앞 절에서는 근로소득자와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함께 있는 종합소득자는 적용되는 공제항목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나, 본 절에서는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근로소득자를 중심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따라서 분석대상은 2011년 기준으로 종합소득 확정신고인원인 약 3,998명보다 약 2배 이상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총신고인원 중 과세미달자를 제외한 약 9,935명이다.

따라서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 규모별 1인당 세금절감효과를 ①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② 근로소득공제 vs. 근로소득 세액공제, ③ 소득공제 항목별로 각각 구분하여 요약·비교함으로써 현 소득세의 소득양극화 현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 1)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과세표준 규모별로 「1.2천만원 이하」 대비 「3억원 초과」 구간의 소득공제로 인한 1인당 평균 경감세액은 각각 47.6만원, 1,247.1만원으

로 산출되어 동 구간의 1인당 세금절감효과의 차이가 26.2배로 나타난바, 이는 세액공제로 인한 1인당 세금절감효과의 차이인 7.4배에 비하여 약 3.5배나 크게 나타났다.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구간별 한계세율을 적용하기 이전의 1인당 소득공제금액은 소득 상·하위 계층 간 차이가 5.1배로 나타났으나, 누진세율체제로 인하여 26.2배로 확대되어 소득공제제도는 소득양극화 현상을 가속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공제액 자체가 산출세액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므로 1인당 세액공제금액이 세금절감효과와 동일한바, 세액공제로 인한 1인당 세금절감효과의 차이는 7.4배로 소득공제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데 유용한 수단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과세대상 소득규모별로 「2천만원 이하」 대비 「3억원 초과」 구간의 1인당 세금절감효과의 차이는 소득공제로 인한 경우에는 51.7배에 이르고 있는 반면, 세액공제로 인한 세제혜택의 차이는 14.5배로 나타나 소득공제제도로 인한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16> 과세표준구간별 세금절감효과 비교(소득공제 vs. 세액공제,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준)

(단위: 원, 백만원, 배수)

과세표준 규모별	소득공제										세액공제	
	전체		인적공제		특별공제		조특법상 공제		총공제액		1인당	
	1인당 공제액 <sup>1)</sup>	1인당 경감세액 <sup>2)</sup>	1인당 공제액 <sup>1)</sup>	1인당 경감세액 <sup>2)</sup>	1인당 공제액 <sup>1)</sup>	1인당 경감세액 <sup>2)</sup>	1인당 공제액 <sup>1)</sup>	1인당 경감세액 <sup>2)</sup>	1인당 공제액 <sup>1)</sup>	1인당 경감세액 <sup>2)</sup>	1인당 공제액 <sup>1)</sup>	1인당 경감세액 <sup>2)</sup>
1.2천만원 이하	7,927,499 (1.0)	475,655 (1.0)	3,202,412 (1.0)	192,147 (1.0)	3,883,869 (1.0)	233,034 (1.0)	2,173,828 (1.0)	130,431 (1.0)	874,559 (1.0)	149,119 (1.0)	149,119 (1.0)	149,119 (1.0)
4.0천만원 이하	15,640,778 (2.0)	1,612,778 (3.4)	5,102,434 (1.6)	526,131 (2.7)	5,902,250 (1.5)	608,603 (2.6)	3,315,266 (1.5)	341,849 (2.6)	1,643,610 (3.3)	485,428 (3.3)	485,428 (3.3)	485,428 (3.3)
8.8천만원 이하	21,891,284 (2.8)	3,357,685 (7.1)	6,628,697 (2.1)	1,016,709 (5.3)	9,422,280 (2.4)	1,445,189 (6.2)	4,253,093 (2.0)	652,339 (5.0)	296,273 (3.6)	542,213 (3.6)	542,213 (3.6)	542,213 (3.6)
1억원 이하	22,982,377 (2.9)	4,378,023 (9.2)	6,342,148 (2.0)	1,208,146 (6.3)	10,900,224 (2.8)	2,076,436 (8.9)	4,437,208 (2.0)	845,265 (6.5)	23,443 (4.5)	666,089 (4.5)	666,089 (4.5)	666,089 (4.5)
2억원 이하	24,283,392 (3.1)	5,665,280 (11.9)	6,174,875 (1.9)	1,440,589 (7.5)	12,806,351 (3.3)	2,987,703 (12.8)	4,280,377 (2.0)	998,606 (7.7)	59,257 (5.7)	845,203 (5.7)	845,203 (5.7)	845,203 (5.7)
3억원 이하	27,962,797 (3.5)	7,566,890 (15.9)	5,869,035 (1.8)	1,588,194 (8.3)	17,833,048 (4.6)	4,825,723 (20.7)	3,875,371 (1.8)	1,048,697 (8.0)	12,347 (7.1)	1,052,042 (7.1)	1,052,042 (7.1)	1,052,042 (7.1)
3억원 초과	40,819,314 (5.1)	12,471,899 (26.2)	5,613,211 (1.8)	1,715,056 (8.9)	31,596,765 (8.1)	9,654,049 (41.4)	3,574,317 (1.6)	1,092,094 (8.4)	11,216 (7.4)	1,100,520 (7.4)	1,100,520 (7.4)	1,100,520 (7.4)

주: 1) 1인당 공제액 = 공제액 ÷ 신고인원

2) 1인당 경감세액 = 공제액 × 과표구간별 적용세율(=신출세액/과세표준) ÷ 신고인원

3) 세액공제의 1인당 소득세 감면액 = 공제액 ÷ 신고인원

1. ( )의 수치는 각 구간 1인당 소득세 감면액과 1.2천만원 이하의 1인당 소득세 감면액 대비 배수를 나타냄

2. 과세미달자 제외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V-17> 소득구간별 세금감감효과 비교(소득공제 vs. 세액공제,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준)

(단위: 원, 백만원, 배수, %)

소득구모별	소득공제												세액공제	
	전체			인적공제			특별공제			조특법상 공제			세액공제	
	1인당 공제액 <sup>1)</sup>	1인당 경감세액 <sup>2)</sup>	1인당 공제액 <sup>1)</sup>	1인당 경감세액 <sup>2)</sup>	1인당 공제액 <sup>1)</sup>	1인당 경감세액 <sup>2)</sup>	1인당 공제액 <sup>1)</sup>	1인당 경감세액 <sup>2)</sup>	1인당 공제액 <sup>1)</sup>	1인당 경감세액 <sup>2)</sup>	1인당 공제액 <sup>1)</sup>	1인당 경감세액 <sup>2)</sup>	총공제액 (백만원)	1인당 경감세액 <sup>3)</sup>
2천만원 이하	3,822,176 (1.0)	229,379 (1.0)	1,782,481 (1.0)	106,971 (1.0)	1,718,494 (1.0)	103,131 (1.0)	1,208,868 (1.0)	72,547 (1.0)	1,208,868 (1.0)	207,511 (1.0)	72,604 (1.0)	207,511 (1.0)	72,604 (1.0)	
4천만원 이하	9,024,283 (2.4)	616,859 (2.7)	2,711,396 (2.4)	229,252 (2.1)	2,585,587 (2.2)	263,255 (2.6)	1,927,938 (2.1)	150,375 (2.1)	1,927,938 (2.1)	970,554 (3.8)	276,652 (3.8)	970,554 (3.8)	276,652 (3.8)	
6천만원 이하	17,434,417 (4.6)	1,672,581 (7.3)	4,218,800 (3.4)	586,410 (5.5)	3,851,261 (3.6)	596,113 (5.8)	2,497,143 (2.7)	317,649 (4.4)	2,497,143 (2.7)	836,384 (6.1)	443,019 (6.1)	836,384 (6.1)	443,019 (6.1)	
8천만원 이하	21,706,845 (5.7)	2,561,358 (11.2)	6,112,542 (3.9)	813,855 (7.6)	6,213,678 (5.0)	1,023,845 (9.9)	3,311,068 (3.4)	483,977 (6.7)	3,311,068 (3.4)	470,331 (7.0)	505,913 (7.0)	470,331 (7.0)	505,913 (7.0)	
1억원원 이하	24,375,051 (6.4)	3,396,000 (14.8)	6,897,207 (4.4)	1,084,774 (10.1)	8,676,818 (6.0)	1,427,030 (13.8)	4,101,578 (3.7)	625,204 (8.6)	4,101,578 (3.7)	202,439 (7.2)	525,914 (7.2)	202,439 (7.2)	525,914 (7.2)	
2억원원 이하	26,413,931 (6.9)	4,843,954 (21.1)	7,786,048 (4.3)	1,395,881 (13.0)	10,242,616 (7.2)	2,275,145 (22.1)	4,487,446 (3.9)	861,640 (11.9)	4,487,446 (3.9)	196,218 (8.5)	614,983 (8.5)	196,218 (8.5)	614,983 (8.5)	
3억원원 이하	27,954,316 (7.3)	7,265,960 (31.7)	7,611,693 (3.6)	1,657,633 (15.5)	12,406,296 (9.7)	4,324,776 (41.9)	4,698,497 (3.4)	1,082,291 (14.9)	4,698,497 (3.4)	21,676 (15.4)	999,545 (13.8)	21,676 (15.4)	999,545 (13.8)	
3억원원 초과	38,986,288	11,849,429	6,377,409	1,781,705	16,638,703	8,880,291	4,163,895	1,119,760	4,163,895	15,594	1,052,241	15,594	1,052,241	

주: 1) 1인당 공제액 = 공제액 ÷ 신고인원

2) 1인당 경감세액 = 공제액 × 소득구간별 적용세율(=산출세액/과세표준) ÷ 신고인원

3) 세액공제의 1인당 소득세 감면액 = 공제액 ÷ 신고인원

1. ( )의 수치는 각 구간 1인당 소득세 감면액과 2천만원 이하의 1인당 소득세 감면액 대비 배수를 나타냄

2. 과세미달자 제외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2) 근로소득공제 vs. 근로소득세액공제

자영업자와의 과세형평성 및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입된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소득양극화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기 위하여 과세표준 규모별로 1인당 세금절감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공제로 인한 1인당 평균 경감세액은 과세표준 「1.2천만원 이하」 구간이 약 58.1만원으로 「3억원 초과」 구간 약 1,434.7만원에 비하여 소득공제로 인한 세제혜택규모가 24.7배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받기 이전의 근로소득자 1인당 근로소득공제금액의 차이인 4.8배에 비하여 약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적용세율과 관계없이 산출세액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50만원 이내의 한도로 인하여 소득계층 간 공제혜택의 차이가 3.4배로 근로소득공제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표 V-18> 과세표준구간별 세금절감효과 비교

(근로소득공제 vs.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준)

(단위: 원, 백만원, 배수)

과세표준 규모별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1인당 공제액 <sup>1)</sup>	1인당 경감세액 <sup>2)</sup>	총공제액 (백만원)	1인당 경감세액 <sup>3)</sup>
1.2천만원 이하	9,691,525 (1.0)	581,497 (1.0)	870,599	148,443 (1.0)
4.6천만원 이하	12,916,766 (1.3)	1,331,895 (2.3)	1,623,010	479,344 (3.2)
8.8천만원 이하	15,376,589 (1.6)	2,358,461 (4.1)	273,206	499,997 (3.4)
1억원 이하	17,180,054 (1.8)	3,272,710 (5.6)	17,597	499,986 (3.4)

<표 V-18>의 계속

과세표준 규모별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1인당 공제액 <sup>1)</sup>	1인당 경감세액 <sup>2)</sup>	총공제액 (백만원)	1인당 경감세액 <sup>3)</sup>
2억원 이하	19,244,771 (2.0)	4,489,777 (7.7)	35,054	499,988 (3.4)
3억원 이하	25,166,439 (2.6)	6,810,180 (11.7)	5,868	500,000 (3.4)
3억원 초과	46,957,332 (4.8)	14,347,304 (24.7)	5,096	500,000 (3.4)

주: 1) 1인당 공제액 = 공제액 ÷ 신고인원

2) 1인당 경감세액 = 공제액 × 과표구간별 적용세율(=산출세액/과세표준) ÷ 신고인원

3) 세액공제의 1인당 소득세 감면액 = 공제액 ÷ 신고인원

1. ( )의 수치는 각 구간 1인당 소득세 감면액과 1.2천만원 이하의 1인당 소득세 감면액 대비 배수를 나타냄

2. 과세미달자 제외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한편,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소득계층 간 1인당 평균 경감세액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총급여 규모별 1인당 평균 세금절감효과를 산출하여 비교한 결과, 누진세율체계하에서 소득공제로 인하여 총급여 규모별로 「2천만원 이하」 대비 「3억원 초과」 구간의 1인당 세금절감효과의 차이가 24.9배로 세율 적용 전 1인당 공제액 4.9배보다 약 5배 확대되었다. 반면 누진세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총급여 규모별로 「2천만원 이하」 대비 「3억원 초과」 구간의 1인당 세금절감효과의 차이가 6.9배로 소득공제제도로 인한 효과보다는 작게 나타났다.

<표 V-19> 총급여 규모별 세금절감효과 비교  
(근로소득공제 vs.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준)

(단위: 원, 백만원, 배수)

총급여 규모별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1인당 공제액 <sup>1)</sup>	1인당 경감세액 <sup>2)</sup>	총공제액 (백만원)	1인당 경감세액 <sup>3)</sup>
2천만원 이하	8,269,808 (1.0)	496,293 (1.0)	207,294	72,528 (1.0)
4천만원 이하	11,001,654 (1.3)	752,023 (1.5)	966,926	275,618 (3.8)
6천만원 이하	12,906,649 (1.6)	1,238,207 (2.5)	826,314	437,685 (6.0)
8천만원 이하	13,920,120 (1.7)	1,642,542 (3.3)	459,741	494,523 (6.8)
1억원 이하	14,949,893 (1.8)	2,082,861 (4.2)	192,383	499,788 (6.9)
2억원 이하	16,676,005 (2.0)	3,058,152 (6.2)	159,519	499,963 (6.9)
3억원 이하	22,430,489 (2.7)	5,830,192 (11.7)	10,843	500,000 (6.9)
3억원 초과	40,718,176 (4.9)	12,375,816 (24.9)	7,410	499,970 (6.9)

주: 1) 1인당 공제액 = 공제액 ÷ 신고인원

2) 1인당 경감세액 = 공제액 × 소득구간별 적용세율(=산출세액/과세표준) ÷ 신고인원

3) 세액공제의 1인당 소득세 감면액 = 공제액 ÷ 신고인원

1. ( )의 수치는 각 구간 1인당 소득세 감면액과 2천만원 이하의 1인당 소득세 감면액 대비 배수를 나타냄

2. 과세미달자 제외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3) 공제항목별 비교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공제항목별로 소득 계층 간 1인당 평균 경감세액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과세표준 규모별 「1.2천만원 이하」 대비 「3억원 초과」 구간의 1인당 평균 경감

세액을 비교한 결과,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된 인적공제 제도는 본인 및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가 적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고소득자에게 그 혜택이 약 8.9배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소득공제 중 필요경비적 성격으로 자영업자와의 과세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근로소득공제, 소득 및 지출규모와 관련된 특별공제 중 의료비와 보험료 등의 일부 항목 등은 그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과도하게 편중됨에 따라 소득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특정한 조세정책 목적상 도입된 항목이 대부분으로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므로 소득양극화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적합한 자료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표 V-20> 과세표준 규모별 1인당 평균 소득세 경감액<sup>1)</sup> 비교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준, 2011년 귀속)

(단위: 원, 배수)

구 분	과세표준 1.2천만원 이하(A)	과세표준 3억원 초과(B)	차이(B-A)	배수(A/B)
<b>&lt;소득공제&gt;</b>				
근로소득공제	581,497	14,347,304	13,765,807	24.7
인적공제	192,147	1,715,056	1,522,909	8.9
- 기본공제	155,621	1,337,807	1,182,186	8.6
- 추가공제	86,639	574,014	487,375	6.6
- 다자녀추가	75,800	392,868	317,068	5.2
국민연금보험료	51,407	600,203	548,797	11.7
퇴직연금보험료	92,910	953,642	860,732	10.3
기타연금보험료	127,695	1,120,553	992,858	8.8
특별공제	233,034	9,654,049	9,421,015	41.4
- 기부금	43,528	3,976,103	3,932,575	91.3
- 보험료	107,405	5,670,063	5,562,658	52.8

&lt;표 V-20&gt;의 계속

구 분	과세표준 1.2천만원 이하(A)	과세표준 3억원 초과(B)	차이(B-A)	배수(A/B)
- 의료비	108,105	3,099,772	2,991,667	28.7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160,665	1,764,333	1,603,668	11.0
- 교육비	178,046	1,941,870	1,763,824	10.9
- 주택임차차입금	74,107	610,339	536,232	8.2
- 월세액	60,953	-	-	-
조특법상 공제	130,431	1,092,094	961,663	8.4
- 투자조합출자	86,526	5,048,162	4,961,636	58.3
- 장기주식형저축	11,862	198,221	186,358	16.7
- 연금저축	119,948	1,032,081	912,133	8.6
- 개인연금저축	24,576	204,780	180,204	8.3
- 신용카드	108,893	774,773	665,880	7.1
- 소기업소상공인	112,425	708,342	595,917	6.3
- 우리사주조합	188,517	1,170,979	982,462	6.2
- 주택마련저축	42,200	123,726	81,527	2.9
<b>&lt;세액공제&gt;</b>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149,119	1,100,520	951,401	7.4
- 외국납부	156,180	61,566,795	61,410,615	394.2
- 납세조합	36,628	7,339,679	7,303,051	200.4
- 근로소득	148,443	500,000	351,557	3.4
- 기부정치자금	70,251	90,446	20,195	1.3
- 주택차입금	131,467	-	-	-

주: 1) 1인당 경감세액 = 공제액 × 과표구간별 적용세율(=산출세액/과세표준) ÷ 신고인원

1. 과세미달자 제외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2

## 나. 시사점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상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각 소득공제방식이 소득양극화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공제방식별로 1인당 평균 소득세 경감혜택을 비교한 결과, 소득공제제도보다 세액공제제도가 소득세의 수직적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행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세액공제와 비교시 소득양극화 현상을 더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 제도가 필요경비적 성격으로 자영업자와의 과세형평 측면에서 도입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개편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다양한 공제항목별 성격에 따라 소득계층별 세금절감효과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므로, 각 소득공제 항목의 조세정책적인 도입목적 및 정책방향,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소득재분배를 강화하기 위한 소득세제 개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VI. 소득세제 개편을 위한 정책방향

### 1. 소득재분배 기능 개선

조세의 기능<sup>63)</sup>은 크게 소득재분배 기능(Income Redistribution), 자원배분 기능(Resource Reallocation), 경제안정화 기능(Stabilizing the Economy)으로 구분되며<sup>64)</sup>, 복지수요의 증대 및 재정건전성 유지 측면에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조세 중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세목은 소득세, 상속·증여세, 재산세 등이며, 해당 세목의 누진세율 및 공제체계, 고율과세 등이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정책의 주요 수단이다.

소득세는 2011년 기준 국세 약 180.1조원 중 약 42.3조원으로 약 23.5%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약 51.9조원<sup>65)</sup>, 법인세 약 44.9조원에 이어 세수규모가 큰 3대 세목이므로 조세의 소득재분배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요 세목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세목 중에는 소득세, 상속·증여세, 재산세 등이 누진적인 세율체계의 적용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상속·증여세, 재산세의 세수

---

63) 조세의 기능은 크게 소득재분배 기능(Income Redistribution), 자원배분 기능(Resource Reallocation), 경제안정화 기능(Stabilizing the Economy)으로 구분됨. ① 소득재분배 기능(Income Redistribution)이란, 조세를 통하여 개인 및 집단간 소득이 이전되는 것으로 공평한 소득분배 실현을 목적으로 함, ② 자원배분 기능(Resource Reallocation)이란, 경제적 자원을 민간 및 공공부문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배분하는 기능을 의미함, ③ 경제안정화 기능(Stabilizing the Economy)이란,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의미함

64) Musgrave(1959), p.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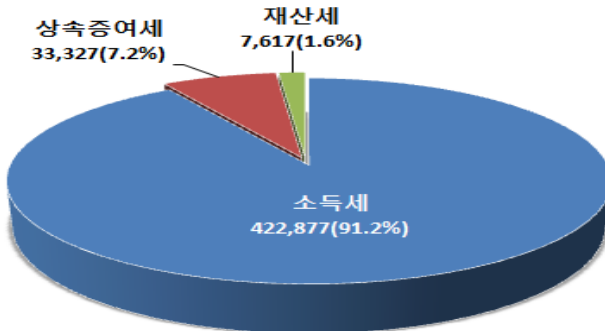
65) 지방소비세가 차감된 후의 세수실적임

VI. 소득세제 개편을 위한 정책방향 175

비중이 소득세 91.2%와 비교하여 각각 7.2%, 1.6%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소득세, 상속·증여세, 재산세의 신고인원 및 결정세액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세의 경우 과세대상자 및 결정세액이 각각 993만명, 17.8조원에 이르고 있어 소득세의 결정세액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림 VI-1] 소득재분배 관련세목 세수비중

(단위: 억원, 명, 건)



자료: 『2012 조세개요』; 『2012 지방세정연감』; 『국세통계연보』(2012)

<표 VI-1> 소득재분배 관련세목 신고인원 및 결정세액

(단위: 명, 건, 백만원)

	신고인원(건수)	결정세액
종합소득세	3,956,702	15,170,663
근로소득세	9,934,987	17,801,868
양도소득세*	586,507	7,405,833
상속세	4,316	1,399,607
증여세	79,030	1,577,421
재산세*	30,745,834	7,896,398

주: \*건수기준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현황, 과세미달자 및 비과세소득 제외
2.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과세미달자 5,605,070명 및 비과세소득 제외
3. 상속세 신고자 중 과세미달자 및 비과세소득 제외

자료: 『2012 지방세정연감』; 『국세통계연보』(2012)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제는 공제제도를 소득공제 중심으로 운영함에 따라 고소득자에게 그 세제혜택이 편중되고 있어 세부담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 즉, 소득공제제도는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금액을 감소시켜 세액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로서 “소득공제금액×한계세율”만큼 세금절감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반면, 세액공제제도는 해당 항목에 대해 일정 공제율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므로 개인의 한계세율과 관계없이 세금절감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현행 소득세제하에서는 동일한 소득공제금액이더라도, 개인의 과세표준에 따라 한계세율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그 세제혜택 수준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 기준으로 소득공제로 인한 1인당 평균 소득세 경감액을 살펴본 결과,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의 1인당 소득세 경감액은 평균 1,247만원으로 「1.2천만원 이하」 구간의 약 47.5만원보다 약 26.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2> 소득공제로 인한 1인당 평균 소득세 경감액  
(과세대상 근로소득 기준)

(단위: 원, 배수)

과세표준 규모별	2009		2010		2011	
	1인당 소득 세 경감액 <sup>1)</sup>	배수 <sup>2)</sup>	1인당 소득 세 경감액 <sup>1)</sup>	배수 <sup>2)</sup>	1인당 소득세 경감액 <sup>1)</sup>	배수 <sup>2)</sup>
1.2천만원 이하	510,255	1.0	480,709	1.0	475,655	1.0
4.6천만원 이하	1,759,121	3.4	1,595,817	3.3	1,612,778	3.4
8.8천만원 이하	3,370,956	6.6	3,121,109	6.5	3,357,685	7.1
1억원 이하	4,368,863	8.6	4,070,714	8.5	4,378,023	9.2
2억원 이하	5,633,231	11.0	5,304,879	11.0	5,665,280	11.9
3억원 이하	7,695,466	15.1	7,039,443	14.6	7,566,890	15.9
3억원 초과	11,356,639	22.3	11,237,926	23.4	12,471,899	26.2

주: 1) 1인당 소득세 경감액= 공제액 × 과표구간별 적용세율(=산출세액/과세표준) ÷ 신고인원

2) 각 구간 1인당 소득세 경감액과 1.2천만원 이하의 1인당 소득세 경감액 대비 배수를 나타냄

1. 과세미달자 제외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반면, 세액공제로 인한 1인당 평균 소득세 경감액 차이는 과세표준 「1.2천만원 이하」 대비 「3억원 초과」 구간이 7.4배로 나타나 소득 공제가 소득계층 간 세금절감효과의 차이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3> 세액공제로 인한 1인당 평균 소득세 경감액  
(과세대상 근로소득 기준)

(단위: 원, 배수)

과세표준 규모별	2009		2010		2011	
	1인당 소득세 경감액 <sup>1)</sup>	배수 <sup>2)</sup>	1인당 소득세 경감액 <sup>1)</sup>	배수 <sup>2)</sup>	1인당 소득세 경감액 <sup>1)</sup>	배수 <sup>2)</sup>
1.2천만원 이하	144,869	1.0	147,695	1.0	149,119	1.0
4.6천만원 이하	489,171	3.4	487,148	3.3	485,428	3.3
8.8천만원 이하	561,434	3.9	546,356	3.7	542,213	3.6
1억원 이하	743,496	5.1	693,615	4.7	666,089	4.5
2억원 이하	980,150	6.8	853,332	5.8	845,203	5.7
3억원 이하	1,446,266	10.0	1,139,244	7.7	1,052,042	7.1
3억원 초과	994,140	6.9	1,022,904	6.9	1,100,520	7.4

주: 1) 1인당 소득세 경감액= 공제액 ÷ 신고인원

2) 각 구간 1인당 소득세 경감액과 1.2천만원 이하의 1인당 소득세 경감액 대비 배수를 나타냄

1. 과세미달자 제외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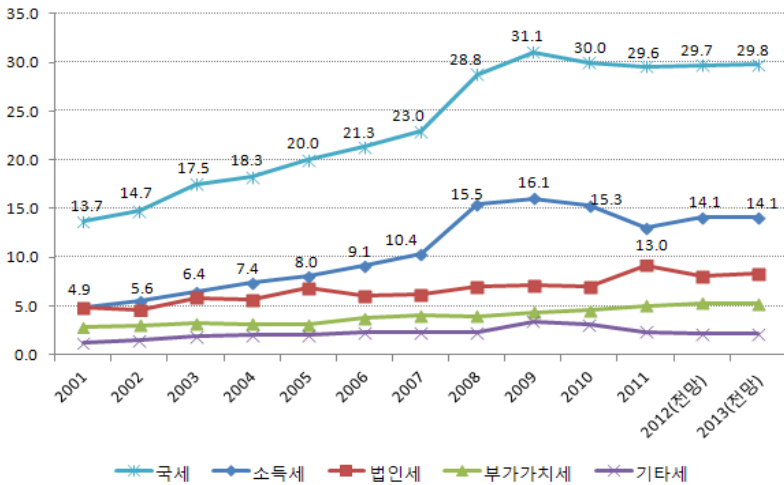
## 2. 소득세 감면규모 축소

우리나라의 국세감면규모는 2012년 약 29조 7,317억원이며, 이 중 소득세 감면규모는 14조 612억원으로 전체 국세감면액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다. 명목세율이 10~40% 수준이었던 2001년 전체 국세감면액의 약 35% 수준과 비교하면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세율인하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감면규모는 축소되지 않고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로 나타났다. 2001년 소득세 감면액은 4.9조원으로 전체 국세감면액의 약 35.4%를 차지하여 법인세와 비슷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에는 소득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국세감면액<sup>66)</sup>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득세 감면규모의 증가에 따라 국세감면규모는 2001~2011년간 연평균 8.0%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VI-2] 국세감면액 현황

(단위 :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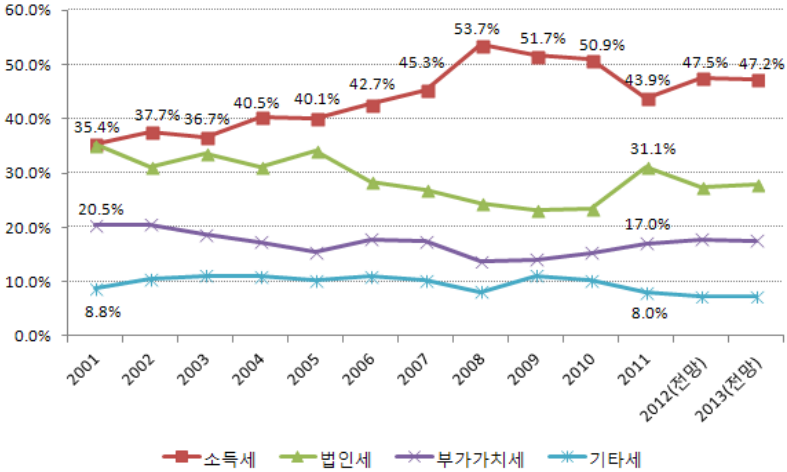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66) 국세감면 = 조세지출 + 비망항목 + 경과조치(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 예산서」)  
 - 조세지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감면  
 - 비망항목: 개별 세법에 따른 비과세·감면  
 - 경과조치: 제도폐지 후 경과기간 중 발생하는 비과세·감면

[그림 VI-3] 주요 세목별 국세감면액 비중 변화

(단위: %)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다만, 서민, 중산층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세감면액 비중이 2011년 기준 55.4%로 가장 높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국세감면액은 비과세·감면 정비 등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의 결과 2009년 이후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으나, 국세감면액 중 서민·중산층·중소기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고소득층 및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감면액도 2011~2013년간 소폭 감소하였으나, 약 40%대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비과세·감면정비를 통한 소득세 감면규모 축소시 세부담 증가로 인한 적용대상자들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하며, 동시에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실효성이 낮거나 당초의 지원목적을 달성한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lt;표 VI-4&gt; 서민·중산층·중소기업 및 고소득층·대기업 감면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수혜자	2011년 (실적)	2012년 (잠정)	2013년 (전망)
국 세 감면액	서민·중산층·중소기업 등	△163,869 (55.4)	△170,189 (57.2)	△171,169 (57.5)
	고소득층·대기업	△117,536 (39.7)	△116,275 (39.1)	△113,992 (38.3)
	(구분곤란)	△14,616 (4.9)	△10,854 (3.7)	△12,472 (4.2)
	계	△296,021 (100.0)	△297,317 (100.0)	△297,633 (100.0)
조세 지출	서민·중산층·중소기업 등	△113,754 (60.2)	△115,554 (63.0)	△118,414 (63.8)
	고소득층·대기업	△61,643 (32.6)	△57,579 (31.4)	△55,372 (29.8)
	(구분곤란)	△13,716 (7.3)	△10,272 (5.6)	△11,937 (6.4)
	계	△189,112 (100.0)	△183,405 (100.0)	△185,722 (100.0)

주: 1. 개인은 근로소득 총급여 5,500만원 기준으로 구분하고, 개인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분류

\* OECD 기준, 중위소득(상용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의 150%

2. 농어민, 장애인, 취약계층 지원은 서민·중산층으로 구분

3. ( ) 비중

자료: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 3. 과세미달자 비율 축소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각종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 등의 확대에 인하여 실질적인 세부담이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 면세점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과세미달자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자영업자와의 수평적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조세체계의 복잡성이 심

화되고 근로소득자의 면세점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자의 과세미달자 비중은 2011년 기준 근로소득 신고인원의 36.1%로 2001년 44.2%에 비해 약 18%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편, 종합소득자의 경우 2001년 이후로 과세미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에는 2001년 52.6% 대비 약 50% 감소하여 26.2%로 나타났다. 이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활성화정책 및 현금영수증제도 등의 과세표준 양성화정책으로 인하여 과세미달자 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소득과약률이 높은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상 각종 공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종합소득자에 비하여 오히려 과세미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자영업자에 비해 공제혜택을 확대한 결과, 조세체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면세점이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바, 과세미달자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되,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간의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 VI-5> 근로소득 연말정산(원천징수) 신고인원 및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단위 : 명, %)

	근로소득 <sup>1)2)</sup>		종합소득 <sup>3)4)</sup>	
	2001	2011	2001	2011
합계(A+B)	11,555,000 (100.0)	15,540,057 (100.0)	3,808,476 (100.0)	5,419,245 (100.0)
과세대상자 (A)	6,446,000 (55.8)	9,934,987 (63.9)	1,806,719 (47.4)	3,998,259 (73.8)
과세미달자 (B)	5,109,000 (44.2)	5,605,070 (36.1)	2,001,757 (52.6)	1,420,986 (26.2)

주: 1) 2001, 2010년도 귀속분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신고자의 신고 실적을 기준으로 함

2) 급여총계 기준 통계임(급여총계 - 비과세소득 = 과세대상근로소득(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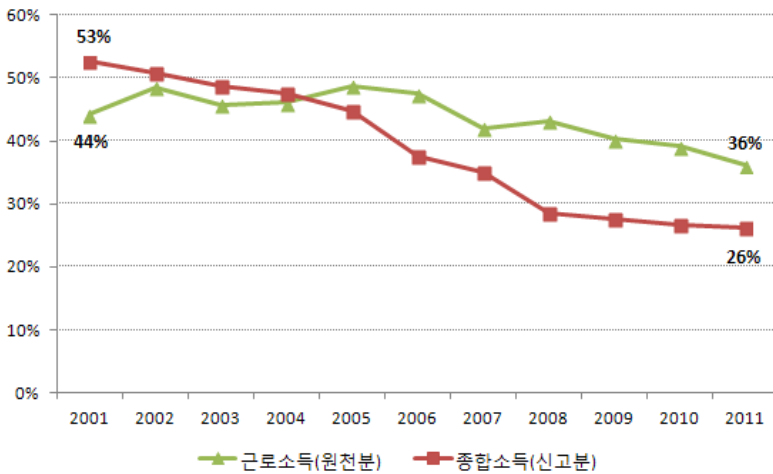
## &lt;표 VI-5&gt;의 계속

- 3) 사업자(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를 기준으로 집계하였으며, 비사업자는 제외
- 4) 종합소득세의 납세인원의 경우, 신고인원(3,785,248명, 2010년 기준)과 다른 개념이며, 국세통계연보상 과세대상자는 확정신고 대상인원으로, 과세미달자는 과세미달추정인원으로 나타남

1. ( )의 수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2, 2012

[그림 VI-4] 종합소득 및 근로소득의 과세미달자 비중 추이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4.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격차 축소

우리나라의 2012년 기준 소득세 세율구조는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고소득세율은 38%로 OECD 회원국의 단순평균 36%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득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기준 3.8%로 통계자료가 가용한 OECD 27개국 평균 8.9%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명목소득세율이 낮은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효세율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낮은 소득과약률 및 다양한 공제·감면제도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총소득 대비 결정세액」 비율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소득세 과세체계가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한 「총급여 대비 결정세액」 비율은 전체 평균 4.6%로, 세액공제가 반영된 「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 비율 11.0%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에서 결정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기준 과세표준 구간별로 0.6~19.9%이며, 명목세율과의 차이는 5.4~15.1%p로 나타났다. 한편, 과세표준에서 결정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2.8~25.0%이며,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간의 차이는 3.2~10.0%p로 나타났다.

<표 VI-6> 근로소득자의 명목세율 vs. 실효세율(2011년 귀속)

과세표준구간	명목세율	실효세율	
		결정세액/총급여 <sup>1)</sup>	결정세액/과세표준
총 계		4.6%	11.0%
1,200만원 이하	6%	0.6% (5.4)	2.8% (3.2)
1,200만~4,600만원 이하	15%	3.7% (11.3)	8.2% (6.8)
4,600만~8,800만원 이하	24%	8.9% (15.1)	14.4% (9.6)
8,800만원 초과	35%	19.9% (15.1)	25.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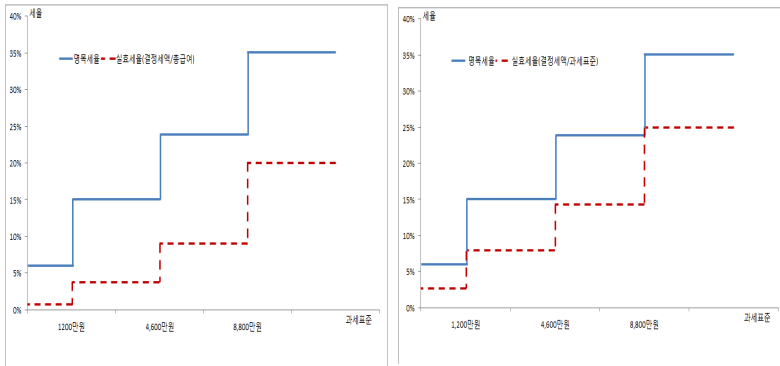
주: 1) 총급여=급여총계-비과세소득

1. ( ): 명목세율과의 차이(%p)

2. 일반적으로 실효세율은 「결정세액/과세표준」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각종 소득공제가 반영되지 않은바, 「결정세액/총급여」로 산출한 비율이 실효세율로 더 타당함

자료: 『국세통계연보』, 2012

[그림 VI-5] 근로소득자의 명목세율 vs. 실효세율(2011년 귀속)



자료: 『국세통계연보』, 2012

한편, 종합소득자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한 「과세소득 대비 결정세액」 비율이 13.6%로 근로소득자보다 9%p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원적 과세체계의 운영으로 인하여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공제범위가 확대되어,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자보다 실효세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종합소득자는 과세소득에서 결정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2.0~23.7%이며, 과세표준 구간별로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간의 차이는 4.0~12.5%p로 나타났다. 한편, 과세표준에서 결정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5.1~25.4%이며,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간의 차이는 0.9~9.9%p로 나타났다.

<표 VI-7> 종합소득자의 명목세율 vs. 실효세율(2011년 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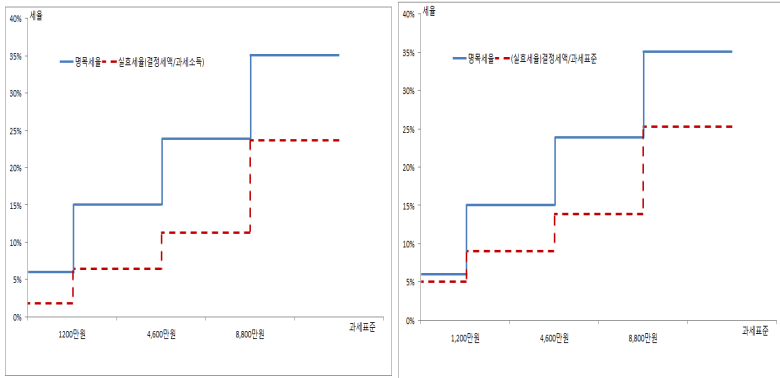
과세표준구간	명목세율	실효세율	
		결정세액/과세소득 <sup>1)</sup>	결정세액/과세표준
총 계		13.6%	18.0%
1,200만원 이하	6%	2.0% (4.0)	5.1% (0.9)
1,200만~4,600만원 이하	15%	6.5% (8.5)	9.1% (5.9)
4,600만~8,800만원 이하	24%	11.5% (12.5)	14.1% (9.9)
8,800만원 초과	35%	23.7% (11.3)	25.4% (9.6)

주: 1) 과세소득(종합소득금액)=총소득-비과세소득-필요경비

1. ( ) : 명목세율과의 차이(%p)
2. 일반적으로 실효세율은 「결정세액/과세표준」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각종 소득공제가 반영되지 않은바, 「결정세액/총급여」로 산출한 비율이 실효세율로 더 타당함

자료: 『국세통계연보』, 2012

[그림 VI-6] 종합소득자의 명목세율 vs. 실효세율(2011년 귀속)



자료: 『국세통계연보』, 2012

## 5. 과세표준구간별 적정납세자 비율 유지

소득세는 세수비중이 높고 누진세율구조를 통하여 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을 달성함으로써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세원으로 적정한 과세표준구간과 소득세율을 조정할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소득세의 세수실적은 2011년 기준 42조 2,877억원으로, 내국세 중 약 26.5%를 차지하여 32.5%인 부가가치세 다음이며, 법인세와는 28.1%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득세 세율구조는 초과누진세율구조로, 각 과세표준구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조세부담능력이 클 경우 더 많은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는 1996년 이후 지속적으로 과세구간 조정 및 세율인하가 이루어졌으나, 2012년 세법개정안에서 과세표준 3억원 초과시 소득세율 38%를 적용하는 새로운 과세구간을 신설하면서 세법개정의 적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신고인원 및 결정세액의 구성비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의 적절한 조정을 통하여 과세표준구간별 적정 납세인원 비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2001년과 2011년의 과세표준구간별 신고인원 및 결정세액 비율을 살펴보면, 최고세율구간에 속하는 신고인원 및 결정세액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최고세율구간에 속한 신고인원 비율이 2001년 3.5%에서 2011년 4.3%로 약 22.8% 증가하였고, 산출세액 비율은 2001년 56.7%에서 2011년 73.6%로 29.8% 더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근로소득세는 2001년 과세표준 최고세율구간의 신고인원 비율이 0.3%에서 2011년 1.3%로 증가하여 약 75.7% 증가한 반면, 결정세액 비율은 2001년 14.0%에서 2011년 33.1%로 57.6% 증가하여 신고인원 비율 보다는 그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표 VI-8> 과세표준 계급별 현황 추이

종합소득세					
	2001		2011		2011년 대비 증가율
신고인원 <sup>1)</sup> 구성비	1,000만원 이하	65.1%	1,200만원 이하	70.5%	8.3%
	1,000만원 초과	25.6%	1,200만원 초과	19.9%	-22.4%
	4,000만원 초과	5.8%	4,600만원 초과	5.4%	-7.8%
	8,000만원 초과	3.5%	8,800만원 초과	4.3%	22.8%
산출세액 <sup>2)</sup> 구성비	1,000만원 이하	6.0%	1,200만원 이하	2.9%	-50.8%
	1,000만원 초과	19.8%	1,200만원 초과	11.4%	-42.7%
	4,000만원 초과	17.5%	4,600만원 초과	12.1%	-31.0%
	8,000만원 초과	56.7%	8,800만원 초과	73.6%	29.8%
근로소득세 <sup>3)</sup>					
	2001		2011		2011년 대비 증가율
신고인원 <sup>3)</sup> 구성비	1,000만원 이하	65.7%	1,200만원 이하	59.1%	-11.3%
	1,000만원 초과	32.3%	1,200만원 초과	34.1%	5.4%
	4,000만원 초과	1.7%	4,600만원 초과	5.5%	69.0%
	8,000만원 초과	0.3%	8,800만원 초과	1.3%	75.7%
결정세액 <sup>4)</sup> 구성비	1,000만원 이하	12.6%	1,200만원 이하	4.3%	-193.1%
	1,000만원 초과	58.7%	1,200만원 초과	35.9%	-63.4%
	4,000만원 초과	14.7%	4,600만원 초과	26.7%	44.9%
	8,000만원 초과	14.0%	8,800만원 초과	33.1%	57.6%

주: 1) 해당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2) 2011년 귀속분 통계자료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급별 산출세액자료만 존재하여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산출세액 구성비를 기준으로 함

3) 해당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신고자의 신고실적 기준(과세 미달자 제외)

4) 2011년 귀속분 통계자료상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계급별 결정세액자료만 존재하여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결정세액 구성비를 기준으로 함

1. 2008년부터 과세표준구간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VII. 2013년 소득세법 개편안 및 기대효과

### 1. 개요

정부는 2013년 세제개편을 통하여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의 틀 내에서 기본방향으로 국정과제의 적극적 지원, 국민중심의 세제 운영, 과세형평 제고·세입기반 확충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정과제의 적극 지원으로 창조경제 기반 구축, 고용률 70% 달성, 중소기업 육성, 문화예술 진흥 등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둘째,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칙에 입각하여 일관성 있게 조세제도를 적용하는 등 국민중심으로 세제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마련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표 VII-1> 2013년 세법개정

<b>비전</b>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		
<b>기본 방향</b>	국정과제 적극 지원	국민중심 세제 운영	과세형평 제고·세입기반 확충
<b>추진 전략</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장동력 확충·중소기업 지원</li> <li>창조경제 기반 구축(벤처투자 활성화)</li> <li>고용률 70% 달성 지원</li> <li>문화예술 진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세의 사회안전망 강화(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li> <li>농어민·영세자영업자 지원</li> <li>서민·중산층 지원</li> <li>납세편의 제고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li> <li>비과세·감면 정비</li> <li>과세기반 확대</li> <li>지하경제 양성화</li> </ul>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2. 2013년 소득세 개편안의 주요 내용

### 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2013년 소득세 개편안에서는 과세형평성 원칙에 입각하여 기존의 소득공제를 점진적으로 세액공제로 전환하기로 제시함에 따라 소득세 공제체계의 큰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의무적 납부 및 필요경비적 성격을 가지는 근로소득공제, 건강보험료·국민연금공제는 기존의 소득공제방식을 유지한다. 둘째, 인적공제 중 다자녀, 자녀양육비, 출산·입양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하고, 장애인, 노인, 부녀자 등 공제는 2014년 이후 세액공제로 전환한다. 셋째, 특별공제의 경우,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공제는 중산층 지원을 목적으로 세액공제율 15%를 적용하며, 보험료, 연금저축·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세액공제율 12%로 설정하여 세액공제로 전환한다. 넷째, 기타의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의 전환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표 VII-2> 각종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종류		세액공제 전환 여부	
근로소득공제		×	
인 적 공 제	기본 공제	×	
	추가 공제	△	2014년 이후
		○	자녀세액공제 <sup>2)</sup>
		○	
		○	
		○	
	· 다자녀추가공제		

&lt;표 VII-2&gt;의 계속

종류			세액공제 전환여부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세액공제율 12%
			· 퇴직연금	○	
특별공제	항목별공제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	×	세액공제율 15%
			- 보장성보험	○	
	· 의료비	○	세액공제율 15%		
	· 교육비				
	· 주택자금	△	2014년 이후		
	· 기부금	○	세액공제율 15%		
	표준공제			○	표준세액공제 <sup>3)</sup>
기타 소득 공제	· 연금저축공제		○	세액공제율 12%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 투자조합출자 등 공제		△	2014년 이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 우리사주조합 출자소득공제				

주: 1) 한부모 소득공제 2013년 신설

2) 자녀세액공제: 자녀 2인 이하의 경우 1인당 15만원, 2인 초과 1인당 20만원

3) 표준세액공제: 근로자 12만원, 사업자 7만원 적용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또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에 따라 소득계층간 세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소득공제는 축소하되,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도 확대하였다. 즉,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세법상 필요경비 성격으로 총급여에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총급여에서 차감해 주는 것으로, 세제개편안에서는 소득공제제도를 유지하되, 총급여 구간별 공제율을 다소 축소하였다. 한편, 근로소득세액공제<sup>67)</sup>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일정 비율

67) 「소득세법」 제59조

을 곱한 금액만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기존 계산방식은 유지하되, 일부 소득구간의 한도를 조정하였는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공제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66만원으로 상향하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63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표 VII-3> 2013년 세법개정안 수정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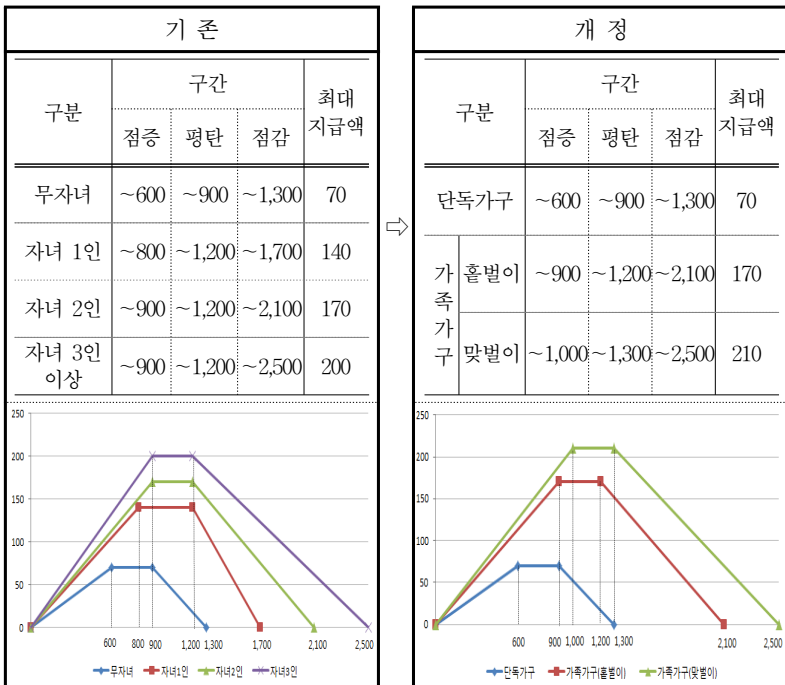
기 존	개 정																												
<p><b>① 근로소득공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제율</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총급여 구간</th> <th style="text-align: center;">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8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5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5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0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5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억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억원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r> </tbody> </table>	총급여 구간	공제율	~500만원	80%	~1,500만원	50%	~3,000만원	15%	~4,500만원	10%	~1억원	5%	1억원 초과	5%	<p><b>① 근로소득공제 축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제율</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총급여 구간</th> <th style="text-align: center;">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7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5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4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0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5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억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억원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r> </tbody> </table>	총급여 구간	공제율	~500만원	70%	~1,500만원	40%	~3,000만원	15%	~4,500만원	15%	~1억원	5%	1억원 초과	2%
총급여 구간	공제율																												
~500만원	80%																												
~1,500만원	50%																												
~3,000만원	15%																												
~4,500만원	10%																												
~1억원	5%																												
1억원 초과	5%																												
총급여 구간	공제율																												
~500만원	70%																												
~1,500만원	40%																												
~3,000만원	15%																												
~4,500만원	15%																												
~1억원	5%																												
1억원 초과	2%																												
<p><b>② 근로소득세액공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산</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만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산출세액×5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만원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50만원 초과×3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도 전 소득구간: 50만원</li> </ul>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55%	50만원 초과:	50만원 초과×30%	<p style="text-align: center;">⇨</p> <p><b>②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산</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만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산출세액×5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만원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50만원 초과×3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66만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63만원 총급여 7,000만원 초과: 50만원</li> </ul>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55%	50만원 초과:	50만원 초과×30%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55%																												
50만원 초과:	50만원 초과×30%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55%																												
50만원 초과:	50만원 초과×30%																												

나.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 신설

1)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2013년 소득세 개편안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지급기준을 자녀 기준에서 가구원 기준(단독, 가족)으로 전환하고,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하여 소득구간 및 지급액 수준을 확대하였는바, 결혼에 대한 지원을 위해 가족가구에 대한 지원수준을 확대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맞벌이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다.

<표 VII-4>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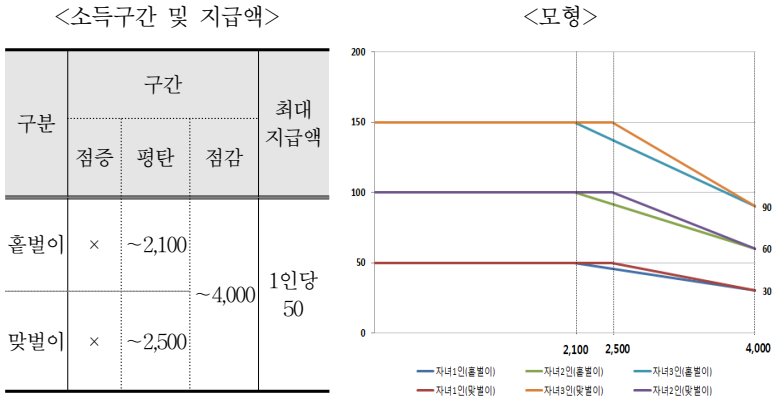


2) 자녀장려세제(CTC) 신설

근로장려세제(EITC)의 확대와 함께,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양육비 지원을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하는 자녀장려세제(CTC)를 신설하였다. 근로장려세제(EITC)를 단독 및 가족(홀벌이/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개정함에 따라 기존 EITC에서 고려한 자녀 기준을 자녀장려세제(CTC)에 적용하여 각 제도의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기존의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의 수급요건(재산, 소득기준 등)을 연계하여 하나의 지원세제로 작동하도록 설계하였다.

<표 VII-5> 자녀장려세제(CTC) 신설

(단위: 만원)



### 3. 2013년 소득세 개편안의 기대효과

#### 가. 1인당 평균 소득세 경감액으로 본 효과

2013년 세제개편안에서는 기존의 소득공제를 점진적으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바, 1인당 평균 소득세 경감액으로 살펴본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공제제도로 인한 세금절감효과 차이는 크게 축소되어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액공제제도로의 전환은 기존의 소득공제 중심 운영에 따른 고소득자에게 편중되었던 세제혜택을 완화시켜 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2013년 소득세 세제개편안 중 현행 특별공제 중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공제를 공제율 15%인 세액공제로 전환시 총급여 「2천만원 이하」 대비 「3억원 초과」 구간의 근로자가 받는 세금절감혜택 차이는 공제별로 각각 73.6배 → 14.5배, 25.5배 → 5.0배, 178.3배 → 35.2배로 크게 감소하였다.

<표 VII-6> 세액공제율 15% 전환항목의 1인당 평균 소득세 경감액 및 배수

(단위: 원, 배수)

총급여 구간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현행 <sup>1)</sup>	개정 <sup>2)</sup>	현행 <sup>1)</sup>	개정 <sup>2)</sup>	현행 <sup>1)</sup>	개정 <sup>2)</sup>
2천만원 이하	41,524 (1.0)	103,788 (1.0)	77,378 (1.0)	193,404 (1.0)	20,328 (1.0)	50,809 (1.0)
4천만원 이하	95,624 (2.3)	209,838 (2.0)	163,765 (2.1)	359,368 (1.9)	40,208 (2.0)	88,234 (1.7)
6천만원 이하	221,155 (5.3)	345,786 (3.3)	294,847 (3.8)	461,008 (2.4)	97,599 (4.8)	152,600 (3.0)
8천만원 이하	347,641 (8.4)	441,925 (4.3)	475,665 (6.1)	604,671 (3.1)	181,824 (8.9)	231,137 (4.5)

<표 VII-6>의 계속

총급여 구간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현행 <sup>1)</sup>	개정 <sup>2)</sup>	현행 <sup>1)</sup>	개정 <sup>2)</sup>	현행 <sup>1)</sup>	개정 <sup>2)</sup>
1억원 이하	464,607 (11.2)	500,212 (4.8)	549,643 (7.1)	591,766 (3.1)	281,923 (13.9)	303,529 (6.0)
2억원 이하	694,347 (16.7)	567,938 (5.5)	916,013 (11.8)	749,249 (3.9)	503,584 (24.8)	411,904 (8.1)
3억원 이하	1,392,551 (33.5)	803,634 (7.7)	1,558,695 (20.1)	899,515 (4.7)	1,375,523 (67.7)	793,807 (15.6)
3억원 초과	3,054,909 (73.6)	1,507,662 (14.5)	1,973,697 (25.5)	974,061 (5.0)	3,624,979 (178.3)	1,789,003 (35.2)

주: 1) 현행 1인당 세금경감액 = 공제액 × 구간별 적용세율(=산출세액/과세표준) ÷ 신고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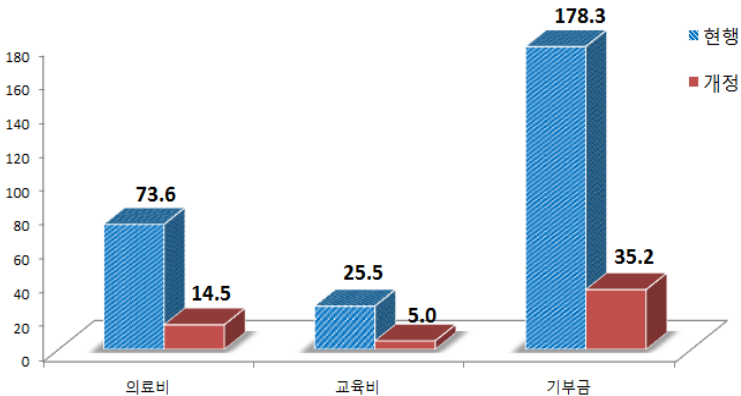
2) 세액공제율 15% 적용시 1인당 평균 세금경감액 추계

1. ( ) 안은 각 구간 대비 총급여 2천만원 이하 구간의 1인당 평균 세금경감액 배수 비교

2.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준, 2011년 귀속, 과세미달자 제외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2

[그림 VII-1] 세액공제율 15% 전환항목의 소득양극화 완화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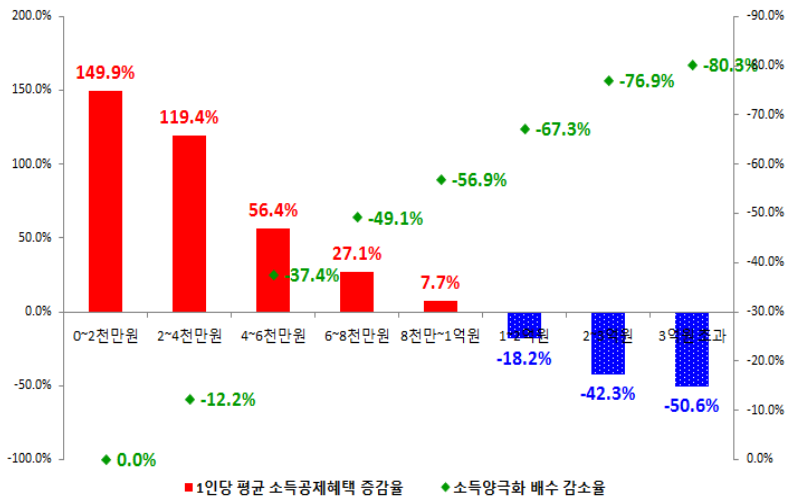
주: 1. 개정 전후, 총급여 2천만원 이하 및 3억원 초과 구간의 1인당 평균 소득세 경감액 배수 비교

2.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준, 2011년 귀속, 과세미달자 제외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2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인하여 저소득자일수록 1인당 평균 소득공제혜택은 현행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공제혜택의 차이는 큰 비율로 감소하였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로의 전환으로 인한 총급여 규모별 「2천만원 이하」 구간의 1인당 평균 세금절감효과는 기존보다 149.9% 증가하였으며, 1인당 평균 경감세액은 저소득자일수록 현행보다 더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총급여 규모별 「2천만원 이하」 대비 「3억원 초과」 구간의 1인당 세금절감혜택 차이는 총급여액이 높아질수록 더 크게 감소하였는바, 그 감소율은 80.3%에 이르고 있다. 한편, 총급여 1억원 이하 구간까지는 기존보다 1인당 평균 세금절감효과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바, 이는 소득세법상 초과누진세율구조로 인하여 근로소득자의 산출세액 대비 과세표준 비율이 세액공제를 15%보다 작은 데 기인한다.

[그림 VII-2]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15%)으로 인한 소득양극화 완화효과



VII. 2013년 소득세법 개편안 및 기대효과 197

한편, 2013년 소득세 세제개편안 중 세액공제율이 12%로 전환되는 보험료,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의 효과는, 총 급여 「2천만원 이하」 대비 「3억원 초과」 구간의 공제로 인한 1인당 평균 소득세 경감액 차이가 공제별로 59.9 → 11.8배, 14.6 → 2.9배, 15.8 → 3.1배, 10.6 → 2.1배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68)</sup>

<표 VII-7> 세액공제율 12% 전환항목의 1인당 평균 소득세 경감액 및 배수  
(단위: 원, 배수)

총급여 구간	보험료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현행 <sup>1)</sup>	개정 <sup>2)</sup>	현행 <sup>1)</sup>	개정 <sup>2)</sup>	현행 <sup>1)</sup>	개정 <sup>2)</sup>	현행 <sup>1)</sup>	개정 <sup>2)</sup>
2천만원 이하	82,790 (1.0)	165,545 (1.0)	70,623 (1.0)	141,216 (1.0)	57,586 (1.0)	115,148 (1.0)	67,579 (1.0)	135,129 (1.0)
4천만원 이하	124,700 (1.5)	218,915 (1.3)	126,595 (1.8)	222,242 (1.6)	105,974 (1.8)	186,041 (1.6)	123,684 (1.8)	217,132 (1.6)
6천만원 이하	240,586 (2.9)	300,935 (1.8)	233,200 (3.3)	291,696 (2.1)	193,604 (3.4)	242,167 (2.1)	203,162 (3.0)	254,123 (1.9)
8천만원 이하	375,406 (4.5)	381,776 (2.3)	326,855 (4.6)	332,401 (2.4)	250,727 (4.4)	254,982 (2.2)	267,747 (4.0)	272,290 (2.0)
1억원 이하	547,581 (6.6)	471,636 (2.8)	415,861 (5.9)	358,185 (2.5)	335,090 (5.8)	288,616 (2.5)	327,463 (4.8)	282,047 (2.1)
2억원 이하	912,047 (11.0)	596,804 (3.6)	597,095 (8.5)	390,713 (2.8)	482,894 (8.4)	315,984 (2.7)	446,332 (6.6)	292,060 (2.2)
3억원 이하	2,151,519 (26.0)	993,304 (6.0)	880,729 (12.5)	406,611 (2.9)	762,837 (13.2)	352,183 (3.1)	646,311 (9.6)	298,386 (2.2)
3억원 초과	4,955,281 (59.9)	1,956,428 (11.8)	1,027,875 (14.6)	405,823 (2.9)	910,086 (15.8)	359,317 (3.1)	716,216 (10.6)	282,774 (2.1)

주: 1) 현행 1인당 세금경감액 = 공제액 × 구간별 적용세율(=산출세액/과세표준) ÷ 신고인원

2) 세액공제율 12% 적용시 1인당 평균 세금경감액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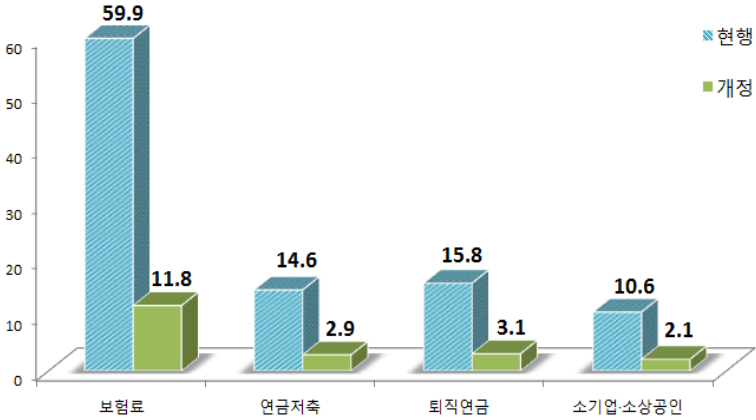
1. ( ) 안은 각 구간 대비 총급여 2천만원 이하 구간의 1인당 평균 세금경감액 배수 비교

2.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준, 2011년 귀속, 과세미달자 제외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2

68) 단, 보험료공제의 경우 건강보험, 고용보험, 보장성보험, 장애인전용보험 등이 모두 포함되며,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해당 소득계층 간 배수 차이 분석시 주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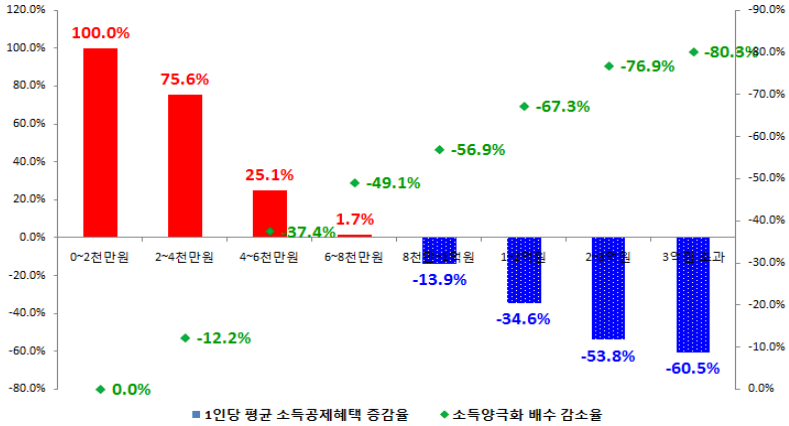
[그림 VII-3] 세액공제율 12% 전환항목의 소득양극화 완화효과



주: 1. 개정 전후, 총급여 2천만원 이하 및 3억원 초과 구간의 1인당 평균 소득세 경감액 배수 비교  
 2.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준, 2011년 귀속, 과세미달자 제외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2

또한, 세액공제율 12%로 전환되는 보험료, 연금저축·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의 경우에도 총급여 규모별로 「8천만원 이하」의 소득구간까지는 1인당 평균 세금절감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금액이 높아질수록 공제혜택의 차이는 더 큰 비율로 감소하였다. 총급여 규모별로 「2천만원 이하」 구간의 경우 1인당 평균 세금절감효과는 기존보다 100.0% 감소하였고, 총급여 「2천만원 이하」 구간 대비 「3억원 초과」 구간의 1인당 평균 세금절감혜택 차이는 그 감소율이 80.3%에 이르고 있다.

[그림 VII-4]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12%)으로 인한 소득양극화 완화효과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3년 세계개편안 중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현행 소득세 공제체계의 역진성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2014년 이후 세액공제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그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이후 점차적으로 세액공제로 전환될 소득공제 항목은 추가공제로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공제와 기타 소득공제인 창업투자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주택자금공제가 있다.

### 나. 소득재분배 개선효과

#### 1) 근로소득자 지니계수 감소율

##### 가) 추정방법

현행 세법이 향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 신설로 개편되었을 경우의 소득

재분배 개선효과를,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다양한 지수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니계수<sup>69)</sup>의 변화 정도를 통해 다음의 두 가지 자료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2012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전체가구 중 1인 이상 비농가 근로자가구 4,351가구를 대상으로, 2013년 세제개편안 중 자녀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보장성보험료·연금저축과 같은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로의 전환,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 신설을 반영하였다. 가용데이터의 한계로 출산·입양자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퇴직연금보험료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와 같은 2013년도 세제개편안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하였다.<sup>7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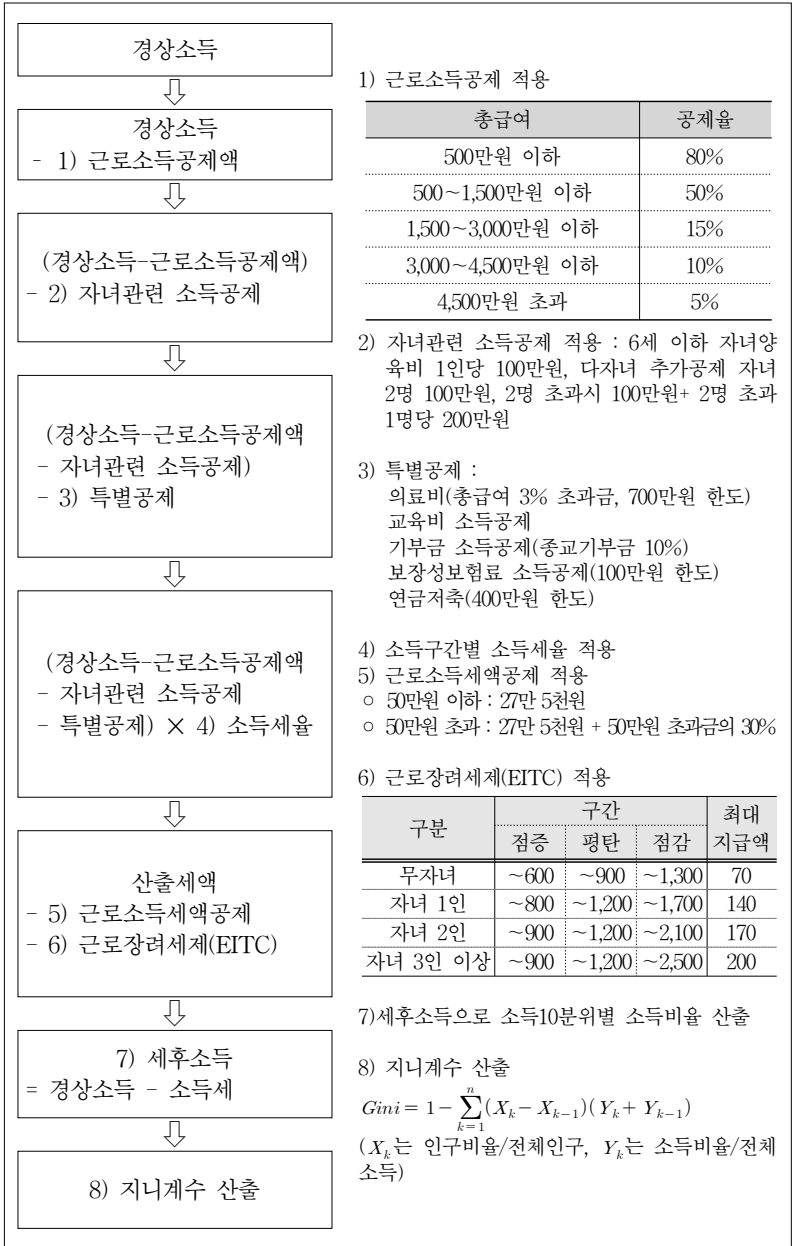
둘째, 국세청 제공 자료는 2011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중 과세대상자 9,934,98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로의 전환 중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뿐만 아니라 출산·입양자공제, 신용카드 등 공제, 퇴직연금보험료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를 추가적으로 반영하였다. 또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 신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반영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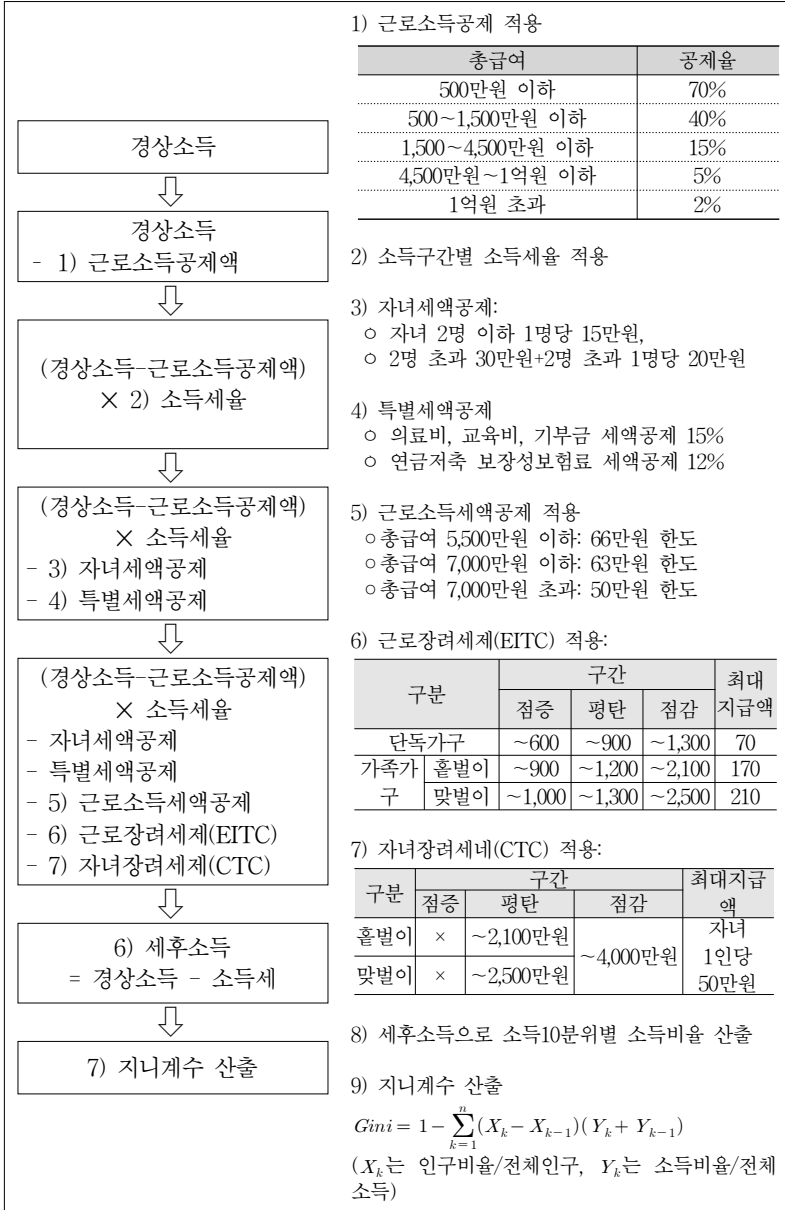
69) 지니계수란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서 1사이 값을 가지며 지니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함을 의미하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의미하고, 조세의 재분배효과는 가처분소득<sup>1)</sup>과 경상소득<sup>1)</sup> 간의 차이로 나타남.

70) 기부금공제: 종교기부금에 대해서만 적용

<표 VII-8> 현행 세법을 이용한 세후소득 지니계수 산출 과정



<표 VII-9> 2013년 소득세 개편안을 이용한 세후소득 지니계수 산출 과정



## 나) 추정결과

## (1)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13년 소득세 세제개편안이 근로소득자의 소득재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지니계수를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 EITC 확대 및 CTC 신설로 인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는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세제개편안을 반영하지 않은 2012년도 세전과 세후소득 지니계수 비교시 세후소득 지니계수는 0.3042로 세전소득 지니계수 0.3304 대비 7.9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세 부담구조는 누진적이므로 세후소득 지니계수는 세전 지니계수에 비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첫째, 2013년 세제개편안 중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 효과를 반영하여 추정한 세후소득 지니계수는 0.3031로 개정 전 세후소득 지니계수 감소를 7.93%보다 더 큰 8.26%의 감소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시 세후소득 지니계수 감소율이 개정 전보다 더 크게 나타나므로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소득불평등 개선에 효과적인 정책수단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소득세 공제제도 개편안과 동시에 EITC 확대 및 CTC 도입을 모두 고려한 세전·세후소득 지니계수의 변화를 살펴 본 결과, EITC 확대 및 CTC 도입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더욱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 공제제도 개편안 반영 후의 세후소득 지니계수는 0.3031, EITC 확대 및 CTC 도입을 고려한 세후소득 지니계수는 0.2999로 세전 지니계수 0.3304 대비 각각 8.26%, 9.23%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EITC 급여만을 추가적으로 반영한 지니계수는 0.3019, CTC 급여만을 반영한 지니계수는 0.3018로 나타나 0.0001의 미미한 차이지만, CTC 도입이 EITC의 확

대보다 소득재분배 개선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TC가 평탄-점감구간으로 되어 있고,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합계액이 4,000만원 미만의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하여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환급하는 반면, EITC는 점증-평탄-점감구간으로 설정되어 있고, 기준금액도 가족가구 중 홑벌이가구 2,1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2,500만원 이하에만 적용되어 EITC에 비해 CTC 적용수준이 더 광범위한 데 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VII-10> 지니계수를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효과  
(통계청, 근로소득자가구)

		현행세법 지니계수		개정세법 지니계수	
		세전	세후	세액공제로의 전환	세액공제로의 전환 + EITC·CTC
지니계수		0.3304	0.3042	0.3031	0.2999
변화율(%)	세전 대비	-	-7.93	-8.26	-9.23
	세후 대비		-	-0.36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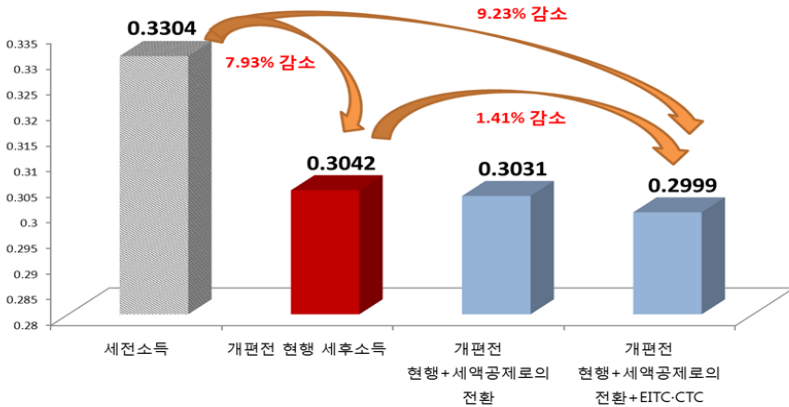
주: 2012년 소득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2

2013년 세제개편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 EITC의 확대 및 CTC의 도입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소득세법 개정효과를 반영한 세후소득 지니계수는 0.2999로 세전소득 지니계수 0.3304 대비 9.23%의 감소율을 보였고, 현행 세법 적용시 세후소득 지니계수 0.3042 대비 1.41%의 감소율을 보여 2013년 세제개편안은 소득불평등을 전반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액공제제도로의 전환은 개인의 한계세율과 관계없이 세금절감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소득공제 중심으로 운영함에 따라 고소득자에게 편중되었던 세제혜택을 감소시켜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저소득계층에

대한 현금지원을 통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는 EITC와 CTC와 같은 환급형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도입하는 것은 소득재분배 개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림 VII-5] 지니계수를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효과  
(통계청, 근로소득자가구)



한편, 2014년도 이후 세액공제로의 전환 항목 중 경로우대자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를 반영한 후의 세후소득 지니계수는 0.3031에서 0.3029로 약 0.06%p 감소율이 더 크게 나타나 세액공제로의 전환이 소득불평등도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수단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장애인공제, 창업투자조합 등 출자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 주택자금공제는 데이터의 한계로 인하여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반영한 소득공제의 경우에도 향후 개편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세액공제율을 15%로 가정하고 세후소득 지니계수를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한계가 있다.

<표 VII-11> 2014년도 이후 세액공제로의 전환항목을 반영한 지니계수  
변화

	소득재분배 효과		세전소득 대비 변화율	
	2013년	2014년 이후	2013년	2014년 이후
현행 세전소득	0.3304		-	
세후소득	0.3042		-	
개정 세후소득	2013년	2014년 이후	2013년	2014년 이후
+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	0.3031	0.3029	-8.26%	-8.32%
+ EITC · CTC	0.2999	0.2997	-9.23%	-9.29%

## (2) 국세청

2013년 세제개편안으로 인한 지니계수 변화를 국세청 통계를 활용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중 과세대상자를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국세청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국세청의 통계자료는 2013년 소득세제 개편안을 반영한 자영업자에 대한 자료는 제공되지 않아,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지니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기존의 소득세 과세미달자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과세대상자로 전환시킴으로써 납세자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나 동 과세미달자에 대한 자료는 제공되지 않아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국세청 소득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 EITC의 확대 및 CTC의 도입효과는 세후소득 지니계수가 0.3471로 세전 지니계수 0.3734, 세법개정 이전의 세후 지니계수 0.3529보다 감소하여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개정세법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만을 반영한 세후소득 지니계수는 0.3499, EITC 확대 및 CTC 도입을 포함한 세후소득 지니계수는 0.3471로, 세

VII. 2013년 소득세법 개편안 및 기대효과 207

전소득 지니계수 0.3734 대비 각각 6.30%, 7.05%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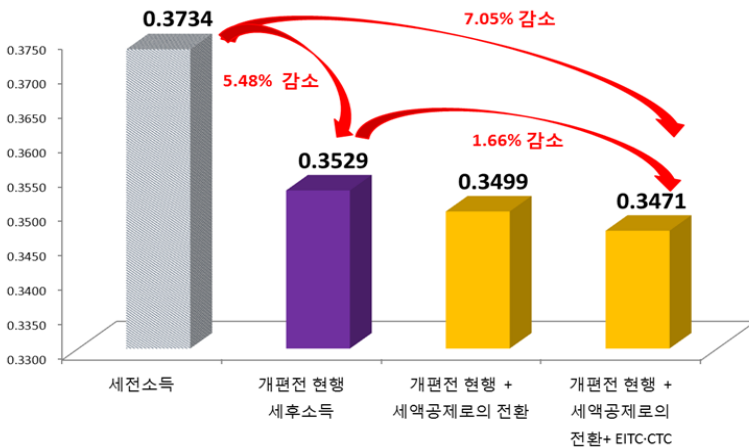
따라서, 국세청의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2013년 세제개편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 EITC의 확대 및 CTC의 도입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와 동일하게 소득재분배 효과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12> 지니계수를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효과(국세청, 근로소득자)

		현행세법 지니계수		개정세법 지니계수	
		세전	세후	세액공제로의 전환	세액공제로의 전환 + EITC·CTC
지니계수		0.3734	0.3529	0.3499	0.3471
감소율 (%)	세전 대비	-	5.48%	6.30%	7.05%
	세후 대비	-	-	0.86%	1.66%

주: 2011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중 과세미달자 제외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그림 VII-6] 지니계수를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효과(국세청, 근로소득자)



## 나) 근로소득자+자영업자의 지니계수 감소율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13년 소득세 세제개편안이 근로소득이 없는 가구를 포함한 전체가구의 소득재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근로소득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지니계수를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다만, 근로소득이 없는 가구의 세후소득 지니계수 산출시, 근로소득자와 달리 세법상 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여 인적공제 및 표준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만을 반영하였다(VII-13 참조). 그 이유는 기존 세법상 근로소득이 없는 자는 특별공제 중 기부금공제를 적용하였으나, 개정 세법에서는 사업자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경비에만 산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영업자가구의 지니계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2013년 소득세 개편안 중 자녀양육관련 소득공제 및 표준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 EITC 확대 및 CTC 신설을 반영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lt;표 VII-13&gt; 세법상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소득공제제도 비교

	근로자	자영업자
인적공제	○	○
	○	×
특별공제	- 항목별 공제와 표준공제 중 선택	- (기부금공제 <sup>1)</sup> + 표준공제)만 허용 - 단, 성실사업자는 의료비, 교육비 공제도 허용

주: 1) 2013년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필요경비에만 산입

자영업자가구를 포함한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2013년 세제개편안 중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 EITC 확대 및 CTC 도입을 반영한 세후소득 지니계수는 0.3707로 세전 지니계수 0.3890, 세법개정 이전의 세후 지니계수 0.3779보다 감소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개선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만을 반영한 세후소득 지니계수는 0.3731, EITC 확대 및 CTC 도입을 포함한 세후소득 지니계수는 0.3707로 세전소득 지니계수 0.3890 대비 각각 4.09%, 4.69%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자영업자가구를 포함한 전체가구의 세전 지니계수 대비 감소율은 4.69%로 근로소득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의 감소율 9.23%보다 소득재분배 효과는 다소 약하게 나타났는바, 이는 각종 소득공제가 근로소득자를 주로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니계수 산출시 근로소득자와는 달리 세법 상 특별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데 기인한다.

<표 VII-14> 지니계수를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효과(통계청, 전체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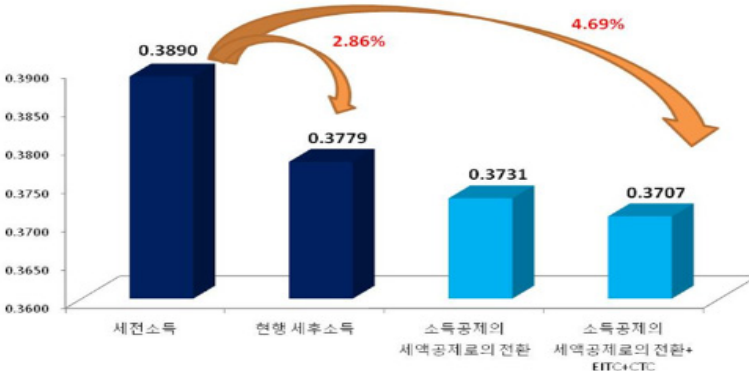
	현행세법 지니계수		개정세법 지니계수	
	세전	세후	세액공제로의 전환	세액공제로의 전환 + EITC + CTC
지니계수	0.3890	0.3779	0.3731	0.3707
감소율 (%)	세전 대비	-	4.09%	4.69%
	세후 대비	-	1.26%	1.89%

주: 1. 2012년 소득기준

2. 기존 통계청 지니계수의 전가구 기준은 농가소득을 포함한 수치이나, 해당 지니계수는 농가소득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구 및 근로소득이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2

[그림 VII-기] 지니계수를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효과(통계청, 자영자·근로자가구)



## 다. 빈곤완화효과

### 1) 추정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3년 세계개편안 중 세액공제로의 전환, 자녀장려세제(CTC) 도입 및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가 빈곤율에 미치는 영향을 2012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인 이상 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개편 전·후를 비교함으로써 빈곤완화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빈곤가구 정의시 중위소득 40%, 50%, 60% 기준을 활용하고 있는바, 이 중 국가 간 비교시 상대빈곤 기준으로 주로 활용되는 중위소득 50%로 빈곤감소효과를 살펴보았다. 또한 빈곤감소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2013년 세계개편안 중 자녀세액공제, 기부금·의료비·교육비·보장성 보험료·연금저축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로의 전환, 근로장려세제(EITC)의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 신설을 반영하였다.

### 2) 추정결과

2013년 세계개편안 중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 EITC 확대 및 CTC 도입을 모두 반영하여 살펴 본 빈곤완화효과는 다음과 같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빈곤율을 15.61%에서 15.71%로 오히려 0.1%p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으로 저소득계층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오히려 빈곤율이 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는 각종 공제 및 비과세·감면제도를 운영하여 과세미달자의 비중이 크게 높은 수준인바,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자의 과세미달자 비중은 2011년 기준 근로소득 신고인원의 36.1%에 이르고 있다. 반면, EITC 확대와 CTC 도입 이후에는 빈곤율이 15.29%로 현행 대비 0.32%p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소득계층에 대한 현금지원을 통하여 비과세 감면·정비 및 세액공제로의 전환으로 인한 저소득계층의 급격한 세 부담을 방지하고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빈곤을 완화할 수 있는 EITC와 CTC와 같은 환급형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특히 최근에는 많은 OECD 국가들이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sup>71)</sup>하고, 납세의무자의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그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당국이 개인이나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는 환급형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있다.

<표 VII-15> 2013년도 세제개편안 반영시 빈곤감소효과  
(1인 이상 근로소득자가구)

(단위: %)

구분	현행	개정			
		세액공제로의 전환	세액공제로의 전환		
			+ EITC	+ CTC	+ EITC · CTC
빈곤율	15.61	15.71	15.60	15.54	15.29
현행 대비 변화율		0.6%	-0.1%	-0.4%	-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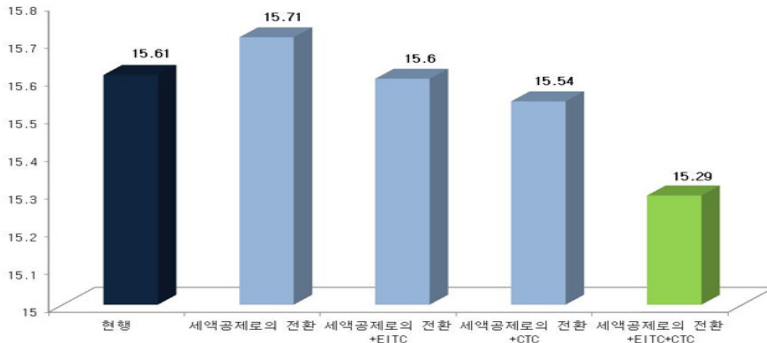
주: 1인 이상 근로소득자가구

자료: 통계청, 『2012년 가계동향조사』

71) A number of OECD countries have replaced tax allowances by tax credits in recent years. The main argument in favour of tax credits is that they are of the same value for all taxpayers (if they pay a sufficient amount of taxes), whereas the value of tax allowances increase with income in tax systems with progressive tax rates.(OECD(2006), p. 62)

[그림 VII-8] 2013년도 세제개편안 반영시 빈곤감소효과(1인 이상  
근로소득자가구)

(단위: %)



자료: 통계청, 『2012년 가계동향조사』

## 라. 세수효과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을 증가시키므로 일부 계층은 한계세율이 상승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일부 계층은 소득세 부담이 이전보다 증가하게 되어 소득세 세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안 중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으로 중산층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하는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로 인하여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과 관련된 소득세법 수정안의 세수증대효과는 세부담 증가 기준소득이 총급여 5,500만원 초과로 인상됨에 따라 당초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세수효과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세법 수정안으로 인하여 전체근로자 1,548만명의 13%인 205만명에 해당하는 평균 총급여 5,500만원 초과구간에 속하는 근로자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됨에 따른 세수증대효과는 8,600억원으로 추계된 바, 이는 개정 원안 1.3조원보다 4,400억원 감소

한 수준이다. 또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 신설로 인하여 연 1.7조원 세수가 감소하는바, 세수증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연간 약 8,400억원 수준의 복지재원 조달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표 VII-16> 2013 세법개정안 요약

	원안	수정안	차이
세부담 증가 기준소득 <sup>1)</sup>	총급여 3,450만원	총급여 5,500만원	2,050만원
세부담 증가인원	434만명 (전체근로자 1,548만명의 28%)	205만명 (전체근로자 1,548만명의 13%)	229만명
세수효과 <sup>1)</sup>	1.3조원	8,600억원	4,400억원
세출효과 <sup>1)</sup>	1.7조원	1.7조원	-

주: 1) 가구소득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한편,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발표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여 2012년 소득세 신고실적을 기준으로 전체층의 세부담 변화를 살펴본 결과, 총급여 3,450만~5,500만원 이하는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총급여 5,500만~7,000만원 구간은 세부담이 2만~3만원 미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17> 2013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세수효과

(단위: 만명, 만원)

총급여액	인원		현행	원안		수정안	
	비중	세액		차액	세액	차액	
~1,000만	435.8	28.2%	0	0	0	0	0
~2,000만	362.5	23.4%	5	0	△5	0	△5
~3,000만	231.5	15.0%	17	6	△11	6	△11
~4,000만	158.9	10.2%	36	37	1	36	0
~5,000만	112.4	7.3%	83	99	16	83	0
~5,500만	41.6	2.7%	147	163	16	147	0

&lt;표 VII-19&gt;의 계속

총급여액	인 원		현 행	원안		수정안	
		비중		세 액	차액	세 액	차액
~6,000만	37.6	2.4%	200	216	16	202	2
~7,000만	57.7	3.7%	285	301	16	288	3
~8,000만	35.4	2.3%	412	445	33	445	33
~9,000만	22.1	1.4%	540	638	98	638	98
~10,000만	16.4	1.1%	741	854	113	854	113
~11,000만	11.2	0.7%	942	1,065	123	1,065	123
~12,000만	7.3	0.5%	1,160	1,294	134	1,294	134
~15,000만	9.3	0.6%	1,586	1,842	256	1,842	256
~3억	6.7	0.4%	3,669	4,011	342	4,011	342
3억 초과	1.6	0.1%	17,600	18,465	865	18,465	865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중위소득의 50~150%를 중산층으로 규정한 OECD 기준에 근거하여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산출한 2012년 1인 이상 비농가가구의 중위소득<sup>72)</sup>의 50~150%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중산층 기준소득은 1,854만~5,562만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위소득의 50~150%를 중산층으로 규정한 OECD 기준으로는 2013년 세계개발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에서는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중산층의 세부담 증가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OECD 방식이란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층(중위소득의 50% 미만), 중산층(중위소득의 50~150%), 상류층(중위소득의 150% 이상)으로 구분하는 방법으로 중위소득에 따라 소득계층 기준이 달라지는 상대적인 기준이다. 다만, 현재 중위소득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OECD 기준은 공식적으로 합의된 개념이라 보기 어렵고, 국내 정책 수립의 기준점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소득 규모 이외의 자산규모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새로운 중산층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72) 2012년 1인 이상 비농가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월 3,090,000원, 연간 약 37,080,000원 수준임

## VIII. 소득세제 개편의 기본방향

### 1. 세액공제제도 중심으로 전환

#### 가. 현황

##### 1) 소득공제방식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하에서 소득재분배 기능과 관계되는 대부분의 항목들이 주로 소득공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소득재분배 기능과 관계되는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이 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총급여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공제금액은 점감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인적공제는 납세자의 소득규모와 무관하게 기본공제대상 가족 수가 많을수록 이에 비례하여 공제금액이 증가하며, 특별공제는 본인 부담이 불가피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사회보장비용이나 주택자금 등 저소득층 지원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제제도이다.

소득공제제도는 과세대상소득 중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으로 과세표준 금액을 감소시켜 줌으로써 최종 세액이 경감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초과누진세율체계하에서는 고소득자에게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공제제도의 혜택 또한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게 나타난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상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 기준으로 과세표준 규모별 「1.2천만원 이하」 대비 「3억원 초과」 구간의 소득공제

로 인한 1인당 평균 경감세액의 차이가 약 26.2배로 나타났다. 반면, 과세표준규모별 「1.2천만원 이하」 대비 「3억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전 1인당 공제금액은 약 5.1배로 나타나, 누진세율체계하에서 소득공제방식은 소득계층 간 세금절감효과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준으로 살펴 본, 과세표준 규모별 「1.2천만원 이하」 대비 「3억원 초과」 구간의 1인당 평균 경감세액의 차이도 약 30.8배로 나타났으며, 1인당 공제금액은 약 5.7배로 나타나 초과누진세율로 인하여 납세자가 최종적으로 받는 세금경감 혜택의 차이는 5.4배(5.7배→30.8배)나 확대되므로, 소득공제방식은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VIII-1> 소득공제로 인한 과세표준 구간별 세금절감효과

(단위: 명, 원, 배수)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기준					
과세표준 규모별	신고인원	1인당 공제액 <sup>1)</sup>		1인당 경감세액 <sup>2)</sup>	
		금액	배수 <sup>3)</sup>	금액	배수 <sup>3)</sup>
1.2천만원 이하	5,380,429	7,927,499	1.0	475,655	1.0
4.6천만원 이하	2,756,371	15,640,778	2.0	1,612,778	3.4
8.8천만원 이하	323,788	21,891,284	2.8	3,357,685	7.1
1억원 이하	19,548	22,982,377	2.9	4,378,023	9.2
2억원 이하	45,009	24,283,392	3.1	5,665,280	11.9
3억원 이하	7,589	27,962,797	3.5	7,566,890	15.9
3억원 초과	6,923	40,819,314	5.1	12,471,899	26.2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준					
과세표준 규모별	신고인원	1인당 공제액 <sup>1)</sup>		1인당 경감세액 <sup>2)</sup>	
		금액	배수 <sup>3)</sup>	금액	배수 <sup>3)</sup>
1.2천만원 이하	2,008,616	5,265,366	1.0	317,059	1.0
4.6천만원 이하	785,553	9,737,797	1.8	1,017,564	3.2
8.8천만원 이하	212,067	14,513,399	2.8	2,253,478	7.1

&lt;표 VIII-1&gt;의 계속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준					
과세표준 규모별	신고인원	1인당 공제액 <sup>1)</sup>		1인당 경감세액 <sup>2)</sup>	
		금액	배수 <sup>3)</sup>	금액	배수 <sup>3)</sup>
1억원원 이하	26,636	15,505,256	2.9	2,888,054	9.1
2억원원 이하	88,095	16,695,760	3.2	3,877,640	12.2
3억원원 이하	23,819	18,841,807	3.6	5,235,820	16.5
3억원원 초과	29,005	30,031,926	5.7	9,750,937	30.8

주: 1) 1인당 공제액 = 공제액 ÷ 신고인원

2) 1인당 경감세액 = 공제액 × 과표구간별 적용세율(=산출세액/과세표준) ÷ 신고인원

3) 각 구간 1인당 소득세 경감액과 1.2천만원 이하의 1인당 소득세 경감액 대비 배수를 나타냄

1. 과세미달자(과세표준 0 이하) 제외

2. 현 세법상 근로소득공제는 필요경비성격으로 공제되는바, 해당 소득공제 항목에는 근로소득공제는 배제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2

한편, 소득공제제도와 초과누진세율 체계로 인한 소득계층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총급여(종합소득) 규모별로 1인당 평균 경감세액을 산출하여 비교하여 본 결과, 과세표준 규모별로 살펴 본 결과보다 소득공제로 인한 세금절감효과의 차이가 다소 크게 나타났다.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와 종합소득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총급여(종합소득) 규모별로 살펴 본 1인당 평균 경감세액 차이는 누진세율의 영향으로 소득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 기준으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총급여 규모별 「2천만원 이하」 대비 「3억원 초과」 구간의 1인당 평균 경감세액의 차이는 51.7배로, 1인당 평균 공제액에 비해 약 5배(10.2배→51.7배) 크게 나타났다. 또한,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준으로 종합소득 규모별 「2천만원 이하」 대비 「3억원 초과」 구간의 1인당 세금절감효과의 차이도 31.0배로, 1인당 평균공제액에 비해 약 5배(6.0배→31.0배) 정도 크게 나타났다.

&lt;표 VIII-2&gt; 소득공제로 인한 소득구간별 세금절감효과

(단위: 명, 원, 배수)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기준					
총급여 규모별	신고인원	1인당 공제액 <sup>1)</sup>		1인당 경감세액 <sup>2)</sup>	
		금액	배수 <sup>3)</sup>	금액	배수 <sup>3)</sup>
2천만원 이하	2,859,914	3,822,176	1.0	229,379	1.0
4천만원 이하	3,509,915	9,024,283	2.4	616,859	2.7
6천만원 이하	1,888,330	17,434,417	4.6	1,672,581	7.3
8천만원 이하	929,837	21,706,845	5.7	2,561,358	11.2
1억원 이하	385,026	24,375,051	6.4	3,396,000	14.8
2억원 이하	319,324	26,413,931	6.9	4,843,954	21.1
3억원 이하	21,797	27,954,316	7.3	7,265,960	31.7
3억원 초과	14,852	38,986,288	10.2	11,849,429	51.7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준					
종합소득 규모별	신고인원	1인당 공제액 <sup>1)</sup>		1인당 경감세액 <sup>2)</sup>	
		금액	배수 <sup>3)</sup>	금액	배수 <sup>3)</sup>
2천만원 이하	2,627,030	5,117,822	1.0	318,572	1.0
4천만원 이하	541,431	9,585,354	1.9	905,965	2.8
6천만원 이하	221,088	13,164,337	2.6	1,605,233	5.0
8천만원 이하	127,752	16,037,275	3.1	2,302,083	7.2
1억원 이하	75,088	17,320,957	3.4	2,862,215	9.0
2억원 이하	118,821	18,026,544	3.5	3,909,350	12.3
3억원 이하	28,765	19,623,466	3.8	5,347,328	16.8
3억원 초과	32,175	30,501,943	6.0	9,867,484	31.0

주: 1) 1인당 공제액 = 공제액 ÷ 신고인원

2) 1인당 경감세액 = 공제액 × 소득구간별 적용세율(=산출세액/과세표준) ÷ 신고인원

3) 각 구간 1인당 소득세 경감액과 2천만원 이하의 1인당 소득세 경감액 대비 배수를 나타냄

1. 과세미달자(과세표준 0 이하) 제외

2. 현 세법상 근로소득공제는 필요경비성격으로 공제되는바, 해당 소득 공제 항목에는 근로소득공제는 배제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2

## 2) 세액공제방식

세액공제는 누진세율이 적용된 이후의 산출세액을 감소시키므로 세액공제금액, 그 자체가 바로 세금절감효과가 되며, 현행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세액공제 항목은 근거 법률에 따라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세법상 세액공제제도 중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제외한 대부분 세액공제는 소득재분배 기능과는 거리가 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상용근로자의 경우, 50만원의 한도 내에서 산출세액의 일정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두고 있는 배당세액공제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자의 기장을 유도하기 위한 기장세액공제, 재해를 입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재해손실세액공제 등은 소득재분배 기능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도 다양한 세액공제 규정들이 있으나 주로 설비투자, 연구개발 촉진, 중소기업지원 등과 같은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소득재분배 기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즉, 세액공제제도는 세액을 산출한 이후의 공제인 데 반하여 소득공제제도는 과세대상 소득에서 직접 차감하므로 누진세율체계하에서는 세액공제제도가 과세형평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도입 측면에서 살펴보면 소득재분배 기능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세액공제로 인한 소득계층별 세금절감효과 분석시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한다.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 확정신고자의 세액공제 신고금액 및 비중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중 근로소득세액공제가 9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배당세액공제가 50.1%로 그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

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상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기준으로 과세표준 규모별 「1.2천만원 이하」 대비 「3억원 초과」 구간의 세액공제로 인한 1인당 평균 경감세액의 차이는 약 7.4배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중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의 비중이 가장 크며, 동 세액공제제도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제한도가 있으므로 소득수준에 따른 공제혜택의 역진성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연말정산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살펴 본 소득계층별 세금절감효과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준으로 과세표준 규모별 「2천만원 이하」 대비 「3억원 초과」 구간의 세액공제로 인한 1인당 세금절감효과의 차이는 436.9배로 나타났다. 이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대부분의 세액공제 항목은 조세정책적 측면에서 도입 목적이 각각 다르므로 공제항목별 성격이 크게 반영되어 소득계층별 세금경감혜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이 중과세 조정을 위해 도입된 배당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적용받는 세액공제 중 가장 큰 50.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제혜택의 약 88.7%가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인 고소득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계층별 세금절감혜택의 차이를 더욱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lt;표 VIII-3&gt; 세액공제로 인한 과세표준 구간별 세금절감효과

(단위: 명, 백만원, %, 원, 배수)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기준					
과세표준 규모별	신고인원	총공제액		1인당 공제액(경감세액) <sup>1)</sup>	
		금액(백만원)	비중	금액(원)	배수 <sup>2)</sup>
1.2천만원 이하	5,864,855	870,599	30.8%	149,119	1.0
4.6천만원 이하	3,385,901	1,623,010	57.3%	485,428	3.3
8.8천만원 이하	546,415	273,206	9.7%	542,213	3.6
1억원 이하	35,195	17,597	0.6%	666,089	4.5
2억원 이하	70,110	35,054	1.2%	845,203	5.7
3억원 이하	11,736	5,868	0.2%	1,052,042	7.1
3억원 초과	0,192	5,096	0.2%	1,100,520	7.4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준					
과세표준 규모별	신고인원	총공제액		1인당 공제액(경감세액) <sup>1)</sup>	
		금액(백만원)	비중	금액(원)	배수 <sup>2)</sup>
1.2천만원 이하	1,083,468	61,238	5.2%	56,520	1.0
4.6천만원 이하	374,657	148,562	12.7%	396,528	7.0
8.8천만원 이하	113,108	85,653	7.3%	757,267	13.4
1억원 이하	15,353	16,346	1.4%	1,064,678	18.8
2억원 이하	55,988	117,170	10.0%	2,092,770	37.0
3억원 이하	18,660	77,275	6.6%	4,141,211	73.3
3억원 초과	26,819	662,283	56.7%	24,694,545	436.9

주: 1) 1인당 공제액(경감세액) = 공제액 ÷ 신고인원

2) 각 구간 1인당 소득세 경감액과 1.2천만원 이하의 1인당 소득세 경감액 대비 배수를 나타냄

1. 과세미달자(과세표준 0 이하) 제외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2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와 종합소득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항목은 근로소득자와 사업자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세액공제로 인한 소득계층별 1인당 평균 경감세액도 과세표준 규모별과 마찬가지로 큰 차이를 보였다.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 기준으로 비

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총급여 규모별 「2천만원 이하」 대비 「3억원 초과」 구간의 1인당 평균 경감세액의 차이는 14.5배로, 종합소득 확정 신고 기준으로 종합소득 규모별 「2천만원 이하」 대비 「3억원 초과」 구간의 1인당 세금절감효과의 차이는 430.1배로 크게 나타났다.

<표 VIII-4> 세액공제로 인한 소득구간별 세금절감효과

(단위: 명, 백만원, %, 원, 배수)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기준					
총급여 규모별	신고인원	총공제액		1인당 공제액(경감세액) <sup>1)</sup>	
		금액(백만원)	비중	금액(원)	배수 <sup>2)</sup>
2천만원 이하	2,858,107	207,511	7.1%	72,604	1.0
4천만원 이하	3,508,217	970,554	33.2%	276,652	3.8
6천만원 이하	1,887,918	836,384	28.6%	443,019	6.1
8천만원 이하	929,666	470,331	16.1%	505,913	7.0
1억원 이하	384,928	202,439	6.9%	525,914	7.2
2억원 이하	319,062	196,218	6.7%	614,983	8.5
3억원 이하	21,686	21,676	0.7%	999,545	13.8
3억원 초과	14,820	15,594	0.5%	1,052,241	14.5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준					
종합소득 규모별	신고인원	총공제액		1인당 공제액(경감세액) <sup>1)</sup>	
		금액(백만원)	비중	금액(원)	배수 <sup>2)</sup>
2천만원 이하	1,072,904	56,874	4.9%	53,009	1.0
4천만원 이하	254,724	79,689	6.8%	312,844	5.9
6천만원 이하	112,153	63,262	5.4%	564,069	10.6
8천만원 이하	74,305	49,200	4.2%	662,136	12.5
1억원 이하	45,556	36,454	3.1%	800,202	15.1
2억원 이하	76,729	124,402	10.6%	1,621,317	30.6
3억원 이하	22,028	82,478	7.1%	3,744,235	70.6
3억원 초과	29,654	676,168	57.9%	22,801,915	430.1

주: 1) 1인당 공제액(경감세액) = 공제액 ÷ 신고인원

2) 각 구간 1인당 소득세 경감액과 2천만원 이하의 1인당 소득세 경감액 대비 배수를 나타냄

1. 과세미달자(과세표준 0 이하) 제외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2

## 나. 해외 운영사례

최근에는 많은 OECD 국가들이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세인바, 이와 같이 세액공제를 선호하는 주된 이유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 과세대상자는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적용받기 때문이다.<sup>73)</sup> 예를 들어 세액공제액 100만원이라면 소득규모와는 관계없이 모든 개인의 세부담이 100만원만큼 감소하나, 소득공제하에는 동일한 금액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소득세율이 높을수록 고소득자가 더 많은 혜택을 적용받게 되어 <표 VIII-5>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동일한 소득공제금액이더라도 고소득자 B가 저소득자 A보다 32만원 더 많은 세금절감효과를 보게 된다.

&lt;표 VIII-5&gt; 소득공제방식의 세금절감효과

	A(저소득자)	B(고소득자)
가. 한계세율	6%	38%
나. 소득공제금액	100만원	100만원
다. 최대 세금절감효과(가×나)	6만원	< 38만원

본 보고서의 조사대상 주요국을 살펴보면, 세액공제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미국, 영국, 호주 등은 공제항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소득공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소득규모 이하 개인에게 세액공제

73) A number of OECD countries have replaced tax allowances by tax credits in recent years. The main argument in favour of tax credits is that they are of the same value for all taxpayers (if they pay a sufficient amount of taxes), whereas the value of tax allowances increase with income in tax systems with progressive tax rates.(OECD(2006), p. 62)

방식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소득공제방식의 역진적인 성격을 보완하고 있다. 반면, 영국·호주·캐나다의 세액공제방식은 주로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공제대상금액에 단일세율을 곱한 금액을 적용하고 있다.

세액공제방식의 두 가지 방식 차이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수준 및 한계세율 등이 서로 다른 A(저소득자)와 B(고소득자)가 동일하게 100만원의 교육비를 지출하였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미국 방식에서 A(저소득자)는 교육비 전액을 소득공제하거나 38만원의 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B(고소득자)는 교육비 전액을 소득공제받는다. 반면, 영국·호주·캐나다 방식에서는 A(저소득자)와 B(고소득자) 모두 “교육비×15%”만큼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소득공제제도를 미국 방식과 영국·호주·캐나다 방식으로 각각 전환하였을 경우로 나누어 조세지출규모를 비교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공제제도를 미국 방식으로 전환시 A(저소득자)의 세금절감효과는  $32(=38-6)$ 만원만큼 증가하고, B(고소득자)의 세금절감 효과(38만원)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A(저소득자)가 얻는 추가적인 세금절감효과(32만원)만큼 조세지출 규모는 증가(=76만원-44만원)하게 된다. 반면, 소득공제제도를 영국·호주·캐나다 방식으로 전환시, A(저소득자)의 세금절감효과는  $9(=15-6)$ 만원만큼 증가하지만 B(고소득자)의 세금절감효과가  $23(=38-15)$ 만원만큼 감소하게 되며, 동 방식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방식과 비교시 오히려 조세지출 규모가 14만원(44만원-30만원) 감소하게 된다.

&lt;표 VIII-6&gt; 공제방식의 세금절감효과 비교

	최대 세금절감효과(만원)		조세지출 규모(만원)	
	A(저소득자)	B(고소득자)		
가. 소득공제방식	6	<	38	44
나. 세액공제방식				
- 미국 방식	38	=	38	76
- 영국·호주·캐나다 방식	15	=	15	30

즉, 재정지출 측면에서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하여 보면, 미국 방식은 추가적인 재원을 필요로 하나, 영국·호주·캐나다 방식은 추가적인 재정지출 없이 소득재분배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 방식의 경우에는 소득공제제도로 인하여 고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저소득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세액공제방식을 통하여 소득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 반면, 영국·호주·캐나다 방식은 저소득계층이 기존보다 더 많은 세제상 혜택을 받게 되는 반면, 고소득자들은 세제상 혜택이 감소하게 되어, 추가적인 재정지출 없이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세금절감효과가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 다. 개선방안

소득공제제도는 과세표준 금액을 감소시킴으로써 최종 세액이 경감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초과누진세율체제로 인하여 소득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소득공제제도의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편중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소득공제체계는 조사대상 해외 국가들의 대부분이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 적용시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지나치게 소득공제제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어 소득재분배 기능이 매우 미흡한바,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세액공제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2013년 세제개편안에서는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되 급격한 세부담 변화를 막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공제는 “소득공제금액×한계세율”만큼 세금절감효과가 발생하므로 동일한 금액을 지출하더라도 우리나라 누진세율체계하에서는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절감효과가 나타나므로 저소득층에게는 소득공제방식보다 세액공제방식이 유리하다. 즉, 소득공제금액이 동일하게 1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계층별 최대 세금절감액<sup>74)</sup>은 한계세율 15%인 저소득자의 경우에는 15만원이나, 한계세율이 38%인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38만원이 세금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공제제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현 소득세 공제체계가 계층간 격차를 확대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근로소득 과세표준 규모별 「1.2천만원 이하」 대비 「3억원 초과」 구간의 1인당 평균 경감세액 차이는 세액공제로 인한 경우가 약 7.4배로 나타났으나, 소득공제로 인한 차이는 약 26.2배로 약 4배 정도 크게 나타났다. 특히, 소득공제금액만을 비교할 경우 두 가지 방식 간의 차이는 5.1배로 나타났으나(793.7만원 vs. 4,081.9만원), 세금절감효과 측면에서는 누진세율 적용으로 인하여 이 차이가 26.2배까지 확대(47.5만원 vs. 1,247.1만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74) 우리나라는 초과누진세율구조로 인하여 과세표준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은 한계세율 이하로 나타나므로, 한계세율 적용시 최대 세금 경감액이라고 표현함

<표 VIII-7> 과세표준구간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 비교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준, 2011년 귀속)

(단위: 원, 배수)

과세표준 규모별	소득공제				세액공제	
	1인당 소득 세 공제액 <sup>1)</sup>	배수 <sup>4)</sup>	1인당 소득 세 경감액 <sup>2)</sup>	배수 <sup>4)</sup>	1인당 소득 세 경감액 <sup>3)</sup>	배수 <sup>4)</sup>
1.2천만원 이하	7,927,499	1.0	475,655	1.0	149,119	1.0
4.6천만원 이하	15,640,778	2.0	1,612,778	3.4	485,428	3.3
8.8천만원 이하	21,891,284	2.8	3,357,685	7.1	542,213	3.6
1억원 이하	22,982,377	2.9	4,378,023	9.2	666,089	4.5
2억원 이하	24,283,392	3.1	5,665,280	11.9	845,203	5.7
3억원 이하	27,962,797	3.5	7,566,890	15.9	1,052,042	7.1
3억원 초과	40,819,314	5.1	12,471,899	26.2	1,100,520	7.4

주: 1) 1인당 공제액 = 공제액 ÷ 신고인원

2) 1인당 경감세액 = 공제액 × 과표구간별 적용세율(=산출세액/과세표준) ÷ 신고인원

3) 세액공제의 1인당 소득세 감면액 = 공제액 ÷ 신고인원

4) 각 구간 1인당 소득세 감면액과 1.2천만원 이하의 1인당 소득세 감면액 대비 배수를 나타냄

1. 과세미달자 제외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2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준, 총급여 규모별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로 인한 세금절감효과를 산출한 결과, 과세표준 규모별 비교시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제도가 소득계층간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공제로 인한 세금절감효과는 총급여 규모별로 「2천만원 이하」 대비 「3억원 초과」 구간의 차이가 51.7배로 나타났다. 반면, 누진세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 규모별로 「2천만원 이하」 대비 「3억원 초과」 구간의 차이가 14.5배로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 우리나라 소득공제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한도를 두고 있고,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진세율체계하에서는 소득

계층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III-8> 소득구간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 비교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준, 2011년 귀속)

(단위: 원, 배수)

총급여 규모별	소득공제				세액공제	
	1인당 소득 세 공제액 <sup>1)</sup>	배수 <sup>4)</sup>	1인당 소득 세 경감액 <sup>2)</sup>	배수 <sup>4)</sup>	1인당 소득 세 경감액 <sup>3)</sup>	배수 <sup>4)</sup>
2천만원 이하	3,822,176	1.0	229,379	1.0	72,604	1.0
4천만원 이하	9,024,283	2.4	616,859	2.7	276,652	3.8
6천만원 이하	17,434,417	4.6	1,672,581	7.3	443,019	6.1
8천만원 이하	21,706,845	5.7	2,561,358	11.2	505,913	7.0
1억원 이하	24,375,051	6.4	3,396,000	14.8	525,914	7.2
2억원 이하	26,413,931	6.9	4,843,954	21.1	614,983	8.5
3억원 이하	27,954,316	7.3	7,265,960	31.7	999,545	13.8
3억원 초과	38,986,288	10.2	11,849,429	51.7	1,052,241	14.5

주: 1) 1인당 공제액 = 공제액 ÷ 신고인원

2) 1인당 경감세액 = 공제액 × 소득구간별 적용세율(=산출세액/과세표준) ÷ 신고인원

3) 세액공제의 1인당 소득세 감면액 = 공제액 ÷ 신고인원

4) 각 구간 1인당 소득세 감면액과 2천만원 이하의 1인당 소득세 감면액 대비 배수를 나타냄

1. 과세미달자 제외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2

많은 OECD 국가들이 누진세율체계하에서 납세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적용받게 하기 위하여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로 우리나라도 소득재분배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모두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전환에 따른 고소득자의 급격한 세부담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득계층 간 세금경감혜택의 격차가 크고,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항목부터 단계적

으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계층별로 1인당 소득세 경감세액의 격차가 큰 근로소득공제 및 특별공제의 일부 항목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우선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소득계층간 공제혜택의 격차는 크게 나타나지만, 동 제도는 필요경비적 성격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바, 세액공제로의 전환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sup>75)</sup> 따라서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근로자 간 소득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 제도는 유지하되 고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공제로 인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특별공제 항목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및 기부금의 경우에는 다른 공제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세표준 규모별 「1.2천만원 이하」 대비 「3억원 초과」 구간의 1인당 평균 경감세액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소득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기부금공제의 경우에는 고소득자들의 기부문화를 촉진·정착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소득공제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또한 인적공제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 및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이므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여 해당 공제금액으로 인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입목적상 타당하다.<sup>76)</sup> 인적공제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규모별 「1.2천만원 이하」 대비 「3억원 초과」 구간의 차이가 8.9배로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바, 이는 소득규모별로 공제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고, 공제금액 수준도 작은 데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75) 2013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근로소득공제는 소득공제방식을 유지하되, 근로소득공제율이 5~80%에서 2~70%로 축소됨

76) 2013년 세제개편안에서 기본공제를 제외한 인적공제를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함

<표 VIII-9> 과세표준 규모별 1인당 평균 소득세 경감액<sup>1)</sup> 비교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준, 2011년 귀속)

(단위: 원, 배수)

	과세표준 1.2천만원 이하(A)	과세표준 3억원 초과(B)	차이(B-A)	과표 1.2천만원 대비 배수
근로소득공제	581,497	14,347,304	13,765,807	24.7
인적공제	192,147	1,715,056	1,522,909	8.9
- 기본공제	155,621	1,337,807	1,182,186	8.6
- 추가공제	86,639	574,014	487,375	6.6
- 다자녀추가	75,800	392,868	317,068	5.2
특별공제	233,034	9,654,049	9,421,015	41.4
- 보험료	107,405	5,670,063	5,562,658	52.8
- 의료비	108,105	3,099,772	2,991,667	28.7
- 교육비	178,046	1,941,870	1,763,824	10.9
- 기부금	43,528	3,976,103	3,932,575	91.3
조특법상 공제	130,431	1,092,094	961,663	8.4
- 신용카드	108,893	774,773	665,880	7.1

주: 1) 1인당 경감세액 = 공제액 × 과표구간별 적용세율(=산출세액/과세표준)  
÷ 신고인원

1. 과세미달자 제외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2

다음으로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이 바람직한바,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제율의 결정 문제이다. 첫째, 소득재분배 기능의 개선 측면에서는 소득세 누진세율 체계 중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이상적인바, 영국<sup>77)</sup>과 캐나다<sup>78)</sup>에서 소득세 누진세율 중 가장 낮은 세율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저 6% 세율을 적용하게 될 경우 급격한 세부담 증가로 인하여 이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계층의 조세저항으로 정책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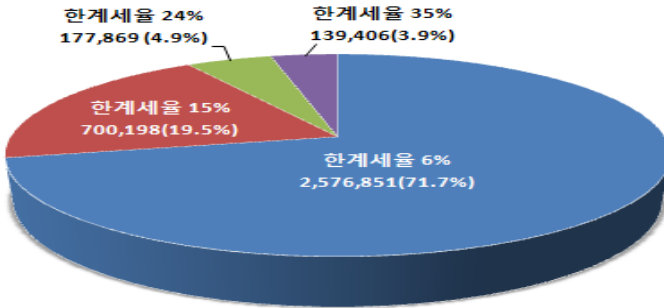
77) 2013-14년 기준 소득규모별 최저 10% ~ 최고 50% 세율 적용

78) 2013년 기준 과세소득 구간별 최저 15% ~ 최고 29% 세율 적용

실행에 난관을 겪을 수 있다. 둘째, 소득공제 규모가 2011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 기준으로 산출한 9.46%<sup>79)</sup>, 종합소득 신고 기준으로 산출한 11.2%의 공제율을 각각 적용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정지출 없이 소득공제로 인한 세금절감 혜택을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셋째, 소득세 확정신고 인원으로 살펴보면, 15% 이하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신고인원이 전체 인원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약 90%에 이르고 있으므로 소득세 누진세율체계 중 15%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세부담 증가 및 조세저항 측면에서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2013년 세제개편에 따라 중산층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항목에 해당하는 특별공제를 세액공제율 15%로 전환한 것은 납세자의 저항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VIII-1] 소득세 한계세율 구간에 따른 확정신고인원 비중(2007~2011년 평균)

(단위: 명, %)



- 주: 1. 과세표준 없는 자 제외
- 2. 2008년 신고 분까지: 8%, 17%, 26%, 35%, 2009년 신고 분: 6%, 16%, 25%, 35% 세율 적용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79) 과세표준구간별 적용세율(=산출세액/과세표준)을 반영한 소득공제(근로소득공제 제외)로 인한 소득세 감면액(10,857,829백만원) ÷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기준 소득공제총액(114,719,296백만원) = 9.46%

한편,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과의 인적공제 금액 비교시, 우리나라 인적공제 규모는 항목별로 1백만~2백만원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즉, 우리나라는 필요경비적 성격의 근로소득공제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반면, 조사대상 국가들은 급여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적 성격의 비용들이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대신 인적공제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III-10> 인적공제 금액 국제비교(2012)

(단위: 백만원)

국가	화폐 단위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고령자공제		장애인공제	
		자국	원화	자국	원화	자국	원화	자국	원화	자국	원화
한국	백만 원	1.5	1.5	1.5	1.5	1.5	1.5	1	1	2	2
미국	USD	3,800	4.07	3,800	4.07	950	1.02	세액공제		세액공제	
영국	GBP	8,105	14.03	세액공제		n/a		10,500 또는 10,660	18.17 또는 18.452	2,100	3.63
캐나 다	CAD	세액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호주	AUD	6,000	6.67	세액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n/a	

주: 2012년 12월 31일 고시환율 기준

자료: ibfd, 각국 국세청 홈페이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인적공제 규모는 낮은 수준으로 실제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데 크게 미흡하여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세부담이 오히려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1년 4인 가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는 월 144만원(연간 1,728만원)이나 부양가족이 기초공제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1인당 연 150만원의 기초공제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계비 지원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최저생계비 대비 면세점 수준이 1인 가구의 경우 1.38배이나, 4인 가구는 1.06배로 나타나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하에서도 소득세부담을 지게 된다.

<표 VIII-11> 가족 수에 따른 근로소득 면세점 및 최저생계비  
(2011년, 월기준)

(단위: 만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면세점(A)	73.3	100.8	126.8	152.7
최저생계비(B)	53.2	90.6	117.0	144.0
비율(A/B)	1.38	1.11	1.08	1.06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따라서 과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포착률이 낮으므로 인적공제 수준도 낮게 책정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이 상당 수준 양성화되었으므로 최저생계비 지원 성격을 가진 인적공제 수준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13년 세제개편에 따라 자녀양육 관련 인적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 기타 인적공제는 2014년 이후 세액공제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되어 소득재분배 기능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추가적으로 인적공제 수준을 확대하여 가구의 최저생계비 지원목적을 달성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2. 고소득층 Phase-out Rule 적용

### 가. 현황

우리나라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2012년 세법개정안을 통하여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를 신설

하였다.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는 일부 소득공제 항목의 총 공제액이 2,500만원을 초과시 최대 2,5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고, 초과금액은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것을 말한다.<sup>80)</sup> 한도에 포함되는 소득공제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창투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공제이며, 공제한도 초과분은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단,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특별공제 항목 중 4대 보험료, 연금저축, 법정기부금, 장애인 관련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은 소득공제 종합한도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동 제도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한도에 포함되는 소득공제 항목의 총공제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계층에 따른 공제항목별 세제혜택의 차이를 각각 반영하여 감소시키지는 못한다.

우리나라 일부 소득공제 항목들은 본인 또는 부양가족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이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바, 배우자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규모와 관계없이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즉, 100만원이라는 연간 기준소득금액이 크게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연간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전혀 받을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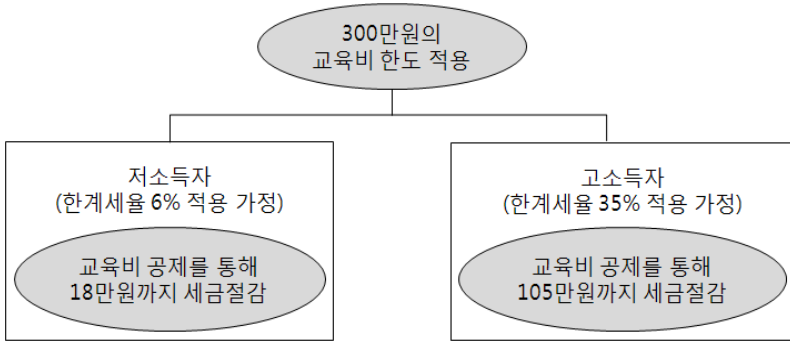
80)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lt;표 VIII-12&gt; 인적공제의 소득금액 요건

구분	공제금액(만원)	소득금액 요건
본인공제	150	n/a
배우자공제	150	배우자의 소득: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공제	150	공제대상 가족의 소득: 100만원 이하
경로자공제	100 (70세 이상)	본인 또는 공제대상 가족의 소득: 100만원 이하
장애인공제	200	본인 또는 공제대상 가족의 소득: 100만원 이하
부녀자공제	50	n/a
자녀양육경비공제	100	n/a
출산및입양공제	200	n/a
다자녀추가공제	- 자녀 2인: 100 - 자녀 2인 이상: 100+(자녀 수-2)×200	n/a

또한, 특별공제 항목 중 일부 항목은 공제한도 규정이 존재하나, 소득규모와는 관계없이 모든 개인에게 동일한 한도가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지출한 고등학생 자녀의 수업료 등에 대해서는 연 300만원까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바, 1,000만원의 소득을 가진 자든 1억원의 소득을 가진 자든 동일하게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300만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즉,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개인이 동일하게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받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불리하다. 예를 들어, 300만원의 교육비를 지출했을 때, 6% 세율을 적용받는 자는 18만원(=300만원×6%)만큼의 세부담이 감소하는 반면, 35% 세율을 적용받는 자는 105만원(=300만원×35%)만큼 세부담이 감소하므로 동일한 금액을 지출하더라도 고소득자가 유리한 것이다. 즉, 저소득자와 고소득자 모두 300만원이라는 동일한 교육비를 지출하였더라도 한계세율의 차이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세금절감효과가 고소득층에게 더 유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VIII-2] 일괄적인 특별공제 한도 적용으로 인한 효과



<표 VIII-13> 항목별공제의 소득금액 요건 및 공제한도

구분	소득금액 요건	공제한도
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공제: 소득금액기준 없음</li> <li>•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고용보험료: 전액 공제</li> <li>• 보장성보험료: 100만원</li> <li>• 장애인전용보험료: 100만원</li> </ul>
의료비	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장애인·경로자 의료비: 전액 공제</li> <li>• 기타: 700만원</li> </ul>
교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공제: 소득금액기준 없음</li> <li>•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교육비: 전액 공제</li> <li>•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취학, 초·중·고등학생: 300만원</li> <li>- 대학생: 900만원</li> </ul> </li> </ul>
주택자금	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500만원</li> <li>- 특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포함시: 1,500만원</li> </ul>
기부금	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li> <li>•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30%</li> <li>- 종교단체 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10%</li> </ul>

&lt;표 VIII-13&gt;의 계속

구분	소득금액 요건	공제한도
신용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공제: 소득금액기준 없음</li> <li>•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둘 중 적은 금액까지 공제 가능</li> <li>- 총급여액×20%</li> <li>- 300만원</li> </ul>

자료: 기획재정부, 「2012 조세개요」

## 나. 해외 운영사례

미국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고소득자들의 소득공제 합계에 상한을 두고 있어 소득공제방식이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역진성을 보완하고 있다.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sup>81)</sup>의 경우, 조정 후 총소득이 USD 275,000(약 2억 9천만원, 세대주 기준) 이상이면 일부 감소되고, 인적공제는 조정 후 총소득이 USD 275,000(약 2억 9천만원, 세대주 기준) 초과시 매 USD 2,500마다 2%씩 감소된다.

&lt;표 VIII-14&gt; 미국의 고소득층 공제금액 상한규정

항목	소득금액 <sup>1)</sup> 상한	삭감방식
항목별공제	USD 27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과 ② 중 적은 금액만큼 삭감</li> <li>① (조정 후 총소득-USD 275,000)×3%</li> <li>② 항목별공제대상금액×80%</li> </ul>
인적공제	USD 27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정 후 총소득이 USD 275,000 이상이면 이를 초과하는 매 USD 2,500마다 2%씩 삭감</li> </ul>

주: 1) 세대주 기준  
1. 2013년 기준

자료: www.irs.gov

81) 항목별 공제대상 항목에는 의료비, 주정부 및 지방정부 소득세 및 재산세, 주택담보 대출이자 및 투자이자, 기부금, 상해 및 절도손실, 장애인의 장애관련 작업경비, 피상속인 소득에 대한 연방 유산세, 연금을 받는 자가 사망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계약의 미반환 투자금액, 도박으로 인한 손실,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의 상해 및 절도손실, 고용주가 보상하지 않는 경비, 대여금고 임차경비, 세무자문 및 조력경비, 개인퇴직연금 신탁기관 또는 보관은행 등에 지급하는 특정 경비 등이 있음

미국은 저소득자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비세액공제, 모기지 이자 세액공제, 저축세액공제, 근로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 규정들은 저소득층에만 적용되며 고소득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세액공제(Credit for the Elderly or the Disabled)는 저소득층에만 적용되며 고소득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비세액공제(Education Credit)와 모기지 이자 세액공제(Mortgage Interest Credit)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방식으로 공제되나, 저소득층 경우에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저축세액공제(Savers' Credit)는 저소득층의 경우 일반적인 소득공제 혜택 이외에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sup>82)</sup> 이 외에 저소득층에게 적용되는 환급가능 세액공제제도로서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Credit) 및 자녀장려세제(Child Tax Credit) 등이 있다. 다른 세액공제 규정들과 달리 동 세액공제들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는 경우라도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환급형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라는 특징을 띠고 있다.

한편,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에서는 모두 고령자 공제제도 적용시 소득금액 요건을 두고 있어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을 가진 노인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미국(세액공제방식)<sup>83)</sup>은 공제요건이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에 해당하고, 조정 후 총소득(AGI) 또는 비과세 사회보장급여 및 기타 비과세 연금이 <표 VIII-16>에 제시된 금액 이하여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세액공제금액은 부부합산신고시 최대 USD 7,500(독신 USD 5,000, 부부별도신고 USD 3,750)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 사회보장급여 및 조정 후 총소득이 증가할수록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점감하도록 되어 있다.

82) 일반적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만을 받을 수 있음

83) IRS, "Credit for the Elderly or the Disabled", 2012

&lt;표 VIII-15&gt; 소득계층간 공제혜택 비교(미국)

(단위: USD)

항목	소득금액 <sup>1)</sup> 상한	고소득층	저소득층
인적공제	275,000	공제상한 있음	제한 없음
항목별공제	275,000	공제상한 있음	제한 없음
노령자 공제 또는 장애인공제	17,500	공제 불가	세액공제 가능
교육비공제 <sup>2)</sup>	90,000/ 61,000	공제 불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 가능
모기지 이자 공제	주 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정한 금액	소득공제방식만 이용 가능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 가능
저축세액공제	43,125	소득공제 혜택만 받을 수 있음	일반적인 소득공제 혜택 외에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음

주: 1) 세대주 신고 기준

2) American Opportunity Credit: USD 90,000

Lifetime Learning Credit: USD 61,000

1. 소득금액 요건을 두고 있는 공제항목들의 운영방식 비교

&lt;표 VIII-16&gt; 미국의 고령자공제 소득금액 제한(2012)

(단위: USD)

	조정 후 총소득(AGI)	비과세 사회보장급여 및 기타 비과세 연금
미혼, 세대주 또는 피부양 자녀가 있는 적격 과부	17,500	5,000
부부합산신고이고, 부부 모두 요건 충족	25,000	7,500
부부합산신고이고, 부부 중 한 명이 요건 충족	20,000	5,000
부부별도신고	12,500	3,750

호주(세액공제 방식)의 연로자 및 연금수급자 세액공제(SAPTO)에

서는 연령요건<sup>84)</sup>을 충족한 부부 1인당 총소득이 AUD 57,948(독신의 경우 AUD 32,279) 이하일 때 AUD 1,602(독신의 경우 AUD 2,230) 전부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총소득이 AUD 83,580(독신의 경우 AUD 50,119)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영국(소득공제방식)은 65세 이상일 경우 기본공제 금액이 증가하며, 연령조건을 충족하되 총소득이 GBP 25,400 이상일 경우에는 초과금액 중 50%만큼 연령관련 기본공제(Age Related Allowance) 금액을 삭감한다. 단, 삭감 후 잔액이 기본공제 금액(2012-13년 기준 GBP 8,105)보다 작을 경우에는 최소 기본공제 금액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다.

캐나다에서 고령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는 바, 소득수준별로 “평탄-점감구간”으로 구분하여 공제금액을 산정한다. 총소득이 CAD 31,524 이하이면 CAD 5,276을 공제하고, 총소득이 CAD 31,524 초과시 CAD 66,697 이하이면 [5,276-(총소득-31,524)]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 다. 개선방안

2012년 세법개정안을 통하여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를 신설하였다. 즉,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시주조합·창투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초과누진세율 구조하에서 동일한 소득공제금액을 받더라도 고소득자가 한계세율로 인하여 더 많은 세제상 혜택을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가 수직적 형평성을 다소 제고시킬 수 있으나 저소득층에게는 직접적인 혜택이 없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

84) 남자 65세 이상, 여자 64세 이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종합한도에 포함되는 소득공제 항목의 합계액으로 상한을 적용하는 것은 각 공제항목의 성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로 인한 고소득자들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소득공제방식이 가진 역진적인 성격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우선 선진국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제도를 참고하는 것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는 데 유용한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의 조사대상국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는 공제항목의 성격에 따라 소득이 증가할수록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점차 감소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제항목 별로 연령 및 소득요건 충족시 소득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한 공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령자공제 운영방식의 경우에는 기준소득금액 이하에서는 최대 공제금액을 적용하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점감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표 VIII-17> 고령자공제 운영방식 비교

(단위: USD)

국가	기준소득금액				공제금액 결정방식
	화폐 단위	자국 통화	원화환산금액(백만원)		
			GDP 고려 전	GDP 고려 후	
미국	USD	17,500	18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대 USD 5,000까지 공제 가능하며, 조정 후 총소득이 증가하면 이에 따라 공제금액 점감</li> <li>· 즉,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공제금액 점감</li> </ul>
영국	GBP	25,400	44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소득과 기준소득금액과의 차액 중 50%만큼 연령관련 기본공제금액 삭감</li> <li>· 즉,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공제금액 점감</li> </ul>

&lt;표 VIII-17&gt;의 계속

국가	기준소득금액				공제금액 결정방식
	화폐 단위	자국 통화	원화환산금액(백만원)		
			GDP 고려 전	GDP 고려 후	
캐나다	CAD	31,524 및 66,697	36 및 76	16 및 35	· 총소득이 CAD 31,524 이하이면 CAD 5,276 공제 · 총소득이 CAD 31,524 초과 CAD 66,697 이하이면 [5,276-(총소득 -31,524)] 공제 · 즉, 평탄-점감구간으로 설계되어 있음
호주	AUD	26,680 및 39,496	31 및 46	15 및 23	· 총소득이 AUD 26,680 이하이면 AUD 1,602 공제 · 총소득이 AUD 26,680 초과 AUD 39,496 이하이면 공제금액 점감

주: 1. 2012년 12월 31일 기준환율

2. 원화환산금액×우리나라 1인당 GDP(23,679)/각 국의 1인당 GDP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공제 항목별로 고소득자 및 저소득자 판정을 위한 기준소득금액을 설정하고 있으며, 소득이 기준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점감되는 반면, 기준소득금액 이하의 소득을 가진 납세자는 최대 공제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인적공제 및 항목별 공제를 살펴보면, USD 275,000 이상 소득을 가진 세대주의 경우에는 공제금액의 일정 비율<sup>85)</sup>이 삭감되고 있는바, 이를 국가 간 GDP 차이를 고려하여 원화로 환산시에는 약 1억 4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교육비공제는 소득금액 USD 80,000, 저축세액공제는 USD 43,125 초과시 공제를 받을 수가 없으며, 기준소득금액 이하일 경우 차등적으로 공제금액을 적용하는바, 이를 국가 간 GDP 차이를 고려하여 원화로 환산시

85) 항목별 공제: min[기준소득금액 초과하는 조정 후 총소득의 3%, 항목별 공제 대상금액의 80%] 차감

인적공제: 기준소득금액을 초과하는 USD 2,500마다 2%씩 점감

약 2천 2백만원~4천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표 VIII-18> 미국의 공제제도 상한 기준소득금액(2012)

항목	소득금액 <sup>1)</sup> (USD)	최고 한계세율 구간 소득 대비 <sup>3)</sup>	원화환산(백만원) <sup>4)5)</sup>	
			GDP 고려 전	GDP 고려 후
인적공제	275,000	72.5%	290.5	138.7
항목별공제	275,000	72.5%	290.5	138.7
교육비공제 <sup>2)</sup>	80,000	21.1%	84.5	40.3
저축세액공제	43,125	11.3%	45.5	21.7

주: 1) 세대주 신고 기준

2) Tuition and Fees Deduction

3) 미국의 최고 한계세율구간 소득: USD 379,150

4) 2012년 12월 31일 고시환율 기준

5) 원화환산금액×우리나라 1인당 GDP(23,679)/미국의 1인당 GDP(49,601)

또한, 우리나라 일부 소득공제 항목들은 본인 또는 부양가족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이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바, 배우자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규모와 관계없이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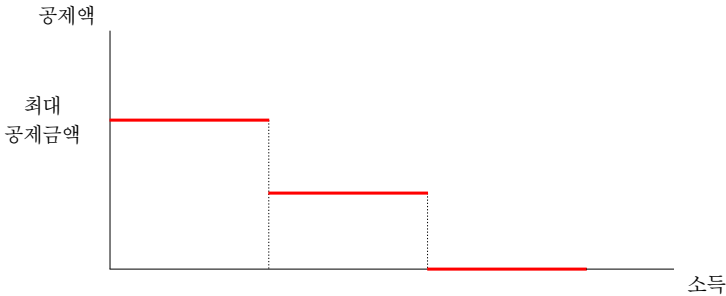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받기 위한 본인 또는 부양가족에 적용하는 기준소득금액이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바, 1994년 이후 연소득 100만원 이하 기준을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어 연간 기준소득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연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초과규모와 관계없이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 가구 간 경제적인 능력 차이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반면, 조사대상 해외 국가들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항목별로 상이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준금액과 비교하여 볼 때

크게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고령자공제의 경우에는 국가 간 GDP 차이를 고려하여 약 9백만~3천 5백만원에서 기준소득금액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제제도는 소득공제 중심으로 운용되어 그 세제혜택이 고소득자에게 편중되어 저소득자 및 고소득자 간 동일한 금액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소득세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바, 소득세의 안정적인 재원조달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소득자에게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공제금액을 축소하는 방식(Phase-out Rule)을 도입 및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준소득금액을 상향조정 후, 기준소득금액 이하의 저소득층에게는 최대 공제금액을 적용하되, 소득이 증가할수록 일정 비율만큼 공제금액을 감소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Phase-out Rule을 적용하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로 도출된 점감수준을 정하는 방안으로는 ① 최대공제금액을 단계적으로 설정 후 실제 공제지출금액을 허용하는 방식, ② 공제 가능한 소득구간 내에서 기준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비율만큼 차감하는 방식, ③ 세수를 고려하여 설정한 단일비율로 차감하는 방식 등을 제시해 볼 수 있다. 다만, Phase-out Rule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점감비율 및 점감기준 소득금액 결정시, 국민들과의 충분한 합의를 통해 효율성과 수용성을 모두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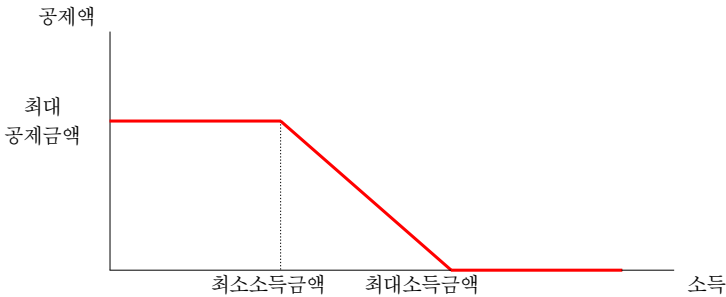
[그림 VIII-3] 공제방식 개선방안 모형

① 최대공제금액을 단계적으로 설정 후 실제 공제지출금액을 허용하는 방식



② 공제가능한 소득구간 내에서 기준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비율만큼 차감하는 방식

③ 세수를 고려하여 설정한 단일비율로 차감하는 방식



### 3. 연금저축·퇴직연금 공제제도 개선

#### 가. 현황

우리나라 현 세법상 거주자가 퇴직연금 등에 불입하는 기여금에 대해서는 연금저축 불입금액과의 합계가 4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013년 세제개편안으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공제는 세액공제율 12%를 적용받는 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되었으며, 공제한도 등은 현행과 동일하다.

&lt;표 VIII-19&gt; 연금의 분류 및 과세체계(소득공제)

구분	소득공제내용			
	~ 2000년	2001~05년	2006~10년	2011년~
개인연금저축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	연간불입금액×40% (한도 72만원)	종전 가입자의 경우 계속하여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연금저축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	해당사항 없음	불입금액 전액 (한도 240만원)	불입금액 전액 (한도 300만원)	불입금액 전액 (한도 400만원)
퇴직연금보험료	해당사항 없음			

기존의 연금관련 소득공제제도는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소득층에게 퇴직연금 가입을 유인하는 효과가 미흡하고, 세제상의 혜택이 고소득층에게 편중되어 있다. 즉, 납부할 세금이 없는 자는 연금 등에 가입하더라도 세제상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으므로, 저소득자층의 경우에는 연금저축 소득공제제도로 인한 연금제도 가입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세법」상의 국민연금·기타연금·퇴직연금공제를 통한 1인당 평균 경감세액을 살펴보면, 과세표준 규모별로 「1.2천만원 이하」 대비 「3억원 초과」 구간에 속하는 소득계층간의 차이가 각각 11.7배, 8.8배, 10.3배로 나타났다. 한편, 개인연금저축은 72만원을 한도로 하여 연간불입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금보험료공제를 제외한 연금저축은 퇴직연금과 합하여 연 4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연금저축공제의 소득계층별 1인당 평균 세금경감액은 과세표준 규모별로 「1.2천만원 이하」 대비 「3억원 초과」 구간에 속하는 소득계층 간 차이가 개인연금저축은 약 8.3배, 연금저축은 약 8.6배로 나타나, 소득세 누진세율 구조로 인하여 고소득자에게 공제혜택이 크게 돌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III-20> 연금관련 공제제도를 통한 1인당 평균 세금 경감액<sup>1)</sup>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준, 2011년 귀속)

(단위: 원, 배수)

과세표준 규모별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민연금 보험료	기타연금 보험료	퇴직연금 보험료	개인연금 저축	연금저축
1.2천만원 이하	51,407 (1.0)	127,695 (1.0)	92,910 (1.0)	24,576 (1.0)	119,948 (1.0)
4.6천만원 이하	173,289 (3.4)	336,702 (2.6)	211,179 (2.3)	48,767 (2.0)	262,450 (2.2)
8.8천만원 이하	304,063 (5.9)	741,009 (5.8)	382,632 (4.1)	83,711 (3.4)	466,462 (3.9)
1억원 이하	376,149 (7.3)	970,241 (7.6)	505,055 (5.4)	121,509 (4.9)	627,522 (5.2)
2억원 이하	459,646 (8.9)	1,164,430 (9.1)	664,392 (7.2)	145,087 (5.9)	779,255 (6.5)
3억원 이하	531,737 (10.3)	1,377,936 (10.8)	781,657 (8.4)	165,429 (6.7)	911,612 (7.6)
3억원 초과	600,203 (11.7)	1,120,553 (8.8)	953,642 (10.3)	204,780 (8.3)	1,032,081 (8.6)

주: 1) 1인당 소득세 경감액 = 공제액 × 과표구간별 적용세율(=산출세액/과세표준) ÷ 신고인원

1. ( )는 각 구간 1인당 소득세 경감액과 1.2천만원 이하의 1인당 소득세 경감액 대비 배수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2

## 나. 해외 운영사례

미국은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개인연금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저축 세액공제(Savers' Credit)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가 401(k) 등의 기업연금, 개인퇴직계좌(IRA) 등에 기여금을 납입할 경우 최대 USD 1,00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sup>86)</sup>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기여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방식으로 공제가

86) 조정 후 총소득이 USD 43,125(세대주 신고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이루어지나, 중산층 이하 가구에 해당하면 소득공제 혜택 외에 추가적으로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규모에 따라 공제 세액에 차등을 두고 있는바, 세대주 기준으로 조정 후 총소득(AGI)이 USD 25,875(약 27백만원) 이하일 경우 기여금의 50% 공제, AGI가 USD 25,875 이상 USD 28,125(약 30백만원) 이하일 경우 기여금의 20% 공제, AGI가 USD 28,126 이상 AGI USD 43,125(약 46백만원) 이하일 경우 기여금의 10%를 공제하고 있다.

호주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퇴직연금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퇴직연금공동분담(Super co-contribution)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동 제도는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수준별로 매칭자금을 차등지급하는 제도로 AUD 61,920(약 69백만원) 이하 소득을 가진 자가 퇴직기금이나 퇴직저축계좌 등에 기여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매년 최대 AUD 1,000(약 111만원)까지 AUD 1당 AUD 1씩 매칭자금을 지급한다.<sup>87)</sup> 예를 들어, AUD 40,000의 소득을 가진 자가 퇴직연금 기여금으로 AUD 1,200을 납입하였다면 매칭자금 AUD 180<sup>88)</sup>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영국은 세금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자신이 납입하는 개인연금 기여금 중 최초 GBP 2,880(약 493만원)에 대해 최대 GBP 720(약 123만원)까지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즉, 개인의 기여금이 GBP 2,880이라면 정부가 GBP 720(= 2,880/(1-20%) - 2,880)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개인연금 기여금을 GBP 3,600(약 616만원)까지 보전해 주고 있다.

#### 다. 개선방안

2013년 소득세 개편안에서는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공제가 세액공

87) 다만, 소득이 AUD 31,920(약 37백만원) 이상이면 AUD 1당 3.33c씩 매칭금액 감소

88)  $(1,000 - 1,000 \times 0.33) \times (40,000 - 31,920) / (61,920 - 31,920) = 180$

제방식으로 전환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저소득계층의 경우에는 여전히 세액공제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없는 저소득계층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이들 계층의 연금가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급형 세액공제로의 운영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영국과 호주에서는 중산층 이하 가구의 퇴직연금 불입을 장려하기 위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일정 한도 이내에서 세금을 환급하여 주고 있다. 저소득 계층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아 퇴직연금 등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부가 개인의 기여금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저소득 계층의 퇴직연금 납입을 유도하는 가장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게 된다. 저소득 계층의 퇴직연금 가입이 늘고, 이들이 퇴직연금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정부가 지급해야 할 사회보장 급여가 감소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다.

## IX. 결 론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재정적자의 누적으로 인하여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세수규모 및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 수준에 못 미치고 있어, 현재 국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고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2012년 국가채무는 GDP 대비 34.8%인 약 443.1조원으로 2001년에 비해 16.1%p 증가한 GDP 대비 263.8%로 증가하였고, 지방정부·공기업·가계부채 규모를 고려한다면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세수규모는 OECD 평균 33.8%에 비해 8.7%p 낮은 25.1%로 나타났으며,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에 비해 5.3%p 낮은 19.3%로 나타났다. 향후 우리나라 정부는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증대되는 국민들의 복지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며, 점차 심화되고 있는 소득양극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세목 중 소득세, 상속·증여세, 재산세 등이 누진적인 세율체계의 적용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상속·증여세, 재산세의 세수비중이 소득세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므로 실질적인 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즉, 소득세는 2011년 기준 국세 약 180.1조원 중 약 42.3조원을 차지하여 부가가치세 약 51.9조원<sup>89)</sup>, 법인세 약 44.9조원에 이어 세수규모가 가장 큰 3대 세목으로, 우리나라의 조세구조의 관점에서 보면,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

89) 지방소비세가 차감된 후의 세수실적임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세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개선하여 소득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의 소득세 현황, 소득세 체계 및 소득공제방식을 비교함으로써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기본 개편방향을 제시하였다.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의 경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소득세의 안정적인 재원조달 및 소득재분배 기능이 저해되고 있다. 소득공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그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편중되고 있으며, 각종 공제 및 비과세·감면제도로 인한 소득세의 지출규모가 크게 나타나 소득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과세미달자의 비중이 크게 높고, 소득세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공제체계는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 주요한 공제 항목이 소득공제체도로 운영되고 있어 소득공제방식에 의존도가 높은 반면, 본 보고서에서 조사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주요 공제 항목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방식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소득공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소득규모 이하 개인에게 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소득공제방식의 역진적인 성격을 보완하고 있다. 한편, 영국·호주·캐나다는 주로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여 소득규모와 무관하게 공제대상 금액에 단일세율을 곱한 금액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호주·영국은 주요 공제항목의 경우 고소득계층에게 적용되는 공제금액을 감소 또는 제한하는 Phase-out Rule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해밀턴 프로젝트(Hamilton Project<sup>90</sup>)는 2006년 4월 빌 클린턴 행정부에 참여했던

90) 미국 초대 재무장관으로 경제발전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던 알렉산더 해밀턴의 이름을 따서 Hamilton Project라고 명명함

핵심 경제인들이 모여 출범시킨 프로젝트로서 미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양극화 및 세계화 등의 문제점들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밀턴 프로젝트 토론 자료<sup>91)</sup>에서는 자동적인 개인퇴직연금(IRA) 가입방안과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소득공제방식을 환급 가능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은퇴보장프로젝트<sup>92)</sup>에서는 저소득 계층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민의료보조제도(medicaid) 또는 식권(food stamp) 등의 수급대상 판정 과정에서 이용되는 자산 테스트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스펀링의 저서<sup>93)</sup>는 저소득 계층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저소득 가구에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소득양극화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및 종합소득 확정신고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계층별 공제제도로 인한 1인당 평균 세금절감효과를 산출하여 분석한 결과, 공제방식 및 공제항목의 성격에 따라 소득계층별로 1인당 평균 경감세액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서 제공하고 있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및 종합소득 확정신고 통계를 이용하여 산출한 1인당 평균 세금경감액은 공제방식별 또는 공제항목에 따라 소득계층간 최종세액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공제방식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로 구분하여 각각의 항목을 비교한 결과, 누진세율 체계하에서는 소득공제방식이 소득계층간 공제혜택의 격차를 더욱 크게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91) Hamilton Project discussion paper, William Gale, Jonathan Gruber, Peter Orszag 2006

92) Retirement Security Project, Greenstein, Neuberger, Sweeney 2005, 브루킹스 연구소와 조지타운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함

93) Sperling 2005

소득 연말정산 기준으로 과세표준 「1.2천만원 이하」 대비 「3억원 초과」 구간의 1인당 평균 세금경감액 차이는 소득공제가 26.2배, 세액공제가 7.4배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도 동일한 소득계층간 1인당 평균 세금경감액 차이가 각각 24.7배, 3.4배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공제방식을 적용하더라도 공제항목의 성격에 따라 공제금액 및 신고인원이 다르므로 소득계층간 1인당 평균 세금경감액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근로소득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는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인적공제, 조특법상 공제 순으로 소득계층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공제의 경우 과세표준 「1.2천만원 이하」 대비 「3억원 초과」 구간의 1인당 평균 세금경감액 차이는 41.4배로 나타났으며, 세부항목 중 기부금 91.3배, 보험료 52.8배, 의료비 28.7배, 교육비 10.9배로 나타났다. 한편, 인적공제는 8.9배로 특별공제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기본공제 8.6배, 추가공제 6.6배, 다자녀추가공제 5.2배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공제제도 운영사례, 우리나라의 소득계층별 공제혜택의 격차 비교 등을 기반으로 소득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소득세제 개편을 위한 정책방향과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개편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세액공제제도 중심의 공제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둘째, 고소득층의 Phase-out Rule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셋째, 저소득층을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첫째,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소득공제제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어 소득재분배 기능이 매우 미흡한바,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효과적인 세액공제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정책대상과 정책목적의 우선순위, 형평성 측면을 고려하여 소득계층별로 공제혜택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소득공제 항목을 고려대상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국세청의 『국세

통계자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계층간 공제제도로 인한 1인당 평균 세금절감효과는 특별공제항목에서 고소득자에게 공제혜택이 크게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고소득자일수록 지출규모가 크게 나타나 소득공제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소득불평등도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소득공제는 필요경비적 성격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고소득 근로자에 대하여는 공제율을 감소하여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적공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공제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고소득자에게 공제혜택이 편중되므로 세액공제방식에서의 전환을 검토하거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소득금액을 상향조정하여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013년 세제개편안은 기존의 소득공제를 점진적으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소득세제가 안고 있는 소득계층 간 불평등도를 개선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1인당 평균 소득세 경감액으로 살펴 본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공제제도로 인한 세금절감효과 차이는 크게 축소되었다. 현행 특별공제 중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공제를 공제율 15%인 세액공제로 전환시 총급여 「2천만원 이하」 대비 「3억원 초과」 구간의 근로자가 받는 세금절감 혜택 차이는 의료비 73.6→14.5배, 교육비 25.5→5.0배, 기부금 178.3→35.2배로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1인 이상 비농가 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2013년 세제개편안 중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 EITC의 확대 및 CTC의 도입을 반영한 세후소득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소득세 공제제도 개편안 반영 후의 세후소득 지니계수는 0.3031, EITC 확대 및 CTC 도입을 고려한 세후소득 지니계수는 0.2999로 세전 지니계수 0.3304 대비 각각 8.26%, 9.23% 감소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우리나라의 공제제도는 소득공제 중심으로 운용되어 그 세제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편중되어 저소득자 및 고소득자 간 동일한 금액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소득세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바, 소득세의 안정적인 재원조달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소득자에게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공제금액을 축소하는 방식(Phase-out Rule)을 도입 및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납부할 세액이 없는 저소득계층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이들 계층의 연금가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급형 세액공제로의 운영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세목인 소득세를 통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소득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세제 중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편중되어 있는 소득공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소득세 공제제도를 일거에 개선하기보다는 제도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개선방안이 소득세제의 긍정적인 변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하여 정부는 소득세제 개편방안에 따른 기대효과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2.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3년 세법개정안」, 2013. 08.
- 김낙년 · 김종일, 「한국소득분배지표의 재검토」, 낙성대경제연구소 Working paper, 2013.
- 김유선, 「국세청 통계로 살펴본 근로소득 불평등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2. 05.
- 국회예산정책처, 『201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2011. 10.
- \_\_\_\_\_,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2012. 10.
- 김재진, 『미국 EITC의 태동과 시대상황』, 한국조세연구원, 2009. 06.
- \_\_\_\_\_, 「근로빈곤층을 위한 선진국의 조세제도: 호주 및 뉴질랜드 사례」, 『재정포럼』 제108호, 한국조세연구원, 2005. 6.
- \_\_\_\_\_, 「근로빈곤층을 위한 선진국의 조세제도: 영국사례」, 『재정포럼』, 제114호, 한국조세연구원, 2005. 12.
- \_\_\_\_\_, 『납세편의 증진을 위한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용역보고서, 재정경제부, 2002. 11.
- 김재진 · 박능후, 『한국형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타당성 및 도입방안 연구』, 용역보고서,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5. 9.
- 김재진, 『주요국의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기준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2. 08.
-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박정수, 『주요국의 조세제도 -영국 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10.

- 안종석, 『주요국의 조세제도 -호주 편-』, 한국조세연구원, 2012. 05.
- 유경준, 「중산층의 정의와 추정」, KDI 재정·사회정책동향, 2008.
-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1.
-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미국 편( I)-』, 한국조세연구원, 2009.
- 10.
- 주OECD대표부, 「OECD 국가의 조세정책과 행정 - OECD 논의동향을 중심으로 -」, 2010. 07.
- 전병목·원종학, 「근로소득세 공제체계 정비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3. 12.
- 전병목 외, 『소득세 과세단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8.
- 전병목 외, 『우리 현실에 맞는 EITC모형과 구체적 실시방안』, 2006.
- 전병목·조찬래, 『주요국의 자녀세액공제와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6. 11.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2.
- 통계청 보도자료, 「2010년 가계금융조사 결과」, 2010. 12.
- 한국은행, 『가계신용동향』.
- 한국은행 보도자료, 「2011년 국민계정(잠정)」, 2011. 03.
- 행정안전부, 「2012 지방세정연감」, 2012.
- Australian Taxation Office, “Taxation Statistics 2009-10.”
- Andrew Dilnot & Julian McCrae, *FAMILY CREDIT AND THE WORKING FAMILIES’ TAX CREDIT*, 1999.
-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Annual Financial Report of the Government of Canada”, FY 2011-2012.
- HMRC, “A guide to Child Tax Credit and Working Tax Credit”, 2013.
- \_\_\_\_\_, “Child Tax Credit and Working Tax Credit\_An introduction”, 2013.

- HRSDC, "The National Child Benefit Progress\_ Report 2008", 2013.
- IRS, Publ. 936, "Home Mortgage Interest Deduction", 2011.
- \_\_\_, Publ. 970, "Tax Benefits for Education". 2012.
- \_\_\_, Publ. 972, "Child Tax Credit: For use in preparing 2012 Returns", 2013.
- \_\_\_, Publ. 524, "Credit for the Elderly or the Disabled", 2012.
- \_\_\_, 2012 Instructions for Schedule A(Form 1040)-Itemized Deductions.
- \_\_\_, "Child Tax Credit", Publication 972, 2013. 01.
- \_\_\_, "Earned Income Credit (EIC)", Publication 596, 2013.
- Musgrave, A. Richard,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1959.
-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Historical Tables Budget of The U.S. Government", FY 2012.
- OECD, No. 13, "Fundamental Reform of Personal Income Tax", OECD Tax Policy Studies, 2006.
- \_\_\_\_\_, "Tax Expenditures in OECD Countries", 2010.
- \_\_\_\_\_, "OECD Economic Outlook No. 92", 2012.
- \_\_\_\_\_, "Revenue Statistics 1965-2011", 2012.
- \_\_\_\_\_, "Taxing Wages 2011-2012", 2013.

[www.ato.gov.au](http://www.ato.gov.au)

[www.cra-arc.gc.ca](http://www.cra-arc.gc.ca)

[www.ecos.bok.or.kr](http://www.ecos.bok.or.kr)

[www.fin.gc.ca](http://www.fin.gc.ca)

[www.gov.uk](http://www.gov.uk)

[www.hmrc.gov.uk](http://www.hmrc.gov.uk)

[www.humanservices.gov.au](http://www.humanservices.gov.au)

[www.ibfd.org](http://www.ibfd.org)

[www.ird.govt.nz](http://www.ird.govt.nz)

[www.irs.gov](http://www.irs.gov)

[www.nts.go.kr](http://www.nts.go.kr)

[www.oecd.org](http://www.oecd.org)

[www.taxpolicycenter.org](http://www.taxpolicycenter.org)

[www.taxtips.ca](http://www.taxtips.ca)

## 소득양극화 현상 완화를 위한 소득세제 개편방안 연구

김재진

조세의 기능은 크게 소득재분배 기능(Income Redistribution), 자원배분 기능(Resource Reallocation), 경제안정화 기능(Stabilizing the Economy)으로 구분되며,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세전 대비 세후 지니계수 감소율은 8.7%로 OECD 평균 31.3% 대비 22.6%p 크게 낮은 수준이어서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OECD 주요국과 비교하여 매우 취약하다.

우리나라 조세 중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세목은 소득세, 상속·증여세, 재산세 등이 있으며, 주로 누진세율 및 공제제도를 통하여 소득재분배가 달성되고 있다. 특히, 소득양극화 현상 완화를 위해서는 세수규모나 과세대상 측면에서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이 3.6%로 OECD 평균 8.4%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여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소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소득세제 개편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재분배 기능의 개선이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공제방식은 소득공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동일한 소득공제 금액이라도 한계세율의 차이로 인하여 고소득자에게 세제혜택이 편중되고 있어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비과세·감면제도의 평가 및 재정비를 통하여 소득세 감면규모 및 과세미달자 비율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체계는 다양한 공제·감면제도로 인하여 소득세 면세점이 높아 과세미달자 비중은 크게 높은 수준이고, 소득세 감면규모도 전체 국세감면액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셋째,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격차를 축소하고,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정납세자 비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명목소득세율은 OECD 회원국들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 아니지만 다양한 공제·감면제도로 인하여 실효세율은 크게 낮다. 또한, 각종 공제제도를 근로소득자에게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이 종합소득자에 비해 낮고, 동일한 과세표준 구간 내에서도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 간의 실효세율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소득세가 그 본연의 기능인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하여 소득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현재 과도하게 소득공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제제도를 세액공제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개인의 한계세율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절감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소득공제하에서 공제혜택이 고소득자에게 편중되었던 문제를 해결하여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시킬 것이다. 둘째, 고소득자에게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공제금액을 축소하는 Phase-out Rule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호주·영국에서는 주요 공제항목의 경우 고소득계층에게 적용되는 공제금액을 소득이 증가할수록 점차 감소하도록 하거나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셋째, 연금저축·퇴직연금 공제제도의 개선이다. 2013년 소득세 개편안에서는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공제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었는바,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되나 납부할 세액

이 없는 저소득계층의 경우, 세액공제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저소득계층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이들 계층의 연금가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급형 세액공제로의 운영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Abstract>

## Directions for Income Tax Reform to Mitigate Income Polarization in Korea

Jae – Jin kim

In general, tax policy serves three functions: income redistribution, resource reallocation and stabilizing the economy. Since the financial crisis, the polarization of wealth has become more serious, and the importance of income redistribution has been highlighted. However, in Korea, the decrease of Gini coefficient from before-tax to after-tax is only 8.7%, which is far lower than the OECD average, 31.3%. This implies that the income redistribution through tax policy in Korea is far less effective compared to that in OECD countries.

In Korea, the income tax, inheritance/gift tax and property tax carry out income redistribution function mainly through progressive tax rates and deductions system. Especially, income redistribution undertaken by income tax system is highly important for the purpose of alleviating the problem of income polarization in terms of tax revenue and taxable base. However, individual income tax accounts for 3.6% of GDP in Korea, which is lower than OECD average, 8.4%. This signifies that the current income tax system in Korea is not functioning well to deliver effective income redistribution for various reasons.

In order to enhance the income redistribution and equity in taxation, our income tax system needs to be reformed towards

the following directions. Firstly, its role as to achieve the income redistribution has to be performed more effectively. In Korea, income tax liability is largely reduced by income deductions, which provides more tax advantages to taxpayers with high income due to the difference in marginal tax rates: despite the same amount of deductions provided, those with higher tax rates take more tax benefits. This leads to deeper income polarization. Secondly, the scopes of income tax reductions and non-taxpayers need to be tapered off after careful review and restructure of current exemptions/reductions system. We have various deductions and credits available for income tax which results in unnecessarily high tax-free income band and large number of people with no income tax liability. Also, income tax is with the largest tax reductions compared to other national taxes. Thirdly, the gap between marginal tax rates and effective tax rates needs to be reduced and the adequate proportion of taxpayers with reasonable tax liability has to be maintained in each income band. Our marginal income tax rates are not low in comparison to other OECD countries, but our effective tax rates are significantly low due to the large number of deductions and credits. There are additional tax credits available to taxpayers with labour-income, which makes their effective tax rates lower than those with other income. Consequently, within the same income band, people with labour income enjoy far lower effective tax rates compared to those with other income.

Hence, for the income tax system to fulfill its own fundamental function, the income redistribution, the following policy reforms are required. Firstly, the excessive use of income

deductions has to be replaced with tax credits. Tax credits are not affected by marginal tax rates, thus deliver equal tax benefits for every taxpayer. Therefore, the problems with tax advantages overly taken by high income earners under the income deduction system can be mitigated, and the equity in taxation would be improved. Secondly, the Phase-out Rule, which reduces the amount of deductions as income increases, can be introduced. This rule has been adopted by US, UK and Australia, in a way which reduces or limits the amount of standard deductions for high income earners as their income increase. Thirdly, deductions for retirement savings and retirement annuity have to be restructured. In 2013 tax revisions, deductions for retirement savings and retirement annuity have been converted into forms of tax credits. This may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income redistribution, but only to a limited extent, since people with low income (hence, no income tax liability) cannot enjoy the tax benefits. Refundable tax credits can be a positive alternative in order to make the tax advantage available to low income earners and provide incentives for them to join pension schemes.



<著者略歷>

김재진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경제학 석·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료수집 및 정리

허윤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김예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소득양극화 현상 완화를 위한 소득세제 개편방안 연구

2013년 12월 24일 인쇄

2013년 12월 31일 발행

저 자 김재진

발행인 옥동석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31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전화: 2186-2114(내),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삼신인쇄

인 쇄

© 한국조세연구원 2013

ISBN : 978-89-8191-714-2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8,000원

